
생계비와 임금정책

윤진호 편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발 간 사

노총은 1976년에 처음으로 도시근로자 최저 이론생계비 모형을 작성하였으며, 그후 약 5년 주기로 생계비 모형을 개정해 왔습니다. 이번 노총 생계비 모형의 개정도 지난 5년간 노동자가구의 생활양식 및 소비지출의 변화를 고려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생계비의 작성은 노총의 정책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는 임금이 유일한 생계비의 원천인 만큼, 노동조합은 해마다 생계비를 준거로 임금인상 요구수준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의 노총생계비 모형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최저생계비' 개념을 벗어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1976년 최초로 노총생계비를 작성한 이래, 노총생계비는 계속 '최저생계비'의 개념을 견지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맞이하여 노동자 가구의 생활양식의 내용과 욕구수준도 크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노총 생계비도 '최저수준'을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노동조합의 임금인상도 단순한 물량적 최저 소비를 넘어서서 노동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노총생계비가 노동자가구의 표준적 생활비를 표현하는 '표준생계비'나, 여유 있는 생활수준을 표현하는 '유락생계비'의 개념에 이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노총 생계비는 종전의 최저생계비에 주거, 교육, 건강, 여가 생활 등 삶의 질과 관계 있는 부분에서 최소한의 지출을 더해 준 수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윤진호 교수(인하대학교 산업경제 연구소)의 노고로 이루어졌습니다. 본 연구는 전국 6대 도시에 거주하는 3천여 노총조합원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수행되었으며, 노총 산하 19개 산별연맹의 임금정책 담당자

와 노총 정책실, 그리고 노총 중앙연구원의 긴밀한 협조와 참여 하에 수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또한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 노총 생계비의 변천과정 및 1996년 노총의 임금정책과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1장은 생계비와 노총 임금정책의 변천, 제 2장은 1996년 도시근로자 생계비, 제 3장은 1996년 노총의 임금정책, 제 4장은 생산성 임금논리 비판, 제 5장은 일본 노동조합의 임금정책과 그 시사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 2장은 윤진호 교수(인하대 경제학과)와 문현경 교수(단국대 식품영양학과)가, 제 3장은 어수봉 원장(노총 중앙연구원)과 김종각 연구위원(노총 정책실)이, 제 5장은 윤진호 교수가, 제 1장과 제 4장은 권혜자 연구원(노총 중앙연구원)이 각각 집필하였습니다. 저자들의 노고는 물론, 생계비 조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조합원 여러분과 산별 연맹 담당자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은 전적으로 저자들의 견해이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1996년 3월

한 국 노 동 조 합 총 연 맹
위 원 장 박 인 상

< 목 차 >

제 1 장 생계비와 노총 임금정책의 변천(권혜자)	1
1. 머리말	1
2. 생계비와 노총 임금정책의 변천과정	4
가. 생계비 산정 이전의 노총 임금정책(1970년 ~ 1975년)	4
나. 생계비 산정 초기의 노총 임금정책(1976년 ~ 1985년)	11
다. 생계비논리에 의거한 노동조합 임금요구 결정(1986년 ~ 1995년)	12
3. 노총 임금정책의 특징과 정책방향	30
4. 산별노조를 지향하는 노조임금정책	4
제 2 장 도시근로자 생계비(윤진호·문현경)	45
1. 머리말	45
2. 생계비 산출을 위한 조사 개요	46
3. 생계비 산출모형의 설계	51
4. 가구원수별·비목별 도시근로자 생계비의 내용	55
가. 식품비	55
나. 주거비	75
다. 광열비 및 수도비	86
라. 가구·가사용품비	93
마. 피복·신발비	103
바. 보건·위생비	110
사. 교육비	117
아. 교통·통신비	120
자. 교양·오락·잡비	124

차. 저 축	127
카. 조세공과금	130
5. 맺음말	133
제 3 장 1996년 노총의 임금정책(어수봉·김종각)	136
1. 임금인상 요구율 산정과 의의	136
2. 임금정책과 연관된 단체협약 및 제도개선 요구	143
제 4 장 생산성 임금논리 비판(권혜자)	148
1. 머리말	148
2. 정부 및 사용자의 생산성 임금논리의 내용	150
가. 공익연구단의 국민경제생산성 임금논리	150
나. 경총의 자본기여도를 고려한 생산성 임금논리	152
3. 정부 및 사용자의 생산성 임금논리의 주요 논거 비판	154
가. 생산성 임금논리의 배경과 의미	154
나. 임금과 노동생산성의 비교	158
다. 국가경쟁력과 명목임금 상승률	160
라. 독과점적 생산물시장	162
마.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와 국제 비교	164
4. 국민경제노동생산성 임금논리 산정의 문제점	167
가. 생산성 임금논리 산정 지표의 문제점	167
나. 임금인상률 산정시 임금부상률 공제에 대하여	172
다. 범위 인상률 적용의 문제점	177
5. 맺음말	180
제 5 장 일본 노동조합의 최근 임금정책과 그 시사점(윤진호)	183
1. 머리말	183
2. 연합의 임금정책	185

3. 철강노련의 임금정책	196
4. 電機連合의 임금정책	200
5. 자동차총련의 임금정책	204
6. 시사점	209
<참고문헌>	211
<부록 1> 1995년 도시근로자 생계비조사 표본의 주요특성	213
<부록 2> 노총 생계비 구연구와 신연구의 항목별 비교	216
<부록 3> 신모형에 의한 도시근로자 생계비 가구모형 항목별 명세표	217
<부록 4> 식품비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231
<부록 5> 도시근로자 생계비조사 설문지	265
<부록 6> 도시근로자가구 1일 식품섭취조사 설문지	288

〈 표 목 차 〉

〈표 1- 1〉 주요 경제지표와 실질임금상승률	5
〈표 1- 2〉 1970년 노총의 임금인상 현황	8
〈표 1- 3〉 1970년 상반기의 임금, 물가, 경제성장률	9
〈표 1- 4〉 1970년대 상반기의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지수	1
〈표 1- 5〉 도시근로자 최저이론생계비(1976년)	4
〈표 1- 6〉 가구모형별 가족구성(1982)	5
〈표 1- 7〉 1970년대의 성별 직종별 학력별 임금격차	0
〈표 1- 8〉 노총 임금요구율과 실제임금상승률	26
〈표 1- 9〉 연도별 노총조합원수의 추이	27
〈표 1-10〉 연맹별 가구주의 임금수준 및 주관적 생계비	3
〈표 2- 1〉 가구모형별 가족구성	54
〈표 2- 2〉 도시근로자 가구 가구원수별 비목별 생계비	55
〈표 2- 3〉 각 가구모형별 영양권장량	60
〈표 2- 4〉 가구모형별 각 식품군의 권장섭취 횟수	61
〈표 2- 5〉 국민 1인 1일당 에너지 공급량과 섭취량	62
〈표 2- 6〉 1인 가구 식품모형 및 가격	62
〈표 2- 7〉 2인 가구 식품모형 및 가격	65
〈표 2- 8〉 3인 가구 식품모형 및 가격	67
〈표 2- 9〉 4인 가구 식품모형 및 가격	69
〈표 2-10〉 5인 가구 식품모형 및 가격	71
〈표 2-11〉 국민영양조사에 따른 연령별·성별 외식비율(1991~93)	37
〈표 2-12〉 도시가계지출의 외식비 및 기호식품비 평균 지출비율	73
〈표 2-13〉 실태조사 대상의 식품비 및 외식비 관련사항	74

<표 2-14> 가구모형별 식비	74
<표 2-15> 식품비(도시) 계절조정치	74
<표 2-16> 가구규모별 주택의 점유형태	76
<표 2-17> 현거주 주택의 종류	78
<표 2-18> 주거유형별 전용거주면적	79
<표 2-19> 가구규모별 전용면적과 주택구조	79
<표 2-20> 가구규모별 전세유지비 및 자가유지비의 산출	81
<표 2-21>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표	83
<표 2-22> 가구규모별 이사비용	83
<표 2-23> 가구규모별 주택수리비, 도배비, 장판비	85
<표 2-24> 가구규모별 주거비의 합계	86
<표 2-25> 가옥형태별 주된 난방방식	87
<표 2-26> 가구규모별 난방비	87
<표 2-27> 가옥형태별 주된 취사연료원	88
<표 2-28> 가구규모별 가스사용량	89
<표 2-29> 가구규모별 전력사용량	90
<표 2-30> 주택용 전력요금(1995. 5. 1. 부터)	90
<표 2-31> 서울시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95. 10월 현재)	91
<표 2-32> 가구규모별 광열비 및 수도비의 합계	92
<표 2-33> 가구규모별 가구보유율	94
<표 2-34> 가구의 내구년수·소요량 및 월비용	95
<표 2-35> 가구규모별 가전제품보유율	96
<표 2-36> 가전제품의 품목, 내구년수, 소요량 및 월비용	97
<표 2-37> 가구규모별 기타 내구소비재 보유율	98
<표 2-38> 가구규모별 기타 내구소비재의 품목, 내구년수, 소요량 및 월비용	98
<표 2-39> 주방용품의 품목, 내구년수, 소요량 및 월비	99
<표 2-40> 가구규모별 기타 가사용품의 품목, 내구년수, 소요량 및 월비용	101

<표 2-41> 가구규모별 가구·가사용품비의 합계	102
<표 2-42> 성인남성의 의류구입빈도(중위값)	104
<표 2-43> 피복/신발비의 품목, 내구년수, 소요량 및 월비용(성인남성)	104
<표 2-44> 성인여성의 의류구입빈도	105
<표 2-45> 피복·신발비의 품목, 내구년수, 소요량 및 월비용(성인여성) ..	106
<표 2-46> 피복·신발비의 품목, 내구년수, 소요량 및 월비용(남자자녀) ..	107
<표 2-47 > 피복/신발비의 품목, 내구년수, 소요량 및 월비용(여자 자녀)	109
<표 2-48> 가구규모별 피복·신발비의 합계	109
<표 2-49> 근로자 가구의 목욕탕, 이발소, 미장원 출입회수	110
<표 2-50> 위생비의 품목, 내구년수, 소요량 및 월비용	112
<표 2-51> 가구규모별 진료비의 산출과정	114
<표 2-52> 근로자 가구의 안경·콘택트렌즈 착용 실태	115
<표 2-53> 의료비의 품목, 내구년수, 소요량 및 월비용	115
<표 2-54> 화장품의 품목, 내구년수, 소요량 및 월비용	116
<표 2-55> 가구규모별 보건/위생비의 합계	116
<표 2-56> 각급학교 납입금 징수액(학생 1인당 연액)	117
<표 2-57> 학교급별 과외활동실태	119
<표 2-58>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119
<표 2-59> 가구규모별 교육비의 항목, 내구년수, 소요량 및 월비용	121
<표 2-60> 출근시 이용하는 주된 교통수단	121
<표 2-61> 가구규모별 교통비	122
<표 2-62> 전화요금표(1994. 10. 1.부터 실시)	123
<표 2-63> 가구규모별 통신비	123
<표 2-64> 가구규모별 교통/통신비의 합계	124
<표 2-65> 교양오락비의 지출현황(중위값)	125
<표 2-66> 교양·오락·잡비의 항목, 내구년수, 소요량 및 월비용	127
<표 2-67> 정기적 저축여부와 저축목적	129
<표 2-68> 가구규모별 월부금 액수	130
<표 2-69> 가구규모별 조세공과금	133

<표 3- 1> 1996년 노총의 임금요구수준	17
<표 3- 2> 1995년 연평균임금의 추정	18
<표 3- 3> 1996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 전망에 따른 임금인상률	139
<표 3-4> 1994년 노동생산성 기준에 따른 임금인상률	19
<표 3-5> 1995년 상반기 노동생산성 기준에 따른 임금인상률	19
<표 3-6-1> 생산성부상과 임금부상의 예	141
<표 3-6-2> 생산성부상과 임금부상의 예	142
<표 4- 1> 노사정의 임금가이드라인	152
<표 4- 2> 자본기여도 관련지표	153
<표 4- 3> 오일쇼크를 전후한 일본의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	156
<표 4- 4> 임금과 노동생산성의 연도별 추이	159
<표 4- 6> 아시아 각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비교	161
<표 4- 7> 사업체 노동비용의 추이	161
<표 4- 8> 시장집중의 현황과 추이	163
<표 4- 9> 출하액 기준 시장집중도	163
<표 4-10> 각국의 노동소득분배율(1992년)	165
<표 4-11>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	166
<표 4-12>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추이	170
<표 4-13> 임금타결인상률과 실제임금상승률	173
<표 5- 1> 주요단체별 노동조합원수의 추이	185
<표 5- 2> 가구인원수별 표준생계비(1995년 4월 현재)	19
<표 5- 3> 임금상승률과 생산성향상률의 비교	190
<표 5- 4> 주된 임금체계의 종류별 기업수 비율	194
<표 5- 5> 전기연합소속 노조의 연간노동시간과 연간 휴일일수(1994)	22
<표 5- 6> 자동차각사의 임금항목	206

< 그림 목차 >

[그림 3-1] 생계비와 임금인상 요구	18
[그림 4-1] 임금의 결정기준(정상적 경제환경일 경우)	17
[그림 4-2] 스태그플레이션 하의 임금정책	17
[그림 4-3] 일본의 피용자소득분배율의 추이	16
[그림 5-1] 임금협상에서 각 조직의 역할	17

제 1 장

생계비와 노총 임금정책의 변천

권혜자*

1. 머리말

우리 나라 노동조합의 임금정책에서 도시 근로자 생계비 모형의 산정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노총 생계비는 매년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수준을 결정하는 준거로 사용되어 왔다. 임금은 노동력의 재생산비용이면서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소득원천이므로, 노동조합은 매년 생계비의 증가에 상응하는 임금인상 확보를 기본적 목표로 설정하였다. 1976년이래 노총은 노동자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최저 수준의 생계비를 산정하고, 지난해와의 비교를 통해 생계비 상승분만큼 임금을 인상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 글의 목적은 노총 생계비의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나라 노동조합의 임금정책이 어떠한 변화를 겪어왔는가를 검토하는 데 있다. 임금정책 중에서도 특히 생계비를 근거로 한 노동조합 임금요구 수준의 결정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노동조합이 생계비를 산정하기 시작한 것은 1969년 섬유노련이 최초였다. 그후 화학노련을 비롯하여 다른 산별노련으로 생계비 산정이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원

확산되었으나, 노총 차원에서 생계비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은 1976년이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노동조합이 생계비 산정 결과를 임금요구 결정의 준거로 활용한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의 생계비는 물가상승률이나 생산성 상승률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된 임금인상 요구안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을 뿐이었다. 생계비는 1986년 이후에야 노총의 임금요구 결정기준으로서 중요성을 갖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노총생계비는 4회의 모형 변경을 거쳐 왔다. 생계비모형의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동자의 생활수준이나 소비형태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생계비 모형의 주된 변화에 따라 4단계로 시기를 구분하고 있다. 노총생계비는 1976년 조사 이후 1981년, 1986년, 1990년, 1995년의 각 5년 단위로 수정되어 왔으므로, 시기구분도 전기(前期)-노총생계비조사 이전(1970-75년), 초기-1976년의 생계비조사 실시 이후 1회의 모형 수정을 거친 10년간(1976년에서 1985년)¹⁾, 정착기-생계비가 노총의 직접적인 임금요구 기준으로 부각된 1986-95년, 마지막으로 4번째 모형 개정이 있었던 1995년 이후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1995년에 개정된 생계비 모형의 구체적인 내용은 2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므로 여기서는 모형 개정의 의미에 국한할 것이다.

이러한 시기구분은 우리 나라의 정권의 변화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오랜 독재정치체제 하에서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은 굴절되고 왜곡되어 왔고, 그 결과 노동조합의 임금요구기준이나 임금정책도 독재정권의 직접적인 통제권 내에 있었다. 따라서 우리 나라 노동조합의 임금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부의 임금정책의 변화를 검토하는 것 또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1995년 현재까지도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는 우리 나라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특

1) 1981년에도 생계비 모형의 수정이 있었으나, 1976년 모형의 부분적인 수정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시기구분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1990년의 생계비 모형은 1986년의 모형을 보다 과학화하는 대폭적인 개정이었으나, 이 시기의 노총 임금정책이 1987년 이후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라는 동일한 기류를 타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시기로 통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징은 1987년 노동자 대파업이라는 우리 나라 노동조합운동의 대전환 계기에도 불구하고, 제 3차 개입금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등 노동운동의 기본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유신체제 하에서 노총 사업보고에 나타난 선언적인 의미에서의 자율적 노사관계에의 염원은 그로부터 25년 이후인 현재에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지난 20년간 노총의 임금정책의 내용은 생계비에 의거한 임금인상 요구로부터, 복지제도 확충 등 간접임금 요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많은 부분에서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노동조합 임금정책이 정부의 지나친 통제와 간섭으로 인하여 많은 부분에서 실현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노총 생계비의 역사는 정부나 사용자 측에서 주장해 온 생산성임금논리의 역사이기도 한다. 정부나 사용자단체는 공교롭게도 노총 산하 섬유연맹에서 최초로 생계비조사를 시작한 바로 1969년에 처음으로 생산성임금논리를 주장했다. 생산성임금논리는 노동자의 저임금착취에 기초하여 경제부흥을 도모했던 1970년대 초반부터 1995년 공익연구단의 국민경제노동생산성 임금논리에 이르기까지, 필요에 따라 옷은 갈아입었지만 본질은 일관되게 노동조합의 생계비 논리에 대응하는 임금억제 논리에 다름 아니었다. 이 장에서는 생산성임금논리를 생계비 논리에 의거한 노동조합의 임금정책과의 관련하여만 다를 것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4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이장에서는 생계비 산정 이전의 노총 임금정책, 1976년에서 1985년까지의 노총 생계비 산정과 노총 임금정책, 1986년 이후 1995년까지 생계비가 노총의 임금인상 준거로서 정착되는 과정을 차례로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생계비 모형과 노총 임금정책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고, 앞으로 산별 노동조합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면서 노동조합의 임금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2. 생계비와 노총 임금정책의 변천과정

가. 생계비 산정 이전의 노총 임금정책(1970년 ~ 1975년)

1) 유신체제하 정부의 임금정책 기초

1970년대 초반의 정치경제는 유신체제와 국가 주도의 중화학공업화로 특징 지워진다. 유신체제는 1971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공포를 시작으로 등장하여 1973년에는 대통령 긴급조치 1호, 2호, 4호를 발표했다. 각 긴급조치의 내용은 근로자의 조세 경감 및 복지연금의 실시 시기를 1년간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행위나 이를 폐지하기 위한 행위, 그리고 유언비어와 금지된 행위를 방송, 보도, 출판 등 기타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민청학련 사건 이후 유신 반대 세력의 일소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 시기의 정부의 임금정책 기초는 1972년의 8.3 긴급명령과 1973년의 임금 현실화정책으로 특징 지워진다. 정부는 8.3 긴급명령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위해 임금규제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성 향상의 범위 내에서만 임금조정을 허용하는 생산성임금논리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8.3 긴급명령의 내용은 도매물가를 연간 3% 이내로 억제하기 위하여 임금도 1년간 제품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1973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로 억제되었으며, 명목임금상승률도 다른 해보다 낮은 11.5%에 불과하였다(<표 1-1> 참조). 1973년에는 8.3조치에 의한 임금규제정책 대신에 생산성 증가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임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임금현실화정책」으로 정책기조를 변화하였다. 생산성임금논리는 1969년 상공회의소에서 생산성에 상응하는 임금인상을 주장한 바 있으나, 공식적으로 정부의 임금정책으로 표명된 것은 1970년대 초반이다. 이러한 정책전환은 ‘선진국의 기술도입과 국내 기술개발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수출러시로 기업이윤도 호전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 증대를 노동자들에게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²⁾

<표 1-1> 주요 경제지표와 실질임금상승률

(단위 : %)

	GDP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명목임금 상승률	실질임금 상승률
1971	8.5	13.2	15.4	1.9
1972	4.8	11.7	17.5	5.2
1973	12.8	3.3	11.5	7.9
1974	8.1	24.7	31.9	5.8
1975	6.6	24.9	29.5	3.7
1976	11.8	15.4	35.5	17.4
1977	10.3	10.2	32.1	19.8
1978	9.4	14.4	35.0	18.1
1979	7.1	18.2	28.3	8.6
1980	-2.7	28.8	23.4	-4.2
1981	6.2	21.5	20.7	-0.6
1982	7.6	7.1	15.8	8.1
1983	11.5	3.4	11.0	7.4
1984	8.7	2.3	8.7	6.2
1985	6.5	2.4	9.2	6.7
1986	11.6	2.7	8.2	5.3
1987	11.5	3.0	10.1	6.9
1988	11.3	7.1	15.5	7.8
1989	6.4	5.7	21.1	14.5
1990	9.5	8.6	18.8	9.4
1991	9.1	9.3	17.5	7.5
1992	5.1	6.2	15.2	8.4
1993	5.8	4.8	12.2	7.0
1994	8.4	6.2	12.7	6.1

주 : 1990년 기준으로 재계산.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호.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각 년호.

2) 경제기획원, 「임금현실화방안」, 1973년 『노총 사업보고』에서 재인용.

2) 노총 임금정책기조와 임금요구기준

이 시기 노총의 임금정책기조는 정부의 임금규제정책을 수용하면서, 그 한도 내에서 임금인상 요구를 어느 만큼 높일 수 있는 가로 집중되었다. 이를 위하여 노총은 임금이 물가상승의 요인이 아니므로 임금억제로 물가가 안정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다음과 같은 임금정책 기조를 결정하였다. 첫째,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최저생활급을 보장할 것, 둘째,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응하는 임금슬라이드제도를 채택할 것, 셋째, 생산성 상승분만큼 이익을 배분할 것, 넷째, 기업경영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동시에 노총은 정부의 임금규제정책을 수용하면서 ‘정부의 제품가격 인상 허용 폭인 연간 3%의 범위 내에서 기업의 새로운 부담없이 임금인상이 연간 최저 19%, 최고 45.8%까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기준으로서 제조원가가 3% 상승할 때 임금인상 가능액(11%~30%) + 8.3조치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분의 $(15.8 \times \frac{1}{2})$ + 성과급을 제시하였다³⁾. 그리하여 임금인상의 하한선으로는 $11\% + (15.8\% \times \frac{1}{2}) =$ 약 19%를 요구하고, 상한선으로는 $30\% + 15.8\% = 45.8\%$ 를 요구하였다. 또 생산성 향상분 만큼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하여 노사협의제도의 확립, 자유로운 단체교섭의 보장을 선행조건으로 걸었다⁴⁾.

1973년에 정부가 노동생산성 증가에 따라 임금수준을 높이겠다는 임금현실화정책을 발표하자 노총은 이에 환영의 뜻을 표하였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생산성임금논리(혹은 적정임금제)가 각 사회계층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하자, 노총은 임금상승률을 당해년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측치 + 최근 5년간의 산업별(혹은 국민경제)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로 할 것을 제시하였다. 노총이 1974년 경제기획원 및 관련행정기관, 사용자단체에 보낸 ‘임금현실화에 관한 건의’에 의하면 ‘자율적인 노동운동이 규제된 가운데 임금의 결정을 행정당국

3)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1973년 노총 사업보고 86-87쪽을 참조할 것.

4) 유신체제 하에서도 노사협의회의 설치는 노동조합법 제 6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적 기능을 없었으며,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9조 1항에 의하여 노사당사자간의 자율적 단체교섭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의 조정결정에 맡기고 있는 현재로서 “임금수준의 합리적 조정”은 오직 정부 당국의 특별한 배려에 기대치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귀하께서는 이와 같은 절박한 실정을 감안하시어 모든 기업으로 하여금 우선 물가상승폭 만큼은 명목임금을 의무적으로 인상조정함으로써 최소한 임금의 실질가치만이라도 보장토록 하며, 아울러 경영실적과 생산성 향상에 상응한 실질임금의 인상 및 한계 생활비 선 이하의 저임금을 일소할 수 있는 강력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⁵⁾ 이와 같이 노총의 임금요구 결정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의해 일차적으로 규정되고, 사용자 단체와의 협조와 관심을 유도하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총은 1974년 임금인상지침에서 물가상승률=임금인상률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생산성 향상 및 경영실적에 따라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3) 노총의 임금정책 활동

1970년대 중반의 고도성장기로 접어들면서 노총의 임금정책은 실질임금확보를 위한 명목임금인상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하에서는 생산성임금 논리를 수용하면서 어떠한 임금요구수준의 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시기 노총의 임금정책의 기본 목표는 한계생활 이하의 저임금지대 일소, 임금의 실질가치보장 및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손실의 보전(補填), 생산성향상에 따른 실질임금 인상이었다.

가) 노동자의 임금적자 회복 및 저임금지대의 일소

70년대 초반에 노총은 생활급의 보장 없이는 산업평화와 생산성 향상, 경제발전이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논리 아래 생활급의 확보를 당면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할 생활급의 수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단지 경제기획원이 조사한 근로자 가구의 생계비 수준과 구성을 토대로 하여 노총 산하조합원의 월평균임금이 어느 만큼의 적자생계인가를 폭로하는데 그치

5) 1974년 노총 사업보고에서 재인용.

고 있다. 1970년 경제기획원의 1/4분기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을 보면 봉급자가 34,590원, 노무자가 22,080원이다⁶⁾. 같은 해 노총 조합원 중에서 가장 임금수준이 높은 기술직은 31,276원으로 경제기획원조사의 봉급자에 비교하여 3,314원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미숙련공이 9,502원, 임시직은 11,066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표 1-2> 참조). 즉 봉급자에 비교했을 때 노동자들이 가계 적자를 보고 있으므로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임금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표 1-2> 1970년 노총의 임금인상 현황

(단위 : 원, %)

	사무직	기술직	숙련공	미숙련	임시직
1969년	22,999	24,677	18,493	9,442	8,044
1970년	27,606	31,276	22,518	12,578	10,014
인상률	20.0	26.7	21.7	33.2	26.1

자료 : 『1970년 노총 사업보고』,

다른 한편으로 노총은 한계수준 이하의 저임금지대를 일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1975년 임금지침에 따르면 노총이 규정한 ‘저임금’은 경제기획원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액 중 식료품비의 비중을 계산하여, 엥겔계수가 50을 넘는 가구의 생계비를 한계 생존비로 규정하였다. 이 한계 생존비를 도시근로자 가구당 취업인원 1.35명으로 나누어 최저임금액을 구하고,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을 일소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임금의 실질가치 보장 및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손실의 보전(補填)

물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임금의 구매력이 저하되므로 노총은 실질임금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표 1-3>에 의하면 1974년의 소비자물가는 1970년에

6) 『도시가계연보』의 근로자 가구는 봉급자와 노무자로 나뉘고 있다. 봉급자는 공무원 및 공무원의 사무종사자로 구성되며, 노무자는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와 임시직 및 일용노무자로 구성된다. 따라서 봉급자는 사무직, 노무자는 생산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하여 62.6% 증가하였지만, 실질임금은 25.8%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실질 임금의 보장을 위하여 노총은 물가-임금 연동제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당해년도의 임금인상률 결정에 있어 전년도의 물가상승률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임금손실률을 가산할 것을 요구하였다.

<표 1-3> 1970년 상반기의 임금, 물가, 경제성장률

(단위 : %)

	1970	1971	1972	1973	1974
노동생산성지수	100.0	108.9	117.5	127.3	140.0
명목임금지수	100.0	119.2	137.6	150.8	204.5
소비자물가지수	100.0	113.5	126.8	130.8	162.6
음식료품비지수	100.0	118.9	134.7	138.2	176.3
실질임금지수	100.0	105.1	108.6	115.3	125.8
경제성장률	7.9	9.2	7.0	16.5	8.6
비용자보수율	39.05	38.98	38.81	37.18	36.84

자료 : 노총, 『임금인상 활동지침』, 1976년호.

임금의 실질가치 보장과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산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cdot \text{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손실 보전을 위한 임금인상률} \\ &= \text{전년도 물가상승률} + \text{전년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임금손실률} \dots\dots\dots \textcircled{1} \end{aligned}$$

따라서 1976년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손실 보전을 위한 임금인상률은 1975년의 물가상승률 25.4%에 임금손실률 13%를 더한 38.4%가 된다. 임금손실률은 1975년 1월의 소비자물가지수에 대비한 11월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분의 평균 값이다.

그러나 이러한 산식은 당시 노총이 수용하고 있던 정부의 생산성 임금논리와 괴리된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노총은 ‘실질임금 조정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임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당연한 보호조치이며, 사실상의 임금인상은 아니다’⁷⁾라고 하면서, 이를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임금

인상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다) 생산성향상에 따른 실질임금 인상

<표 1-3>에 따르면 실질임금은 1970년 대비 1974년의 실질임금은 25.8% 상승하였으나, 노동생산성 지수는 동기간에 40% 상승함으로써 실질임금 상승이 노동생산성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 피용자보수 비율도 1970년에 비해 점차 낮아져 노동자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노총은 정부의 생산성임금논리를 받아들이면서, 그 이외에도 경영실적에 따른 적정 분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생산성임금논리에 의한 구체적인 임금요구율은 1975년 임금인상지침을 제외하고는 정확히 밝혀지고 있지는 않다. 1976년 생산성임금논리에 의한 노총의 임금요구율의 최하한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고 있다.

·임금의 실질가치보장 후에 가산해야 할 생산성 향상에 따른

$$\text{실질임금증가분} = \frac{\text{생산성향상분} + \text{GNP성장률}}{2} \dots\dots\dots$$

②

·1976년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임금인상률은

$$= \frac{1975\text{년 생산성향상률 } 13.5\% + 1975\text{년 GNP성장률 } 7.4\%}{2} = 10.45\%$$

가 된다. 이를 ①의 임금의 실질가치보장 및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손실의 보전(補填)분 38.4%에 더하면 1976년의 노총 임금인상요구율은 48.85%이다. 즉

·당해년도의 임금인상률

$$= \text{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손실보전분} + \text{생산성 상승률} \dots\dots\dots ③$$

7) 1975년 『노총 임금인상 활동지침』.

1976년의 임금인상률=38.4%+10.45%=48.85로 계산되었다. 노총은 이러한 임금인상 요구기준 이외에도 개별기업의 경영실적을 기말 수당 등 별도의 성과 배분제도로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참고로 이시기의 명목임금상승률은 35.5%에 달했던 시기였다(<표 1-4> 참조).

<표 1-4> 1970년대 상반기의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지수

(단위 : %)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노동생산성지수	8.9	7.9	8.3	10.0	10.9	11.2
명목임금지수	15.4	17.5	11.5	31.9	29.5	35.5
소비자물가지수	13.4	11.7	3.2	24.3	25.3	15.3
실질임금지수	1.7	5.2	8.1	6.1	3.4	18.5

자료 : 노총, 『임금인상 활동지침』, 1977년호

나. 생계비 산정 초기의 노총 임금정책(1976년~1985년)

1) 유신말기 및 5공화국의 임금정책기조

1977년 4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 및 사용자단체의 임금정책 기조는 생산성임금논리에 의한 임금억제를 지속하는 것이었다. 같은 해에 정부는 독과점기업을 비롯한 국내기업의 임금인상폭을 15~18% 선에서 규제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기획원은 임금인상률을 1976년의 소비자물가상승예상률 10%와 노동생산성 상승률 10%의 절반인 5%를 합친 15% 선에서 억제할 예정임을 밝혔다. 1978년 2차 오일쇼크 이후 임금의 실질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함에 따라(<표 1-1> 참조), 도시가구의 평균 생계비(경제기획원의 생계비)도 33.9% 폭등하는 등 노동자가구의 가계적자가 확대되었다.

1979년에서 1980년은 유신정권이 무너지고 쿠데타에 의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정치적 격동기였다. 5공화국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기존의 산별노조체제를 기업별 노동조합체제로 재편하였다. 임금교섭이 개별기업 단위로 진행됨에 따라 노총의 산하조직간 연계는 더욱 약화되었다. 동시에 노동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제 3차 개입금지 조항의 설치, 유니온샵제도의 폐지

등 노동조합 상급조직의 통제력 및 단결력의 약화를 겨냥한 것이었다.

5공화국 정부는 1983년에 5차 5개년 경제계획을 수정하면서 임금을 0-1%에서 억제할 방침을 밝혔으며, 공무원 및 관리직의 임금을 임금인상 없이 근속증대에 따른 호봉조정으로 억제할 것을 강요하였다. 또 1981년에는 임금인상 억제를 위해 여신규제를 실시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2년 이상 결손을 낸 업체가 임금을 올렸을 경우에는 신규여신을 중지시키고, 흑자기업이라도 10% 이상 임금을 올렸거나, 생산성 향상 범위를 초과해서 임금을 인상한 업체에 대해서는 여신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1981년 노총 사업보고 167쪽).

이와 같이 1980년대 상반기의 임금인상 패턴은 정부주도의 한자리수 임금억제정책으로 특징 지워진다. 공무원 및 공공부문 기업체를 선두로 하여, 대기업, 비조직 군소 기업, 하청업체, 노총 산하조직의 순서로 임금교섭이 이루어졌다. 자율적 교섭구조가 전면적으로 봉쇄된 가운데, 기업측은 정부의 한자리수 임금억제정책에 힘입어 임금협상 자체를 부정했으며, 결국 단위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도 종래의 생계비상승률+생산성 증가율에서 물가상승률 만큼의 임금인상 요구로 후퇴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81년 21.5%, 1982년 7.1%, 1983년 3.4%, 1984년 2.3%, 1985년 2.4%로 억제되었으므로, 단위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또한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명목임금상승률을 보면 1981년 20.7%에서 1983년 8.7%, 1985년 9.2%로 급격하게 떨어졌으며, 실질임금상승률은 1980년과 1981년 두 해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표 1-1 참조).

2) 노총의 임금요구 결정

1976년은 노총이 생계비 산정을 시작한 첫해였다. 노동조합의 생계비조사는 1969년 5월에 처음으로 섬유노련이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산출되었다. 이 시기는 1차 경제개발계획이 끝나고 2차 계획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으나, 부와 빈곤의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대규모 면방쟁의와 조선공사쟁의 등 생활보장을 요구하는 쟁의가 잇달았다. 같은 해 말 대한 상공회의소에서는 처음으로 생산성 임금론을 주장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생계비논리와 사용자 측의 생산성 논리는

거의 같은 시기에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섬유노련, 화학노조의 생계비산출에 이어, 노총도 1976년부터 이론 최저생계비 산출에 의거한 임금요구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실제적인 임금요구지침은 1985년에 이르기까지는 생계비 원칙만이 아니라 생산성에 기초한 임금요구를 병행해서 제기해 왔다.

그러나 1976년의 최저 이론생계비 조사의 결과가 처음부터 차기 년도의 노총의 유일한 임금인상 요구기준으로 활용된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 후반에도 노총의 임금결정 요구의 기초는 전반과 동일하다. 즉 최저 생계비 보장 및 임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할 것, 그리고 노동생산성 향상에 따른 성과의 공정배분을 요구함으로써, 당해년도의 임금인상률=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손실 보전분+생산성 상승률로 산정 되었다. 그 외에 기업단위 교섭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동교섭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총의 최저 이론생계비 산정에 따라 노총의 임금정책은 전환기를 맞게 된 것이 사실이다. 독자적인 생계비 산정 이전에는 임금과 생계비의 비교를 위하여 노총조합원의 임금과 경제기획원 도시가계조사의 생활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도시가계조사에 나타난 생활비는 전체 도시가구의 월평균 실제 생활비이므로, 이를 사용한 비교를 통해서는 노총 산하조합원의 임금이 도시가구의 평균적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이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76년 최저 이론생계비 조사이후 해마다 생계비조사를 실시하면서부터, 노총의 생활임금 확보정책은 독자적인 생계비 산정에 의거한 최저생계비 확보라는 구체적인 목표지점을 가지게 된다. 1970년대 말까지는 노총의 임금요구 결정요인에서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가 여전히 포함되고 있었지만 이와 동시에 명목임금을 노총 생계비의 상승률만큼 인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1979년의 경우 1970년대의 노총임금정책이었던 물가임금연동제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 대신에 생계비상승률만큼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게 된다.

1980년대의 노총 임금인상 요구결정도 1970년대 말에 이어 노총 최저생계비에 근거한 생계비 상승률+국민경제성장률로 산정되었다. 이때 생계비상승률은 가구원수별로 각기 계산하여 이를 산술평균한 생계비상승률을 이용하였다.

이 산식에 따른 1984년의 임금인상 요구안은 노총생계비 상승률 8.6%에 경제성장률 예측치 8.4%를 더하여 계산되었다.

3) 노총 생계비 산정의 출발과 1차 모형 개정

가) 노총 최저이론생계비의 산정(1976년 7월)

노총은 최저 이론생계비를 추정하기 위하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5개 도시에서 각기 100가구를 조사하여 총 500가구를 실태조사하였다.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비목 중 공통비목을 채택하여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잡비를 추정산출하였다. 식품비는 실태조사에 의거한 이외에도 '한국인 영양권장량'에 나타난 식단을 참고로 1인당 필요열량을 가족수별로 환산하여 추산하였다.

1976년 생계비모형의 가구구성은 실태조사에 의거하여 2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로 구성되었는데, 2인 가구는 부부, 4인 가구는 부부 및 6세 미만 자녀 2인, 5인 가구는 부부와 16세 미만 자녀 3인, 6인 가구는 부부와 66세 이상 조모 및 18세 미만 자녀 3인으로 가정되었다. 이 시기의 주거비 산출에서는 실태조사 대상의 약 75%가 무주택가구였으므로, 모든 가구가 자가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광열비의 경우에는 모든 가구가 연탄을 주된 연료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석유난로가 있는 것으로 가정되었고, 전기료의 경우에도 최저 문화생활에 가깝도록 조명등과 TV수상기가 있는 정도로 가정되었다.

<표 1-5> 도시근로자 최저이론생계비(1976년)

기준일	(단위 : 원)			
	2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976.7	54,591	72,441	104,946	140,944
1976.12	58,243	75,736	122,658	-
1977.3	63,838	83,480	137,572	-

주 : 1977년 3월은 1976년 조사에 의한 추계임.

자료 : 노총, 『임금인상 활동지침』, 1977년호.

그리하여 1976년 5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37,572원이다. 여기에 1976년의 월임금총액 62,362원을 비교해보면 임금수준은 노총 최저생계비의 약 45.3%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노총은 이 생계비의 액수가 '최저생계비'의 의미이므로 성인근로자의 최저 임금수준을 책정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고, 그보다 높은 기존의 성인 임금수준의 억제를 합리화하는데 사용해서는 안됨을 명시하고 있다.

나) 생계비모형의 1차 수정(1981년)

1981년에는 노총 최저생계비모형이 1차 수정된다. 수정된 모형도 1976년과 마찬가지로 노총과 생산성본부가 공동연구하여 최저생계비모형을 만들었으며, 한국물가협회가 조사한 서울 남대문, 동대문, 중앙시장 등 3개 시장의 평균소비자물가를 대입하여 산출되었다.

1981년 생계비 모형 개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노총과 산별노조에서 각기 별도로 산정되었던 생계비가 1981년 모형 수정을 계기로 노총차원으로 통합되어 산정되었다는 것이다. 1969년 섬유노련에서 최초로 생계비를 산정한 이후 몇몇 산별노조에서는 노총과 무관하게 산업의 특성에 맞는 생계비를 발표해 왔다. 그런데 1981년에 생계비를 노총에서 통합산정하기로 한 이유는 명목상으로는 최저생계비의 품목 설정 및 액수차이를 통일함으로써 단일한 생계비를 발표하여 교섭력을 증대하고, 생계비조사에 소요된 인적, 물적 낭비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1980년대 초 산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체제로 전환하면서 산별노조의 임금교섭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표 1-6> 가구모형별 가족구성(1982)

	5인가구	4인가구	3인가구	2인가구	단신
가 장	43세	41세	35세	27세	18세
주 부	39세	37세	31세	23세	18세
장 남	15세	13세	7세		
장 녀	13세	11세			
차 남	10세				

자료 : 노총, 『임금인상 활동지침』, 1982년호

1981년 최저생계비 구성항목의 설정은 도시가계연보(1980년)의 분류법을 기준으로 하여 생계에 필수적 항목만을 설정하고,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거나 또 실제로 존재하는 낭비적 지출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노총,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 1981). 즉 소비지출에 있어서는 식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교육비, 교통비, 보건위생비, 잡비를 고려하고, 비소비지출은 조세공과금을 고려하였다. 주거비의 경우에는 표준가구인 5인 가구의 경우에도 모두 무주택으로 가정하고, 3인 가구는 월세를 사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피복비의 산출을 보면 가장은 춘추용 코트가 없고, 주부는 구두가 없으며, 중고생은 교복과 내의만 고려하고, 국민학생은 외출복도 없는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소비자물가조사는 기존의 5개 도시 500가구조사와는 달리, 전국 11개 주요도시로 확대조사하였으며, 조사품목도 134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1981년의 생계비도 노총최저생계비로서 최소한 체면유지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노총의 임금정책

가) 정액임금으로 최저 생계보장급 확보

1976년 최저 이론생계비의 산정에 따라 노총임금정책의 목표는 최저 생계비 보장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1977년의 임금인상에서 18세 기준의 초임급을 최저 38,000원으로 요구하였는데, 이는 2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60%로 산정된 것이었다. 또 성인노동자의 최저 임금수준은 69,000원으로서, 이는 1976년 생계비 조사에는 산정되지 않았던 3인 가족 최저생계비를 추산한 것이었다. 이러한 최저생계비의 추산방법은 197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다.

최저 생계비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1978년에는 정액 인상 원칙을 채택하였

다. 노총은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미달분 만큼 정액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실질임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와는 별도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1979년에도 정액인상 원칙은 지속되었으나, 생계비 이하의 사업장은 정액으로 인상하고, 생계비를 상회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소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상회하여 인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1980년대에도 노총은 최저생계비 보장 요구를 지속하면서 최저생계비에 입각한 임금인상 요구의 타당성을 부각시켰다. 즉 임금은 노동력의 재생산비이고, 갈수록 생계비와 임금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생계비에 입각한 임금수준의 인상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교역조건을 개선시킨다는 점에서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1980년대 초반에는 전부터 모색되어온 최저임금제 실시요구가 더욱 구체화되어, 1985년에는 월 15만원 미만의 저임금을 일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최저임금제의 실시 요구에는 전국, 전 산업에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적용할 것, 생활임금수준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 최저 임금제 실시기구에 노동자대표를 참여시킬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임금의 실질가치 보장

1970년대 후반에도 노총은 생계비⁸⁾ 상승에 연동하여 임금가치(구매력)를 유지할 것과 연간 물가상승에 따라 생계적자분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을 요구하였다.

여기에서 생계적자분이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제 생계비 상승률의 차이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다. 만약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실제 생계비 상승률이 높다면, 명목임금을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눈 실질임금은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어 실질임금의 하락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즉 생계비 상승으로 인한 실질임금이 하락한 경우에도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한 실질임

8) 여기서의 생계비는 1976년 노총의 최저 이론생계비가 아니라 경제기획원의 도시근로자 월 평균 가계지출에서 추산된 소비지출을 의미한다.

금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생계비 상승률보다 낮게 포착되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 가구의 소비지출을 지수화하여 작성된 것인데, 의식주 중심의 5대 항목, 즉 식료비, 광열비, 주거비, 피복비, 잡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생계비에는 소비자물가에는 반영되지 않는 교육비, 공공시설 사용료, 조세 공과금의 변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소비자물가지수의 각 항목에 부여되는 가중치의 차이로 인하여 소비자물가는 시장에서의 체감물가보다 낮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노충은 1979년에 물가-임금연동제에서 물가지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닌 생계비상승률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1980년대에도 노충은 물가-임금연동제에 사용되는 물가지표를 전년대비 생계비상승률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단 1980년대 임금인상 요구에서 1970년대 후반과 다른 특징은 생계비에 의거한 임금인상률 산정에서 가구별로 각기 다른 임금인상률을 설정하여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1981년의 경우 2인 가구의 임금인상 요구율은 57.8%, 3인 가구는 49.1%, 4인 가구는 44.3%, 5인 가구는 41.9%로서, 가구원수 별로 임금인상률을 요구하여, 산술평균 요구율 48.3%를 요구하고 있다.

다) 국민 경제성장과 노동생산성 향상에 따른 실질임금 인상

국민경제 성장과 노동생산성 향상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는 1980년대에도 지속되었다. 1981년에 노충은 전년대비 생계비 상승률 평균 48.3%에 노동생산성 증가율 9.7%를 더하여 총 58.0%의 임금인상률을 요구하였다. 생계비 상승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는 실질임금의 하락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상의 임금인상’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노동생산성 상승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야말로 사실상의 임금인상 요구이며, 지난 1년간의 생산성 향상만큼 임금을 인상함으로써 ‘기존의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를 방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1983년에는 경총에서도 생산성 임금논리를 주장하였다. 이는 명목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상승률을 상회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므로 생산성 범위 내로 임금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경총, 「임금조정

기본방향」, 1983년~1985년). 이에 대하여 노총은 노동생산성과 임금을 비교할 때 명목임금 상승률이 아니라 실질임금 상승률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1980년대 전반에도 노동생산성 향상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는 노총의 임금 요구 결정의 요인이었으며, 이는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생계비 상승률+국민 경제 성장률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임금격차 해소 및 임금체계 개선

1970년대 후반의 노총 임금정책의 특징은 임금수준 만이 아니라 임금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와 정책이 포함되기 시작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표 1-7>을 보면 1970년대에 있어 학력별, 성별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직종별 임금격차는 약간 축소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대졸 대비 고졸의 임금 비중은 1971년 57.5%에서 1979년 45.6%로 낮아졌고, 같은 기간에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도 45.0%에서 44.4%로 약간 낮아져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단지, 사무직 대비 생산직의 임금비중만이 51.5%에서 61.5%로 늘어나 직종별 임금격차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70년대 후반에 노총은 각종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립한다. 즉 고졸 4년차의 임금을 대졸 초임급과 같게 하여 실무경력년수를 학력이수 소요연한과 일치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또 일정 기능자격 보유자의 임금결정 기준을 수립하였는데, 기능사보의 경우 고졸사무직의 임금과, 기능사 2급의 경우 초대졸 사무직의 임금과, 기능사 1급의 경우 대졸 사무직의 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연차적으로는 최저임금액의 결정이 대졸의 60%이상이 되도록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동일한 인적 속성을 가진 노동자의 경우에 직종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1970년대 후반에는 임금체계 개선, 도급임금 노동자 보호 및 포괄역산제에 의한 일당 임금제도의 배격(排擊) 등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정책 요구가 나타난다. 임금체계에서는 기준시간내 임금으로 생활급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직무급 도입의 전제조건으로서 공정한 직무분석과 평가를 전제하였다. 도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근로시간에 따른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할 것, 사용자 책임 하에 속하는 휴업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인정할 것, 도

급노동자에 대한 법정 권리를 보장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 임금산정이 포괄역산에 의해 일당 혹은 임금률이 책정됨에 따라 기준 근로일수 및 시간에 의한 최저 임금액 산출을 요구하고, 일급근로자에 대한 각종 법정수당 및 근로기준법의 권익보장을 요구하였다.

1980년대에도 임금격차의 해소는 여전히 중요한 노총 임금정책이었다. 노총은 임금격차 해소를 이유로 한 정부의 한자리수 임금억제 정책을 반대하는 한편,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산직에 대한 승급제도의 제한 및 차별 철폐를 요구하였다. 또 공무원 임금체계의 합리화와 기준내 임금 중 기본급의 비중을 9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다.

<표 1-7> 1970년대의 성별 직종별 학력별 임금격차

(단위 : %)

연도	생산직/사무직 ²⁾	여자/남자 ³⁾	고졸/대졸 ⁴⁾
1971	51.5	45.0	57.5
1972	56.6	46.4	54.9
1973	50.5	47.1	52.1
1974	53.4	46.7	50.6
1975	49.8	43.6	47.2
1976	48.3	44.6	44.4
1977	52.1	45.1	44.6
1978	59.1	45.4	44.9
1979	61.5	44.4	45.6
1980	66.7	44.6	46.2
1981	67.5	46.1	47.0
1982	68.3	46.2	46.9
1983	70.4	46.9	46.6
1984	71.7	47.8	46.6
1985	70.8	48.2	46.6
1986	73.0	49.6	47.7
1987	75.6	51.0	47.8
1988	79.0	52.1	52.4
1989	82.0	54.2	54.8
1990	83.0	55.1	57.3
1991	84.9	56.0	59.4
1992	88.4	55.7	62.3
1993	-	56.6	65.3

주 : 1) 사용된 임금은 정액+초과급여임.

2) 직종대분류의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을 제외한 사무관련직에 대한 생산관련직의 임금비중

3) 남자임금에 대한 여성의 임금비중

4) 대졸임금에 대한 고졸의 임금비중

자료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각 년호.

마) 노동시간 단축활동의 추진

1985년에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것을 요구하였다. 시간외 노동의 상한을 1일 2시간, 주 6시간, 월 24시간, 연 15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휴일노동을 2주 1회로 제한할 것, 시간외 임금할증을 최저 50%로 하고 누진제를 적용할 것, 그리고 조출, 조회, 새마을 청소, QC활동, 작업후

청소 등에 소요되는 무료서비스 노동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야간노동과 교대제 제한, 연차유급휴가 확대, 유급교육훈련 휴가제도의 실시도 근로시간 단축요구에 포함되었다.

다. 생계비논리에 의거한 노동조합 임금요구 결정(1986년 ~ 1995년)

1) 정부의 임금정책기조

1980년대 후반은 5공화국 정권이 무너지는 정치적 격변기이자, 노동조합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의 진출이 부각되었던 시기였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자 그간 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했던 노총도 보다 선명한 정책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노총의 『임금인상 활동지침』을 보면 파업의 방법, 임금교섭 방법, 단체협약 내용, 사용자 논리 비판에서 기업경영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조활동의 활성화 프로그램이 포함되고 있다. 한편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1987년 대투쟁 이후 급격한 노사관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물리적 탄압과 동시에 파업시 무노동 무임금, 배타적 인사경영권 주장 등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하였다.

1990년대 초반은 1980년대 후반에 형성된 대립적 노사관계가 고착되어 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정부와 사용자는 1980년대 후반의 무노동 무임금정책, 인사경영권 논쟁에 이어 총액임금제, 30분 일 더하기 운동, 소사장제, 토요일주휴무제의 경우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방침, 성과배분제도, 변형근로제도, 연봉제, 직능급 공세를 펼쳤던 시기이다. 이에 따라 노총의 임금정책에도 큰 변화가 발생하는데, 임금투쟁과 제도개선 요구투쟁의 결합이 그것이다. 1990년에 노총은 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요구만이 아니라 감세, 물가인상 반대, 주거안정, 반독점활동 등 노동자의 생활과 관계된 제도개선요구를 확대하고 있다.

1990년에는 노총과 별도의 노선과 조직체계를 갖는 전노협이 설립되었다. 정부는 전노협과 산하 사업장에 대하여 물리적 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노총에 대해서는 기존의 협조적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1993년과 1994년에는 노사정 사회적 합의가 성립된다. 사회적 합의 배경은 국가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노사정의 대등한 협조관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으로 써, 노동운동은 '주된 교섭상대를 자본에서 정부로 전환하여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의 지위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노총, 『1994년도 사업보고』, 206쪽).

2) 생계비모형의 변화

가) 생계비모형의 2차 개정(1986년)

1986년 10월에 노총은 두 번째로 생계비모형을 개정하였다. 개정의 배경은 1986년 최저임금제가 실시됨에 따라 최저생계비모형을 '생활임금에 더욱 근접하는 수준'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최저생계비에서는 소비지출 중 잡비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비소비지출에서 저축 등이 고려되지 않았었다. 또 노총 최저 이론생계비는 1976년에 작성된 이래 1981년에는 부분적으로 수정되어, 지난 10여년 간의 노동자의 생활양식이나 소비지출의 변화를 반영할 수 없었다. 1986년경에는 내구 소비재의 경우 냉장고, 칼라TV, 세탁기, 선풍기, 옷장, 이불장, 서랍장, 책상 등이 필수품이 되었으므로 노총 생계비 모형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

생계비모형의 2차 개정의 원칙은 노동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최저선을 설정하고, 변화된 생활 및 소비양식을 생계비에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생계비 비목에서 생활필수품이 된 내구 소비재를 포함시키고 기존의 과다계상된 소비재의 내구연수 설정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적십자회비를 삭제하였다. 또 저축을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하였는데, 이는 내집마련, 내구소비재 구입, 결혼자금 목적으로 한 저축으로 한정하였다.

생계비모형 2차 개정은 노동자의 소비지출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으나, 전체적으로는 1981년의 개정과 마찬가지로 부분적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1986년의 2차개정은 노동조합이 최저 이론생계비를 임금인상 요구결정의 유일한 근거로 제시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노총은 최저생계비에 의거한 임금인상 요구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생계비 보장은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불러 일으켜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며, 내수기반을 확대하고 국내저축 기반을 확충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또한 생계비에 따른 임금인상은 우리 나라 상품가격의 인상을 가져와, 저임금 노동력착취에 의거한 불평등한 국제교역관계를 개선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나) 생계비모형의 3차 개정(1990년)

1990년에는 생계비 모형에 대한 세 번째 개정이 있었다. 노총은 기존의 최저생계비 모형을 전면적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표준 생계비모형의 산출을 승실대 한국노사관계연구소에 의뢰하였다. 표준생계비의 산출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상의 상대적인 고임금 사업장의 임금요구 결정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3차 개정된 모형의 최저생계비는 1991년 12월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표준생계비는 실태조사 결과와 도시가계조사 및 외국의 사례⁹⁾를 감안하여 최저생계비의 1.20배로 산출되었다.

1990년 생계비모형에서는 기존모형의 5인 가구에서 4인 가구로 표준가구모형이 개정되었다. 이는 경제기획원의 1985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에 나타난 가구구성의 변화(가구당 평균 가구원수가 4.2인이며, 도시가구당 평균 가구원수 4.1인)에 의거한 것이었다. 또 1980년대 후반에 사교육비가 급격히 증대됨에 따라 교육비의 항목에 학원비 및 독서실 이용비 등 사교육비의 새로운 항목을 포함하였다. 1986년 개정에서 새로운 비목으로 포함된 저축모형도 수정되었는데, 단신과 2인가구 이상이 서로 상이한 동기에서 저축을 한다고 가정하였다. 즉 기존의 모형은 단신과 2인 이상 가구가 각기 정액으로 저축을 한다고 보았으나, 이번 생계비모형에서는 단신(18세 기준)은 현재 5평의 전셋집에서 살고 있지만 9년 후에 결혼을 대비하여 9평 전세로 옮기기 위한 저축을 한다고 가정하고, 2인 가구는 자녀의 장래 공사교육비를 위하여 저축한다고 가정한 것이었다.

9) 일본의 경우 표준생계비는 통상 최저 생계비의 1.25배로 산정되고 있다.

3) 노총의 임금결정기준의 변화

1986년부터 노총은 생산성에 기초한 임금요구를 배제하고 생계비논리에 입각한 임금요구를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생계비논리는 80년대 후반기를 통하여 단위노조에도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노총은 경총에 대해 공동조사로 생계비를 산정할 것을 제의한 바 있으나 거부당한 바 있다.

1986년 노총 임금인상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생계비 활용의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먼저 노총 생계비는 최저생활비 기준에 가까우므로 임금인상률의 하한선으로 활용해야 하며, 임금과 생계비의 격차가 클 경우 연차적, 단계적으로 생계비에 접근하거나, 기본급 이외에 각종 수당의 증액과 신설을 통하여 격차를 메워 나가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 노총 최저 생계비는 하루 8시간 노동을 전제로 하므로, 이보다 노동강도가 높거나 노동시간이 긴 경우에는 임금수준이 생계비를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1986년 생계비에 근거한 임금인상 요구지침의 특징은 기존과는 달리 임금요구시에 생계비만큼의 임금요구를 생계비 상승률만큼의 임금요구로 대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1976년 노총이 최저 이론생계비를 산정,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1985년까지 노총의 임금정책은 생계비상승률 만큼의 정률인상이었다. 노총은 물가-임금연동제를 채택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 대신하여 이를 상회하는 생계비상승률만큼의 임금인상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1986년 임금지침에서는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활동의 우선적 목표는 임금이 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때 생계비 부족액을 확보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생계비만큼의 정액인상을 요구하였다. 만약 생계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계비상승률 만큼 정률 임금인상을 하게 되면 실질임금은 유지될 수 있으나, 생계비충족률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1990년 3차 개정된 최저생계비를 근거로 한 1991년의 노총 임금요구율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조합원 실태조사에 의거하여 조합원 본인을 포함한 평균 부양가족수와

임금평균을 산출한다(1990년의 경우 3.96인 가구원수에 527,828원의 임금수준)

② 3.96인 가구의 최저생계비의 산출은 가구당 취업인수 1.43인과 임금소득 외에 기타소득을 감안하여 631,022원으로 산정한다.

③ 여기에 1991년도 소비자물가 억제선을 7%로 잡았을 때 6월까지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생계비를 산정한다. 생계비의 95%를 달성한다는 계획 하에 최종적 생계비의 액수는 620,093원이 된다.

④ 마지막으로 620,093원-527,828원(①의 조합원 임금평균)=92,265원으로 정률 17.5%의 임금인상 요구율이 도출된다.

이러한 노총의 임금인상요구율의 산정방법은 1996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간에 부분적으로 수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균 부양가족 수와 임금평균은 조합원 생계비 실태조사가 아니라, 『도시가구연보』에 나타난 평균 가구원수를 사용하였으며, 임금 평균은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연평균 월임금총액을 사용하고 있다. 둘째, 1991년 이후 노총은 매년 임금요구 수준 결정시 조정된 생계비(③)의 연차적 달성을 목표로 해왔으나, 1995년과 1996년의 경우에는 생계비의 100%를 요구하였다. 셋째, 1991년 개정된 생계비 모형에서는 3.96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임금요구안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는 통계청의 『도시가구연보』에 나타난 도시근로자가구의 전체 소득에서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점하는 비중(1996년의 경우 69.78%)으로 4인 가구 생계비를 조정하였다.

1991년 최저생계비 모형이 기존의 임금요구 결정과 대비되는 또하나의 특징은 최저생계비 확보를 목표로 하여 임금요구수준을 결정하되, 임금수준이 최저 생계비를 상회하는 곳에 대해서는 표준 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인상 요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사정 사회적 합의로 인하여 생계비와 무관하게 임금요구수준을 결정했던 1993년, 1994년에도 노총 임금인상 활동지침에서는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사업장의 경우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요구 결정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기업규모별, 산업별 임금격차가 확대된 현실을 반영하여 노총의 최저 생계비에 의거한 단일한 임금인상 준거의 제시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8> 노총 임금요구율과 실제임금상승률

(단위 : %)

연 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노총요구율	26.8	20.5	17.5	15.0	12.5	10.8	12.4
실제상승률	21.1	18.8	17.5	15.2	12.2	12.7	11.7 ¹⁾
민주노총계열	-	23.3	22.2	25.4	19.7	15.6	14.8

주 : 1995년 실제상승률은 1995년 3/4분기 상승률임.

1990년대 초반에는 노사정 사회적 합의가 성립됨에 따라 노총의 임금요구율도 생계비에 근거한 임금요구율보다 낮아진다. 노총 생계비에 의거한 임금요구율은 1993년 12.5%, 1994년 10.8%였으나, 노경총의 임금합의에 따라 1993년 4.7-8.9%, 1994년 5.0-8.7%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노총의 임금요구율과 실제상승률의 추이를 보여주는 <표 1-8>를 보면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1993년과 1994년의 경우에도 실제 임금상승률은 각기 12.2%, 12.7%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4.7-8.9% 수준의 노경총 임금합의를 뛰어넘는 수준이며, 노총의 생계비에 근거한 임금요구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귀결되었다.

노총은 경총과의 임금합의에 참여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물가억제, 고용안정, 외국인노동자 연수제도의 개선, 경영참가, 노동법 개정, 산업평화 달성, 형평과세, 주거안정, 복지증진, 직업능력개발, 구속자 석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완화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요구는 이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사용자 측의 약속이 있었을 뿐, 고용보험제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구체화된 것이 없다. 유일한 성과였던 고용보험제는 1995년 7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1998년 1월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을 확대하며, 그 운영에 노사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표 1-9> 연도별 노총조합원수의 추이

(단위 : 천명)

연도	노동부(A)	노총(B)	(A)-(B)
1987	1,267	1,175	91
1988	1,707	1,466	241
1989	1,932	1,666	266
1990	1,887	1,565	322
1991	1,803	1,448	355
1992	1,735	1,367	368
1993	1,667	1,227	440
1994	1,659	1,176	483

주 : 1) (A)는 노동부집계에 의한 조합원수.

2) (B)는 노총 조직현황에 의한 조합원수

자료 : 노동연구원,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1995

한국노총, 사업보고, 각년호

결국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노사정은 모두 얻은 것이 없었다. 노총의 경우에는 오히려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았던 합의였다. 경총과 정부는 '국제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임금수준의 억제'에 노총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으나, 실제임금인상률은 합의수준을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금억제에 실패하였다. 사회적 합의로 인한 노총의 손실은 다음의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생계비에 근거한 임금요구율을 하회하는 수준에서 임금인상률을 합의함으로써 스스로 생계비 논리의 정당성을 훼손하였다. 둘째, 임금수준 양보를 상쇄할 수 있을 만한 뚜렷한 제도개선의 성과를 확보하지 못했다. 셋째, 사회적 합의가 상층부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조합원의 반감을 사서 조직률의 감소를 초래했다. 1993년과 1994년의 <표 1-9>에 나타난 노총 조직 조합원수의 경감은 대부분 이유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4) 노총의 임금정책

가) 최저 생계비 확보

1986년 최저 생계비 모형이 개정된 이래 노총의 임금인상 요구율의 결정은 최저 생계비를 유일한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1988년의 노총 임금인상 요구율을 보면,

$$\begin{aligned} & \text{노총 임금인상 요구율} \\ & = \frac{\text{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 \text{조합원 임금평균}}{\text{조합원 임금평균}} \times 100 \end{aligned}$$

으로 산정되었다. 이 시기에 노총은 기준노동시간 8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이 부양가족 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를 충족하도록 임금을 인상할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임금수준이 지나치게 낮아서 최저생계비 부족분을 일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산업이나 업종에서는 연차적으로 최저생계비를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동시에 1986년 12월에 제정된 최저임금법의 전면개정을 요구하였다. 최저임금법의 골자는 1988년부터 상시고 10인 이상 제조업의 섬유, 고무, 피혁 등 8개 저임금 업종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최저 임금액수를 업종별로 차별화하여 평균임금의 40% 정도로 차등지급하는 것이었다. 노총은 최저임금제가 저임금지대를 일소하는 본래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전국의 전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업종별, 지역별, 산업별 통일교섭체제를 구축하여 전 산업 단일 최저임금결정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나) 임금구조 개선요구

1980년대 후반에도 노총은 기존의 기본급 비중 확대정책을 고수하는 가운데, 능률급, 도급 폐지, 각종 수당의 기본급화를 요구하고, 기업주의 자의적 차

등임금 인상을 폐지하도록 요구하였다. 또 일시금을 확충하고 지급률 및 지급 시기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기업의 경영합리화가 진척됨에 따라 임금격차 해소 및 임금체계 개선은 노동조합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노총은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에 대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시할 것, 재벌-비재벌별, 고임금-저임금기업별 임금격차를 축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침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1995년 이후에도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축소는 노동조합의 임금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고, 산업의 독과점화에 따른 문제이므로 산업정책의 차원으로 넘기고 있다. 이는 기업별 노조체제하에서 상급단체의 지도력이 약하기 때문에 노조의 임금정책 만으로는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조건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확대는 1990년 이후 정부나 사용자에 의해서 대기업의 임금억제를 정당화시키는 요인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간의 이질성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운동의 연대를 파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임금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임금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법정수당의 모든 수당의 통상임금화, 고정적 일시금 및 고정적 수당의 기본급화 등이 제시되었으며, 차별임금 반대를 위하여 단일호봉제의 실시, 직능급 도입의 전제로서 능력평가의 공정성 및 경영참가 확대, 시급제 철폐 및 완전 월급제의 실시, 퇴직금 누진 제 등이 제시되었다.

다) 복지제도 확충, 작업환경 개선

1980년대 후반 이후 노총 임금정책의 주요한 특징은 직접적 임금인상 뿐만 아니라 복지제도의 확충 등 간접임금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에 노총은 사내복지기금제도의 실시, 우리스주제도 실시 확충, 교육비 지원 및 확충, 작업환경 개선, 복리후생제도 신설 및 확충, 중식제공, 작업복지급 휴양시설 설치, 교통편의 제공, 경조금 지급 확충, 복리후생비 지급확충, 조세 및 사회보장 분담금의 납부 확인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노총의 간

접임금정책 역시 사회복지 차원의 요구보다는 기업을 상대로 한 요구중심이었으며, 이는 우리 나라의 노동자 복지제도가 기업복지 중심이라는 특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라) 노동시간 단축 활동 및 고용보장 정책

1980년대 후반에는 법정노동시간을 1일 8시간, 주 48시간에서 주 44시간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동시에 시간외 노동, 야간노동의 제한, 2교대제의 철폐 및 3교대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되,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임금수준의 저하 및 노동강도 강화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 1990년대에도 교대제 개선, 연간 2000시간 목표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 주휴 확보, 시간외 노동규제,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 확대, 시차제 근무 실현 및 출퇴근 소요시간의 노동시간 포함 요구, 주 5일 근무제 실시, 기타 부분 노동 규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해고규제, 불황업종에 대한 이직자 대책임시조치법 제정 요구, 고용안정기금설치, 하청반대, 라인축소 및 감원대응, 노조활동 이유로 한 휴폐업 금지, 중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정년연장, 장애인 고용확충, 임시직의 정규직화, 사전합의제도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3. 노총 임금정책의 특징과 정책방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총 최저 이론생계비는 1976년부터 조사되었으나, 임금요구 결정의 근거로 사용된 것은 1986년 이후였다. 그 전에는 노총 최저 이론생계비는 생산성 상승률과 함께 임금인상 요구결정의 부분적 근거로 사용되었으며, 주로 저임금 일소 및 임금의 실질가치 보장을 위한 비교 근거로 사용되었다. 이 때의 임금요구 결정은 생계비요인, 물가요인, 생산성 요인 등이 혼용된 것이었다. 그러나 1986년 이후에는 생산성 기준에 의거한 임금요구를 배제하고, 최저 이론생계비 산출에 의거한 임금요구로 전환하였으며, 1990년대에 이르면 생계비가 노동조합의 주된 임금요구 결정의 근거로 자리잡게 된다.

노총의 임금정책은 최저 생계비의 보장, 각종 임금격차의 축소, 임금구성 및 임금체계 개선 등 직접임금 정책과 노동시간 단축과 복지제도 확충 등 직접적인 임금을 보완할 수 있는 간접임금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저 생계비 보장에 대한 요구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의 실질가치 보장요구로부터 저임금지대 일소를 위한 최저임금제도의 실시 및 개선, 생계비에 근거한 임금요구 산출로 이어져 왔다. 임금격차 해소에 관한 요구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직종별, 학력별 임금격차의 축소정책으로부터 80년대 후반 이후에는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축소정책이 중점적으로 부각되어 왔다. 임금구성 있어서는 월 임금총액의 구성 중 기본급 혹은 정액임금 비중의 확대를 도모했으며, 임금체계에 있어서는 도급제 폐지, 일당 일급제의 폐지로부터 단일호봉제 실시, 직능급 대응, 월급제 실시요구로 이어져 왔다.

간접임금정책은 1980년대 초반의 노동시간 단축투쟁으로부터 기업복지제도의 강화, 고용안정과 관련된 정책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와 내용이 더욱 풍부해지고 있다.

이상의 노총 임금정책의 변천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총은 지난 20여 년 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요구수준을 결정해 왔으나, 노동자의 소비지출 및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생계비의 개념 규정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노총의 임금요구 결정은 전체 노동자의 평균적 생계비 상승에 의거하여 거시적인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의 임금인상안의 적용은 단위사업장 임금교섭의 주요 참고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임금요구안 이외에 노총 임금정책의 대부분의 내용도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보다는 단위사업장의 임금정책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노총의 임금요구 결정은 생계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성장과 같은 거시적 생산성 요인도 고려해 왔다는 특징을 갖는다.

다음에서는 이 세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산별 노조로의 조직발전을 위한 노총 임금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가. 최저 생계비 개념의 변화

1990년 생계비 3차 모형 개정을 전후하여 노총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개념을 탈피하고자 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3차 개정에서 노총은 최저생계비만이 아니라 표준생계비를 별도로 산정하였고, 다음해 임금교섭에서 최저생계비를 하회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저 생계비 확보를 목표로 임금인상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표준생계비를 책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임금인상 요구수준을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혹은 산업별 임금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일률적인 최저생계비에 의거한 임금인상 요구를 적용하기가 곤란해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즉 최저 생계비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업장에서는 최저생계비에 의거한 노총의 임금인상 요구안이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최저 생계비에 크게 미달하는 저임금 사업장에서도 노총의 임금요구안을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표준생계비 혹은 최저생계비에 의거한 노총의 임금인상 요구안은 각 기업간에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총 생계비가 최저 생계비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995년의 생계비모형 개정에서는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도시근로자 생계비’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가구의 생활양식의 내용과 욕구수준이 변화함에 따라 ‘단순한 물량적 최저 소비를 넘어서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제2장 참조)의 새로운 생계비의 개념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1995년 노총 생계비가 현재 우리 나라의 ‘표준적’ 생활을 표현하는 표준생계비의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1995년의 노총 생계비는 ‘중전의 최저생계비에 주거, 교육, 취미생활 등에서 약간의 지출을 더해준 수준(1996, 윤진호)’에 불과하다. 즉 노총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개념은 벗어났으나 아직 표준생계비에 이르지 못한 과도적 단계에 있는 생계비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노총 생계비는 실태조사에 의거하여 노동자가구의 생활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 이론생계비이다. 생계비를 충당하는 재원은 임금소득이므로, 임금소득의 차이에 따라 생계비도 차이가 있다. <표 1-10>은 1995년 10월

현재 노총 산하 연맹별 임금수준의 차이와 주관적 생계비의 차이를 보여준다.

<표 1-10> 연맹별 가구주의 임금수준 및 주관적 생계비

(단위 : 개, 10,000원)

연맹	기본급+ 각종수당	임금총액	생활비	주관적 최저생활비	주관적 보통생활비	주관적 여유생활비	표본수
철 도	109.62	174.4	105.7	119.9	155.0	199.0	64
섬 유	73.29	136.3	78.4	82.0	106.1	143.9	223
광 산	83.73	146.9	74.8	95.8	120.5	161.1	42
전 력	89.52	181.7	109.4	116.7	150.0	197.8	61
외 기	102.42	180.6	80.2	79.7	110.7	153.3	40
통 신	88.20	142.1	83.5	93.0	125.5	168.5	13
항 운	75.57	151.7	90.3	97.4	121.6	159.3	20
선 원	99.88	159.3	97.1	95.0	128.5	169.2	109
금 용	116.37	225.5	114.0	95.7	133.2	190.2	218
담 배	96.70	185.4	97.4	98.7	134.3	177.7	40
화 학	79.30	156.6	96.1	95.8	123.7	162.9	339
금 속	67.23	136.8	80.4	81.7	105.2	138.9	457
출 판	73.36	152.0	85.4	84.1	117.5	151.3	14
자동차	90.16	156.2	99.5	106.5	132.0	163.9	89
연 합	76.66	154.2	96.6	99.6	130.3	173.2	302
관 광	78.67	153.6	77.1	89.5	106.9	143.9	42
체 신	121.15	215.7	147.1	141.2	180.1	235.3	64
택 시	47.62	100.1	96.5	95.3	122.7	171.5	45
고 무	61.44	137.8	78.1	82.9	106.2	136.6	37
계	108.29	159.04	93.9	94.6	123.2	164.4	-

주 : 1) 연맹별 표본의 수의 차이에 따라 각 연맹의 임금액수는 실제 임금수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임금총액은 정액급여+초과근로수당으로 구성됨.

자료 : 노총, 『1995년 도시근로자 생계비조사』.

먼저 조합원의 월평균생활비와 임금을 비교해 보자. 조합원의 평균생활비는 약 93만 9천원¹⁰⁾이며 임금(정액급여+초과근로수당)은 약 108만 3천원으로, 임

10) 여기서의 생활비 93만 9천원은 상식적 의미에서의 생활비이므로, 조세공과금이나

금의 약 86.7%가 생활비로 지출되고 있다. 또 외기노련과 금융노련 등 일부 산별연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별연맹에서 가구주의 임금소득으로 생활비를 충족하지 못함을 볼 수 있다. <표 1-10>을 보면 연맹별 임금수준의 차이에 따라 현재의 생활비 및 주관적 생계비 수준도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생활비 및 주관적 최저 생계비수준도 낮고, 임금수준이 높으면 생활비 및 주관적 최저 생계비의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여전히 가구주의 임금이 생계비의 유일한 원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¹¹⁾. <표 1-10>의 주관적 생계비는 각기 최저한의 생활비, 보통정도의 생활, 여유있는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비용을 질문한 것이다. 현재 월평균 생활비는 약 93만 9천원인데 주관적 최저생활비는 약 94만 6천원으로 실제 생활비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생활형편이 우리 나라 국민들의 평균생활수준에 비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평균수준보다 떨어진다’가 전체의 70.8%로 나타나 노동자들의 상대적인 빈곤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11 참조).

이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생산직의 약 78.4%, 사무직의 51.3%, 전문기술직 및 관리직의 68.6%, 판매서비스직의 63.5%, 운수직의 76.3%, 단순노무직 및 기타의 73.1%가 생활수준이 ‘평균수준보다 떨어진다’고 응답하고 있어, 지난 7~8년간의 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산직의 상대적 빈곤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비조사에서 나타난 조합원의 월평균임금(정액급여+상여금 월할)은 108만 3천원으로 1995년 연평균 전 산업의 월평균임금 111만 9천원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를 주관적 생계비와 비교해 보자. 1995년 노총조합원의 월평균임금은 주관적 최저생활비 94만 6천원과 보통정도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주관적 생활비 123만 3천원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나, 주관적 최저생활비에

저축 등이 배제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11) 임금수준은 각 산별 연맹 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는 연맹별 임금격차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연맹별 임금격차는 각 산업별로 평균연령, 성별, 가구구성 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으나, <표 1-10>의 자료출처인 노총 생계비 조사의 경우 4인가구 중심의 조사이기 때문에, 평균연령, 성, 가구구성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더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노총의 1996년 임금요구율은 12.2%, 임금획득목표는 125만 5천원이다. 이는 생계비조사에서 나타난 주관적 생계비 약 123만 2천원을 약간 상회하는 액수로서, 1996년 노총의 임금요구수준이 1995년 10월 현재 조합원이 보통정도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과 거의 일치하는 금액임을 보여준다. 1996년에 물가상승에 따라 생계비도 상승할 것을 고려해 본다면, 노총의 임금요구수준 125만 5천원은 1996년 기준으로는 주관적 최저생활비에 근접하는 수준일 것이다. 이는 노총생계비가 '최저생계비에 약간의 지출을 더해준 수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996년 노총의 가구주가 충족해야 할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개념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주관적 표준생계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표 1-11> 우리 나라 평균적 생활수준에 비교한 자신의 생활형편

(단위 : %, 개)

	생산직	사무직	전문관리	판매서 비스	운수직	단순 및 기타	계
많이 떨어진다	33.05	13.67	22.39	29.33	42.80	31.91	28.77
조금 떨어진다	45.35	37.65	46.27	34.13	33.47	41.13	42.07
평균 수준이다	19.36	42.69	29.00	31.73	19.92	24.47	25.99
조금 높다.	1.55	5.76	1.92	4.81	2.12	2.48	2.63
상당히 높다	0.69	0.24	0.43	0.00	1.69	0.00	0.54
계	1162	417	469	208	236	282	2774

자료 : 노총, 1995년 도시근로자 생계비조사

나. 단위사업장 중심의 임금정책

노총의 임금요구수준은 노동자의 생계비 상승에 의거한 거시적인 임금요구수준임에 비하여 노총의 임금정책은 단위사업장 임금정책의 참고자료로 사용된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는 기업별 교섭체제 하에서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중앙단위의 교섭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다. 노총 임금정책의 대다수는 단위 사업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임금구성 중에서 기본급, 혹은 정액급여의 비중을 확대한다거나, 성별, 직

종별, 연령별 임금격차를 축소한다거나 하는 정책은 중앙단위에서 결정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개별기업 차원의 교섭사항이다.

이러한 특성은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축소방안에 대한 노총의 입장에서 잘 드러난다. 노총은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확대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이는 산업의 독과점화에 따른 문제이므로 산업정책으로 해결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노총의 임금정책 차원에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 중앙단위 사회적 합의를 했던 1993년과 1994년에 노총은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축소를 위하여 기업규모에 따라 범위인상률을 제시한 적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범위 인상률의 적용도 중앙단위 교섭구조가 아닌 기업별 노조체제 하에서는 개별기업 임금교섭시의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노총의 임금정책은 1987년 이후에는 직접임금과 관계된 정책만이 아니라 간접임금 정책요구도 확대되었다. 이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임금인하가 없는 노동시간의 단축과 각종 복지제도의 확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간접임금정책 역시도 개별기업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하여 수행할 지침인 경우가 많지만, 중앙단위에서의 정책으로서의 고용보험제 등 각종 제도요구, 근로조건과 관련한 법령의 개정 노력 등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총 차원의 제도개선 요구의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 요구가 정부, 혹은 사용자 단체와의 교섭 혹은 협상의 산물이라기보다는 ‘협약’의 결과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는 우리 나라의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기업별 체제라는 근본적인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다.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하에서 노동조합 상급단체의 역할은 단위노조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정책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산하조직에 대해서는 임금정책의 참고지침만을 제공할 수 있을 뿐이며, 정부, 사용자 단체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요구에 대한 ‘협약’ 이상의 능력을 갖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는 노총이 1993년, 1994년의 중앙단위 사회적 합의에서 가장 큰 피해자로 남게 된 원인을 설명해 준다. 서구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사회적 합의(코포라티즘)는 물가와 실업이 동반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 ‘노동계급의 자발적인 임금억제를 대가로 국가와 자본이 경제정책의 입안 및 결정 과정에 노동조직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소득재분배의 강화, 고용안정,

복지정책의 확충, 기타 노동시장에서의 노동계급의 제반 권익의 강화 등과 같은 반대급부의 제공을 약속하는 타협의 기제'(김수진, 1995)이다. 이를 위한 기초적 전제는 물론 노동조합의 강력한 조직력이다. 노동조합은 강력한 조직력을 전제로 하여 정부 및 사용자단체를 상대로 임금억제의 반대급부를 보장받기 위한 교섭을 진행한다. 1993년 1994년에 노총의 실패는 강력한 조직력과 교섭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적 합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반대급부를 보장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와 사용자 측의 제시안에 가까운 임금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결국 현재와 같은 기업별 노조체제 하에서 노총의 임금 인상률의 제시는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임금억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조합 상급단체에서의 임금인상률의 제시는 국민경제 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의 거시적 지표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시적 지표보다 생계비의 상승폭이 높은 경우 실제 생계비의 상승에 하회하는 수준으로 임금요구액을 인하(discount)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교섭력이 강하고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업은 노총의 임금인상준거를 무시하게 되고, 반대로 교섭력이 약하고 임금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은 노총의 임금인상 준거를 지킬 능력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는 현재 노동조합 운동의 역량이 중앙단위의 정책능력과 단위노조의 교섭능력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노총의 임금정책은 산별 연맹으로 단위노조의 힘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노총의 임금요구 결정 및 각종 임금정책의 방향은 노총 중앙의 정책능력과 단위노조의 교섭력을 매개할 수 있도록 산별 차원으로 단위노조의 교섭력을 집중시키는 데 1차적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과도적으로 노총의 임금정책은 중앙단위, 산별 단위와 개별 사업장에 대한 지침으로 구분해서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산별 단위의 교섭력이 확보되어 산업별 생계비 조사에 의거한 산업별 임금인상률의 작성과 교섭이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 중앙단위에서는 저임금지대의 일소를 위한 정책요구와 노동소득분배율의 제고 및 국민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임금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생산성을 고려한 임금요구 결정

노총의 임금정책의 변천에서 나타나는 또하나의 특징은 임금요구수준의 결정이 최저생계비의 확보에 근거했지만, 부차적 요인으로 생산성 요인도 고려해 왔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주도의 권위적 노동통제정책 하에서 생산성논리가 정부의 주된 임금정책이었다는 데 기인한다. 그 이후에도 생산성 논리는 여전히 사용자와 정부의 임금억제 논리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1987년 이후에는 노동자들의 임금수준도 산업, 기업규모에 따라 최저 생계비를 넘어서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금결정에 있어 생산성 논리가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금결정에 있어 생계비와 생산성은 반드시 상호 배타적인 요인은 아니다. 임금수준의 결정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유일한’ 수입원¹²⁾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며, 기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생산성 하에서 이윤의 규모를 결정짓는 요인이다. 따라서 생산성 상승률이 생계비 상승률보다 높다면 임금수준의 결정요인에 관하여 노사간의 입장이 생계비 논리와 생산성 논리로 대립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노동조합이 생계비 논리를 고수하는 것은 아직까지 생계비 상승률이 생산성 상승률보다 높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기업과 정부는 생산성 논리를 주장한다. 만약 생산성 상승률이 생계비 상승률보다 높다면 정부와 기업은 생산성 논리에 의한 임금결정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조합도 생계비 논리에 의한 임금결정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황덕순, 1995). 최근 고임금과 고생산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노사관계의 모색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로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생계비 수준을 능가하는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노동조합에서도 생산성 논리에 의거한 임금결정방식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생계비는 ‘노동자의 생명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최저 생존비를 넘어서는 이상, 특정한 수준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는

12) 노동자의 수입은 근로소득 이외에도 재산소득, 이전 소득 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은 노동력 판매에 대한 대가이자 노동력의 재생산비용이므로, 임금 소득만으로 생계비의 충당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유일한’ 수입원이다.

데 요구되는 비용이다. 생계비가 현재의 사회적 생활수준을 어떤 수준으로 영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가에 따라 최저생계비, 표준생계비, 유락생계비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만약 현재의 임금수준이 표준생계비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면, 이러한 부문에 있어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임금결정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전제로서 노동조합의 경영참여가 요구되는데, 노사 공동의 생산계획의 작성, 작업장에서의 노동조합의 통제권, 그 성과의 공정한 평가와 배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산성 논리에 따른 임금결정은 기업의 생산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공익연구단의 국민경제노동생산성에 따른 임금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익연구단의 생산성임금논리는 국민경제 차원의 노동생산성에 의거한 것이므로 개별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의거한 임금결정으로는 합당하지 않다. 국민경제 노동생산성 임금논리의 주된 목표는 국민경제노동생산성보다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의 임금억제에 있으므로, 생산성이 낮은 저임금기업의 임금인상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국민경제 노동생산성 임금논리에 대해서는 4장을 참조할 것). 공익연구단은 국민경제노동생산성보다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도 국민경제노동생산성에 따른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사후에 성과배분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고생산성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따른 성과배분은 차기 년도의 임금인상률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1995년에 월평균임금이 100만원인 기업이 국민경제 노동생산성 임금논리를 수용하여 임금교섭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또 이 기업의 노동생산성 상승률은 1995년 15%였고 1996년에도 동일한 생산성향상이 기대된다고 가정해 보자. 1995년에 국민경제노동생산성에 따른 '적정'임금인상률은 7.1%였으므로 이 기업의 임금인상액은 107.1만원(연간 1285.2만원)이 된다. 그러나 이 기업의 노동생산성 상승률은 15%이므로 공익연구단의 안 7.1%를 제외한 나머지 7.9%는 연말에 변동적 상여금으로 94.8만원($7.9\% \times 12$ 개월)을 성과배분 받았다. 이때 기업의 1995년도 '실제' 임금인상률은 15%이지만, 성과배분에 의한 변동적 상여금은 임금인상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익연구단의 제시대로 임금인상률은 7.1%이다. 1996년에도 이 기업은 공익연구단의 임금인상률을 받아들여

6.6%의 임금인상을 하기로 합의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의 임금인상 기준액은 전년도의 107.1만원이므로(성과배분은 임금인상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996년의 인상된 임금수준은 114.2만원이 된다.

만약 이 기업이 공익연구단의 생산성임금논리를 수용하지 않고 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에 따라 임금을 결정했다면 1995년에 15% 115만원, 1996년 15%에 상응하는 132.3만원의 임금인상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이 기업은 1995년에는 당해년도 노동생산성 상승률 15% 만큼의 '실제' 임금인상을 했지만, 15%의 상승률이 다음해의 임금인상으로 연결되지 않으므로써,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배분을 감수한 것이다. 이는 국민경제 노동생산성 임금논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되고, 그 만큼 기업의 잉여가 늘어나게 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생산성임금논리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노동소득분배율이 고정된다는 데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개별기업의 노동생산성 상승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상향조정치를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국민경제 노동생산성 임금논리는 각 산업별, 기업별 노동생산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노동생산성의 지표로 GDP성장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국민경제 노동생산성 임금논리가 전반적인 임금수준의 억제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표 1-10>에서 보았듯이 각 산업별로 임금수준 및 주관적 생계비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산업별 임금수준의 차이에는 산업별 노동생산성의 차이가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임금인상률을 전 산업에 동일한 임금인상률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공익연구단의 생산성임금논리는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데에서 효과적일 수 없다. 현재의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하에서는 물리적 강제를 동원하지 않고서는 거의 동일한 인상률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력이 없을 뿐더러, 그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범위인상률의 적용만으로는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를 축소할 수 없다. 따라서 개별 기업단위에서 노동조합이 생산성임금논리를 고려해야 한다면 기업단위의 생산성상승률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산별노조를 지향하는 노조임금정책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총의 임금요구결정은 기본적으로 생계비에 의거하여 결정되어 왔다. 1996년에는 노동자의 생활양식 및 소비구조의 변화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개념을 벗어나 '중전의 최저생계비에 주거, 교육, 취미생활 등에서 약간의 지출을 더해준 수준'으로서 정의되고 있으나, 아직 표준생계비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생계비의 개념이 '최저' 수준의 생계비를 벗어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생계비 개념에 의거한 노총의 임금요구 결정도 변화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현재 노총 임금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이러한 변화에 조응하면서 어떠한 발전방향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노총생계비에 의거한 임금인상률의 결정은 각 산업, 혹은 단위노조의 임금인상의 준거이자, 동시에 노동조합 측의 임금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해 왔다. 노총은 '최저 생계비'와 임금수준의 비교에 의거하여 단일한 임금요구안을 작성함으로써, 각 산업이나 단위노조의 임금인상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준거를 마련해 왔다. 그러나 각 산업이나 단위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율의 결정이 노총의 임금요구안과 동일하게 결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각 산별 연맹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총 생계비를 수정하여 독자적인 임금인상률을 결정해 왔으며, 단위노조 역시 노총 요구안과 산별 연맹의 요구안을 수정하여 독자적인 임금인상요구율을 결정해 왔다.

<표 1-10>를 보면 19개 연맹 중 2개의 산별 연맹을 제외하고는 모두 임금수준이 1996년 노총 4인 생계비에 미달하는 액수이다. 노총의 임금요구안은 각 산별 연맹의 임금수준 및 특수한 조건 때문에 그대로 산하조직에서 수렴되기 어렵다. 임금수준이 노총 생계비보다 지나치게 임금수준이 낮은 연맹은 생계비를 연맹의 조건에 맞추어 수정하고, 임금수준이 노총 생계비를 상회하는 연맹의 경우에는 생계비 이외에 다른 요인에 의거한 임금요구율을 결정하고 있다.

1995년 금속노련의 경우를 예로 들면, 노총 임금요구안에서 금속산업의 임금총액 평균을 뺀 차액으로 44.4%의 필요임금인상률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1995년 현재 금속연맹 산하조직의 임금수준에 비해 크게 높기 때문에 이를 연

차적으로 관철한다는 계획 하에 1995년에는 필요임금인상률의 약 80%에 달하는 14.1%를 요구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섬유노련은 남자가 약 75%인 화섬분야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여성 조합원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생계비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섬유연맹의 각 업종간에 노동자 구성과 임금격차가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로 별도의 임금 요구안을 작성하고 있다. 화섬을 제외하면 섬유노련 조합원의 임금수준은 노총의 1인 생계비에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고려하여 섬유노련은 1996년에 여성조합원의 임금인상 목표를 노총의 1인 생계비를 확보하는데 두고, 섬유조합원의 생활실태에 맞추어 노총의 1인 생계비를 조정하였다. 그리고 섬유노련이 조정한 1인 생계비와 산하 각 업종의 임금수준과의 차액에 따라 업종별 임금인상요구율을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1996년에 면방 13.2%, 생사 13.3%, 모방 13.4%, 의류 13.6%, 직물, 13.6%, 염색 12.9%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의 두 업종에 비하여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노련은 임금인상 요구율을 노총 생계비에 의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임금인상 요구율을 산정하고 있다. 1996년을 예로 들어보면 금융노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국민경제성장률 예측치¹³⁾를 사용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2.3%의 임금인상 요구율을 제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노총의 임금인상요구율은 산하조직에 대하여 임금인상요구율의 ‘하한’으로서의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가져 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노동조합의 중앙 상급단체가 다음 같은 조건하에서 ‘유일한’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노총의 생계비에 의거한 단일요구안은 생계비를 상회하는 임금수준의 산업 혹은 단위노조의 임금요구안으로 적당하지 않다. 또한 저임금 산업, 혹은 저임금중소기업의 임금요구안으로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들 저임금지대의 경우에는 기업의 지불능력의 격차로 인하여 노총 요구안 만큼의 임금인상을 관철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노총 임금인상요구율은 12.5%였고 전 산업 실제 임금인상률이 11.7%였던 1995년의 경우, 섬유노련의 실제 임금인상률은 9.2%에 불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총의 임금요구안은 동종 산업 내에서 갈수록 확대되는 기업규모별 임

13) KDI, KIET 등 10개 전문연구기관의 1996년 경제전망치의 평균을 사용하고 있음.

금격차를 비롯한 각종 비합리적 임금격차를 축소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노총의 임금인상요구의 근거가 되는 생계비 산정을 노총단위 뿐만이 아니라 산업별로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즉 산별 연맹이 독자적인 생계비모형의 개발에 의거하여 각 산업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 임금인상요구안을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별 생계비는 각 산업의 노동자 구성과 임금수준의 차이, 그에 따른 소비지출의 변화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산업별 생계비는 각 산업의 특수성에 따라 최저생계비든 표준생계비든 다양한 생계비형태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별 생계비 산정을 통한 산업별 임금인상요구안의 작성은 산별 임금교섭의 강화, 동종 산업내 각종 비합리적 임금격차의 축소, 동종 산업내 저임금지대의 일소 등의 과제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별 생계비의 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하나는 노동력의 재생산비인 생계비가 산업별로 다른가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산업별로 생계비를 산정했을 때의 시간과 인적 자원의 소모가 뒤따른다는 우려이다.

전자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하자면, 생계비는 산업별로 다르다. 생계비가 기아선상의 최저 생존비가 아닌 이상, 노동력의 재생산비용은 숙련정도, 연령, 직종 등 노동자의 인적 속성의 차이에 따라 다르며, 가구원수, 생활정도, 사회문화적 지위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또한 산업별로 노동자 구성의 차이, 노동생산성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별로 노동력 재생산비용도 다를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의 연대임금 원칙의 의미는 이러한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력 재생산비용의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임금수준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노동에 대한 각종 비합리적 차별을 일소하는 데 있다. 물론 현재 산업간의 임금격차는 노동력 구성의 차이에 따른 합리적 임금격차 뿐만이 아니라, 성, 직종 및 학력차별 등 각종 비합리적 임금격차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산업별 생계비 산정에 의거한 산업별 임금요구안의 작성과 관철을 통하여 이러한 비합리적 임금격차, 특히 독과점화에 따른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노동자의 연대를 파괴하는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문제를 정부의 산업정책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

합 임금정책의 범위 안으로 끌어들여 산업별 공동교섭의 구조하에서 축소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산업별로 생계비를 산정했을 때의 시간과 인적 자원의 소모는 전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당연히 감수해야 할 몫이다. 1980년 5공화국의 출범과 동시에 산업별 생계비 산정을 노총중심으로 통폐합했던 과정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노총으로 생계비 산정을 통폐합한 이유는 명목상으로는 ‘최저생계비조사에서 품목 설정 및 액수차이를 통일함으로써 단일한 생계비를 발표하여 교섭력의 증대를 도모하고, 생계비조사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낭비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단위 노조의 임금교섭에 대한 산별노련의 지도력 약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사에 유래없이 기업별 노조체제에서 산별 노조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이때, 산업별 생계비 산정에 요구되는 시간과 인적자원의 확보는 앞으로 산별 연맹의 전문인력의 강화 및 산하조직과의 연대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장

도시근로자 생계비

윤진호*·문현경**

1. 머리말

노동조합 전국조직의 가장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는 매년 단위노조를 비롯한 각급 노조에서 임금교섭시 사용할 합리적인 임금인상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하는 일이다.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임금이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은 임금결정요인으로서 근로자 본인 및 그 가족의 생계비를 중시해왔다. 따라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도 그 동안 임금인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합리적인 생계비모형을 산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국노총은 1976년 한국생산성본부에 용역을 주어 이론최저생계비모형을 작성케 하였고, 1981년과 1986년에 그 모형을 부분적으로 개정한 바 있다. 다시 1990년에는 그 동안의 근로자 소비생활의 내용이나 질적구성이 많이 달라진 점을 감안하여 송실대 노사관계연구소에 신최저생계비모형의 개발을 의뢰, 이를 발표한 바 있다. 그 후 한국노총은 이 모형을 기초로 하여 매년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를 작성, 공표해왔으나, 기본모형을 변경하지는 않았다.

*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인하대 산업경제연구소 책임연구자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이제 1990년 모형이 개발된 이래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동안 근로자들의 수입, 소비구조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감안하여 새로운 도시근로자 생계비 모형을 개발할 시점에 왔다고 판단된다. 1990년 모형에서도 밝혔듯이 이러한 모형개정작업은 5년을 주기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6대도시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그 동안 변화된 근로자 생활 및 소비생활구조를 반영한 새로운 도시근로자 생계비 모형을 작성하였다.

한국노총은 지금까지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라는 이름으로 주로 근로자 가족의 물량적 소비액을 기준으로 한 최저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생계비를 발표해왔다. 그러나 이제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맞아 근로자 가족의 생활양식의 내용이 크게 바뀌고 있으며 욕구수준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즉 단순한 물량적 최저소비를 넘어서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운동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 주거, 환경, 노동내용, 가족건강, 여가생활, 안전 등 근로자 가족의 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그 질적 내용을 향상시키고 풍부하게 하는 새로운 생계비 개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생계비 개념을 모두 포괄할 수는 없었지만 노동운동이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도시근로자 생계비」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는 근로자 가구의 표준적 생활내용을 표현하는 「표준생계비」나 또는 근로자 가구가 건강하게 문화생활을 유지하면서 여유 있는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인 「유락생계비」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종전의 최저생계비에 주거, 교육, 건강, 여가생활 등 삶의 질과 관계있는 영역에서 최소한의 지출을 더해준 수준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2. 생계비 산출을 위한 조사 개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생계비의 산출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국 6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표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① 도시근로자 생계비조사 ② 도시근로자 1일 식품섭취조사 ③ 소비자물가조사 등 세 가지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이 조사들의 경과와 방법을 간단히 요약하고자 한다.

가. 도시근로자 생계비조사

1) 조사목적

도시근로자 가구의 각 비목별 생계비 및 생활실태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도시근로자 가구의 노동력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생계비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조사기간

예비조사 : 1995. 8. 16~8. 22.

본 조사 : 1995. 9. 20~10. 7.

3) 조사방법

한국노총 소속 각 산별조직과 각 단위조직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질문지를 배포, 가정에서 이를 근로자 가구의 가정에서 주부 또는 가계를 직접 책임진 사람이 기입하게 한 다음 회수하였음.

4) 조사내용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일반적 사항(거주지, 가족상황, 연령, 교육정도, 수입, 직종, 직위, 근속년수, 경력년수, 생활비 등), 가계의 비목별 지출상황, 내구소비재 보유현황, 저축 및 부채에 관한 사항, 생활형편에 관한 의견 등.

5) 표본설계

본 조사의 모집단은 한국노총 소속 6대도시 근로자 가구이다. 목표표본수를 3,000가구로 하고 질문지회답률을 고려, 총 5,163매의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표집방법은 한국노총의 조직분포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별 비례추출법을

사용하였다.

1차분류 : 노총 조합원수 전체에서 19개 산별연맹의 각 연맹별 조합원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이를 비례추출하였다.

2차분류 : 각 연맹별 6대도시 조합원수 분포를 기준으로 각 지역별 표본수를 비례추출하였다.

3차분류 : 각 연맹별, 지역별로 1개 사업장당 15~30부씩 되도록 사업장수를 추출하였다. 이때 사업장의 선정에서는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수가 약 1:1:1이 되도록 하되 구체적인 조사대상사업장은 조사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선정하였다.

4차분류 : 각 사업장내에서 연령별 분포를 감안하여 연령별 표본수를 할당하였다. 이때 연령별 분포는 20대 이하 20%, 30대 40%, 40대 30%, 50대 이상 10%가 되도록 하였다.

5차분류 : 각 연령군 내에서 직종, 직급이 골고루 분포되도록 유의하면서 표본조합원을 선정하였다.

6) 표본의 특성

조사결과 회수된 질문지는 총 2,922매이며 이를 모두 분석에 사용하였다. 물론 문항별로는 응답자수가 모두 다르다.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은 <부록 1>에 수록되어 있다.

나. 도시근로자 가구 1일식품섭취조사

1) 조사목적

도시근로자가구의 식생활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노동력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식품비를 측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함을 목적으로 함.

2) 조사기간

1995. 9. 20~10. 7.

3)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총 500부의 표본수집을 목표로 하되 식품섭취조사의 곤란성을 감안하여 조사가 용이한 연맹 및 사업장 중 생산직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과 사무직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이 균형을 이루도록 추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국철도노동조합 100부, 전국전력노동조합 100부,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소속 농협중앙회노조 120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180부 등이다. 조사방법은 생계비조사와 마찬가지로 주부 또는 가족의 식사를 직접 책임진 사람이 기입, 이를 회수하였다.

4) 조사내용

질문지 응답 전날에 전가족이 섭취한 모든 식품을 기재하도록 함(시간, 식사명, 장소, 먹은 사람, 음식명, 목측량, 식품명, 상태, 무게 등).

다. 소비자 물가조사

1) 조사목적

도시근로자가구가 사용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실태가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도시근로자 생계비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함을 목적으로 함.

2) 조사기간

1995. 10. 4~10. 13.

3) 조사대상 시장

전국 6대도시에서 도심지역 시장 1개소와 공단근처시장 1개소를 임의로 선정, 총 12개 시장을 조사하였다.

서울 : 남대문시장, 영등포시장

부산 : 국제시장, 구포시장

대구 : 팔달시장, 칠성시장

인천 : 부평시장, 신포동시장

광주 : 양동시장, 대인시장
대전 : 중앙시장, 오정동시장

4) 조사대상 품목수

총 529개 품목

식품 : 196개

가구, 가전제품 : 47개

주방용품, 가정잡화 : 75개

피복 및 신발 : 118개

위생용품, 약품, 화장품 : 42개

교양, 오락품 : 9개

서비스요금 : 42개

5) 조사내용

품목, 제조회사명, 상품명, 품질, 규격, 단위, 내구년수, 단가 등.

6) 조사방법

한국노총 각 산별연맹 소속 가격조사 실무자 12명을 선정, 2인 1개조로 6팀을 구성한 뒤 1개조가 2개 시장씩을 담당, 직접 조사하였다.

조사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 ① 품목선정시 중간정도 품질의 상품을 선정한다.
- ② 동질인 상품에 여러 상표가 있을 경우 가장 많이 팔리는 대중적 상표를 선정한다.
- ③ 규격은 미리 제시된 표준규격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2~3개 규격을 조사한다.
- ④ 내구소비재의 경우 내구년수의 조사를 병행한다.
- ⑤ 가공식품은 슈퍼마켓 가격으로 한다.
- ⑥ 지역특성에 따른 할인가격은 정가대로 조사한다.
- ⑦ 세일가격은 피한다.

⑧ 동일품목의 가격차이가 심할 경우 둘 이상의 점포를 조사한다.

7) 조사결과의 처리

조사된 가격 중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가격을 평균하여 해당 품목의 가격으로 함.

3. 생계비 산출모형의 설계

가. 생계비 산출방법

생계비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으로 실태생계비와 이론생계비가 존재하는 바 이론생계비는 일정한 생활수준, 생활내용을 표현하는 생활모형을 구성하여 여기에 실효가격을 곱하여 생계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론생계비는 다시 반물량방식과 전물량방식으로 나뉘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생계비연구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전물량방식(라운드리방식)을 사용하여 생계비모형을 구성하였다.

전물량방식의 생계비작성의 절차는

- ① 근로자가족의 생활내용을 표현하는 구체적 소비품목(마켓 바스켓)의 구성
- ② 마켓 바스켓의 화폐금액화
- ③ 가구규모별, 가구특성별 생계비의 구성 등으로 이루어진다.

나. 마켓 바스켓의 구성

근로자의 생계를 충족시킬 수 있는 품목 및 서비스군을 선정하는 것이 마켓 바스켓의 구성이다. 근로자가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품목은 그 수가 굉장히 많고 다양하므로 이를 이론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선정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생계비 산출이 그 목적이므로 도시근로자

가구의 생활실태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생계비의 개념이 단순한 육체적 생존이나 육체적 효율성과 같은 물리적 욕구의 개념을 넘어서서 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 삶의 질에 대한 최소한의 충족이라는 상대적 개념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마켓 바스켓이 갖는 절대적이고 전문적인 개념은 점차 약하여지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의 개념이 중요도를 더해가고 있다. 따라서 마켓 바스켓의 구성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거, 의료, 교육, 교양오락 등 삶의 질과 관련 있는 품목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마켓 바스켓의 구성에 있어서는 전문가에 의한 마켓 바스켓의 결정과 실태자료에 근거한 마켓 바스켓의 결정 등의 방법이 있는 바 전자는 전문가의 자의성이 개재될 위험이 크다는 점, 근로자가구의 실제생활과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며, 후자의 경우 소득이 제한되어 꼭 필요한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구매하지 못하는 재화가 있다는 점, 최저, 또는 표준적 생활의 유지에 불필요한 소비가 실제소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여러 연구들과 실태조사자료를 참조하여 근로자가구의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으로 인정되는 품목을 선정하되 품목구성의 자의성을 피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자료에서 적어도 근로자가구의 절반 이상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빈도 품목만을 선정,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였다.

다. 마켓 바스켓의 화폐금액화

이렇게 구성된 마켓 바스켓에 앞에서 설명한 소비자물가조사 자료에서 나타난 소비자 실효가격을 곱함으로써 화폐금액화를 하였다. 이때 필요한 경우 계절변동조정치를 이용, 금액을 조정하였다.

라. 가구규모별 생계비 구성

1)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전국평균 가구원수와 시부 평균 가구

원수는 3.7명으로 나타났으며, 1995년 9월의 『한국통계월보』에 의하면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 가구원수역시 3.7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5년 9월에 실시한 본 조사에 의하면 1인가구 82가구(3.0%), 2인가구 161가구(5.8%), 3인가구 444가구(16.0%), 4인가구 1,294가구(46.6%), 5인가구 498가구(17.9%), 6인 이상가구 298가구(10.7%)로서, 평균가구원수는 4.09명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인가족을 표준가구로 보고 생계비를 산출하였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수가 다양함에 따라 나타나는 가구규모별 생계비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가구 외에 1인, 2인, 3인, 5인 가구의 생계비를 별도로 설정하였다.

- 2) 각 가구규모별 가족구성모형은 실태조사자료를 토대로 하되 근로자가구의 생애단계(life cycle)별 생계비파악을 위해 생애단계별로 가족구성이 변화하도록 이론적으로 재구성하였다. 본 조사에 따르면 남자의 초혼연령은 평균 만 28.2세, 부부간 나이차는 평균 3.3세이다. 이러한 결과는 1990년의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시부 남자초혼연령 28.4세, 여자 25.5세)와 비슷하다. 따라서 남자는 28세, 여자는 25세를 초혼연령으로 하였다. 결혼 후 첫째 아이는 만 1년만에 출산하며,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간, 그리고 둘째와 세째간의 터울은 각각 2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4인 가구의 구성은 가장, 주부, 장남, 장녀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4인 가구 가장의 연령(중위값)은 39세이므로 주부는 36세, 장남은 10세(국민학생), 장녀는 8세(국민학생)로 설정된다.
- 4) 단신근로자의 경우 종전 모형에서는 남녀별로 각각 모델을 구성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녀별 임금격차를 없애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실현한다는 뜻에서 단신남자의 경우만 모형을 구성하였다.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는 고졸자 초임임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갔다와서 처음 취직하는 연령인 22세로 단신근로자의 연령을 설정하였다.¹⁴⁾

- 5) 2인 가구는 가장과 주부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앞에서 설명한 모형에서 2인 가구는 갖 결혼하여 아직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부로 설정, 가장은 28세, 주부는 25세로 설정하였다.
- 6) 3인 가구의 구성은 가장, 주부, 장남으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3인 가구의 가장의 평균연령(중위값)은 34세이므로 주부는 31세, 장남은 5세(유치원생)로 설정하였다.
- 7) 5인 가구의 경우 본 조사에서 부모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59.7%, 조부모+부모+자녀로 구성된 3대가구가 34.5%, 기타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5.7%로 나타나 핵가족 형태가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5인 가구의 구성은 부부, 장남, 장녀, 차남으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본 조사에서 5인 가구 가장의 평균연령(중위값)은 46세이므로 주부는 43세, 장남, 장녀, 차남의 연령은 각각 17세(고등학생), 15세(중학생), 13세(중학생)로 설정하였다.

이상의 가구모형별 가족구성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가구모형별 가족구성

단 신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남자 22세	가장 28세 주부 25세	가장 34세 주부 31세 장남 5세(유치원)	가장 39세 주부 36세 장남 10세(국민학생) 장녀 8세(국민학생)	가장 46세 주부 43세 장남 17세(고등학생) 장녀 15세(중학생) 차남 13세(중학생)

14) 단신 여성근로자가 많은 산별연맹 또는 단위노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단신 남성근로자의 생계비를 기본으로 하여, 주로 남성에게만 필요한 품목(술, 담배, 남성의류 등)을 제외하고, 2인 이상 가구의 주부의 소비품목(여성의류, 화장품 등)을 추가함으로써 단신 여성근로자의 생계비를 계산할 수 있다.

마. 비목분류

중전 모형과 같이 9대 비목분류에 저축과 조세공과금을 더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즉 식품비, 주거비, 광열비 및 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위생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교양·오락·잡비, 그리고 저축, 조세공과금 등이다.

바. 가구원수별·항목별 생계비의 요약

본 연구에서 산출된 도시근로자 생계비의 가구원수별 비목별 내용은 <표 2-2>와 같다.

<표 2-2> 도시근로자 가구 가구원수별 비목별 생계비(1995. 10. 1 기준)

(단위 : 원)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소 비 지 출	식품비	143,886	236,448	367,581	483,770	663,133
	주거비	119,753	205,681	267,024	341,173	412,886
	광열수도비	36,665	46,962	55,975	57,175	65,026
	가구집기비	28,016	63,426	67,948	80,635	85,807
	피복신발비	42,518	98,822	118,453	144,485	176,565
	보건위생비	30,162	73,734	89,658	109,245	129,076
	교육비	10,000	10,000	113,895	170,346	414,723
	교통통신비	42,520	54,646	54,646	58,906	98,956
	교양오락비	107,440	136,581	138,888	158,888	183,888
소비지출 계		560,960	926,300	1,274,068	1,604,623	2,230,060
비 소 비 지 출	저축	85,718	85,718	85,718	71,170	106,755
	조세공과금	44,976	75,735	117,830	181,824	362,173
도시근로자 생계비		691,654	1,087,753	1,477,616	1,857,617	2,698,988

4. 가구원수별·비목별 도시근로자 생계비의 내용

가. 식품비

1) 식품비 산정방법의 개요

개인의 식생활은 개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노동력의 재생산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식

품의 양, 식품의 종류, 식품가격을 설정하여야 한다.

먼저 식품의 양은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가구모형별로 연령, 성별에 따른 영양권장량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영양학회에서 영양권장량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권장한 식사구성안을 기본으로 하여 식품의 양을 결정하였다.

식품의 종류 및 각 종류별 소비량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영위하는 식생활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식료품의 소비자 가격은 앞에서 설명한 소비자물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최근 외식비가 전체 식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가공식품의 사용량도 늘어나고 있다. 앞에서 말한 영양권장량을 기준으로 한 식품소비형태는 가정에서 원재료를 구입하여 조리하는 경우만을 상정한 것이므로 외식비, 가공식품비가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근로자 가구의 식품섭취실태조사 결과와 기존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외식비와 가공식품비를 계산 이를 추가로 반영하였다.

2) 식품비 산정방법

(1) 제1단계 : 기초자료조사

도시근로자 생계비 조사를 위한 설문지에서 식비, 외식비, 외식횟수 등을 조사한다.

본 연구의 소비자물가조사에서 6대도시의 식품가격을 조사하여 정리한다.

식품비 계산과 관련 있는 기존 자료들을 조사한다. 본 생계비조사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므로 대도시 자료가 가능하면 대도시 자료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국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최근 3년자료를 평균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자료 : 국민영양조사 자료(<부록 4-2> 참조)

식품수급표 자료(<부록 4-3> 참조)

식품생산실적(<부록 4-4> 참조)

외식관련 자료.

기타 생계비조사의 식품비 관련자료

(2) 제2단계 : 영양권장량 및 섭취모형 결정

한국인 영양권장량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생계비의 가구모형을 이용하여 각 가구원이 중등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영양권장량을 기준으로 각 가구모형별 영양권장량을 계산하였다(<표 2-3> 참조).

한국인 영양권장량의 식사구성안에서 권장하는 각 식품군별 1회 섭취 횟수를 기준으로 각 가구 모형별 권장섭취 횟수를 정하였다(<표 2-4> 참조).

(3) 제3단계 : 식품의 종류와 양 결정

각 가구모형별로 정하여진 권장 섭취 횟수에 따라 식품군별로 섭취 횟수를 정한후 국민영양조사의 대도시 1인 1일 섭취량, 식품수급표의 1인 1일 공급량, 식품생산 실적등을 참고하여 각 식품별로 양을 결정하였다. 섭취량과 공급량의 차이를 각 식품의 양 계산시 참조하였다(<표 2-5> 참조).

식품별로 양이 결정된 후, 식품성분표 자료를 이용하여 영양가 계산을 하여, 각 가구모형별로 영양권장량의 수준에 적합한가를 확인하였다. 영양권장량에 맞을 때까지 조정하였다.

영양권장량에 적절하게 맞추는 정도는 영양권장량의 90% 이상 110% 이하 수준에서 결정하였으며, 영양권장량은 정해져 있으나 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에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맞추지 못했다.

권장섭취 횟수에 맞으며, 영양권장량을 만족하는 식품의 양으로 정한 것이 <표 2-6> ~ <표 2-10>이다(각 식품별 영양소 계산은<부록 4-5- 1> ~ <부록 4-5-5> 참조).

(4) 4단계 : 식품비의 계산

각 식품별로 계산된 식품의 양에 물가조사에서 나온 소비자가격을 곱하여 식품비를 계산하였다(<표 2-6> ~ <표 2-10> 참조).

이 때 물가조사시 모든 시장가격이 무게단위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눈대중량이나, 일반판매단위를 참고로 하여 100g당 가격을 계산하였다(<부록 4-1> 참조).

계산된 식품비는 1일 식품비이므로 이것을 이용해 월식품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표 2-14> 참조).

$$\text{월 식품비} = \text{일식품비} \times 365\text{일} / 12\text{개월}$$

(5) 5단계 : 외식비와 가공식품비의 계산

국민영양조사의 연령별, 성별 외식횟수를 기준으로 하여(<표 2-11> 참조) 가구모형별로 외식비를계산한 결과 총끼니회수의 약 15% 정도를 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섭취식품중 85%만을 가정에서 식품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에 의하면, 1991~93년간 외식비가 전체 식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3%이다(<표 2-13> 참조). 또 가공식품비가 전체 식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0%로 나타났는데, 그 중 일부는 위에서 계산된 가정조리식품비(가정에서 원재료를 구입하여 조리하는 경우의 식품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가공식품을 구입함으로써 추가되는 비용을 가공식품비의 절반(10%)만 반영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외식비의 비중을 23%, 가공식품비의 추가 구매비용을 10%로 할 경우, 가정에서 조리하는 식비는 총식비의 67%를 차지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총식비를 계산하였다(<표 2-14> 참조).

(6) 6단계 : 검토

본 설문조사상의 식품비가 외식비를 뺀 식품비라면 위에서 계산된 식품비와 비교했을 때, 모든 가구모형에서 식품비가 적게 나왔으며, 특히 1인가구의 경우에서 두드러졌다.

본 설문조사의 식품비가 외식비를 포함한 것이라면, 위 계산결과에 비해 1인가구, 2인가구에서는 적었고, 3인가구부터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위에서 계산된 외식비는 설문조사 결과로 얻은 외식의 비용이나, 외식횟수 등을 감안할 때 충분한 비용은 되지 못했다.

식품비를 계산할 경우 모든 가구모형에서 식품소비 형태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계산된 것이므로, 실제 식품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1인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보다 선택하는 식품의 종류나 외식의 빈도, 형태 등을 달리할 것으로 여겨지나 자료의 부족으로 이런 점들이 반영되지 못했다.

3) 계절조정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식품비는 단신 가구 149,210원, 2인 가구 245,197원, 3인 가구 381,182원, 4인 가구 501,669원, 5인 가구 687,980원이다. 그런데 이는 10월 기준이므로 월평균 식품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계절조정을 해주어야 한다. 우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87년부터 1993년까지의 7년간의 비목별 월별 자료를 토대로 ARIMA 모형을 사용해서 계산한 계절조정치를 그대로 이용하였는데 그 내용은 <표 2-15>와 같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저생계비 계측 조사연구』, 1994.).

따라서 위에서 구한 가구규모별 식품비에 계절조정치 1.000/1.037을 곱해주면 다음과 같다.

단신 가구 : $149,210 \times 1.000 / 1.037 = 143,886$

2인 가구 : $245,197 \times 1.000 / 1.037 = 236,448$

3인 가구 : $381,182 \times 1.000 / 1.037 = 367,581$

4인 가구 : $501,669 \times 1.000 / 1.037 = 483,770$

5인 가구 : $687,980 \times 1.000 / 1.037 = 663,133$

4) 본 식품비 계산에서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다.

- ① 한국영양학회, 한국인 영양권장량, 제6차개정, 1995
- ② 보건복지부, 1993년도 국민영양조사 보고서, 1994
- ③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식품수급표, 1994
- ④ 보건복지부, 식품생산실적, 1995
- ⑤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1994
- ⑥ 농촌영양개선연수원, 식품성분표, 제4개정판, 1991

⑦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식품연구소, 식품 및 음식의 눈대중량, 1988

<표 2-3> 각 가구모형별 영양권장량

가구 모형	성별 연령	에 너 지	단 백 질	Vit. A	Vit. D	Vit. E	Vit. C	Vit. B1	Vit. B2	니 아 신	Vit. B6	엽 산	칼 슘	인	철 분	아 연
		kcal	g	RE	IU	RE	mg	mg	mg	NE	mg	µg	mg	mg	mg	mg
1인 가구	남자 22세	2,600	80	700	10	10	55	1.4	1.6	18	1.6	250	900	900	18	15
	가장 28세	2,500	75	700	5	10	55	1.3	1.6	17	1.5	250	700	700	12	15
2인 가구	주부 25세	2,000	60	700	5	10	55	1.0	1.2	13	1.5	250	700	700	18	12
	계	4,500	135	1,400	10	20	110	2.3	2.8	30	3	500	1,400	1,400	30	27
3인 가구	가장 34세	2,500	75	700	5	10	55	1.3	1.5	17	1.5	250	700	700	12	15
	주부 31세	2,000	60	700	5	10	55	1.0	1.2	13	1.5	250	700	700	18	12
	장남 5세	1,600	40	400	10	6	40	0.8	1.0	11	0.8	100	600	600	10	10
	계	6,100	175	1,800	20	26	150	4.1	3.7	41	3.8	600	2,000	2,000	40	37
4인 가구	가장 39세	2,500	75	700	5	10	55	1.3	1.5	17	1.5	250	700	700	12	15
	주부 36세	2,000	60	700	5	10	55	1.0	1.2	13	1.5	250	700	700	18	12
	장남 10세	2,200	60	600	10	8	50	1.1	1.3	14	1.2	200	800	800	12	15
	장녀 8세	1,800	50	500	10	7	40	0.9	1.1	12	1.0	150	700	700	12	10
	계	8,500	245	2,500	30	35	200	4.3	5.1	56	5.2	850	2,900	2,900	54	52
5인 가구	가장 46세	2,500	75	700	5	10	55	1.3	1.5	17	1.5	250	700	700	12	15
	주부 43세	2,000	60	700	5	10	55	1.0	1.2	13	1.5	250	700	700	18	12
	장남 17세	2,600	80	700	10	10	55	1.4	1.6	18	1.6	250	900	900	18	15
	장녀 15세	2,100	65	700	10	10	55	1.1	1.3	13	1.5	250	800	800	18	12
	차남 13세	2,400	70	700	10	10	50	1.2	1.4	16	1.4	200	900	900	18	15
	계	11,600	350	3,500	40	50	270	6.0	7.0	77	7.5	1,200	4,000	4,000	84	69

<표 2-4> 가구모형별 각 식품군의 권장섭취 횟수

(단위 : 회)

가구모형		권장에너지 kcal	곡류 및 전분류	고기·생선· 계란·콩류	채소 및 과일류	우유 및 유제품	유지 및 당류
1인 가구	남자 22세	2,600	5	5	8	1	5
2인 가구	가장 28세	2,500	5	5	7	1	5
	주부 25세	2,000	4	4	6	1	4
	계	4,500	9	9	13	2	9
3인 가구	가장 34세	2,500	5	5	7	1	5
	주부 31세	2,000	4	4	6	1	4
	장남 5세	1,600	3	3	6	1	3
	계	6,100	12	12	19	3	12
4인 가구	가장 39세	2,500	5	5	7	1	5
	주부 36세	2,000	4	4	6	1	4
	장남 10세	2,200	4	5	6	1	4
	장녀 8세	1,800	3	3	6	1	3
	계	8,500	16	17	25	4	16
5인 가구	가장 46세	2,500	5	5	7	1	5
	주부 43세	2,000	4	4	6	1	4
	장남 17세	2,600	5	5	8	1	5
	장녀 15세	2,100	4	5	6	1	4
	차남 13세	2,400	5	5	6	1	4
	계	11,600	23	24	33	5	22

<표 2-5> 국민 1인 1일당 에너지 공급량과 섭취량

(단위 : kcal)

	1991	1992	1993	평균
에너지공급량 (식품수급표)	2,876	2,909	2,863	2,883
에너지섭취량 (국민영양조사)	1,930	1,868	1,848	1,882

<표 2-6> 1인 가구 식품모형 및 가격

	1일 권장 섭취횟수	추정권장 에너지	추정 권장 섭취량	식품의 종류와 양	가격(원)
곡류 및 전분류	5회	1500kcal 정도	450g 정도	쌀 3회 265g	458.19
				보리 5g	5.76
				빵 0.4회 40g	138.32
				라면 0.5회 45g	109.40
				국수 0.5회 45g	59.45
				밀가루 0.3회 27g	10.99
				옥수수 0.3회 27g	86.67
소계				868.78	
우유 및 그제품	1회	135kcal 정도	200g 정도	우유 200g	293.40
소계				293.40	
유지 및 당류	5회	225kcal 정도		식용유 3.5회 18g	26.08
				참기름 0.5회 2.5g	48.85
				마아가린 0.5회 3g	11.89
				설탕 0.5회 6g	4.74
소계				91.56	

(다음장에 표 계속)

<표 2-6>의 계속

	1일 권장 섭취횟수	추정권장 에너지	추정 권장 섭취량	식품의 종류와 양	가격(원)				
생선 계란 콩류	5회	400kcal 정도	300g 정도	육류 및 그제품 1회	쇠고기 15g 돼지고기 20g 닭고기 10g 햄 10g	226.25 120.50 28.18 104.11			
				난류 0.5회	계란 25g	50.83			
				어패류 1회	명태 10g 조기 2g 갈치 6g 고등어 6g 정어리 2g 물오징어 20g 황다랑어통조림 2g 취치말린것 2g 어묵튀김 7g 멸치 3g 굴 1g 새우 2g	14.04 33.63 82.35 21.63 8.413 89.96 9.85 13.60 40.18 84.07			
				콩류 1.5회	두부 60g 대두 8g 녹두 3g 팥 3g	7.207 26.00 72.00 36.14			
				종실류 0.5회	깨 4g 밤 4g	1.874 21.25			
				조미료류 0.5회	고추장 5g 된장 5g 간장 5g	48.17 26.00 21.09 12.59 5.23			
				소계					1,205.13

(다음장에 표 계속)

<표 2-6>의 계속

	1일 권장 섭취횟수	추정권장 에너지	추정 권장 섭취량	식품의 종류와 양	가격(원)
채소 및 과일류	8회	260kcal 정도	560g 정도	채소류 배추 80g 120.16	
				4회 무 35g 70.91	
				양배추 15g 18.60	
				과 15g 10.25	
				양과 15g 8.19	
				마늘 15g 72.66	
				오이 15g 36.32	
				호박 10g 15.05	
				토마토 10g 26.94	
				시금치 15g 32.33	
				꽃고추 15g 50.60	
				당근 10g 29.16	
				상추 5g 23.03	
				콩나물 25g 51.13	
				버섯류 느타리버섯 5g 26.57	
				0.2회	
				해조류 물미역 25g 110.95	
				0.8회 김 1g 22.92	
				과실류 사과 100g 204.90	
				2.5회 배 15g 30.92	
				감 20g 80.00	
포 15g 41.25					
귤 75g 231.23					
복숭아 10g 31.67					
수박 10g 18.33					
참외 5g 7.88					
감자류 감자 20g 19.80					
0.5회 고구마 15g 16.22					
소계				1,407.84	
합계				3,866.71	

<표 2-7> 2인 가구 식품모형 및 가격

	1일 권장 섭취횟수	추정권장 에너지	추정 권장 섭취량	식품의 종류와 양			가격(원)
곡류 및 전분류	9회	2700kcal 정도	810g 정도	쌀	6회	525g	907.73
				보리	5g	5.76	
				빵	0.6회	60g	207.48
				라면	0.7회	63g	153.15
				국수	0.7회	63g	83.22
				밀가루	0.5회	45g	18.32
				옥수수	0.5회	45g	144.45
				소계			
고기 생선 계란 콩류	9회	720kcal 정도	540g 정도	육류 및 그 제품 1회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햄	15g 20g 10g 10g	226.25 120.50 28.18 104.11
				난류 1회	계란	50g	101.65
				어패류 2회	명태	20g	28.08
					조기	5g	84.08
					갈치	10g	137.25
					고등어	10g	36.05
					정어리	5g	21.03
					물오징어	35g	157.43
					황다랑어통조림	5g	24.62
					퀴치말린것	5g	34.00
					어묵튀김	15g	86.10
					멸치	5g	140.12
					굴	2g	14.40
				새우	3g	39.00	
				콩류 3회	두부	140g	168.00
					대두	15g	67.76
					녹두	8g	52.98
					팥	8g	56.66
				종실류 1회	깨	8g	96.34
					밤	8g	52.00
				조미료류 1회	고추장	10g	42.17
					된장	10g	25.17
간장	10g	10.45					
소계						1,954.38	

(다음장에 표 계속)

<표 2-7>의 계속

	1일 권장 섭취횟수	추정권장 에너지	추정 권장 섭취량	식품의 종류와 양	가격(원)
채소 및 과일류	13회	540kcal 정도	910g 정도	채소류 배추 100g 150.2	
				6.0회 무 70g 141.82	
				양배추 30g 37.2	
				파 30g 20.49	
				양파 30g 16.38	
				마늘 30g 145.32	
				오이 30g 72.63	
				호박 15g 22.58	
				토마토 10g 26.94	
				시금치 15g 32.33	
				풋고추 15g 50.60	
				당근 15g 43.73	
				상추 10g 46.05	
				콩나물 30g 61.35	
				버섯류 느타리버섯 10g 53.13	
				0.5회	
				해조류 물미역 70g 310.66	
				1.5회 김 1g 22.92	
				과실류 사과 150g 307.35	
				3.5회 배 15g 30.92	
감 35g 140.00					
포도 15g 41.25					
귤 80g 246.64					
복숭아 15g 47.51					
수박 15g 27.50					
참외 10g 15.75					
감자류 감자 75g 74.25					
1.5회 고구마 30g 32.43					
소계					2,162.58
및 그제품	2회	270kcal 정도	400g 정도	우유 400g	586.8
2회					
소계					586.8
유지 및 당류	9회	405kcal 정도		식용유 6회 30g 43.47	
				참기름 0.5회 2.5g 48.85	
				마아가린 1회 6g 23.78	
				설탕 1.5회 18g 14.22	
소계					130.32
합계					6,354.19

<표 2-8> 3인 가구 식품모형 및 가격

	1일 권장 섭취횟수	추정권장 에너지	추정 권장 섭취량	식품의 종류와 양			가격(원)
곡류 및 전분류	12회	3600kcal 정도	1080g 정도	쌀	8회	710g	1,227.59
				보리		10g	11.52
				빵	0.8회	72g	248.98
				라면	1.0회	90g	218.79
				국수	1.0회	90g	118.89
				밀가루	0.6회	54g	21.98
				옥수수	0.6회	54g	173.34
소계						2,021.09	
고기 생선 계란 콩류	12회	960kcal 정도	720g 정도	육류 및 그 제품	쇠고기	30g	452.49
				돼지고기	40g	241.00	
				2회	닭고기	20g	56.36
				햄	20g	208.22	
				난류	계란	100g	203.30
				2회			
				어패류	명태	30g	42.12
				3회	조기	6g	100.90
				갈치	15g	205.88	
				고등어	15g	54.08	
				정어리	8g	33.65	
				물오징어	50g	224.90	
				황다랑어통조림	8g	393.84	
				취치말린것	6g	40.80	
				어묵튀김	20g	114.80	
				멸치	10g	280.23	
				굴	4g	28.80	
				새우	6g	78.00	
				콩류	두부	140g	168.00
				3회	대두	15g	67.76
녹두	8g	52.98					
팥	8g	56.66					
종실류	깨	8g	96.34				
1회	밤	8g	52.00				
조미료류	고추장	10g	42.17				
1회	된장	10g	25.17				
	간장	10g	10.45				
소계						3,330.90	

(다음장에 표 계속)

<표 2-8>의 계속

	1일 권장 섭취횟수	추정권장 에너지	추정 권장 섭취량	식품의 종류와 양			가격(원)	
채소 및 과일류	19회	595kcal 정도	1,330g 정도	채소류	배추	150g	225.30	
				8.5회	무	80g	162.08	
					양배추	35g	43.40	
					파	30g	20.49	
					양파	35g	19.11	
					마늘	30g	145.32	
					오이	30g	72.63	
					호박	25g	37.63	
					토마토	20g	53.88	
					시금치	30g	64.65	
					풋고추	30g	101.19	
					당근	20g	58.32	
					상추	10g	46.05	
					콩나물	50g	102.25	
					버섯류	느타리버섯	10g	53.13
					0.5회			
					해조류	물미역	70g	310.66
					2회	김	2g	45.83
					과실류	사과	300g	614.70
					6회	배	30g	61.83
		감	70g	280.00				
		포도	30g	82.50				
		귤	160g	493.28				
		복숭아	30g	95.01				
		수박	30g	54.99				
		참외	20g	31.50				
		감자류	감자	75g	74.25			
		2회	고구마	75g	81.08			
소계						3,431.06		
우유 그제품	3회	405kcal 정도	600g 정도	우유	600g	880.2		
소계						880.2		
유지 및 당류	12회	540kcal 정도		식용유	7회	35g	50.72	
				참기름	1회	5g	97.70	
				마아가린	2회	12g	47.56	
				설탕	2회	24g	18.96	
소계						214.94		
합계						9,878.19		

<표 2-9> 4인 가구 식품모형 및 가격

	1일 권장 섭취횟수	추정권장 에너지	추정 권장 섭취량	식품의 종류와 양		가격(원)		
곡류 및 전분류	16회	4800kcal 정도	1440g 정도	쌀	10회	880g	1,521.52	
				보리		20g	23.04	
				빵	0.8회	72g	248.98	
				라면	1.5회	135g	328.19	
				국수	1.5회	135g	178.34	
				밀가루	0.6회	54g	21.98	
				옥수수	0.6회	54g	173.34	
소계						2,495.39		
고기 생선 계란 콩류	17회	1360kcal 정도	1020g 정도	육류 및 그 제품	쇠고기	45g	678.74	
					돼지고기	60g	361.50	
					닭고기	30g	84.54	
					햄	30g	312.33	
				난류	계란	150g	304.95	
				어패류	4회	명태	40g	56.16
						조기	10g	168.16
						갈치	25g	343.13
						고등어	25g	90.13
						징어리	10g	42.06
						물오징어	70g	314.86
						황다랑어통조림	10g	49.23
						퀴치말린것	8g	54.40
						어묵튀김	40g	229.60
						멸치	10g	280.23
						굴	4g	28.8
				새우	10g	130.00		
				콩류	4회	두부	160g	192.00
						대두	20g	90.34
						녹두	10g	66.23
						팥	10g	70.83
				종실류	1회	깨	8g	96.34
						밤	8g	52.00
조미료류	2회	고추장	20g	84.34				
		된장	20g	50.34				
		간장	20g	20.90				
소계						4,309.56		

(다음장에 표 계속)

<표 2-9>의 계속

	1일 권장 섭취횟수	추정권장 에너지	추정 권장 섭취량	식품의 종류와 양		가격(원)		
채소 및 과일류	25회	1080kcal 정도	1750g 정도	채소류	배추	200g	300.4	
				10회	무	100g	202.62	
					양배추	45g	55.8	
					파	45g	30.74	
					양파	45g	24.57	
					마늘	45g	217.98	
					오이	45g	108.95	
					호박	30g	45.15	
					토마토	15g	40.41	
					시금치	30g	64.65	
					풋고추	30g	101.19	
					당근	30g	87.48	
					상추	15g	69.08	
					콩나물	70g	143.15	
					버섯류	느타리버섯	20g	106.26
					1회			
					해조류	물미역	140g	621.32
					3회	김	2g	45.83
					과실류	사과	350g	717.15
					8회	배	40g	82.44
		감	80g	320.00				
		포도	40g	110.00				
		귤	250g	770.75				
		복숭아	40g	126.68				
		수박	40g	73.32				
		참외	20g	31.50				
		감자류	감자	150g	148.50			
		3회	고구마	75g	81.08			
소계					4,726.98			
우유 및 그제품	4회	540kcal 정도	800g 정도	우유	800g	1,173.6		
4회								
소계					1,173.6			
유지 및 당류	16회	720kcal 정도		식용유	10회	50g	72.45	
				참기름	1.5회	7.5g	146.55	
				마아가린	2회	12g	47.56	
				설탕	2.5회	36g	28.44	
소계						295.00		
합계						13,000.53		

<표 2-10> 5인 가구 식품모형 및 가격

	1일 권장 섭취횟수	추정권장 에너지	추정 권장 섭취량	식품의 종류와 양		가격(원)
곡류 및 전분 류	23회	6900kcal 정도	2070g 정도	쌀	┌16회 1400g	2,420.6
				보리	└ 40g	46.08
				빵	1.5회 150g	518.71
				라면	2회 180g	437.59
				국수	2회 180g	237.79
				밀가루	0.8회 72g	29.31
				옥수수	0.7회 63g	202.23
소계					3,892.31	
고기 생선 계란 콩류	24회	1920kcal 정도	1440g 정도	육류 및 그 제품 5회	쇠고기 80g 돼지고기 120g 닭고기 60g 햄 40g	1,005.74 723.0 169.08 416.44
				난류 4회	계란 200g	406.6
				어패류 6회	명태 60g	84.24
					조기 15g	252.24
					갈치 35g	480.38
					고등어 40g	144.21
					정어리 15g	63.09
					물오징어 105g	440.80
					황다랑어통조림 20g	98.46
					취치말린것 12g	81.6
					어묵튀김 60g	344.4
					멸치 15g	420.35
				굴 6g	43.2	
				새우 15g	195.0	
				콩류 5회	두부 160g	192.00
					대두 30g	135.51
					녹두 15g	99.35
					팥 15g	106.25
				종실류 1회	깨 8g	96.34
					밤 8g	52.00
				조미료류 3회	고추장 30g	126.51
					된장 30g	75.51
					간장 30g	31.35
소계					6,091.45	

(표 다음장에 계속)

<표 2-10>의 계속

	1일 권장 섭취횟수	추정권장 에너지	추정 권장 섭취량	식품의 종류와 양			가격(원)	
채소 및 과일류	33회	1115kcal 정도	2310g 정도	채소류	배추	250g	375.5	
				14회	무	150g	303.93	
					양배추	60g	74.4	
					파	60g	40.99	
					양파	60g	32.76	
					마늘	60g	290.64	
					오이	60g	145.27	
					호박	40g	60.2	
					토마토	30g	80.82	
					시금치	40g	86.2	
					풋고추	40g	134.92	
					당근	40g	116.64	
					상추	30g	138.16	
					콩나물	80g	163.6	
					버섯류	느타리버섯	20g	106.26
					1회			
					해조류	물미역	210g	931.98
					4회	김	2g	45.83
					과실류	사과	400g	819.6
					10회	배	50g	103.05
		감	80g	320.00				
		포도	50g	137.5				
		귤	300g	924.9				
		복숭아	50g	158.35				
		수박	50g	91.65				
		참외	20g	31.50				
		감자류	감자	225g	222.75			
		4회	고구마	75g	81.08			
소계						6,018.48		
우유 및 그제품	5회	675kcal 정도	1000g 정도	우유	1000g	1,467.0		
5회								
소계						1,467.0		
유지 및 당류	22회	990kcal 정도		식용유	15회	75g	108.68	
				참기름	1.5회	7.5g	146.55	
				마아가린	2.5회	19g	75.30	
				설탕	3회	36g	28.44	
소계						358.97		
합계						17,828.71		

<표 2-11> 국민영양조사에 따른 연령별·성별 외식비율(1991~93)

(단위 : %)

성별 연령	전 체				남 자				여 자			
	1991	1992	1993	평균	1991	1992	1993	평균	1991	1992	1993	평균
총 계	12.5	12.7	16.0	13.7	17.6	17.3	21.4	18.8	7.5	8.3	11.0	8.9
1~5	4.3	4.5	5.3	4.7	4.9	5.2	5.5	5.2	3.6	3.8	4.9	4.1
6~10	3.7	5.3	7.8	5.6	3.4	5.7	8.2	5.8	4.0	4.9	7.4	5.4
11~15	3.6	3.8	7.3	4.9	3.9	3.7	7.7	5.1	3.3	3.9	6.9	4.7
16~20	19.2	14.0	13.3	15.5	18.9	13.1	12.3	14.8	19.4	15.0	14.3	16.2
21~25	24.8	27.5	31.4	27.9	32.2	29.4	35.3	32.3	17.5	25.9	28.3	23.9
26~30	17.7	20.2	25.5	21.1	30.4	32.2	39.0	33.9	7.1	9.6	14.3	10.3
31~35	17.4	16.7	20.6	18.2	29.9	29.0	33.3	30.7	6.1	6.5	10.4	7.7
36~40	18.8	17.7	22.4	19.6	27.4	27.7	32.3	29.1	8.3	7.7	11.9	6.0
41~45	15.3	16.7	23.8	18.6	24.2	27.1	32.6	28.0	7.2	7.3	14.2	9.6
46~50	16.5	14.8	20.6	17.3	25.3	20.7	29.7	25.2	6.8	8.6	12.7	9.4
51~55	12.5	13.3	14.5	13.4	18.5	19.2	22.6	20.1	6.8	7.2	7.4	7.1
56~60	10.0	11.6	14.7	12.1	14.9	16.0	19.8	16.9	5.6	7.4	9.3	7.4
61~65	7.7	6.5	8.8	7.7	11.7	11.4	15.0	12.7	3.8	2.7	4.3	3.6
65 이상	2.3	2.9	3.7	3.0	3.9	4.0	6.8	4.9	1.3	2.1	1.9	1.8

<표 2-12> 도시가계지출의 외식비 및 기호식품비 평균 지출비율

(단위 : %)

년 도	1991년	1992년	1993년	평 균
내 용				
외식 비율	21.5	23.6	23.7	22.9
가공식품비율	18.4	18.7	22.4	19.8
계	39.9	42.3	45.1	42.4

<표 2-13> 실태조사 대상의 식품비 및 외식비 관련사항

(단위 : 원, 회, 명)

		전체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식품비	Mean	387,320	231,430	266,580	330,300	401,450	441,210
	Median	350,000	200,000	360,000	300,000	400,000	400,000
	Mode	300,000	100,000	200,000	300,000	300,000	500,000
간식비	Mean	103,800	80,450	90,850	92,590	107,110	105,470
	Median	100,000	70,000	95,000	100,000	100,000	100,000
	Mode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3개월간 외식횟수	Mean	3.61	4.88	5.79	3.97	3.38	3.11
	Median	3.00	3.00	5.00	3.00	3.00	2.00
	Mode	3.00	3.00	3.00	3.00	1.00	2.00
외식시 1인당 비용	Mean	12,595	14,608	14,136	13,252	12,380	12,017
	Median	10,000	13,000	12,000	10,000	10,000	10,000
	Mode	10,000	15,000	10,000	10,000	10,000	10,000
외식시 가구원수	Mean	2.37	2.64	2.21	2.27	2.37	2.35
	Median	2.00	3.50	2.00	2.00	2.00	2.00
	Mode	1.00	4.00	1.00	1.00	1.00	1.00
외식식사 비용(1끼당)	Mean	3,101	3,875	3,306	3,129	3,036	3,155
	Median	3,000	4,000	3,000	3,000	3,000	3,000
	Mode	3,000	4,000	3,000	3,000	3,000	3,000

<표 2-14> 가구모형별 식비

(단위 : 원)

가구모형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일식비 (외식안하는 경우)	3,866.71	6,354.19	9,878.19	13,000.53	17,828.71
월식비 (외식안하는 경우)	117,612	193,273	300,462	395,433	542,289
월식비 (외식, 가공식품을 제외하는 경우)	99,971	164,282	255,392	336,118	460,946
외식비, 가공식품비	49,239	80,915	125,790	165,551	227,034
총식비	149,210	245,197	381,182	501,669	687,980

<표 2-15> 식품비(도시) 계절조정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0.986	0.882	0.918	0.945	0.970	0.966	0.963	1.012	1.150	1.037	1.076	1.084	1.000

나. 주거비

1) 생애단계와 주거비

주거비는 가계가 그 생계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식품비와 더불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도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이지만, 식료품비와는 달리 과학적 연구가 희소하고 기존 연구간에도 그 내용이나 방법상 많은 편차가 발견되고 있어 철저한 검토가 요구되는 주요한 항목이다.

종래의 주거비 파악방법은 일정 시점(조사시점)에서의 주거모형(자가 또는 임차여부, 주거면적, 주택임차비, 임차비 조달방식 등)을 설정함으로써 주거비를 산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근로자의 연령이나 가족수의 변화 등 생애단계에 따라 주거형태가 달라지며, 근로자는 이러한 주거형태의 변화에 대비하여 전생애에 걸쳐 주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비(예컨대 전세금 마련을 위한 저축, 주택구입을 위한 저축, 주택구입시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 등)를 하고 있고 이것이 근로자 가구의 주거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무시한 것이었다.

따라서 주거비는 생애 전체에 걸친 근로자 가구의 주거유형 변화와 이에 따른 각 단계에서의 다양한 주거관련비용의 발생을 파악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더우기 최근 근로자의 주거형태는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고 주거의 질 향상에 대한 근로자들의 욕구 역시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거비 파악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주거비의 파악은 ① 주거모형의 설정, ② 주거면적 및 주거구조의 설정, ③ 주거유지비용의 산출, ④ 이사비용, 중개료, 주택수리비, 주거관련세 세금 등 주거관련비용의 산출 등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2) 주거모형의 설정

(1) 주택의 소유형태

본 실태조사 결과 주택의 소유형태별 구분은 <표 2-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의 56.3%가 자가, 31.2%가 전세, 4.2%가 월세, 그리고 8.3%가 기타로 나타나 자가주택보유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를 가구규모별로 볼 경우 단신가구 및 2인 가구에서는 전세비율이 가장 높지만 3인 가구에서는 전세와 자가비율이 비슷하며, 4인 가구와 5인 가구에서는 자가비율이 각각 60.0%, 70.6%를 차지, 높은 자가보유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2-16> 가구규모별 주택의 점유형태

(단위 : %)

점유형태	전 체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자 가	56.3	19.5	26.6	43.4	60.0	70.6
전 세	31.2	46.3	60.1	43.9	28.8	18.9
월 세	4.2	12.2	7.6	4.3	3.6	3.8
기 타	8.3	28.0	5.7	8.4	7.6	6.6

이와 같은 자가보유율의 증대는 그간의 주택의 대량건설의 결과로 보인다.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1990년 현재 전국의 일반가구의 주택보급률(주택수/가구수)은 63.1%였으며, 자가가구의 비율은 49.9%였다. 시부 기준으로는 주택보급률 54.9%, 자가비율 41.6%에 불과했다. 그런데 1990~94년에 걸쳐 총 325만6천호의 주택이 건설되었는데 이는 1985~89년 기간의 153만8천호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서, 그 결과 1994년 현재 전국의 보통가구수는 11,436천가구, 주택수는 9,349천호로서 주택보급률은 81.7%를 기록하고 있다(한국주택은행, 『주택금융』, 1995.9, 121쪽). 또 시부 전체의 일반가구수는 9,182천가구, 주택수는 6,533천호로서 주택보급률은 71.2%에 달하고 있다(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94). 1가구 2주택 소유 등으로 인해 자가비율이 주택보급률에 비해 13~14% 포인트 정도 낮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국 및 시부의 자가비율은 이미 50%를 훨씬 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본 실태조사에서도 자가가구 중 주택소유기간이 5년 미만인 가구가 54.7%로 나타나 주택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최근 5년내에 주택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대우경제연구소의 「한국가구 패널조사」(1995)에 의하면 조사대상 3,609 가구 중 자가는 1993년 60.9%, 1994년 61.8%이고, 그 중 봉급생활자의 경우 자가 52.3%, 전세 36.5%, 월세 8.0%, 기타 3.2%로 나타나 우리의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통계를 종합해보면 1995년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의 절반 이상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가구규모별로는 1~3인 가구에서는 전세가, 그리고 4~5인 가구에서는 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1~3인 가구에서는 전세를, 그리고 4~5인 가구에서는 자가를 주택점유형태로 설정하였다.

한편 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자가소유자는 결혼후 평균(중위값) 7년만에 자가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택은행의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1995. 12.)에 나타난 자가가구의 결혼후 주택마련 소요기간 평균 7.9년과 유사한 결과이다.

(2) 주택종류의 설정

본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가구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45.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단독주택 25.4%, 다세대주택 15.1%, 연립주택 9.5%의 순이다.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1990년 현재 전국주택 7,160천호 중 단독주택이 4,727천호(66.0%), 아파트가 1,628천호(22.7%)이고, 시부에서는 총 4,646천호 중 단독주택 2,411천호(51.9%), 아파트 1,542천호(33.2%)로 나타나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1990~94년의 기간 중 건설된 총 3,256천호의 주택 중 단독주택은 186천호(5.7%)에 그친 반면 아파트가 2,456천호(75.4%)로 대부분을 차지, 아파트의 보급률이 크게 늘어났다(주택은행, 『주택금융』, 1995.9, 122쪽).

한편 가구규모별로 보면 <표 2-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인 규모에서는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3~5인 가구에서는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다. 그러나 지나치게 주거유형이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1~3인 가구는 모두 다세대주택에서 전세를 사는 것으로 통일하고 4~5인 가구는 자가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주거유형을 설정하였다.

<표 2-17> 현거주 주택의 종류

(단위 : %)

	전 체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단독주택	25.4	22.0	17.0	22.9	20.0	30.1
다세대주택	15.1	32.9	33.3	16.1	14.0	11.7
연립주택	9.5	4.9	8.2	7.7	10.7	9.7
아파트	45.8	24.4	34.6	49.8	52.1	45.5
기 타	4.3	15.9	6.9	3.6	3.1	3.0

3) 전용거주면적 및 주택구조의 설정

본 실태조사에 의하면 <표 2-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전월세자들이 사용하는 전용면적의 크기는 1인 가구의 경우 6~10평이 42.9%로 가장 많고(평균 13.6평), 2인 가구의 경우 11~15평이 50.9%로 가장 많으며(평균 13.5평), 3인 가구에서는 11~15평이 43.5%로 가장 많다(평균 16.0평). 한편 아파트 자가소유자들의 경우 4인 가구와 5인 가구 모두에서 21~25평이 29.9%, 25.8%로 가장 많다(평균 22.8평, 23.1평).

한편 사용방수는 1인 가구(전월세)는 1.6개, 2인 가구(전월세)는 1.9개, 3인 가구(전월세)는 2.0개, 4인 가구(자가)는 2.7개, 5인 가구(자가)는 2.9개로 나타났다. 또 희망하는 전용거주면적을 물은 결과 1인 가구는 26.2평, 2인 가구는 25.3평, 3인 가구는 27.2평, 4인 가구는 29.5평, 5인 가구는 31.6평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한국노총이 사용해온 주거모형에서보다 근로자 가구의 전용거주면적이 상당히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가구의 주거의 질에 대한 기대욕구 역시 매우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상당히 많은 전세가구가 있고 이들의 전용거주면적이

<표 2-18> 주거유형별 전용거주면적

(단위 : %)

	전 체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주거유형	-	다세대 전세	다세대 전세	다세대 전세	아파트 자가	아파트 자가
0~ 5 평	1.0	7.1	5.1	2.5	0.2	1.1
6~10 평	8.1	42.9	20.3	18.8	2.6	2.3
11~15 평	23.2	25.0	50.9	43.5	14.7	14.0
16~20 평	25.2	7.1	16.9	23.7	21.1	22.5
21~25 평	21.7	7.2	5.1	8.2	29.9	25.8
26~30 평	10.1	7.1	1.7	0.8	14.4	15.2
30평 이상	10.7	3.6	-	2.5	17.1	19.1
평균(평)	20.4	13.6	13.5	16.0	22.8	23.1

좁다는 점을 고려하는 동시에 주거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보다 낮은 선에서 노층의 1990년 모형을 약간 상향조정하는 정도로 전용거주면적을 설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1인 가구 6평, 2인 가구 10평, 3인 가구 13평, 4인 가구 15평, 5인 가구 18평으로 하였다.

주택구조는 큰방(성인 2인 거주) 5평, 중간방(중고생 이하 2인 거주) 4평, 작은방(1인 거주) 3평으로 하고, 거실은 2~2.5평, 부엌은 2~2.5평, 화장실은 1평으로 하였다. 그 결과는 <표 2-19>와 같다.

<표 2-19> 가구규모별 전용면적과 주택구조

(단위 : %)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큰 방	-	5평	5평	5평	5평
중간방	-	-	-	4평	4평
작은방	3평	-	3평	-	3평
거 실	-	2평	2평	2.5평	2.5평
부 엇	2평	2평	2평	2.5평	2.5평
화장실	1평	1평	1평	1평	1평
합 계	6평	10평	13평	15평	18평

4) 주거비의 산출

(1) 전세유지비용

전세가구의 경우 종전 모형과 마찬가지로 전세유지비 또는 월임대료를 주거

비로 보았다. 이때 임대료는 전세 및 월세보증금의 자산평가액으로 한다.

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다세대주택 전세의 평당 평균 전세금은 166만원이다. 이를 가구규모별 전용거주면적에 곱하면 총전세금액이 산출되는데 1인 가구 996만원, 2인 가구 1,660만원, 3인 가구 2,158만원이다.

전월세가구의 46.6%가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졌다고 대답했으며 부채가 있는 경우 평균 부채액은 1,218만원, 부채에 대한 연평균금리는 14.7%였다. 이를 월리로 환산하면 1.2%이다. 따라서 우리는 앞에서 산출된 가구규모별 총전세금에 월 1.2%를 곱하여 월평균 전세유지비용을 산출하였다.

(2) 자가유지비용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거비가 거의 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자가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주거관련비용이 발생한다. 우선 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자가가구의 경우 집을 마련할 때 부채를 진 사람이 전체의 80.9%에 달하며, 부채를 진 경우 평균부채금액은 2,089만원이다. 자가가구는 이 부채에 대한 원리금상환으로 월평균 292,460원을 지출하고 있다. 또한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감가상각비, 주택수리비 등이 발생하며 그외에 주택소유에 따른 각종 세금, 관리비 등이 발생한다.

자가가구의 주거비를 평가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귀속임대료법인데 이는 현재 통계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귀속임대료법은 자가를 임대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임대료수입을 소유자의 기회비용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귀속임대료는 주택소유에 따라 발생하는 주택의 감가상각비, 주택구입시의 차입자금에 대한 원리금상환비용, 자기소유자금의 투입에 따른 기회소득상실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귀속임대료법을 이용해서 자가유지비용을 산출하였다. 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아파트의 평당 전세금은 188만원이며 이를 가구규모별 전용면적으로 곱하면 4인 가구의 경우 2,820만원, 5인 가구의 경우 3,384만원이 된다.

본 실태조사 결과 자가가구의 부채에 대한 연평균금리는 13.4%로 나타났다. 이를 월리로 환산하면 1.1%가 된다. 자가가구의 부채금리가 전세가구의 부채

금리보다 낮은 것은 그 만큼 자가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가 싼 은행 등 공식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계산된 가구규모별 귀속전세금액에 월리를 곱하면 월평균 자가유지비용이 산출된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 2-20>과 같다.

<표 2-20> 가구규모별 전세유지비 및 자가유지비의 산출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모델 평	다세대 6평	다세대 10평	다세대 13평	아파트 15평	아파트 18평
평당 전세금*	166만원	166만원	166만원	188만원	188만원
총전세금*	966만원	1,660만원	2,158만원	2,820만원	3,384만원
월 금리	1.2%	1.2%	1.2%	1.1%	1.1%
월전세유지비*	115,920원	199,200원	258,960원	310,200원	372,240원

* 자가의 경우 귀속전세금에 대한 수치임.

(3) 아파트관리비

4인 이상의 가구에서는 아파트관리비가 산출되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 평당 아파트관리비의 중위값은 4,170원이므로 가구규모별 전용면적을 곱하면 총 관리비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cdot 4인 가구 : 4,170 \times 15 = 62,550원$$

$$\cdot 5인 가구 : 4,170 \times 18 = 75,060원$$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파트관리비에는 전기료, 난방비, 수도료 등 여타 비목에 포함되어야 할 성질의 비용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순수한 일반관리비를 계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김선중,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비용에 관한 연구(I)」, 『한국주거학회지』, 제4권 1호, 1993. 6, 44쪽 참조). 따라서 뒤에서 계산되는 광열/수도비에서 산출한 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료(단 따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인 취사비(가스요금)는 제외함)가 아파트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빼줌으로써 순수한 일반관리비를 산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인 가구 : 62,550 - 51,844 = 10,706원$$

$$5인 가구 : 75,060 - 58,810 = 16,250원$$

(4) 이사비

본 실태조사에서 최근 5년간의 이사경험을 물은 결과 전체의 64.7%가 이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의 경우 5년내 평균 이사회수는 1.9회였다. 그러나 주거유형별로는 이사경험에 큰 차이가 있는데 자가가구의 경우 55.7%가 이사경험이 있고 평균이사회수는 1.6회인 데 비해 전월세 가구의 경우 70.1%가 이사경험이 있고 이사회수는 평균 2회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는 전월세가구의 경우 평균 3년 마다 1회씩 이사를 한다고 가정하며, 자가가구의 경우 최근 5년내 이사하여 20년동안 자가에 그대로 거주한다고 가정하였다.

이사에 필요한 비용은 운송비, 인건비, 중개료 등인데 이삿짐은 가족과 직장 동료, 친척 등이 옮긴다고 가정하여 인건비는 제외하고 운송비와 중개료만 계산하였다.

운송의 경우 단신가구는 1톤 트럭, 2~5인 가구는 2.5톤 트럭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며, 운송비는 서울지역 통상요금을 적용하여 1톤의 경우 4만원, 2.5톤의 경우 7만원으로 계산한다.

중개료의 경우 서울시 고시요금기준을 적용하였다(<표 2-21> 참조). 전세가구의 경우 총전세금에 해당 임대차 수수료율을 곱하되 수수료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액을 그대로 계산하였으며, 자가가구의 경우 아파트를 신규분양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계산하지 않았다. 주택은행의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1995년)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67.8%가 신규분양(아파트는 76.8%)으로 주택을 마련한 반면, 기존주택 구입은 25.1%(아파트는 19.5%), 신축은 5.6%에 그쳐 대다수의 자가마련가구는 신규분양으로 주택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1>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표

	매매, 교환		임대차	
	수수료율	한도액	수수료율	한도액
100만원 미만	-	-	0.8%	7,000원
100~ 500만원	0.9%	35,000원	0.7%	30,000원
500~1,000만원	0.7%	60,000원	0.6%	50,000원
1,000~3,000만원	0.6%	150,000원	0.5%	120,000원
3,000~5,000만원	0.5%	200,000원	0.4%	150,000원
5,000~1억원	0.4%	300,000원	0.3%	250,000원
1억~2억원	0.3%	500,000원	0.25%	400,000원
2억~4억원	0.25%	800,000원	0.2%	600,000원
4억~8억원	0.2%	1,200,000원	0.15%	1,500,000원
8억원 이상	0.15%	3,000,000원	-	-

이상의 운송비와 중개료를 가구규모별로 계산하여 월환산하면 <표 2-22>와 같다.

<표 2-22> 가구규모별 이사비용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운송비	40,000	70,000	70,000	70,000	70,000
중개료	50,000	83,000	110,000	-	-
계	90,000	153,000	180,000	70,000	70,000
내구년수	1회/3년	1회/3년	1회/3년	1회/20년	1회/20년
월환산 이사비	2,500	4,250	5,000	292	292

(5) 주택관련 제 세금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소유권등기를 할 때는 등록세, 그리고 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는 등 주택관련 제세금의 부담이 높다. 이러한 제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취득가와 현재가, 공시가를 알아야 한다.

주택은행의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1995)에 따르면 아파트의 경우 평균 취득가격은 6412.1만원이고 평균주택규모는 25.8평으로서 평당 평균취득 가격은 249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본 모델에서의 가구규모별 면적으로 곱하면

취득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한편 현행 취득세율은 주택취득가액의 2%이고, 등록세율은 3%이다.

따라서 가구규모별 취득세와 등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4인 가구 : $249\text{만원} \times 15\text{평} \times 5\% = 1,867,500\text{원}$

5인 가구 : $249\text{만원} \times 18\text{평} \times 5\% = 2,241,000\text{원}$

자가가구의 주택보유기간을 20년으로 보고 이를 월평균비용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4인 가구 : $1,867,500\text{원} / 20\text{년} / 12\text{개월} = 7,781\text{원}$

5인 가구 : $2,241,000\text{원} / 20\text{년} / 12\text{개월} = 9,338\text{원}$

한편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부과되는 바 현행 재산세율은 최저 0.3%로부터 최고 0.7%까지 누진세율로 되어 있지만 시가기준 과표현실화율이 10~20%에 불과하므로 실효세율은 0.1% 정도에 머물고 있다(국토개발연구원, 『수도권 및 부산지역의 주택시장 분석』, 1991. 12, 105쪽). 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아파트의 평당 시가는 평균 383만원이므로 이를 실효세율 0.1%로 곱하면 가구규모별 연간재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4인 가구 : $383\text{만원} \times 15\text{평} \times 0.1\% = 57,450\text{원}$

5인 가구 : $383\text{만원} \times 18\text{평} \times 0.1\% = 68,940\text{원}$

이를 월평균비용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4인 가구 : $57,450\text{원} / 12\text{개월} = 4,788\text{원}$

5인 가구 : $68,940\text{원} / 12\text{개월} = 5,745\text{원}$

(6) 도배, 장판, 주택수선비

본 실태조사에서 지난 5년간 도배, 장판 등을 포함한 주택수리 경험을 묻은 결과 전체의 61.7%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주거유형별로는 큰 차이가 있어 자가소유자의 경우 71.9%가 주택수리 경험이 있는 반면, 전월세자의 경우 47.9%에 머물렀다. 한편 주택수리경험이 있는 경우 1회 평균 주택

수리비(중위값)는 자가의 경우 평당 62,500원, 전세의 경우 평당 20,000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는 전세가구의 경우 3년에 1회 이사할 때 마다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하는 것으로 설정하며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신규입주시에 베란다새쉬, 커튼 등 큰 공사를 하고 그 후에는 전세가구와 마찬가지로 3년마다 1회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자가가구의 주택수리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4인 가구 : $62,500 \times 15 = 937,500$ 원

5인 가구 : $62,500 \times 18 = 1,125,000$ 원

도배의 경우 전용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도배하는 것으로 하고 도배지는 평당 9,000원으로 하였다. 도배는 직접 하는 것으로 하고 인건비는 계산하지 않았다. 장판은 방면적에 대해 하는 것으로 하고 장판비용은 평당 4,000원으로 하며 역시 인건비는 계산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2-23>와 같다.

<표 2-23> 가구규모별 주택수리비, 도배비, 장판비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모델 평	다세대 6평	다세대 10평	다세대 13평	아파트 15평	아파트 18평
주택수리비(원)	-	-	-	937,500	1,125,000
월환산(240개월)	-	-	-	3,906	4,688
도배면적(평)	4.0	6.7	8.7	10.0	12.0
도배비용(원)	36,000	60,300	78,300	90,000	108,000
장판면적(평)	3.0	5.0	8.0	9.0	12.0
장판비용(원)	12,000	20,000	32,000	36,000	48,000
도배, 장판비(36개월기준 월환산)	1,333	2,231	3,064	3,500	4,333
합 계	1,333	2,231	3,064	7,406	9,021

(7) 가구규모별 주거비의 합계

이상에서 계산된 주거관련비용을 요약하면 <표 2-24>과 같다.

<표 2-24> 가구규모별 주거비의 합계

(단위 : 원)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전세유지비 또는 귀속임대료	115,920	199,200	258,960	310,200	372,240
아파트관리비	-	-	-	10,706	16,250
이사비	2,500	4,250	5,000	292	292
취득세, 등록세	-	-	-	7,781	9,338
재산세	-	-	-	4,788	5,745
주택수리, 도배, 장판비	1,333	2,231	3,064	7,406	9,021
합 계	119,753	205,681	267,024	341,173	412,886

다. 광열비 및 수도비

광열비를 구성하는 항목은 난방비, 취사비, 전기료 등이며 수도비는 상수도료와 하수도료로 구분된다.

1) 난방비

난방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주에너지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본 실태조사에 의하면 다세대주택의 경우 기름보일러 61.3%, 가스보일러 34.2%의 순이며, 아파트의 경우 중앙난방식 40.2%, 가스보일러 36.7%, 기름보일러 15.6%의 순이다. 과거의 노총모형에서는 연탄을 주된 난방원으로 보았으나 본 실태조사 결과 그동안의 가옥구조 변화와 난방방식 변화로 연탄사용가구는 극히 미미한 비중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25> 참조).

<표 2-25> 가옥형태별 주된 난방방식

(단위 : %)

	다세대주택	아파트
중앙난방식	1.7	40.2
개별기름보일러	61.3	15.6
가스보일러	34.2	36.7
연탄보일러	1.4	2.4
연탄온돌	-	1.0
난로, 전기장판	0.5	0.1
지역난방	0.7	3.9
기타	0.2	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1~3인 가구의 경우에는 기름보일러(단독), 아파트에 거주하는 4~5인 가구의 경우에는 중앙난방식을 주된 난방형태로 설정하였다.

기름사용가구의 기름사용량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총조사보고서』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단독기름보일러는 등유를, 그리고 중앙난방식에서는 벙커C유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에너지총조사보고서』에서 가구규모별 평균사용량을 구하면 <표 2-26>와 같다. 1989~92년의 가구규모별 사용량 증가율을 이용하여 1995년 추계치를 구할 수 있다. 여기에 물가조사에서 나타난 1당 단가(등유 280원, 벙커씨유 122원)를 곱하면 가구규모별 월평균 난방비가 구해진다.

<표 2-26> 가구규모별 난방비

(단위 : l)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사용유류	등 유	등 유	등 유	벙커씨유	벙커씨유
단가(원)	280	280	280	122	122
1990년 에너지총조사(1989년사용량)*	47.3	69.4	85.8	132.2	140.2
1993년 에너지총조사(1992년사용량)*	-	71.4	87.7	155.1	176.5
1995년 추정사용량**	50.1	73.5	89.6	182.0	222.2
월별 난방비(원)	14,028	20,580	25,088	22,204	27,108

* 해당 유류를 주에너지원으로 하는 도시지역가구의 연간사용량을 12로 나눈 수치임.

** 1989~92년 사용량의 증가율을 1992년 사용량에 곱한 것임.

2) 취사비

본 실태조사 결과 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주된 취사연료원은 LPG가스 45.6%, 도시가스 36.4%, 석유 15.8%의 순이었고,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도시가스 75.9%, LPG가스 16.8%, 석유 4.8%의 순이었다. 다른 연료원의 비중은 미미하였다(<표 2-27> 참조). 이러한 결과는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주된 취사형태로서 가스를 사용하는가구가 86.8%에 달했던 결과와도 일치한다.

<표 2-27> 가옥형태별 주된 취사연료원

	(단위 : %)	
	다세대주택	아파트
연탄	1.2	0.8
석유	15.8	4.8
프로판가스	45.6	16.8
도시가스	36.4	75.9
전기	0.2	0.2
기타	0.7	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1~3인 가구의 주된 취사원을 LPG가스로, 그리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4~5인 가구의 주된 취사원을 도시가스로 설정하였다.

가스사용량은 『에너지총조사보고서』(1993년)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그런데 가스보일러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전체 가스사용량 중 난방용 사용량과 취사용 사용량의 비율을 알아야 정확한 취사비를 구할 수 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석유보일러 가구는 가스를 대부분 취사용에만 사용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파트의 경우에도 중앙난방식 아파트의 경우 도시가스를 취사용으로만 사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전체 가스사용량 중 취사용 가스사용량의 비율을 구하였다.

$$\begin{aligned}
 \text{다세대주택 : 취사용 가스사용비율} &= \frac{\text{석유보일러가구의 평균 LPG사용량}}{\text{전체가구의 평균 LPG사용량}} \\
 &= 132.0/159.1 \\
 &= 0.83
 \end{aligned}$$

$$\begin{aligned}
 \text{아파트: 취사용 가스사용비율} &= \text{중앙난방식 가구의 평균 도시가스사용량} / \\
 &\quad \text{전체가구의 평균 도시가스사용량} \\
 &= 174.4 / 758.4 \\
 &= 0.23
 \end{aligned}$$

<표 2-28> 가구규모별 가스사용량

(단위 : kg, m³)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사용가스	LPG가스	LPG가스	LPG가스	도시가스	도시가스
평균사용량(1992년)*	113.4	114.6	145.2	705.5	857.7
조정계수	0.83	0.83	0.83	0.23	0.23
취사용개스사용량(1992년)	94.1	95.1	120.5	162.3	197.3
1989~92 증가율(%)	-3.6	-3.6	-3.6	10.2	10.2
취사용가스사용량(1995년)**	90.7	91.7	116.2	178.5	217.0
월환산사용량(1995년)	7.6kg	7.6kg	9.7kg	14.9m ³	18.1m ³

* 해당 가스를 주에너지원으로 하는 도시지역가구의 연간사용량임. 단 단신 가구의 경우 1989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 1989~92년 사용량의 증가율을 1992년 사용량에 곱한 것임.

이 조정계수를 이용하여 1992년 현재의 가구규모별 연간 취사용 가스사용량을 구한 다음 여기에 1989~92년 가스사용량증가율을 곱하면 1995년의 연간추정사용량이 얻어진다. 이를 12로 나눈 것이 월평균 사용량이다. 이를 표로 표시하면 <표 2-28>과 같다.

한편 가스요금은 LPG가스의 경우 물가조사자료에 나타난 kg당 510원을 사용하였고 도시가스의 경우 현행 도시가스요금기준을 적용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6m³ 까지 기본요금 2,140원
- 6~12m³ 까지 1m³ 당 329.57원
- 12m³ 이상 1m³ 당 251.43원

이상의 요금에 부가가치세 10%가 가산된다.

따라서 가구규모별 취사비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1인 가구 : 510원×7.6kg = 3,876원

2인 가구 : 510원×7.6kg = 3,876원

3인 가구 : 510원×9.7kg = 4,947원

4인 가구 : $(2,140\text{원} + 6\text{m}^3 \times 329.57\text{원} + 2.9\text{m}^3 \times 251.43\text{원}) \times 1.1 = 5,331\text{원}$
 5인 가구 : $(2,140\text{원} + 6\text{m}^3 \times 329.57\text{원} + 6.1\text{m}^3 \times 251.43\text{원}) \times 1.1 = 6,216\text{원}$

3) 전기요금

1990년 『에너지총조사보고서』 상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전력사용량(1989년 사용량)과 1993년 『에너지총조사보고서』 상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전력사용량(1992년 사용량)으로부터 가구원수별 월전력사용량의 증가배수를 구한 후, 이 증가배수에 1992년 사용량을 곱하여 1995년 가구원수별 월 전력사용량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2-29>와 같다.

한편 전기요금은 호당 기본요금과 사용량에 따른 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양쪽 모두 누진제로 되어 있다.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표는 <표 2-30>과 같다.

<표 2-29> 가구규모별 전력사용량

(단위 : kwh)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90년에너지총조사(89년사용량)	1,284.1	1,314.9	1,537.2	1,717.1	1,921.9
93년에너지총조사(92년사용량)	-	1,639.4	1,879.7	2,031.6	2,178.3
95년 추정사용량	1,757.8	2,044.0	2,298.5	2,403.7	2,468.9
월환산	146.5	170.3	191.5	200.3	205.7

* 전체 평균 전력사용량 증가율을 적용, 1995년치를 추정하였음.

<표 2-30> 주택용 전력요금(1995. 5. 1. 부터)

(단위 : kwh, 원)

사용량	기본요금(호당)	전력량 요금	
100 kwh 이하	338	50kwh 이하	30.70
		51~100	72.50
101~200 kwh	740	101~200	108.90
201~300 kwh	1,310	201~300	157.50
310~400 kwh	2,620	301~400	227.70
401~500 kwh	4,210	401~500	257.00
500 kwh 이상	7,490	500kwh 이상	405.10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가산된다.

따라서 가구규모별 전기요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인\ 가구 : (740원 + 50kwh \times 30.70원 + 50kwh \times 72.50원 + 46.5kwh \times 108.90원) \times 1.1 = 12,060원$$

$$2인\ 가구 : (740원 + 50kwh \times 30.70원 + 50kwh \times 72.50원 + 70.3kwh \times 108.90원) \times 1.1 = 14,911원$$

$$3인\ 가구 : (740원 + 50kwh \times 30.70원 + 50kwh \times 72.50원 + 91.5kwh \times 108.90원) \times 1.1 = 17,451원$$

$$4인\ 가구 : (740원 + 50kwh \times 30.70원 + 50kwh \times 72.50원 + 100.0kwh \times 108.90원) \times 1.1 = 18,469원$$

$$5인\ 가구 : (1,310원 + 50kwh \times 30.70원 + 50kwh \times 72.50원 + 100.0kwh \times 108.90원 + 5.7kwh \times 157.50원) \times 1.1 = 20,084원$$

4) 수도요금

본실태조사에서 월평균 수도요금의 중위값은 1인 가구 5,300원, 2인 가구 5,700원, 3인 가구 6,400원, 4인 가구 8,400원, 5인 가구 8,700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물량기준으로 환산하기 위해 현행 수도요금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사용량을 구하여야 한다.

1995년 10월 현재 서울시 가정용 상하수도요금기준은 <표 2-31>과 같다.

<표 2-31> 서울시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95. 10월 현재)

(단위 : m³, 원)

상 수 도		하 수 도	
기본요금	10m ³ 까지 1,090원	기본요금	15m ³ 까지 380원
초과요금	11~30m ³ m ³ 당 160원	초과요금	16~30m ³ m ³ 당 46원
	31~50m ³ m ³ 당 320원		31~50m ³ m ³ 당 127원
	51m ³ 이상 m ³ 당 430원		51m ³ 이상 m ³ 당 254원

따라서 가구규모별 월 상수도 사용량과 상수도요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1인 가구 : $1,090\text{원} + 20\text{m}^3 \times 160\text{원} + 3\text{m}^3 \times 320\text{원} = 5,250\text{원}$ (사용량 33m^3)
- 2인 가구 : $1,090\text{원} + 20\text{m}^3 \times 160\text{원} + 5\text{m}^3 \times 320\text{원} = 5,890\text{원}$ (사용량 35m^3)
- 3인 가구 : $1,090\text{원} + 20\text{m}^3 \times 160\text{원} + 7\text{m}^3 \times 320\text{원} = 6,530\text{원}$ (사용량 37m^3)
- 4인 가구 : $1,090\text{원} + 20\text{m}^3 \times 160\text{원} + 13\text{m}^3 \times 320\text{원} = 8,450\text{원}$ (사용량 43m^3)
- 5인 가구 : $1,090\text{원} + 20\text{m}^3 \times 160\text{원} + 14\text{m}^3 \times 320\text{원} = 8,770\text{원}$ (사용량 44m^3)

또 가구규모별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사용량을 그대로 적용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1인 가구 : $380\text{원} + 15\text{m}^3 \times 46\text{원} + 3\text{m}^3 \times 127\text{원} = 1,451\text{원}$ (사용량 33m^3)
- 2인 가구 : $380\text{원} + 15\text{m}^3 \times 46\text{원} + 5\text{m}^3 \times 127\text{원} = 1,705\text{원}$ (사용량 35m^3)
- 3인 가구 : $380\text{원} + 15\text{m}^3 \times 46\text{원} + 7\text{m}^3 \times 127\text{원} = 1,959\text{원}$ (사용량 37m^3)
- 4인 가구 : $380\text{원} + 15\text{m}^3 \times 46\text{원} + 13\text{m}^3 \times 127\text{원} = 2,721\text{원}$ (사용량 43m^3)
- 5인 가구 : $380\text{원} + 15\text{m}^3 \times 46\text{원} + 14\text{m}^3 \times 127\text{원} = 2,848\text{원}$ (사용량 44m^3)

5) 가구규모별 광열비와 수도비의 합계

이상의 광열비 및 수도비를 합계하면 다음의 <표 2-32>과 같다.

<표 2-32> 가구규모별 광열비 및 수도비의 합계

(단위 : 원)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난방비	14,028	20,580	25,088	22,204	27,108
취사비	3,876	3,876	4,947	5,331	6,216
전기료	12,060	14,911	17,451	18,469	20,084
상수도요금	5,250	5,890	6,530	8,450	8,770
하수도요금	1,451	1,705	1,959	2,721	2,848
합 계	36,665	46,962	55,975	57,175	65,026

라. 가구·가사용품비

가구·가사용품은 크게 가구, 가전제품, 주방용품, 가정잡화 등으로 나뉘어진다. 이 가구·가사용품비의 산정에 있어 대두되는 문제는 구체적인 품목의 구성, 소요수량 및 가격의 결정, 내구년수의 설정 등이다.

먼저 품목의 선정에 있어서는 근로자 가구의 가구·가전제품 보유형태가 생애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여, 각 가구규모별 가구·가전제품 보유율을 조사한 다음, 가구규모별로 과반수의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품목으로서 현재 우리 나라의 전체적인 생활수준에 비추어 볼 때 생활필수품이라고 볼 수 있는 품목만을 선정하였는데 이때 가구규모별 가족구성, 주거유형 및 주택 내부구조도 감안하였다.

한편 가구·가전제품은 오랜 시간을 두고 사용하며 그 수명이 서서히 소멸하므로 내구년수를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의 노총모형에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구년수를 참조하면서 그것보다 좀더 길게 잡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존 모형의 내구년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1) 가 구

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근로자 가구의 가구보유실태는 <표 2-33>과 같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준가구인 4인 가구의 경우 소파, 응접세트 등 극히 일부 품목만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가구에서 50% 이상의 보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옷장, 이불장 등 주요 가구의 경우 90%가 넘는 높은 보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설정된 주택의 수납공간이 매우 협소하다는 점, 아파트의 경우 싱크대, TV받침 등이 따로 필요없다는 점, 그리고 약 3% 정도의 무응답자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품목을 최소화하였다.

옷장과 이불장은 장농으로 통합하였으며, 장식장과 그릇장도 찬장으로 통합하였다. 아파트의 경우 싱크대, TV받침을 제외하였고, 다세대주택의 경우 식탁 대신 밥상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 단신 가구의 경우 소형장농, 소형

찬장, 밥상, TV받침 외에는 일체 가구가 없는 것으로 하였다.

<표 2-33> 가구규모별 가구보유율

(단위 : %)

품 목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전 체
옷 장	84	95	98	97	98	97
이불장	68	90	97	96	96	95
화장대	40	77	79	74	75	74
서랍장	55	80	86	85	83	83
그릇장	51	68	77	76	74	74
장식장	36	59	58	50	49	52
싱크대	67	93	95	96	98	95
TV받침	76	77	77	76	79	77
식 탁 의 자	32	55	65	69	72	66
침 대	57	71	71	77	80	75
소 파	35	61	53	51	49	50
응 접 세트	20	27	29	35	38	34
책 장	11	18	20	21	22	21
책 상	52	59	64	73	77	71
책 상	55	58	57	81	87	76

가구의 소요량의 경우 다른 가구는 모두 1개씩으로 하되 4~5인 가구의 경우 자녀를 위한 소형장농 1개와 책상 1개를 추가했고, 의자의 경우 식탁의자 4개(5인 가구 5개)와 책상 1개당 의자 1개씩 해서 2~3인 가구 1개, 4인 가구 6개, 5인 가구 7개로 설정하였다.

책상위에는 책꽂이가 하나씩 있는 것으로 하였다.

밥상, TV받침 외의 가구의 내구년수는 종전 모형대로 10년으로 통일하였다. 설정된 가구의 품목, 단가, 내구년수, 소요량 및 가구규모별 비용은 <표 2-34>와 같다.

<표 2-34> 가구의 내구년수·소요량 및 월비용

(단위 : 원)

품 목	규 격	단 가	내구 년수	소요량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장 농	목제 8자	923,000	10년	1	-	7,692	7,692	7,692	7,692
소형장농	목제 3자	288,000	10년	1	2,400	-	-	2,400	2,400
화장대	목제 3자	200,000	10년	1	-	1,667	1,667	1,667	1,667
서랍장	목제 3단	154,000	10년	1	-	1,283	1,283	1,283	1,283
찬 장	목제 2자	180,000	10년	1	-	1,500	1,500	1,500	1,500
소형찬장		57,000	6년	1	792	-	-	-	-
TV받침	목제	55,000	6년	1	764	764	764	-	-
책 장	목제 3자	105,000	10년	1	-	875	875	875	875
책 상	목제 3자	180,000	10년	1~2	-	1,500	1,500	3,000	3,000
책꽂이	소형	27,000	10년	1	-	225	225	450	450
식 탁	목제 4인용	190,000	10년	1	-	-	-	1,583	1,583
밥 상		29,000	10년	1	403	403	403	-	-
의 자	목제 등받침	38,000	10년	1~7	-	317	317	1,902	2,219
합 계					4,359	16,226	16,226	22,352	22,669

2) 가전제품

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근로자가구의 가전제품 보유율은 <표 2-35>과 같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전제품 역시 비디오카메라, 에어컨, 전기난로, 토스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근로자 가구에서 매우 높은 보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컬러TV, VTR,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은 거의 100%에 가까운 보급율을 보이고 있다.

중전의 노총모형과 비교해보면 VTR, 전자레인지, 믹서·쥬서, 전축, 진공청소기, 커피포트 등의 보급률이 크게 늘어난 반면, 그 동안의 난방형태의 변화로 전기난로는 보유율이 크게 떨어졌다.

내구년수의 경우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은 중전 모형과 마찬가지로 10년으로 하고, 전기밥솥, 라디오, 커피포트 등은 7년으로 하였다.

단신 가구의 경우에는 보유율이 50% 이상인 것만 선정하였다.

<표 2-35> 가구규모별 가전제품보유율

(단위 : %)

품 목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전 체
컬러TV	88	99	99	99	99	99
VTR	64	90	91	90	86	88
카세트라디오	76	79	82	84	87	84
비디오카메라	1	12	12	10	9	10
전축(오디오)	47	74	73	70	71	70
냉장고	83	99	99	99	99	98
세탁기	57	92	96	97	98	95
에어컨	4	12	8	10	9	9
선풍기	88	95	96	96	98	96
진공청소기	31	63	66	73	73	69
전자레인지	31	66	68	65	63	64
캐스레인지	64	88	87	85	82	83
전기밥솥	76	95	97	91	92	92
믹서·쥬서	37	68	77	79	79	76
전기다리미	84	97	99	99	99	98
전기스탠드	39	63	63	57	62	59
전기난로	13	12	15	12	13	13
커피포트	45	51	57	58	63	58
토스터	17	33	22	21	22	22
헤어드라이어	83	95	98	96	95	95

가전제품의 품목, 단가, 내구년수, 소요량 및 가구규모별 비용은 <표 2-36>과 같다.

<표 2-36> 가전제품의 품목, 내구년수, 소요량 및 월비용

(단위 : 원)

품 목	규 격	단 가	내구 년수	소요량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컬러TV	20인치	263,000	10년	1	-	2,192	2,192	2,192	2,192
	14인치	175,000	10년	1	1,458	-	-	-	-
냉장고	350리터	516,000	10년	1	-	4,300	4,300	4,300	4,300
	120리터	206,000	10년	1	1,717	-	-	-	-
VTR	보급형	415,000	10년	1	3,458	3,458	3,458	3,458	3,458
카세트라디오	중형	73,000	7년	1	869	869	869	869	869
전축(오디오)	CD플레이 어 포함	543,000	10년	1	-	4,525	4,525	4,525	4,525
세탁기	5.5kg	461,000	10년	1	-	3,842	3,842	3,842	3,842
선풍기	가정용	47,000	7년	1	560	560	560	560	560
전기밥솥	5인용	44,000	7년	1	-	-	524	524	524
	3인용	40,000	7년	1	476	476	-	-	-
전자레인지		183,000	10년	1	-	1,525	1,525	1,525	1,525
가스레인지	2구	76,000	10년	1	633	633	633	633	633
믹서·주서		99,000	7년	1	-	1,179	1,179	1,179	1,179
진공청소기		133,000	10년	1	-	1,108	1,108	1,108	1,108
커피포트		22,000	7년	1	-	-	262	262	262
전기다리미	450W	28,000	7년	1	333	333	333	333	333
헤어드라이어	500W	16,000	7년	1	190	190	190	190	190
전기스탠드	바이오 형광등	56,000	7년	1~2	-	667	667	1,334	1,334
합 계					9,694	25,857	26,167	26,834	26,834

3) 기타 내구소비재

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근로자 가구의 기타 내구소비재 보유율은 <표 2-37>에서 보는 바와 같다.

기타 내구소비재의 경우 전화와 카메라를 제외하면 아직 보급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 승용차의 경우 전체의 절반 가까운 가구가 소유하고 있으며, 특히 3~4인 가구에서는 절반 이상이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약 5%의 무응답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승용차가 아직 필수품이 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 품목선정에서 제외하였다.

1~2인 가구에서는 뽀뽀의 보급률이 높지만 이것 역시 필수품이 아니라고

판단, 품목선정에서 제외하였다.

전화기의 내구년수는 5년으로 하고 전화가설비는 30년으로 쪼개었다. 1995년 현재 일반전화 10급지(서울 등 대도시)의 전화가설비는 설비비 242,000원과 장치비 8,000원을 합쳐 250,000원이다.

카메라의 내구년수는 다른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10년으로 하였다.

<표 2-37> 가구규모별 기타 내구소비재 보유율

(단위 : %)

품 목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전 체
승용차	21	44	53	51	49	49
오토바이	4	5	4	5	7	5
자전거	13	21	27	38	37	35
피아노	4	8	13	23	25	20
전화	83	99	99	98	99	98
삐삐	55	54	37	38	41	42
휴대폰	3	6	4	4	4	4
컴퓨터	17	29	26	32	41	32
카메라	65	78	84	88	86	85
정수기	5	7	8	9	11	10
석유곤로	1	2	3	3	3	3
석유난로	1	6	6	9	10	9
개스난로	3	5	6	7	5	6

기타 내구소비재의 품목, 단가, 내구년수, 소요량 및 가구규모별 비용은 <표 2-38>와 같다.

<표 2-38> 가구규모별 기타 내구소비재의 품목, 내구년수, 소요량 및 월비용

(단위 : 원)

품 목	규 격	단 가	내 구 년 수	소요량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카메라	자동노출	206,000	10년	1	1,717	1,717	1,717	1,717	1,717
전화기	무선	123,000	5년	1	2,050	2,050	2,050	2,050	2,050
전화가설 신청금		250,000	30년	1	694	694	694	694	694
합 계					4,461	4,461	4,461	4,461	4,461

4) 주방용품

<표 2-39> 주방용품의 품목, 내구년수, 소요량 및 월비

(단위 : 원)

품 목	규 격	단 가	내구 년수	소요량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밥그릇	사 기	2,600	3년	1~9	72	288	432	576	648
국그릇	사 기	2,700	3년	1~9	75	300	450	600	675
수저	스테인레스	1,700	5년	1~9	28	112	168	224	252
컵	유 리	1,000	3년	2~10	56	112	168	224	280
접시	대, 사기	3,700	3년	1~5	103	206	309	412	515
	중	2,400	3년	1~5	67	134	201	268	335
	소	1,800	3년	1~5	50	100	150	200	250
냄비	대, 스테인레스	29,000	5년	1	-	483	483	483	483
	중	22,000	5년	1	-	367	367	367	367
	소	16,000	5년	1~2	267	267	267	534	534
주전자	중, 스테인레스	16,000	5년	1	267	267	267	267	267
프라이팬	코팅 30Cm	12,000	5년	1	200	200	200	200	200
보온도시락통		21,000	3년	1~3	-	-	-	583	1,749
보온물통		15,000	3년	1~3	-	-	-	417	1,251
커피잔세트	6인용	26,000	3년	1	361	722	722	722	722
쌀통	다용도	60,000	10년	1	-	500	500	500	500
쟁반	플라스틱	2,700	5년	1	45	45	45	45	45
과일칼		1,400	5년	1	23	23	23	23	23
부엌칼		5,700	5년	1	95	95	95	95	95
조미료통		1,100	5년	1	18	18	18	18	18
김치통	대, 플라스틱	3,500	5년	1	29	29	29	29	29
도마		4,000	5년	1	67	67	67	67	67
바가지		700	5년	1	12	12	12	12	12
양동이		3,900	5년	1	65	65	65	65	65
국자		2,900	5년	1	48	48	48	48	48
소쿠리	플라스틱	1,700	5년	1	-	28	28	28	28
뒤집개	플라스틱	2,900	5년	1	-	48	48	48	48
반찬통	플라스틱	1,400	5년	3~7	69	92	115	138	161
설거지통	플라스틱	1,900	5년	1	-	32	32	32	32
식기용세제	500g	1,000	3개월	1	167	333	333	333	333
수세미		400	1개월	1	200	400	400	400	400
400행 주		600	2개월	1~2	300	600	600	600	600
고무장갑		900	3개월	1	-	300	300	300	300
합 계					2,787	6,317	7,266	9,182	11,656

밥그릇, 국그릇, 수저 등은 가족 1인당 1개씩 외에 손님용으로 2~4개를 보유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컵은 1인 2개, 접시는 대, 중, 소 각각 1인 1개,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품목은 1개로 하되 일부 품목의 경우 4~5인 가구에서 1개씩 추가하였다. 보온도시락통, 보온물통 등은 국민학교 고학년 이상의 학생수를 감안하였다.

주방용품의 품목, 내구년수, 소요량 및 월비용은 <표 2-39>와 같다.

내구년수는 사기, 유리 등 깨지기 쉬운 재료로 만든 주방용품의 경우 3년, 스테인레스, 플라스틱 등의 재료로 만든 주방용품의 경우 5년으로 하였고 쌀통은 10년으로 하였다. 보온도시락통과 보온물통은 중고생 재학기간을 고려하여 3년으로 하였다. 주방용 소모품의 경우 식기용세제는 3개월, 수세미는 1개월, 행주는 2개월, 고무장갑은 3개월로 내구년수를 정하였는데 단신 가구의 경우 내구년수를 두배로 설정하였다.

5) 기타 가사용품

기타 가사용품은 이불, 요, 담요, 베개 등 침구류, 빨래판, 빨래건조대 등 세탁도구, 방빗자루, 휴지통 등 청소용품, 바늘, 실 등 바느질용품, 손목시계, 우산, 가방 등 신변잡화 및 기타 다양한 가정잡화들로 구성된다. 기타 가사용품은 품목이 매우 많고 다양하므로 전부 포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실태조사와 기존의 다른 연구들을 참고하여 근로자가구가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생필품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소요량과 내구년수 역시 실태조사 결과와 기존 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설정하였다.

벽시계는 가구당 하나, 탁상시계는 1~3인 가구에 1개, 4~5인 가구에 2개가 필요하며 손목시계는 중학생 이상에 1인당 1개씩 필요한 것으로 하였다. 벽시계의 내구년수는 10년, 탁상시계와 손목시계의 내구년수는 5년으로 하였다.

배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편의상 1.5V 짜리를 1개월에 1개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표 2-40> 가구규모별 기타 가사용품의 품목, 내구년수, 소요량 및 월비용
(단위 : 원)

품 목	규 격	단 가	내구년수	소요량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벽시계		30,000	10년	1	-	250	250	250	250
탁상시계		18,000	5년	1~2	300	300	300	600	600
손목시계	남자용	56,000	10년	1	467	467	467	467	467
	여자용	53,000	10년	1	-	442	442	442	442
	학생용	31,000	5년	3	-	-	-	-	1,550
전자계산기	휴대용	12,000	5년	1	200	200	200	200	200
배터리	1.5V	700	1개월	1	350	700	700	700	700
형광등	40W,중	1,000	2개월	2~7	1,000	2,000	2,500	3,000	3,500
백열등	60W	400	2개월	1	200	200	200	200	200
우산		6,000	3년	1~5	167	334	501	668	835
양산		15,000	3년	1	-	417	417	417	417
가방	대형	27,000	5년	1	450	450	450	450	450
	소형	25,000	5년	1	417	417	417	417	417
대야	플라스틱	1,300	5년	1~2	22	22	22	44	44
방빗자루		2,700	5년	1~2	45	45	45	90	90
쓰레받기		1,100	5년	1~2	18	18	18	36	36
휴지통	플라스틱	3,800	5년	1~3	63	126	126	189	189
빨래판		3,300	5년	1	-	55	55	55	55
빨래건조대	플라스틱	13,000	5년	1	-	217	217	217	217
빨래담는 통	플라스틱	4,100	5년	1	-	67	67	67	67
빨래집게	1봉(10개)	600	1년	1	-	50	50	50	50
다림질판		6,500	5년	1	-	108	108	108	108
바늘	1세트	600	5년	1	-	10	10	10	10
실	1세트	700	1년	1	-	58	58	58	58
바느질통		16,000	10년	1	-	133	133	133	133
가위		1,700	5년	1	28	28	28	28	28
옷걸이	플라스틱	400	5년	2~10	14	28	42	56	70
이불	겨울용	67,000	10년	1~3	558	558	1,116	1,674	1,674
	봄가을용	61,000	10년	1~3	508	508	1,016	1,524	1,524
담요		41,000	10년	1~3	342	342	684	1,026	1,026
베개		9,000	5년	1~5	150	300	450	600	750
요		43,000	10년	1~3	358	358	716	1,074	1,074
방석		5,000	5년	2~8	166	332	498	664	664
성냥	대	700	1년	1	58	58	58	58	58
비누통		1,000	5년	1	17	17	17	17	17
벽거울	중	16,000	5년	1~2	267	267	267	534	534
도장	빨도장	6,000	10년	1~2	50	100	100	100	100
앨범		18,000	3년	1~3	500	500	1,000	1,500	1,500
공구세트		10,000	10년	1	-	83	83	83	83
합 계					6,715	10,565	13,828	17,806	20,187

형광등은 방 1개당 1개씩과 거실, 부엌, 스탠드용으로 하나씩이 각각 필요하다고 보았고 백열등은 화장실에 1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형광등은 단신 가구 2개(방, 부엌), 2인 가구 4개(방, 거실, 부엌, 책상스탠드), 3인 가구 5개(방2, 거실, 부엌, 책상스탠드), 4인 가구 6개(방2, 거실, 부엌, 책상2), 5인 가구는 7개(방3, 거실, 부엌, 책상스탠드 2)가 필요하며 백열등은 모두 하나씩 필요하다. 형광등과 백열등의 수명은 2개월로 보았다.

우산은 1인당 하나씩, 양산은 주부에게만 필요한 것으로 하였고 내구년수는 모두 3년으로 하였다.

이불, 요, 담요 등은 부부 1채, 동성자녀 1채씩 필요한 것으로 하였고 베개는 1인당 하나씩, 방석은 1인 2, 2인 4, 3인 6, 4~5인 8개가 필요한 것으로 하였다. 침구류의 내구년수는 10년으로 하였다.

그밖에 여러 가지 청소용구, 신변잡화, 가정잡화등이 포함된다.

기타 가사용품의 품목, 단가, 내구년수, 소요량 및 가구규모별 비용은 <표 2-40>과 같다.

6) 가구/가사용품비의 합계

지금까지 산출된 가구규모별 가구/가사용품비를 정리하면 <표 2-41>과 같다.

<표 2-41> 가구규모별 가구·가사용품비의 합계

(단위 : 원)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가구	4,359	16,226	16,226	22,352	22,669
가전제품	9,694	25,857	26,167	26,834	26,834
기타내구소비재	4,461	4,461	4,461	4,461	4,461
주방용품	2,787	6,317	7,266	9,182	11,656
기타가사용품	6,715	10,565	13,828	17,806	20,187
합 계	28,016	63,426	67,948	80,635	85,807

마. 피복·신발비

피복은 인간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이면서도 동시에 그에 대한 욕구의 사회문화적 성격도 크다는 특징을 지닌다. 의복에 대한 수요는 사회 전체의 경제수준, 의생활관습, 유행의 변화 등 거시적 요인과 의복착용자의 성별, 연령, 직업, 소득수준, 기호 등 개인특성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므로 그 품목구성 및 착용년수에 대해 연구자간의 상당한 편차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피복비에 관한 품목구성에 대해 대체로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곧 우리 사회의 표준적 피복수준이 무엇인가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뜻한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자의 실태』, 1992, 90쪽).

본 연구에서는 의복착용에 관한 실태조사와 기존의 여러 연구, 가정학교과서 등을 참고로 하여 품목구성을 하였다. 단 품목의 성격, 특성을 고찰하여 연령, 성별에 따른 표준적 수준을 확보하되 유행에 좌우되지 않는 기본적인 것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내구년수는 의복구입빈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제양모사무국 자료, 기존 연구 등을 참조하여 설정하였다. 단 이때 의복의 자연마멸에 소요되는 기간 뿐만 아니라 남편의 경우 그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였고, 주부의 경우 어느 정도 유행을 고려하였으며, 자녀의 경우 중고등학교 3년간 재학년한을 고려하여 품목을 선정하였다.

한편 소요량의 경우 수납장소가 불충분한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수량으로 설정하고 그 대신 내구년수를 다소 짧게 잡아 이를 보상하였다. 소요량과 내구년수는 서로 상반관계를 가지므로 이러한 방법이 타당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1) 성인남성

종전의 노총모형에서는 국제양모사무국 한국사무실에서 1990년에 조사한 의류구매실태조사 자료를 기초로 의복의 내구년수를 설정하였으나 이후 이 조사

<표 2-42> 성인남성의 의류구입빈도(중위값) (단위 : 벌/년)

품 목	빈 도	품 목	빈 도	품 목	빈 도
신사복	0.5	스웨타	1.0	운동화	1.0
코 트	0.25	겨울내의	1.0	혁 대	0.5
와이셔츠	2.0	팬 티	5.0	슬리퍼	1.0
남방셔츠	2.0	런 닝	5.0	지 갑	0.3
티셔츠	2.0	넥타이	1.0	장 갑	0.5
바 지	2.0	양 말	10.0	손수건	2.0
잠 바	0.5	구 두	1.0	잠 옷	0.5

<표 2-43> 피복/신발비의 품목, 내구년수, 소요량 및 월비용(성인남성) (단위 : 원)

품 목	규 격	단 가	내구 년수	소요량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신사복	봄가을용	145,000	4년	1	3,021	3,021	3,021	3,021	3,021
	겨울용	170,000	4년	1	3,542	3,542	3,542	3,542	3,542
코트	겨울용	125,000	5년	1	2,083	2,083	2,083	2,083	2,083
잠바	봄가을용	41,000	3년	1	1,139	1,139	1,139	1,139	1,139
	겨울용	58,000	3년	1	1,611	1,611	1,611	1,611	1,611
스웨타		27,000	3년	1	750	750	750	750	750
와이셔츠	긴팔	21,000	6개월	1	3,500	3,500	3,500	3,500	3,500
남방셔츠	긴팔	25,000	1년	1	2,083	2,083	2,083	2,083	2,083
티셔츠	긴팔	30,000	1년	1	2,500	2,500	2,500	2,500	2,500
바지	봄가을용	30,000	1년	1	2,500	2,500	2,500	2,500	2,500
	겨울용	33,000	1년	1	2,750	2,750	2,750	2,750	2,750
겨울내의		18,000	1년	1	1,500	1,500	1,500	1,500	1,500
팬티	백색	4,000	3개월	1	1,333	1,333	1,333	1,333	1,333
런닝	백색	3,000	3개월	1	1,000	1,000	1,000	1,000	1,000
양말	봄가을용	2,500	3개월	1	833	833	833	833	833
손수건		4,000	6개월	1	667	667	667	667	667
넥타이		14,000	1년	1	1,167	1,167	1,167	1,167	1,167
잠옷		44,000	3년	1	1,222	1,222	1,222	1,222	1,222
운동복		40,000	3년	1	1,111	1,111	1,111	1,111	1,111
구두		32,000	1년	1	2,667	2,667	2,667	2,667	2,667
운동화		20,000	1년	1	1,667	1,667	1,667	1,667	1,667
슬리퍼		5,400	1년	1	450	450	450	450	450
혁대		14,000	3년	1	389	389	389	389	389
지갑		16,000	3년	1	444	444	444	444	444
장갑	가죽	20,000	3년	1	556	556	556	556	556
합 계					40,485	40,485	40,485	40,485	40,485

의 발표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본 실태조사에서 근로자가구의 의류구입빈도를 조사하였다. 그중 성인남성의 의류구입빈도(중위값)는 <표 2-42>과 같다.

그런데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무응답률이 높으며, 무응답자의 경우 응답자에 비해 의류구입빈도가 낮을 가능성이 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보다 내구년수를 길게 잡았다. 즉 신사복은 4년에 1벌, 코트는 5년에 1벌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였다. 남방셔츠, 티셔츠, 바지 등은 1년에 1벌, 잠바, 스웨타는 3년에 1벌, 팬티, 런닝, 양말 등은 3개월에 1벌, 구두, 운동화, 슬리퍼 등은 1년에 1켤레, 혁대, 지갑, 장갑 등은 3년에 1개씩 구입하는 것으로 하였다.

성인남성의 의복·신발비에 대한 품목, 단가, 내구년수, 소요량 및 월환산비용은 <표 2-43>과 같다.

2) 성인여성

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성인여성의 의류구입빈도는 <표 2-44>와 같다.

역시 성인남성과 마찬가지로 무응답자를 고려하여 내구년수는 실태조사 결과보다 길게 잡았다. 숙녀복은 4년에 1벌, 코트는 5년에 1벌, 잠바, 스웨타 등은 3년에 1벌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였다. 바지, 스커트, 블라우스, 티셔츠, 겨울내의 등은 모두 1년에 1벌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였다. 런닝, 팬티, 양말은 3개

<표 2-44> 성인여성의 의류구입빈도

(단위 : 벌/년)

품 목	빈 도	품 목	빈 도	품 목	빈 도
숙녀복	0.5	잠 바	0.5	샌 들	1.0
코 트	0.3	겨울내의	1.0	슬리퍼	1.0
한 복	0.2	팬 티	8.0	운동화	1.0
바 지	2.0	런 닝	5.0	지 갑	0.5
치 마	2.0	브래지어	3.0	장 갑	0.5
블라우스	1.0	스타킹	20.0	손수건	2.0
남방셔츠	1.0	속치마	2.0	핸드백	0.5
티셔츠	2.0	양 말	6.0	스카프	1.0
스웨타	1.0	구 두	1.0	목도리	0.5

월에 1점으로 하였고 구두, 운동화, 샌들 등은 1년에 1켤레, 지갑, 장갑, 핸드백은 3년에 1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였다. 성인여성의 피복·신발비의 품목, 내구년수, 소요량 및 월비용은 <표 2-45>과 같다.

<표 2-45> 피복·신발비의 품목, 내구년수, 소요량 및 월비용(성인여성)

(단위 : 원)

품 목	규 격	단 가	내구 년수	소요량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숙녀복	봄가을용	120,000	4년	1	-	2,500	2,500	2,500	2,500
	겨울용	140,000	4년	1	-	2,917	2,917	2,917	2,917
코트	겨울용	160,000	5년	1	-	2,667	2,667	2,667	2,667
한복		230,000	6년	1	-	3,194	3,194	3,194	3,194
잠바	봄가을용	36,000	3년	1	-	1,000	1,000	1,000	1,000
	겨울용	73,000	3년	1	-	2,028	2,028	2,028	2,028
스웨타		32,000	3년	1	-	889	889	889	889
티셔츠		20,000	1년	1	-	1,667	1,667	1,667	1,667
블라우스		37,000	1년	1	-	3,083	3,083	3,083	3,083
바지	봄가을용	25,000	1년	1	-	2,083	2,083	2,083	2,083
	겨울용	28,000	1년	1	-	2,333	2,333	2,333	2,333
스커트	봄가을용	40,000	1년	1	-	3,333	3,333	3,333	3,333
	겨울용	40,000	1년	1	-	3,333	3,333	3,333	3,333
겨울내의		18,000	1년	1	-	1,500	1,500	1,500	1,500
팬티		3,000	3개월	1	-	1,000	1,000	1,000	1,000
런닝		3,900	3개월	1	-	1,300	1,300	1,300	1,300
브래지어		18,000	6개월	1	-	3,000	3,000	3,000	3,000
속치마		22,000	6개월	1	-	3,667	3,667	3,667	3,667
스타킹	밴드	900	15일	1	-	1,800	1,800	1,800	1,800
양말		2,300	3개월	1	-	767	767	767	767
손수건		3,000	6개월	1	-	500	500	500	500
잠옷		46,000	3년	1	-	1,278	1,278	1,278	1,278
구두		33,000	1년	1	-	2,750	2,750	2,750	2,750
운동화		14,000	1년	1	-	1,167	1,167	1,167	1,167
슬리퍼		5,300	1년	1	-	442	442	442	442
샌들		21,000	1년	1	-	1,750	1,750	1,750	1,750
지갑		23,000	3년	1	-	639	639	639	639
장갑	가죽	20,000	3년	1	-	556	556	556	556
핸드백		19,000	3년	1	-	528	528	528	528
합 계					-	53,671	53,671	53,671	53,671

3) 자녀(남학생)

<표 2-46> 피복·신발비의 품목, 내구년수, 소요량 및 월비용(남자자녀)

(단위 : 원)

품목	규격	단가	내구년수	소요량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남자 자녀수					-	-	유치 원생	국민 학생	고등학생 1, 중학생 1
잠바	봄가을용	34,000	2년	1~2	-	-	1,417	1,417	2,833
	겨울용	39,000	2년	1~2	-	-	1,625	1,625	3,250
스웨터		22,000	3년	1~2	-	-	611	611	1,222
남방셔츠		17,000	1년	1~2	-	-	1,417	1,417	2,833
티셔츠		19,000	1년	1~2	-	-	1,583	1,583	3,166
바지	봄가을용	18,000	1년	1~2	-	-	1,500	1,500	3,000
	겨울용	19,000	1년	1~2	-	-	1,583	1,583	3,166
반바지		10,000	1년	1	-	-	833	833	-
겨울내의		14,000	1년	1~2	-	-	1,167	1,167	2,333
팬티		2,500	3개월	1~2	-	-	833	833	1,667
런닝		2,800	3개월	1~2	-	-	933	933	1,867
양말		2,500	3개월	1~2	-	-	833	833	1,666
손수건		2,900	6개월	1~2	-	-	483	483	967
교복	하복	46,000	3년	2	-	-	-	-	2,556
	동복	90,000	3년	2	-	-	-	-	5,000
체육복		20,000	3년	1~2	-	-	-	556	1,112
유치원복		30,000	2년	1	-	-	1,250	-	-
잠옷		20,000	2년	1~2	-	-	833	833	1,667
운동화		26,000	6개월	0.5~2	-	-	2,167	4,333	8,667
혁대		8,800	3년	1~2	-	-	244	244	488
장갑		4,500	3년	1~2	-	-	125	125	250
모자	운동모	7,000	3년	1~2	-	-	194	194	389
책가방		23,000	3년	1~2	-	-	-	639	1,278
합계					-	-	19,631	21,742	49,377

남학생의 피복·신발비의 품목, 내구년수, 소요량 및 월비용은 <표 2-46>와 같다.

자녀의 피복비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품목 및 가격에 차이가 생긴다. 그러나 이를 일일이 고려하기가 어려워 본 연구의 표준가구인 4인 가구 남학생 10세(국민학교 4학년)와 여학생 8세(국민학교 2학년)를 표준하고 하고 나머지 연

령층에 대해서는 피복비를 다소 가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의류의 품목은 최소한으로 잡았고 학생층의 활동성이 강한 점을 고려하여 내구년수는 성인보다 다소 짧게 잡았다.

4) 자녀(여학생)

여학생의 피복·신발비의 품목, 내구년수, 소요량 및 월비용은 <표 2-47>과 같다.

5) 세탁비

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근로자가구의 1개월 평균 세탁료(중위값)은 2만원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보다 세탁비를 낮게 잡아 정장(신사복, 숙녀복)을 4개월 마다 1회씩, 코트(남, 녀)를 1년에 1회씩 세탁소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 드라이클리닝료는 1회당 7,000원으로 잡았다. 따라서 가구규모별 세탁료는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 7,000/4 + 7,000/12 = 2,333$$

$$2인 가구 : 7,000 \times 2/4 + 7,000 \times 2/12 = 4,666$$

3인 가구 : 2인 가구와 같음.

4인 가구 : 2인 가구와 같음.

5인 가구 : 2인 가구와 같음.

바. 가구규모별 피복·신발비의 합계

가구규모별 피복·신발비의 합계는 지금까지 산출된 가구원별 비용에 세탁비를 합한 금액인데 이를 정리하면 <표 2-48>과 같다.

<표 2-47 > 피복/신발비의 품목, 내구년수, 소요량 및 월비용(여자 자녀)
(단위 : 원)

품 목	규 격	단 가	내구 년수	소요량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가구	5인 가구
여자자녀수					-	-	-	국민학생	중학생
잠바	봄가을용	30,000	2년	1	-	-	-	1,250	1,250
	겨울용	36,000	2년	1	-	-	-	1,500	1,500
스웨타		26,000	3년	1	-	-	-	722	722
원피스	여름용	15,000	1년	1	-	-	-	1,250	1,250
	봄가을용	15,000	1년	1	-	-	-	1,250	1,250
티셔츠		14,000	6개월	1	-	-	-	2,333	2,333
블라우스		18,000	1년	1	-	-	-	1,500	1,500
바지	봄가을용	15,000	1년	1	-	-	-	1,250	1,250
	겨울용	16,000	1년	1	-	-	-	1,333	1,333
반바지	여름용	10,000	1년	1	-	-	-	833	-
스커트		17,000	1년	1	-	-	-	1,417	1,417
겨울내의		13,000	1년	1	-	-	-	1,083	1,083
팬티		2,300	3개월	1	-	-	-	767	767
런닝		2,600	3개월	1	-	-	-	867	867
양말		1,500	3개월	1	-	-	-	500	500
타이츠		4,000	3개월	1	-	-	-	1,333	1,333
손수건		2,900	6개월	1	-	-	-	483	483
브래지어		9,000	6개월	1	-	-	-	-	1,500
교복	하복	46,000	3년	1	-	-	-	-	1,278
	동복	90,000	3년	1	-	-	-	-	2,500
체육복		18,000	3년	1	-	-	-	500	500
잠옷		19,000	3년	1	-	-	-	528	528
운동화		15,000	6개월	1	-	-	-	2,500	2,500
장갑		4,000	3년	1	-	-	-	111	111
책가방		22,000	3년	1	-	-	-	611	611
합 계					-	-	-	23,921	28,366

<표 2-48> 가구규모별 피복·신발비의 합계
(단위 : 원)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성인남성	40,485	40,485	40,485	40,485	40,485
성인여성	-	53,671	53,671	53,671	53,671
자녀(남)	-	-	19,631	21,742	49,377
자녀(여)	-	-	-	23,921	28,366
세탁비	2,333	4,666	4,666	4,666	4,666
합 계	42,818	98,822	118,453	144,485	176,565

바. 보건·위생비

보건·위생비는 위생비, 의료비, 화장품비 등으로 구성된다.

1). 위생비

본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근로자 가구의 목욕탕, 이발소, 미장원 출입회수는 <표 2-49>와 같다.

대중목욕탕은 주 1회 간다는 대답이 34.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거의 안감, 1개월에 2회, 1개월에 1회의 순이다. 따라서 대중목욕탕에는 주 1회씩 가되 여름철 3개월 동안은 목욕탕에 가지 않고 집에서 씻는 것으로 하였다.

이발소에는 1개월에 1회 간다는 대답이 61.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2개월에 1회, 3개월 이상에 1회 등의 순이다. 따라서 이발소에는 1개월에 1회 가는 것으로 하였다.

미용실의 경우 2개월에 1회 간다는 응답과 3개월 이상에 1회 간다는 응답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성인 여성의 경우 퍼머는 4개월에 1회, 그리고 커트는 2개월에 1회씩 하는 것으로 하였다.

기타 위생용품들은 노총의 기존 모형에서 설정된 내구년수를 기초로 하여 다른 기존연구들을 참조하여 설정하였다.

세수비누는 1~2인 가구에서 월 1개, 3인 가구는 월 1.5개, 4~5인 가구는 월 2개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세탁비누는 1~2인 가구에서 월 1개, 3~5인 가구에서는 월 2개를 쓰는 것으로 하였다. 가루비누는 1kg 짜리 한통을 1~2인 가구의 경우 2개월, 3~5인 가구의 경우 1개월에 쓰는 것으로 하였다.

<표 2-49> 근로자 가구의 목욕탕, 이발소, 미장원 출입회수

(단위 : %)

	거의 안감	3개월 이상에 1회	2개월에 1회	1개월에 1회	1개월에 2회	1개월에 3회	1주일에 1회	1주일에 2회 이상
대중목욕탕	17.7	-	-	11.8	16.9	11.4	34.0	8.2
이발소	0.9	8.3	21.0	61.3	7.8	-	0.6	-
미용실	5.4	33.9	33.5	22.1	4.0	-	0.8	0.3

치약은 180g 짜리 한개를 단신가구는 2개월 사용하고 나머지 가구는 사람수에 비례해서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하였다. 치솔은 1인당 2개월에 1개씩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샴푸는 500ml짜리 한 병을 2개월씩 사용하는 것으로 하되 단신 가구는 절반으로 사용량을 줄였다.

수건은 1인당 6개월에 하나씩 필요한 것으로 하였다. 화장지는 1개월에 성인은 1인당 2통, 자녀는 1통씩 필요하다고 보았고, 티슈는 1~3인 가구에서 1개월 1통, 4~5인 가구에서 2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생리대는 중학생 이상의 여자에게 1개월에 1통씩 필요한 것으로 하였다.

날삼입식 면도기는 내구년수가 3년인 것으로 하고 면도날은 5매들이 1세트를 4개월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밖에 손톱깎이, 빗, 방충제, 화장실세제 등의 항목이 위생비에 포함된다. 이상의 품목들의 단가, 내구년수 및 가구규모별 월비용을 요약하면 <표 2-50>과 같다.

<표 2-50> 위생비의 품목, 내구년수, 소요량 및 월비용

(단위 : 원)

품 목	규 격	단 가	내구년수	소요량	단신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목욕	대인	2,000	1주일(여름 3개월제외)	1~5	6,000	12,000	12,000	24,000	30,000
	소인	1,000	같은	1	-	-	3,000	-	-
이발	대인	8,000	1개월	1	8,000	8,000	8,000	8,000	8,000
	학생	5,000	1개월	1~2	-	-	5,000	5,000	10,000
미용	퍼머	28,000	4개월	1	-	7,000	7,000	7,000	7,000
	커트	6,000	2개월	1	-	3,000	3,000	3,000	3,000
	커트(학생)	4,500	2개월	1	-	-	-	2,250	2,250
세수비누	140g	650	1개월	1~2	650	650	975	1,300	1,300
세탁비누	300g	340	1개월	1~2	340	340	680	680	680
가루비누	1kg	2,000	2개월	1~2	1,000	1,000	2,000	2,000	2,000
치약	180g	1,100	2개월	1~5	550	1,100	1,650	2,200	2,750
치솔		1,000	2개월	1~5	500	1,000	1,500	2,000	2,500
샴푸	500ml	2,200	2개월	1	550	1,100	1,100	1,100	1,100
수건		1,500	6개월	1~5	250	500	750	1,000	1,250
화장지	두루말이70m	400	1개월	2~7	800	1,600	2,000	2,400	2,800
티슈	사각,300매	1,400	1개월	1~2	1,400	1,400	1,400	2,800	2,800
생리대	10개들이	1,100	1개월	1~2	-	1,100	1,100	1,100	2,200
면도기	날삽입식	1,800	3년	1	50	50	50	50	50
면도날	5매들이	2,200	4개월	1	550	550	550	550	550
손톱깎이		1,100	5년	1	18	18	18	18	18
빗		1,200	5년	1~2	20	20	20	40	40
방충제		2,000	6개월	1~2	-	333	333	666	666
화장실세제	500ml	2,000	6개월	1	-	333	333	333	333
합 계					20,678	41,094	52,459	67,487	81,287

2) 의료비

본 실태조사결과 조사대상자의 의료보험 가입상황은 직장의보가 91.8%, 공무원·교원의보가 5.5%, 지역의보가 2.5%, 의료보호가 0.2%로서 전원이 의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근로자 가족은 직장의료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진료비용의 일부를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으며(의료보험법 제34조), 의료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되어 있다. 그런데 병원은 수지를 위해 비급여항목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고, 이에 대해 보험당국은 새로이 개발되는 의료장비 및 의료기술에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험급여 기준의 제정 및 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의 본인부담금의 크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89년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은 입원시 40.3%(법정 일부부담률 14.9%, 비급여부담률 25.4%), 외래진료시 67.0%(법정 일부부담률 34.1%, 비급여부담률 3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노인철 외, 『의료보험 본인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1993년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조사에 의하면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법정본인부담 12.4%, 비급여부담 39.6%를 합쳐 총진료비의 5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실, 문옥륜, 「의료보험환자의 비급여 진료비 본인부담금 징수실태분석」, 『국민보건연구소 연구논총』, 제3권 제1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3).

그 동안 노총 모형에서는 『의료보험통계연보』상의 직장의보 1년간 총진료비에서 급여비를 뺀 것을 본인부담금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방법은 의료보험조합연합회에 신고 안되는 비급여항목의 본인부담을 무시함으로써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공식통계가 없는 상황속에서 어쩔 수 없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종전 모형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즉 1994년도 『의료보험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직장의료보험에 관한 통계에서 1년간 총진료비로부터 급여비를 뺀 것을 본인부담액의 총액으로 본다. 이 총액을 직장의료보험 적용인구(피보험자+피부양자)로 나누면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진료비가 나온다. 이를 12로 나누면 1인당 월평균 본인부담진료비를 구할 수 있다. 여기에 1990~94년 연평균 본인부담진료비증가율(각년도 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본인부담진료비액을 구하여 그 연평균증가율을 구함) 9.8%를 곱하면 1995년 추정 월평균 1인당 진료비를 구할 수 있다. 『의료보험통계연보』에 의하면 연령별, 성별 본인부담률은 0~4세 유아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하므로 위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에 가구원수를 곱하면 가구규모별 진료비를 구할 수 있다. 이를 요약하면 <표 2-51>과 같다.

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연간 평균 약값 지출액(중위값, 단 무응답자 비율

에 따라 조정) 을 12로 나눈 월평균 약값은 1인 가구 2,183원, 2인 가구 3,135원, 3인 가구 6,325원, 4인 가구 6,442원, 5인 가구 6,675원이다.

이 금액을 기초로 하여 가정용상비약 중심으로 약품구입품목을 선정하였다. 감기약은 단신 근로자가 1년에 3일 약국에 가서 조제한다고 가정하였고 2인 이상의 가구는 사람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았다.

소화제는 1년에 1인당 마시는 소화제 3병, 정제 3정씩을 복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진통제도 마찬가지로 1인당 1년에 3정을 필요로 하며, 머큐롬, 외상연고, 반창고, 붕대, 탈지면, 파스, 모기약, 안약 등 가정용상비약은 가구원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개씩 비치해둔다고 가정했다. 그 내구년수는 파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1년으로 하였다.

<표 2-51> 가구규모별 진료비의 산출과정

연간 직장의료보험 총진료비(1994)	1,846,278,429,000원
(-) 연간 의료보험조합 급여비(1994)	- 1,158,411,963,000원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1994)	= 687,866,466,000원
(÷) 직장의료보험 적용인구(1994)	(÷) 16,415,811명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액(1994)	41,903원
1인당 월평균 본인부담액(1994)	3,492원
(×) 1990~94년 연평균 진료비증가율	(×) 1.098
1인당 월평균 추정 부담액(1995)	3,834원

본 실태조사에서 안경·콘택트렌즈 착용자수를 물은 결과는 <표 2-52>와 같다.

무응답자 중에는 안경착용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착용인원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평균착용인원보다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는 단신가구는 안경을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2~4인 가구는 1명 착용, 5인

가구에서는 2명이 착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2-53>와 같다.

<표 2-52> 근로자 가구의 안경·콘택트렌즈 착용 실태

(단위 : %)

	무응답·미착용	1명 착용	2명 착용	3명 이상 착용	평균착용인원
1인 가구	47.6	52.4	-	-	0.5
2인 가구	39.8	40.4	22.8	-	0.9
3인 가구	45.7	35.6	16.0	2.7	0.8
4인 가구	42.2	31.9	17.7	8.2	0.9
5인 가구	29.3	30.5	24.9	15.3	1.3

<표 2-53> 의료비의 품목, 내구년수, 소요량 및 월비용

(단위 : 원)

품 목	규 격	단 가	내구 년수	소요량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진료비					3,834	7,668	11,502	15,336	19,170
감기약	1일분조제	2,200	1년	1인3일	550	1,100	1,650	2,200	2,750
소화제	드링크제	300	1년	1인3병	75	150	225	300	375
	정제	200	1년	1인3정	50	100	150	200	250
진통제	정제	200	1년	1인3정	50	100	150	200	250
머큐롬		700	1년	1	58	58	58	58	58
외상연고	10g	2,300	1년	1	192	192	192	192	192
반창고	중	700	1년	1	58	58	58	58	58
붕대	중	600	1년	1	50	50	50	50	50
탈지면	20g	300	1년	1	25	25	25	25	25
물파스	45ml	1,000	6개월	1	167	167	167	167	167
모기약	에어졸	2,000	1년	1	167	167	167	167	167
안약		2,500	1년	1	208	208	208	208	208
안경		53,000	3년	1~2	-	1,472	1,472	1,472	2,944
합 계					5,484	11,515	16,074	20,633	26,664

3) 화장품

여자화장품의 경우 그 품목이 매우 다양하고 품질도 천차만별이지만 여기서는 기초화장품위주로 최소한의 품목만을 선정하였다. 내구년수는 로션, 크림

등 기초화장품의 경우 6개월에 1병, 파운데이션, 콤팩트는 1년에 1개, 불연지는 2년에 1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였다. 화장품의 품목, 단가, 내구년수, 소요량 및 가구규모별 월환산비용은 <표 2-54>와 같다.

<표 2-54> 화장품의 품목, 내구년수, 소요량 및 월비용

(단위 : 원)

품 목	규 격	단 가	내구 년수	소요량	단신 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스킨로션	남자용 150ml	12,000	6개월	1	2,000	2,000	2,000	2,000	2,000
	여자용 150ml	15,000	6개월	1	-	2,500	2,500	2,500	2,500
밀크로션	남자용 150ml	12,000	6개월	1	2,000	2,000	2,000	2,000	2,000
	여자용 150ml	15,000	6개월	1	-	2,500	2,500	2,500	2,500
영양크림	70g	17,000	6개월	1	-	2,833	2,833	2,833	2,833
콜드크림	70g	19,000	6개월	1	-	3,167	3,167	3,167	3,167
파운데이션	35ml	13,000	1년	1	-	2,167	2,167	2,167	2,167
립스틱	50mg	11,000	6개월	1	-	1,833	1,833	1,833	1,833
불연지		17,000	2년	1	-	708	708	708	708
콤팩트	15g	17,000	1년	1	-	1,417	1,417	1,417	1,417
합 계					4,000	21,125	21,125	21,125	21,125

4) 보건·위생비의 합계

이상의 위생비, 의료비, 화장품비를 합하면 <표 2-55>와 같다.

<표 2-55>가구규모별 보건/위생비의 합계

(단위 : 원)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위생비	20,678	41,094	52,459	67,487	81,287
의료비	5,484	11,515	16,074	20,633	26,664
화장품비	4,000	21,125	21,125	21,125	21,125
합 계	30,162	73,734	89,658	109,245	129,076

사. 교육비

교육비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구성된다.

1) 공교육비

공교육비는 학교에서 받는 교육서비스에 대해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기성회비 등을 말한다. 공교육비는 전국 단위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항목도 간단하여 비용산출이 간단하다.

국민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육성회비 외는 공교육비가 들지 않는데 육성회 가입도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계산하지 않았다. 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연보』(교육부, 1995) 상의 학교급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연간액수를 적용하였다. 이때 대상학교는 1급지(시지역) 국공립학교로 하였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평준화지역의 인문계 학교로 하였다.

공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수업료와 기성회비는 연간액수를 12로 나누어 월환산비용을 구하였고 입학금의 경우 36개월(3년)로 나누어 월환산비용을 구하였다.

1995년 현재 각급학교의 학생 1인당 연간 납입금 징수액은 <표 2-56>과 같다.

<표 2-56> 각급학교 납입금 징수액(학생 1인당 연액)

(단위 : 원)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중학교*	9,200	379,200	114,000
고등학교**	11,300	722,400	154,800

* 1급지 최고액임.

** 비실업계 1급지 평준화지역 최고액임.

2) 사교육비

사교육비는 학부모나 학생이 교육을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경비 중 공교육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으로서 교재 및 부교재구입비, 학용품비, 수업준비물비, 학교지정의류비, 학원비 및 과외비, 단체활동비, 교통비, 급식비, 하숙비, 잡비 등을 말한다.

그런데 사교육비는 그 구성항목이 다양하고 음성적 지출이 많아 실태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므로 기존 연구에서도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 항목이기도 하다.

그 동안 소득수준의 향상과 입시경쟁의 치열화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교육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가계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다. 1994년 현재 도시근로자 4인가구의 교육비지출액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3%로서 식료품비와 교통통신비에 뒤이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도시가계연보』, 1994). 또 교육비부담에 대한 인식면에서도 전체 가구의 21.9%가 「매우 부담된다」, 40.9%가 「약간 부담된다」고 대답하고 있어 교육비가 가계에 큰 부담요인으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994).

본 실태조사에서 사교육비중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각종 학원 및 과외 수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 2-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학전 아동의 45.6%, 국민학생의 85.9%, 중학생의 76.9%, 고등학생의 60.3%가 적어도 1가지 이상의 과외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민학생의 경우 평균 1.8개의 과외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무응답자 가운데는 자녀가 학원에 다니고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실제 과외활동 비율은 이보다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과외활동의 종류는 취학전 아동의 경우 유치원, 학습지, 예능학원의 순이며, 국민학생의 경우 학습학원, 예능학원, 학습지의 순이다. 중학생은 학습학원이 압도적이고, 학습지, 독서실의 순이며, 고등학생은 학습학원, 독서실, 학습지의 순이다.

<표 2-57> 학교급별 과외활동실태

(단위 : %)

과외활동 가지수	취학전 아동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안다님/무응답	54.4	14.1	23.1	39.7
다님	45.6	85.9	76.9	60.3
1가지	18.9	22.9	38.1	21.3
2가지	17.5	38.8	28.0	21.0
3가지	6.5	17.4	7.1	12.8
4가지 이상	2.7	6.8	3.7	5.2
평균(가지수)	0.87	1.83	1.32	1.24
과외활동 종류	취학전 아동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유치원	35.7	-	-	-
예능학원	18.2	27.0	5.6	3.7
체육학원	3.2	7.7	3.8	2.9
학습학원	10.5	30.1	46.1	32.6
독서실	0.9	0.5	12.4	27.7
학습지	25.3	25.8	19.7	19.1
개인·그룹과외	3.1	4.6	6.3	6.4
기 타	3.2	4.3	6.1	7.6

<표 2-58>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단위 : 원)

항 목	유치원	국민학생	중학생	고교생(일반고)
교재비	39,250	21,047	47,063	105,824
부교재비	281,535	182,298	224,473	340,944
학용품비	78,955	65,047	65,927	67,653
수업준비물비	33,973	44,825	26,798	21,280
입시학원비	37,965	74,125	395,582	277,572
재능학원비	284,585	511,151	146,327	99,625
단체활동비	59,190	64,741	68,130	66,598
계	815,453	963,234	974,300	979,496
계층조정지수*	1.23	0.88	0.83	0.89
1994년 사교육비	1,003,007	847,646	808,669	871,751
연평균증가율**	24.3	13.5	20.2	19.2
1995년 사교육비	1,246,737	962,078	972,020	1,039,127
월환산액	103,895	80,173	81,002	86,594

* 101~150만원 계층 1인당 사교육비/전계층 평균 1인당 사교육비

** 1990~94년 학교급별 사교육비 증가율을 복리계산한 것임.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교육비 가운데서 다른 항목과의 중복을 피하여 교과서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학습준비물비, 단체활동비, 학원비 만을 반영하였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공은배, 백성준, 『한국 교육 투자의 실태와 수익률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4. 12.)를 반영하였다. 단 이 연구에 나와 있는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전체 가구를 평균한 것이므로 이를 소득계층지수(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과 유사한 101~150만원 계층의 사교육비/전계층 평균 사교육비)로 조정하였고, 이 연구에 나와 있는 1990~94년 연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을 1994년 사교육비에 곱하여 1995년 추정 사교육비를 구하였다. 그 결과는 <표 2-58>과 같다.

3) 성인교육비

본 실태조사에서 성인남자의 업무향상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비 지출경험은 있다가 38.5%, 없다가 61.5%로 나타났으며 성인교육비 지출경험이 있는 경우 평균지출액(중위값)은 연간 30만원이었다. 따라서 월평균 성인교육비는 1가구당 10,000원만 반영하기로 한다.

4) 교육비 합계

가구규모별로 공·사교육비, 성인교육비를 합한 결과는 <표 2-59>와 같다.

아. 교통·통신비

교통통신비는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항공 등 각종 교통기관의 요금과 자동차 관계비용, 우편료, 전보, 전화료 등으로 구성된다. 최근 자동차의 급속한 보급과 통근, 통학, 업무상의 필요 등에 따른 교통기관 이용회수의 증대 등으로 교통비가 상승하고 있고,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우편, 전신, 전화 등 전통적 통신수단 뿐 아니라 삐삐, 휴대폰, 컴퓨터통신 등 첨단통신수단의 중요성도 날로 증대되고 있다. 현대와 같은 고도로 정보화된 사회에서 이들 제 활동에 소요되는 교통통신비는 이제 생활필수비적 성격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는 것이다.

<표 2-59> 가구규모별 교육비의 항목, 내구년수, 소요량 및 월비용

(단위 : 원)

항 목	내 역	금 액	내구 년수	소요량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학생수							유치원1	국교2	고1, 중2
공교육비 (중학교)	입학금	9,200	3년	2	-	-	-	-	511
	수업료	379,200	1년	2	-	-	-	-	63,200
	육성회비	114,000	1년	2	-	-	-	-	19,000
공교육비 (고등학교)	입학금	11,300	3년	1	-	-	-	-	314
	수업료	722,400	1년	1	-	-	-	-	60,200
	육성회비	154,800	1년	1	-	-	-	-	12,900
사교육비	유치원	103,895	1개월	1	-	-	103,895	-	-
	국민학교	80,173	1개월	2	-	-	-	160,346	-
	중학교	81,002	1개월	2	-	-	-	-	162,004
	고등학교	86,594	1개월	1	-	-	-	-	86,594
성인교육비		10,000	1개월	1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합 계					10,000	10,000	113,895	170,346	414,723

1) 교통비

근로자가구 가장의 출근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물은 결과 <표 2-6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가용이 38.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버스, 통근버스, 지하철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최근의 급속한 승용차 보급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우경제연구소의 조사결과(자가용 28.6%, 버스 21.4%, 도보 11.1%, 대우경제연구소, 『한국인의 경제활동』, 1995)와도 유사한 것이다.

<표 2-60> 출근시 이용하는 주된 교통수단

(단위 :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평 균
버 스	23.9	16.8	19.4	19.2	22.9	20.3
지하철	7.5	14.1	10.6	11.5	11.4	11.8
자전거	7.5	5.4	3.5	4.6	4.0	4.3
자가용	19.4	38.3	42.4	40.7	37.0	38.9
택 시	1.5	1.3	2.8	2.2	1.7	2.1
통근버스	25.4	12.1	15.3	15.1	14.3	15.0
도 보	10.4	9.4	4.4	5.3	2.9	6.2
기 타	-	2.7	1.6	1.5	1.7	1.5

그러나 아직 자가용을 이용하는 가구가 40% 미만이어서 자가용이 필수품이 되기에는 이르다고 보고 근로자 가구의 주된 교통수단으로서 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가장은 월 25일 출근하는 것으로 하여 왕복버스비를 계산하였다. 배우자는 1개월에 10일 외출하는 것으로 하여 왕복버스비를 계산하였다. 중·고등학생은 1개월에 26일을 통학하는 것으로 하여 왕복버스비를 계산하되 방학기간에도 학원등에 다니므로 계속 통학하는 것으로 하였다.

본 실태조사에서 근로자 가구의 택시이용회수를 조사한 결과 가구원수에 관계없이 평균(중위값) 1개월에 5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1회당 승차요금은 산출근거를 매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8km를 가는 것으로 하고 계산하였다. 기본요금은 2km까지 1,000원이고 주행요금은 추가 279m당 100원이다. 또 시간요금은 67초당 100원인데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요금을 500원 반영하였다. 따라서 1회당 택시승차요금은 $1,000 + (100 \times 6000 / 279) + 500 = 3,700$ 원이다. 종전 모형에서는 귀향여비를 따로 계산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귀향을 위한 여비는 교양/오락/잡비 항목의 귀향비용에 포함된다고 보고 따로 계산하지 않았다.

이상의 교통비를 표로 표시하면 <표 2-61>과 같다.

<표 2-61> 가구규모별 교통비

(단위 : 원)

항 목	내 역	단 가	내구 년수	소요량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버 스	가구주	340	1개월	2×25회	17,000	17,000	17,000	17,000	17,000
	배우자	340	1개월	2×10회	-	6,800	6,800	6,800	6,800
	중고생	240	1개월	2×26회×3명	-	-	-	-	37,440
택 시	8km	3,700	1개월	5회	18,500	18,500	18,500	18,500	18,500
합 계					35,500	42,300	42,300	42,300	79,740

2) 통신비

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가구규모별 전화요금을 보면 1~3인 가구에서는 월

평균(중위값) 18,000원, 4~5인 가구에서는 20,000원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화요금을 실태조사 결과보다 다소 낮게 조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몰량기준으로 환산하였다. 현행 전화요금은 <표 2-62>와 같다.

<표 2-62> 전화요금표(1994. 10. 1.부터 실시)

		기본요금(8~10급지)	1전화당	2,500원
전화료	시내통화		180초당	40원
		30Km 이내	180초당	40원
	시외통화	31~100Km	36초당	40원
		101Km 이상	23초당	40원

가구당 전화요금을 몰량기준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성인 1명은 하루에 시내전화를 3통화(3분 기준)씩 하는 것으로 하였다. 국민학교 이상 학생은 어른의 절반으로 하였다. 또 2인 이상 그구에서는 가구당 서울~부산간 시외전화(3분 기준)를 1개월에 3회 하는 것으로 하고 하였다. 전체 전화요금에 대해 10%의 전화세가 부가된다. 따라서 가구규모별 전화요금은 <표 2-63>과 같이 계산된다.

한편 공중전화는 중학생 이상이 1주일에 1회 이용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또 편지는 국민학생 이상이 월평균 1통씩 쓰는 것으로 하였다.

<표 2-63> 가구규모별 통신비

(단위 : 원)

항 목	내 역	단 가	단 위	소요량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전 화	기본요금	2,500	1개월		2,500	2,500	2,500	2,500	2,500
	시내통화료	40	180초당	3통화×30일	3,600	7,200	7,200	10,800	12,600
	시외통화료	40	23초당	8도수×3회	-	960	960	960	960
	전화세			전화요금의 10%	610	1,066	1,066	1,426	1,606
공중전화	1통화	40	1개월	1인 4회	160	320	320	320	800
편 지	보통우표	150	1개월	1인 1통	150	300	300	600	750
합 계					7,020	12,346	12,346	16,606	19,216

3) 가구규모별 교통·통신비의 합계

이상의 교통비와 통신비를 합하면 <표 2-64>와 같다.

<표 2-64> 가구규모별 교통/통신비의 합계

	(단위 : 원)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교통비	35,500	42,300	42,300	42,300	79,740
통신비	7,020	12,346	12,346	16,606	19,216
합 계	42,520	54,646	54,646	58,906	98,956

자. 교양·오락·잡비

교양오락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가구가 육체적·정신적 휴식을 통해 노동에 의한 피로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적 자본의 축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자기실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비용을 말한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생활조건 변화에 따라 근로자 가구의 의식 역시 단순한 물질욕구로부터 정신적·문화적욕구를 추구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으며 근로자 가구의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교양오락비의 비중 역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교양오락비에는 교양오락용 내구소비재의 구입, 스포츠, 레저용품 등 교육오락용 물품의 구입, 서적, 잡지의 구입, 등산, 취미서클 등의 비용, 여행, 휴가비용, 경조사비용, 각종 오락시설의 이용비 등 잡다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교양오락비는 이와 같이 품목의 성격이 다양하고 근로자 가구의 특성에 따라서도 그 수요의 성격이 매우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품목의 선정이나 소요량 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오락비의 품목선정상의 자의성을 피하기 위하여 근로자 가구의 교양오락비 지출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표 2-65> 참조).

실태조사 결과 근로자 가구의 과반수 이상이 적어도 1개월에 1회 이상 구입/이용하는 항목(귀향비 등 일부 품목은 연간 단위)으로서 필수품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항목만을 선정하였다. 구입/이용빈도 및 지출액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되 항목간 중복되는 지출이 있고 무응답률이 상대적으

<표 2-65> 교양오락비의 지출현황(중위값)

(단위 : %, 회, 원)

항 목	응답률	1개월 평균 지출회수	1개월 평균 지출액수
신문구독	94.9	84.0%(구독비율)	7,000
자녀/가족용돈	74.8	-	50,000
가족에게 송금	60.1	-	50,000
담배	92.3	67.8%(흡연비율)	16,200
술집	68.0	3	55,000
술(가정에서)	59.8	3	20,000
커피숍/다방	41.9	3	10,000
집에서 손님접대	69.7	1	35,000
친지방문시 선물	60.8	1	25,000
경조사 부조금	82.7	2	50,000
회비/헌금/기부금	64.2	2	40,000
영화, 연극관람	27.3	1	10,000
스포츠관람/시설이용	21.4	1	15,000
오락시설(당구장 등)	19.0	2	20,000
노래방	52.5	1	12,000
도서/잡지구입	51.2	1	10,000
비디오테이프 대여	57.9	3	6,000
테이프/CD 구입	32.6	1	10,000
기타취미활동	32.2	1	20,000
귀향비용	48.3	3(연간)	400,000(연간)
여행, 가족나들이	64.6	2(연간)	300,000(연간)

로 높은 것을 감안하여 실태조사 결과보다 낮게 설정하였다.

신문구독률은 84%이고 그 중 62.4%가 1부, 8.0%가 2부, 1.0%가 3부 이상 구독하며 8.9%는 가판신문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는 가구당 1부씩 신문을 구독하는 것으로 하였다.

자녀 및 같이 사는 가족에게 주는 용돈은 1개월 평균 50,000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에는 교육비, 교통비 등 다른 항목에 포함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자녀 외의 다른 가족에게 주는 용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여 국민학생은 월 10,000원씩, 중고생은 월 15,000원씩 주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로 사는 가족·친지에게 보내는 돈은 계산하지 않았다.

담배는 응답자의 67.8%가 피우고 있고 그중 하루 반갑이 18.6%, 1갑이 44.7%, 2갑이 4.1%, 2갑 이상이 0.4%로서 평균 흡연량은 하루 0.9갑이다. 우리

는 비흡연자를 고려하여 1개월에 15갑을 피우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1개월에 1회 이상 술집에 간다고 응답한 비율은 68.0%이며 1개월 평균 음주회수는 3회, 1개월 평균지출액수는 55,000원이었다. 우리는 비음주자를 고려하여 1개월 평균 3회 술집에 가며 1회당 술값은 각자 1만원씩 지출하는 것으로 하였다.

1개월에 1회 이상 커피숍·다방에 출입하는 비율은 1인 가구에서 71.1%, 2인 가구에서 63.7%로 높게 나온 반면, 3인 가구 41.5%, 4인 가구 39.0%, 5인 가구 35.1%로 낮게 나왔다. 따라서 우리는 커피숍에는 1~2인 가구에서만 1개월에 2회 가는 것으로 하였다. 그 대신 모든 가구에서 자판기커피를 1개월에 15회 이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손님접대, 친지방문 등 교제비는 일부가 식료품비, 술값 등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태보다 낮게 잡아 1개월에 1회로 하고 비용은 2만원으로 하였다.

경조사 부조금은 82.7%가 1개월에 1회 이상 지출한다고 응답하였고 평균지출회수는 2회, 평균지출액수는 50,000원이었다. 이것 역시 실태보다 낮게 잡아 1개월당 1회로 하고 1회지출액수는 2만원으로 하였다.

회비/헌금/기부금은 계산하지 않았다.

영화·연극관람을 1개월에 1회 이상 하는 비율은 27.3%로 낮게 나왔으며 그 대신 비디오테이프를 빌려보는 비율이 57.9%로 높게 나왔다. 따라서 종전 모형에 있던 영화관람비를 없애고 그 대신 비디오테이프 대여료를 1개월에 2회로 계산하였다.

스포츠시설, 당구장 등 오락시설에 1개월에 1회 이상 출입하는 비율은 낮았으며, 노래방은 52.5%가 1개월에 1회 이상 출입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노래방에 1개월에 1회(1시간) 간다고 보고 1회당 비용은 각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였다.

도서·잡지를 1개월에 1권 이상 구입하는 비율은 51.2%이며 평균 구입권수는 1권이었다. 우리는 1~2인 가구는 1개월에 1권씩, 그리고 자녀가 있는 3~5인 가구는 2권씩 도서·잡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귀향비용과 여행비는 따로 계산하지 않고 합쳐서 연간 2회로 하였다. 1회당 비용은 100,000원으로 하고 단신가구는 그 절반으로 하였다.

그 밖에 카메라를 가진 가구에서는 36장짜리 필름을 단신가구는 1년에 1통, 2인 가구는 2통, 그리고 3인 이상 가구는 3통씩 소비한다고 가정하여 필름값과 현상·인화요금을 계산하였다.

그밖에 TV시청료로 교양오락비에 포함시켰다.

<표 2-66> 교양·오락·잡비의 항목, 내구년수, 소요량 및 월비용

(단위 : 원)

항 목	내 역	금 액	내구 년수	소요량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신문구독료		7,000	1개월	1	7,000	7,000	7,000	7,000	7,000
자녀용돈	국민학생	10,000	1개월	2	-	-	-	20,000	-
	중고생	15,000	1개월	3	-	-	-	-	45,000
담 배	글로리	900	1개월	15	13,500	13,500	13,500	13,500	13,500
		10,000	1개월	3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커피숍/다방		2,000	1개월	2	4,000	4,000	-	-	-
자판기커피		200	1개월	15	3,000	3,000	3,000	3,000	3,000
손님접대/친지 방문		20,000	1개월	1	-	20,000	20,000	20,000	20,000
경조사/부조금		20,000	1개월	1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비디오테이프 대여		1,400	1개월	2	2,800	2,800	2,800	2,800	2,800
노래방	1시간	10,000	1개월	1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도서/잡지구입		5,500	1개월	1~2	5,500	5,500	11,000	11,000	11,000
귀향비/여행비		100,000	1년	2	8,333	16,667	16,667	16,667	16,667
사진촬영	필름36장	2,500	1년	1~3	417	834	1,251	1,251	1,251
	현상/ 인화비	4,680	1년	1~3	390	780	1,170	1,170	1,170
TV시청료		2,500	1개월	1	2,500	2,500	2,500	2,500	2,500
합계					107,440	136,581	138,888	158,888	183,888

차. 저 축

저축을 생계비에 포함시키는데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생애단계별 소비지출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 생활설계를 하는 가구주는 장래에 발생하게 될 자녀의 교육, 결혼, 주택의 구입, 그리고 노후

생계자금 등에 대비하여 현재 소득중 일정액을 저축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가계수지가 흑자여서 남는 여유분을 재산증식을 위해 저축하는 것과는 달리 가계수지에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있을 뭇돈 지출이나 불의의 지출에 대비해서 소비를 절약해서 저축하는 것이므로 생애 전체에 걸친 생계비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 후자의 저축은 분명히 생계비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아직도 미비한 상태에서 내 집 마련, 자녀교육 및 결혼비용 마련, 노후대책, 그리고 불의의 사고나 질병, 실업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저축은 근로자 가구의 생계유지에 필요불가결한 성격의 것이다.

본 실태조사에서 근로자가구의 저축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 2-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가구의 83.4%가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목적을 살펴보면 주택구입 또는 전세금 마련이 36.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교육비, 빚을 갚기 위한 것, 노후생활비 등의 순이다.

그러나 이를 자가가구와 전월세가구로 나누어보면 확연한 차이가 보인다. 즉 전월세가구의 경우 68.3%가 주택구입 또는 전세금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반면, 자가가구의 경우 교육비 마련을 위한 목적이 27.2%로 가장 높고 빚을 갚기 위해서가 17.4%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앞서서도 밝혔듯이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구입시 부채를 지고 그 원리금상환을 위해 저축(부금 등)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저축총액과 부채총액 비교에서도 나타나는데 자가가구의 경우 저축총액이 평균(중위값) 700만원, 부채총액이 평균(중위값) 1,500만원으로 800만원의 순부채액을 갖고 있으며 월원리금 상환부담액은 평균(중위값) 21만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전월세가구의 경우 저축총액은 평균(중위값) 800만원, 부채총액은 평균(중위값) 1,000만원으로 순부채액은 200만원이고 월원리금 상환부담액은 평균(중위값) 14만원이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자가가구와 전월세가구로 나누어 간단한 저축모형을 세워보기로 한다. 먼저 전월세가구의 경우 25세부터 10년 만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 35세에 13평형 아파트를 신규분양받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250만원씩 총 3,250만원이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1992)

에 의하면 주택마련시 저축에 의한 자금조달비율은 49.1%이므로 우리는 소요자금의 50%인 1,625만원을 전월세가구의 저축목표액으로 잡는다. 근로자가 10년 만기 장기주택마련저축(이율 11.5%, 연수익률 8.13%)에 가입하는 경우 월부금 10만원당 만기지급액은 18,957,500원이 된다. 따라서 1,625만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00,000 \times (16,250,000 / 18,957,500) = 85,718$ 원이 된다. 이것이 전월세가구의 월저축액이다. 물론 앞으로 주택분양가가 인상되거나 금리가 하락하면 월부금액 수도 올라가야 할 것이다.

한편 자가가구의 경우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때의 학자금에 대비하여 미리 저축을 하는 것으로 한다. 교육부의 『교육통계연보』(1995)에 의하면 95년 현재 4년제 국공립대학교 인문사회계의 입학금은 112,000원, 1년간 수업료는 491,000원, 그리고 기성회비는 평균 1,167,500원이다. 따라서 자녀 1인당 4년간 대학교육비는 $112,000 + (491,000 + 1,167,500) \times 4 = 6,746,000$ 원이다. 자녀를 모두 4년제 대학에 진학시킨다고 가정할 경우 4인 가구의 저축목표액은 13,492,000원, 5인 가구의 저축목표액은 20,238,000원이다.

역시 10년 만기 저축에 가입할 경우 월부금(<표 2-68> 참조)은

4인 가구 : $100,000 \times (13,492,000 / 18,957,500) = 71,170$ 원

5인 가구 : $100,000 \times (20,238,000 / 18,957,500) = 106,755$ 원 이다.

<표 2-67> 정기적 저축여부와 저축목적

(단위 : %)

	전 체	자가가구	전월세가구
정기적 저축여부(한다)	83.4	82.4	84.7
저축목적			
주택구입/전세금마련	36.5	11.5	68.3
본인 결혼비용	6.3	6.1	6.6
자녀 결혼비용	7.0	11.1	1.8
가구, 승용차구입	0.9	1.3	0.4
교육비	18.3	27.2	6.9
의료비	0.3	0.5	0.1
노후생활비	11.9	16.7	5.6
빚을 갚기위해	12.3	17.4	5.8
기 타	6.5	8.2	4.5

<표 2-68> 가구규모별 월부금 액수

(단위 : 원)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아파트분양가 (13평형)	32,500,000	32,500,000	32,500,000	-	-
저축목표액 (분양가의 50%)	16,250,000	16,250,000	16,250,000	-	-
월부금	85,718	85,718	85,718	-	-
1인당 대학교육비	-	-	-	6,746,000	6,746,000
총저축목표액	-	-	-	13,492,000	20,238,000
월부금	-	-	-	71,170	106,755

물론 이 경우에도 앞으로 대학등록금이 올라가거나 금리가 하락하면 월부금 액수도 증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저축목표액에는 자녀결혼비,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 대비한 의료비, 노후생활비 등 다른 목적의 저축액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카. 조세공과금

조세공과금은 조세와 사회보장분담금 및 기타 비소비지출로 구성된다.

1) 조 세

조세는 소득세, 주민세로 구성된다.

(1) 소득세

소득세는 1995년도 갑근세·주민세 세액조건표를 통해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소득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이 되는 총소득액을 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앞에서 구한 모든 소비지출액에 저축액을 더한 것을 순소득액으로 본다. 여기에 조세공과금을 더하면 과세기준이 되는 총소득액이 된다. 즉

$$\text{총소득액} = \text{순소득액} + \text{조세공과금}$$

$$\text{순소득액} = \text{소비지출액} + \text{저축액}$$

한국노총의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1995.1)로부터 가구규모별로 총소득액에서 차지하는 조세공과금의 비율을 구할 수 있는데 각각 단신 가구 6.4%, 2인 가구 6.1%, 3인 가구 6.5%, 4인 가구 7.4%, 5인 가구 9.9%이다. 이 비율을 이용하여 우리는 추정 총소득액을 구할 수 있다. 즉 추정총소득액=순소득액/(1-조세공과금비율)이 된다. 이를 이용하여 가구규모별 추정총소득액을 계산하면

$$\begin{aligned} 1인\ 가구 &: 646,128 / (1-0.064) = 690,308 \\ 2인\ 가구 &: 1,012,018 / (1-0.061) = 1,077,761 \\ 3인\ 가구 &: 1,359,781 / (1-0.065) = 1,454,317 \\ 4인\ 가구 &: 1,675,793 / (1-0.074) = 1,809,712 \\ 5인\ 가구 &: 2,336,815 / (1-0.099) = 2,593,579 \end{aligned}$$

이것을 우리는 원천징수 과세기준액으로 본다. 이 과세기준액에 따라 세액조건표에서 갑근세를 찾을 수 있다. 단 국고금 단수계산법에 의해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2) 주민세(소득할)

주민세(소득할)은 소득세에 7.5%를 곱한 금액으로서 역시 세액조건표에서 찾을 수 있다.

(3) 주민세(균등할)

가구별로 부과되는 주민세(균등할)은 서울시 기준으로 연 4,000원이며 여기에 교육세 1,000원이 가산된다. 이를 월환산하면 가구당 월 417원이다.

2) 사회보장부담금

사회보장부담금에는 의료보험료, 국민연금각출료, 고용보험료 등이 있다.

(1) 의료보험료

의료보험료는 해당표준보수월액×보험료율×본인부담비율로 계산된다. 해당

표준보수월액은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표준보수월액 조건표」에서 구할 수 있다(적용기간 1993~97년). 보험료율은 조합의 정관에 따라 지역, 지구별로 달라지는데 전국 직장의료보험조합의 평균보험료율은 3% 수준이다. 본인부담비율은 의료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보험액의 50%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의 1.5%가 된다.

(2) 국민연금각출료

국민연금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해당보수월액의 1,000분의 20을 사용자와 근로자 본인이 각각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역시 표준보수월액조건표에서 해당표준보수월액을 찾아 0.2%를 곱하면 국민연금각출료를 구할 수 있다.

(3) 고용보험료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56조에 의하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되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즉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임금총액×실업급여의 보험료율×1/2 이며 이는 임금에서 원천공제된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6 / 1000이므로 결국 근로자의 보험료부담은 임금총액의 3 / 1000이 된다.

3) 기타 비소비지출

기타 비소비지출에는 쓰레기봉투값, 노동조합비 등이 포함된다. 과거 준조세적 성격을 갖고 부과되던 적십자회비 등은 모금제로 바뀌었다.

(1) 쓰레기봉투값

19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종전의 오물세는 쓰레기봉투가격에 포함되도록 바뀌었다. 쓰레기봉투가격은 일반가정과 사업장으로 나뉘어 각 구

청별로 조례에 따라 달라진다. 실태조사 결과 201 짜리 쓰레기봉투가격은 평균 250원이다. 월평균 사용량은 단신 가구에서 4장, 2~3인 가구에서 6장, 4~5인 가구에서 8장으로 한다.

(2) 노동조합비

본 실태조사결과 노동조합비는 월평균임금총액의 1% 수준이었으므로 이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2-69>와 같다.

<표 2-69> 가구규모별 조세공과금

(단위 : 원)

		산출근거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순소득액		소비지출액 + 저축액	646,678	1,012,018	1,359,786	1,675,793	2,336,815
추정총소득액		순소득액/ (1-조세공과금비율)	690,895	1,077,761	1,454,317	1,809,712	2,593,579
표준보수월액		표준보수월액조건표	690,000	1,090,000	1,500,000	1,800,000	2,000,000
조 세	소득세	세액조건표	9,710	20,150	41,410	86,410	238,180
	주민세(소득할)	소득세×7.5%	720	1,510	3,100	6,480	17,860
	주민세(균등할)	연 4,000원	417	417	417	417	417
사회보장 부담금	의료보험료	표준보수월액의 1.5%	10,350	16,350	22,500	27,000	30,000
	국민연금각출료	표준보수월액의 2%	13,800	21,800	30,000	36,000	40,000
	고용보험료	임금총액의 0.3%	2,070	3,230	4,360	5,420	7,780
기타공과금	쓰레기봉투값	250원×사용량	1,000	1,500	1,500	2,000	2,000
	노동조합비	임금총액×1%	6,909	10,778	14,543	18,097	25,936
공과금 합계			44,976	75,735	117,830	181,824	362,173
도시근로자 생계비 총계		순소득액 + 조세공과 금합계	691,654	1,087,753	1,477,616	1,857,617	2,598,988

5. 맺음말

이상의 도시근로자 생계비 추정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 ① 국민소득의 급속한 증대, 근로자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욕구의 변화 등과 더불어 근로자의 생계비 개념 역시 급격한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즉 단순한 물량적 최저생활수준을 넘어서서 주거, 교육, 의료, 교양오락 등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환경, 노동의 내용, 사회적 공정성, 안전 등 근로자 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생계비 개념 역시 변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생계비수준은 임금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급격한 생계비 개념의 변화는 많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생계비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다만 근로자 가구의 삶의 질과 관련 있는 항목(특히 주거, 의료, 교육, 교양오락 등)에서 품목수를 다소 늘리고 소비수준을 현실화하는 등 최소한의 조정을 하는데 그쳤다. 앞으로 노동조합운동은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과 더불어 근로자 가족의 생활의 전영역에 걸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생계비 개념 역시 이러한 근로자 가족의 생활영역 전체에 걸친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신생계비 개념으로 점차 전환해야 할 것이다.

- ② 노동조합 전국조직이 발표하는 생계비는 원래 전체 노조원의 생계비의 하한선을 규제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본 연구에서 산정된 생계비는 비용을 최소화한 수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산별 연맹이나 단위노조에서는 해당 연맹이나 사업장의 성격, 노조원들의 생활실태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필요한 조정(예컨대 주거면적의 상향조정, 자녀교육비의 조정, 의료비의 조정, 교양오락비의 조정)을 가함으로써 보다 해당 노조원의 생활실태에 가까운 생계비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기준 시점은 1995년 10월 1일이다. 따라서 임금협상시에 본 연구자료를 사용할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른 물가인상으로 생계비가 상승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 ③ 본 연구의 4인 가구 생계비 수준 1,857,617원에 대해 혹시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4인가구 생계비중 조세공과금과 미래의 생활에 대비한 저축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다시 자가가구에서 매월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 주거비를 제외하면 남는 실제 생활비는 1,263,450원에 불과하다. 이 금액으로 4인 가족의 식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비, 피복신발비, 보건위생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교양오락비 등 모든 가계지출을 충당해야 한다. 더우기 값비싼 가구나 가전제품도 대개는 걸

혼시에 한꺼번에 장만하고난 뒤에는 매월 지출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계지출을 생각할 때 잊어버리기 쉽다. 이렇게 볼 때 4인 가구 생계비 185만원은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가 생각하는 보통 정도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관적 생계비를 물은 결과 4인 가구의 경우 평균 1,273,880원으로 나와 위에서 계산된 4인 가구의 일상적 실제 생활비 1,263,450원과 극히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곧 본 연구의 생계비 추정결과가 현실생활에서 근로자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생계비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④ 본 연구의 도시근로자 생계비의 비목별 구성을 살펴보면 4인 가구의 경우 식품비26.0%, 주거비 18.4%, 조세공과금 9.8%, 교육비 9.2%, 교양오락비 8.6%의 순이다. 또 노총의 구연구(1994년 12월 기준)와 비교해보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항목은 교양오락비(72,308원)이며, 그 다음으로는 조세공과금(65,907원), 주거비(50,030원), 피복신발비(39,307원)의 순이다(부록 2 참조). 여기서 특히 주거, 교육, 조세공과금 등은 사회 전체의 하부구조와 관련이 큰 항목들로서 그중 상당부분은 정부의 책임 아래 해결되어야 할 성질의 것들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간접임금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근로자 가족의 생계비 부담 증대를 막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 3 장

1996년 노총의 임금정책

어수봉*·김종각**

1. 임금인상 요구율 산정과 의의

가. 임금인상요구 및 산출근거

생계비로부터 도출되는 노총의 임금인상요구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생계비와 임금정책의 연계시 다음의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① 1994년 전국평균 도시근로자 가구당 인원수 3.72인(통계청) : 노총 생계비 모형의 표준근로자가구는 4인 가구이므로 실제 평균근로자 가구규모(3.72인)에 맞추어 생계비를 조정한다.

② 1994년 전국평균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69.78% :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에는 비임금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구주의 근로소득으로 충족되어야 할 생계비 부분을 산정한다.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

** 한국노총 정책실 연구위원

전국평균 가구원수 3.72인 고려 생계비 :

$$1,857,617\text{원} \times 3.72 / 4 = 1,751,216\text{원}$$

가구주가 충족해야할 생계비 :

$$1,751,216\text{원} \times 69.78\%(\text{가구소득중 가구주의 근로소득비율}) \\ = 1,221,999\text{원}$$

2) 다음으로 생계비 조사시점은 1995년 10월이므로 1996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199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4.5%이내로 억제할 경우 1996년 6월까지 물가상승률 2.22%를 반영한 획득해야 하는 생계비는 다음과 같다(95년 10월 ~ 12월 물가상승 0.51%).

$$1,221,999\text{원} \times 1.0051 \times 1.0222 = 1,255,497\text{원}$$

3) 월임금총액에서 초과근로수당은 제외한다. 왜냐하면 노총 생계비의 산정 기준이 하루 8시간, 주 44시간 노동이므로, 여기에 대응하는 임금은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임금총액이기 때문이다.

- 1995년 연평균 전산업의 월임금총액 : 1,119,029원(노동부)

<표 3-1> 1996년 노총의 임금요구수준

	임금총액	정액급여		상여월할분	비고
		기본급	각종수당		
현재임금	1,119,029	643,441	183,491	292,097	95년연평균
획득목표 (100%)	1,255,497	744,322	183,491	(327,684)	
차액	136,468	100,881	-	(35,587)	

* 정액급여 826,932원 *특별급여 292,097원

* 연간 특별수당(상여금)은 통상임금의 423%임.

* 기본급 비중 57.5%, 각종수당 비중 16.4%, 상여금 비중 26.1%.

4) 노총 임금요구는 통상임금(정액급여) 826,932원 기준으로 정액 100,881원이며 요구율은 12.2%이다. 그리고 임금총액 1,119,029원 기준으로는 정액 136,468원, 요구율은 역시 12.2%가 된다. 이상의 산정과정을 요약한 것이 다음

의 <그림 3-1>에 나타나 있다.

[그림 3-1] 생계비와 임금인상 요구

5) 참고자료

① 1995년 연평균 임금의 추정

1995년 10월까지의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되 연말의 성과급을 감안하여 특별급여는 10월누계 상승률 보다 약간 높은 15%로 가정한다.

<표 3-2> 1995년 연평균임금의 추정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94년 평균임금	1,098,984	746,329	98,619	254,035
95년 10월까지 임금상승률	11.7%	10.8%	13.4%	13.8%
95년 평균임금(추정치)	1,230,862	826,932	111,833	292,097
95년 임금상승률(추정치)	12.0%	10.8%	13.4%	15.0%

② 소비자물가+ 경제성장률

<표 3-3> 1996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 전망에 따른 임금인상률

	소비자물가 + 경제성장률		임금인상률
95년도 경제실적	4.5% + 9.3%		13.8%
96년도 경제전망	한국은행	4.8% + 7.4%	12.2%
	KDI	4.0% + 7.6%	11.6%
	KIET	4.9% + 7.4%	12.3%

③ 소비자물가+ 노동생산성

<표 3-4> 1994년 노동생산성 기준에 따른 임금인상률

소비자물가 상승률(95년)	노동생산성 증가율(94년)		임금인상률
4.5%	전체종사원 기준	10.5%	15.0%
	상용노동자 기준	10.8%	15.3%
	생산노동자 기준	7.5%	12.0%
	부가가치 기준	9.4%	13.9%

<표 3-5> 1995년 상반기 노동생산성 기준에 따른 임금인상률

소비자물가 상승률(95년)	노동생산성 증가율 (95년 상반기)		임금인상률
4.5%	전체종사원 기준	11.9%	16.3%
	상용노동자 기준	11.9%	16.4%
	생산노동자 기준	12.5%	17.0%
	부가가치 기준	9.9%	14.4%

나. 노총임금인상 요구율 12.2%의 의미

1) 노총 생계비는 8시간 노동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생계비에 기초한 교섭임금의 범위는 8시간 기준 임금이 되어야 하므로, 초과근로수당이나 성과급 등은 12.2%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노총 생계비 중 ~~가구규모와~~ ~~가구주의 근로소득을 감안하~~는 조정요인이외의 조정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1996년 생계비 획득 목표율은 100%이다.

3) 임금교섭의 범위로서 임금총액 기준이든 통상임금 기준이든 상관없으나 결국은 임금총액 기준이다. 따라서 보너스비중(고정적 보너스만 포함되며, 현재 전국평균 423%임)의 상향조정이 있으면, 통상임금 기준의 임금 인상률은 12.2% 보다 낮아질 수 있다.

4) 협약근로시간의 단축은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을 경우 임금인상을 초과하기 때문에 임금인상의 방법으로 직접적인 임금인상외에 협약근로시간의 단축을 선택할 수 있다. (예 : 44→42시간 단축은 $2/42 = 4.76\%$ 의 임금인상효과가 있으므로, 이 경우 임금인상요구율은 12.2% 보다 낮아질 수 있음.) 노총은 이러한 근로조건 패키지교섭(package negotiations)을 권장하며, 실제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중요한 노동운동 과제이다.

5) 자연승급분은 12.2%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금교섭은 개별 노동자의 임금이 그 대상이 아니라 기업 전체 노동자의 호봉표(wage table)가 그 대상이므로 자연승급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임금교섭은 호봉표 전체의 인상(base-up)인 것이다.

특히 한 기업에서 호봉표에 따른 매년 자연승급이 있다 하더라도 호봉간 임금격차가 모두 동일하고, 또한 입직근로자수와 정년퇴직근로자수가 동일한 정상 상태에서는 기업 전체로 보아 자연승급 그 자체는 결코 임금인상 요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자연승급분 → 임금인상(인하)으로의 연결은 기업내 고용조정 형태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각 기업에서 필요한 경우 임금교섭에서 이 측면을 고려하면 될 것이다.

6) 국민경제적 혹은 기업간(노동시간) 고용조정의 문제 역시 기업내 고용조정과 마찬가지로 고용조정의 형태에 따라 통계적 임금의 부상/침하(wage drift)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전적으로 고용조정에 따른 국민경제생산성변화를 반영하는 통계적 현상으로서 생계비 논리 혹은 생산성논리와 무관한 것이다. 즉 노동시장의 동태성과 그에 따른 노동자 특성구성의 변화(heterogeneous labor) 때문이다.

따라서 공익연구단이 생산성논리에 기초해 제시한 [적정협약임금인상률 = 생산성임금-임금부상분]은 생산성 임금제 하에서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1995년 혹은 1996년에 임금부상분이 (+) 혹은 (-)일지는 경험적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익연구단 제시율은 생산성임금에 기초하는 한 논리적으로 타당하나 그 현실적 기반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임금부상효과(wage drift)는 근로자의 실제임금인상과 무관한 통계적 임금인상으로서 때에 따라서는 (-)로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1995년의 경우 허위보고(under-reporting)를 제외한 고용조정 임금부상효과는 (-)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노동시장에의 신규노동자(new comer) 급증과 특히 주부여성 등 한계근로자의 대거 진출 때문으로 판단된다.

임금부상효과를 생산성임금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것은 노동자 특성의 변화가 있을 때 개별 노동자의 생산성과 임금은 변화하지 않더라도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성향상과 임금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때 생산성향상은 개별 노동자의 생산성향상때문이 아니라 노동자 특성의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통계적 현상이기 때문에 기존 노동자의 임금교섭준거로 사용되는 생산성지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그러나 만약 생산성 지표가 이러한 생산성부상효과를 이미 고려하여 만들어진다면 이러한 이중계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를 다음의 예로 살펴보기로 하자.

<표 3-6-1> 생산성부상과 임금부상의 예

	1995년			1996년		
	노동자수	임 금	생산성	노동자수	임 금	생산성
고 졸	10명	100만원	100	5명	100만원	100
대 졸	5명	150만원	150	10명	150만원	150

1996년에 고학력화로 인해 국민경제의 노동자 구성이 위의 표처럼 변한 경우 개별 노동자의 임금과 생산성은 동일하더라도 국민경제 전체의 평균임금과 평균생산성의 변화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 3-6-2> 생산성부상과 임금부상의 예

	1995년	1996년	부상효과
평균임금	116.7만원	133.3만원	14.3%
평균생산성	116.7만원	133.3만원	14.3%

호봉표(wage table)의 어떠한 변화가 없어도 국민경제의 평균임금은 14.3% 상승되며, 이는 국민경제 전체의 평균생산성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성 상승에 따른 호봉표의 조정, 즉 기존노동자와 기업이 체결하는 임금교섭에서는 이러한 생산성부상효과에 의한 임금부상효과를 제외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이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과거 임금상승에서 실제 임금상승은 이러한 통계적 현상인 임금부상효과를 제외한 만큼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명목임금상승의 국제비교나 생산성 비교시에는 이러한 임금부상분을 제외시키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7) 한편, 임금부상은 협약임금의 허위보고(under-reporting)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으며 현재 이 요인인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임금의 허위보고이든 사실보고이든 생산성논리에서 중요한 것은 생산성 제고와 연결된 임금인상이기 때문에 생산성부상효과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임금부상분은 생산성임금 교섭에서 제외시키면 안 될 것이다. 만약 허위보고에 의한 임금부상분을 생산성 임금에서 제외한 후 교섭준거를 산정하는 것은 오히려 허위보고를 조장하는 결과이다.

8) 또한 특별급여 인상을 임금부상으로 인식하여 임금교섭 준거에서 제외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임금교섭 외에 별도로 특별급여 인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는 임금체계의 왜곡과 교섭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뿐이다.

9) 노총의 임금인상준거는 생계비이며 1995년도 생계비 모형설계에는 이미 노동자의 구성 변화(heterogeneity of labor)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생계비에 기초한 임금인상요구율 12.2%는 통계적 현상인 임금부상효과를 제외한

1996년에 획득되어야 할 실질적인 임금인상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임금정책과 연관된 단체협약 및 제도개선 요구

가. 단체협약 개선 요구

위와 같은 임금인상 요구와 함께 임금제도 및 노동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단체협약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1) 노동시간 단축 (2000/2000 project)
 - 2000년까지 연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단축한다.
 - 이를 위하여 97년까지 주당 소정노동시간을 42시간으로 단축한다.
 - 2000년까지 주당 소정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한다.
- 2) 임금격차 완화
 - 고졸 5년 근속자의 임금을 대졸 초임과 같게 한다.
 - 동일학력의 생산직과 사무직의 임금을 같게 한다.
 - 동일학력, 동일노동의 남녀임금을 같게 한다.
 - 고졸초임을 대졸초임의 80% 이상으로 한다.
- 3) 임금구조 개선
 - 기본급 비중을 임금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한다.
- 4) 성과급 지급
 - 기업경영 성과를 연말에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 초과근로수당과 성과급은 노총 생계비에 기초한 임금교섭과 별도로 한다.
- 5)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 기업 순이익의 5% 이상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적립한다.
- 6) 경영참가의 확대
 - 경영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노사공동의 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여경영의 폭을 확대한다.

나. 정책, 제도개선 요구

임금인상 이외에 노동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도개선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4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가) 국민연금제도 개선

- 자영업자 및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노동자까지 가입대상 확대
- 급여요건의 완화와 급여수준의 인상
- 노사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확보
- 정부의 비용부담 확대(행정관리비 전액 부담)
- 기금운영의 수익성 제고(공공부문 투자 축소)
- 기금운영의 민주화와 독립성 제고(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노사 참여)

나) 의료보험제도 개선

-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 총보수에 의한 보험료 부과
 - 지역의보 보험료 부담의 축소
- 급여범위와 수준의 상향 조정
 - 진료일수 제한 철폐
 - CT와 MRI 등 고가 진료항목의 급여대상 포함
 - 필수 건강진단의 의무화
 - 본인부담금의 인하
- 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통합운영
- 의료수가체계의 개선
- 의료기관의 접근성 확보

다) 산재보상보험제도 개선

- 적용대상의 확대(전사업장의 보험 가입)
- 보험료 부과의 사회연대성 확보
- 정부의 관리운영비 전액 부담
- 장기급여체계에 적합한 보험료율 책정방식 및 재정 운영방식으로서의 전환
- 출퇴근 사고 및 과로사의 재해인정 등 재해인정 범위의 확대
- 휴업급여 수준의 인상
- 재활사업의 확대 및 체계화
- 제도운영 및 의사결정에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 확대

라) 고용보험제도 개선

- 고용보험제 적용대상 범위의 확대
- 고용보험제 소요비용의 정부 부담 확대
-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완화와 수급기간의 연장
- 실업급여 지급수준의 인상
- 고용안정 사업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의 인상
 - 휴업수당지원금, 인력재배치지원금, 전직훈련지원금, 지역고용촉진 장려금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직장보육시설 지원금
-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에 대한 전액지원

2) 실질소득의 보장

가) 근로자 주택 건설 및 근로자 주택기금 확충

- 근로자주택 공급 확대 및 분양면적의 확대 (전용면적 18평으로)
- 장기저리의 근로자 주택금융의 확대 실시 (재특기금의 평화은행 예치를 통한 기금조성 - 96년도 1,000억원 추가 예치, 목표 1조원)
- 대기업 사원주택 확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임대.분양

나) 공교육 재정 확충으로 사교육 수요 감축

- 독과점 대기업의 초과이윤이 교육투자화 되도록 유도

- 노동자 평생교육제도 도입
- 다) 근로자 재산형성 프로그램의 확충
 - 재형저축 가입대상 근로자의 확대 (월급여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 라) 형평성을 제고하는 조세제도 개혁으로 근로소득세 경감
 - 각종 공제금액의 인상
 - 교통비 공제 및 조합비 공제제도 신설
 - 재형저축 가입대상 근로자의 확대(월급여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대상을 전직종으로 확대
- 마) 물가안정
 -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한 노.사.정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 공공서비스중 종회서비스(대중교통수단, 우편요금등) 관련 요금은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낮추고, 종량서비스(전기, 수도, 가스등) 관련 요금은 종량누진제 확대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 보장
 - 주요 농산물 및 생필품은 물류개혁을 통해 가격안정 실현
 - 민간서비스요금은 규제완화 및 조세개혁으로 지대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물가안정
 - 중앙은행 독립으로 통화정책의 투명성 확보

3)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확충

- 가) 저소득 노동자의 내집마련자금 융자 자금 확보
- 나) 이전 취업자용 독신자 숙소 건립
 - 독신자의 숙소로 7평형 3만호 건설
- 다) 근로자 종합 복지타운 건립
 - 가족호텔 및 여행근로자 숙박시설
 - 쇼핑몰, 음식점 등 생활지원시설
 - 체육문화시설, 교육연수시설 및 위락시설
- 라) 체불임금 보전을 위한 입체불제 실시

마)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원

4) 산업민주주의 실현

가) 기업단위 작업환경 개선, 능력개발, 복지개선 등에 노조의 참여제도 도입

나) 기업단위 노동자 참여경영의 확대

- 고용안정을 제고하는 노사의 사전협의제도 도입 (외국인 근로자, 정리해고)
- 작업장단위 의사결정에 노동자가 참여하여 산업민주주의 및 생산성제고

다) 중앙단위 산업민주주의 제고

- 정부정책 입안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폭 확대
- 노총의 정치활동 보장
- 노.사.정 협의기구의 상설화
 - 업종, 지역단위 노사협의회 운영
 - 중앙단위 노.사.정협의기구를 상설화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제정책에 대해 사전협의

제 4 장

생산성 임금논리 비판

권혜자*

1. 머리말

생산성 임금논리는 1970년대 이래 정부와 기업이 제시해 온 임금가이드라인의 준거였다. 생계비 상승에 의거한 임금결정이 노동조합 상급단체가 제시한 ‘하한’의 가이드라인이었다면, 생산성 임금논리에 의한 임금결정방식은 임금수준의 억제를 위한 ‘상한’의 가이드라인이었다. 생계비에 의거하든 생산성에 의거하든 임금수준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노사 당사자간의 문제이며, 정부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도 정부의 임금억제정책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소득정책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다. 즉 경제전체의 생산성이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와 임금이 동반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 단기적으로 임금인상을 노동생산성 수준으로 억제함으로써 물가안정과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경우에도 정부의 개입은 단기적인 것이었다. 소득정책의 장기화는 소득분배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사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원

당사자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타기업의 임금수준에 민감하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노동생산성만큼 임금을 억제하도록 설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 20여 년 간 정부와 기업의 생산성 임금논리는 경기의 변화와 무관하게 임금인상률의 억제라는 동일한 목적에서 제기되어 왔다. 생산성 임금논리를 수용해야 할 근거도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되어 왔는데, 즉 지나친 임금상승으로 인하여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상승률을 상회함으로써 대내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키고 대외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을 약화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생산성 임금논리를 수용함으로써 물가안정과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임금수준을 생산성향상 수준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경제 노동생산성 임금논리는 일군의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나라의 노사관계는 오랜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지나친 통제로 인하여 아직도 그 자율성을 확립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자율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임금가이드라인의 제시가 아니라,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의 철폐를 요구하는 것이 '공익'에 접근하는 길일 것이다.

생산성 임금논리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과연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는가, 또한 임금인상이 국제경쟁력의 약화와 물가상승의 주범인가 하는 문제는 생산성 임금논리의 역사만큼이나 노사간의 오랜 논쟁거리였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국민경제의 평균적 노동생산성에 의거한 생산성 임금논리는 현실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다음으로는 공익연구단이 국민경제의 평균적 노동생산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어떤 지표와 산식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노사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지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생산성 임금논리는 역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노사가 생산성 임금논리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할 지라도, 그것이 어떤 지표로 산정되었는가에 따라서 임금인상률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노사가 모두 정부의 생산성 임금논리를 수용할 경우 정부는 그 반대급부로 노사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것인가도 문제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부의 조정안은 사용자 측의 가이드라인과 노동조합 측의 가이드라인

의 절충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어느 한쪽에 편향적이 라면 다른 한쪽에 대하여 타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조정안이 절충적 수준에서 제시된다 할 지라도 노사 양측에서는 이를 수용했 을 때의 출혈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은 임금요구 수준의 억제에 대 한 보상을, 사용자는 임금인상수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최근의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의 제시는 1993년과 1994년의 노사정 사회적 합 의의 연장선상에 서있다.

이 장에서는 이상의 세 가지 측면에서 공익연구단의 국민경제 노동생산성 임금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경총의 자본기여도를 고려한 생산성 임금논리는 공익연구단의 국민경제 노동생산성 임금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거기에서 ‘자본기여분’을 더 공제했을 뿐이므로 부수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2. 정부 및 사용자의 생산성 임금논리의 내용

가. 공익연구단의 국민경제생산성 임금논리

정부는 1995년에 이어 1996년에도 공익연구단의 국민경제 노동생산성에 따 른 적정임금인상률을 임금지도지침으로 수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1993년과 1994년에는 노경총의 중앙단위 사회적 합의에 따라 노사 공동으로 임금가이드 라인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1995년과 1996년에는 노총이 사회적 합의를 거부 함에 따라, 정부는 공익연구단의 국민경제 노동생산성 임금논리에 따라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공익연구단의 임금가이드라인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cdot \text{적정 실제임금인상률} &= \text{국민경제 명목노동생산성증가율} \\
 &\quad (\text{취업자 1인당 명목 GDP증가율}) \\
 &= \text{국민경제실질노동생산성증가율} + \text{디플레이터상승률} \\
 &= \text{실질GDP증가율} - \text{취업자증가율} + \text{디플레이터 상승률}
 \end{aligned}$$

·적정 협약임금인상률

$$= \text{실질GDP증가율} - \text{취업자증가율} + \text{디플레이터 상승률} - \text{임금부상률}$$

이상과 같이 공익연구단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은 적정 실제임금인상률과 적정 협약임금인상률로 제시되고 있다. 적정 실제임금인상률은 국민경제의 노동생산성 향상에 상응하여 임금인상률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적정 협약임금인상률은 적정 실제임금인상률에서 각종 임금부상효과를 공제한 것이다. ‘임금부상률’을 공제하는 것은 매년 실제임금상승률이 ‘학력, 호봉 및 직급, 직종 등 근로자의 인적속성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임금부상으로 인하여’ 협약 임금인상률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교섭에서는 임금부상분을 공제한 인상률로 교섭을 해야 연말의 실제임금인상률이 적정 실제임금인상률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공익연구단이 산정한 임금부상효과는 1995년과 1996년 모두 2.4%로 계산되고 있는데, 그 2.4%의 내용은 근속년수 증가에 따른 임금부상 0.4%, 사무직 비중 증가에 따른 임금부상 0.8%, 특별급여 증가에 따른 임금부상 1.2%를 더한 것이다.

$$\begin{aligned} \cdot \text{적정 실제임금인상률} &= \text{비농 실질GDP증가율} + \text{비농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 &\quad - \text{비농취업자증가율} \\ &= 8\% + 4.1\% - 3.1\% = 9.0\% \end{aligned}$$

$$\begin{aligned} \cdot \text{적정 협약임금인상률} &= \text{적정 실제임금인상률} - \text{임금부상률} \\ &= 9.0 - 2.4 = 6.6\% \end{aligned}$$

·범위 인상률의 적용 : 5.1 ~ 8.1%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pm 1.5\%$ 의 범위율을 적용함)

또한 공익연구단은 적정 협약임금인상률을 기업단위로 적용할 때 기업규모에 따라 $\pm 1.5\%$ 의 범위인상률을 지킬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장치로서 고임금기업은 가이드라인의 하한인 5.1%를, 저임금기업은 가이드라인의 상한인 8.1%를 지키라는 것이다. 이때 상한과 하한의 적용을 받는 고임금기업 및 저임금기업의 개념은 전국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아 130% 이상인 경우를 고임금기업, 80% 이하인 경우를 저임금기업

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범위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의 약 6%가 축소된다는 것이다.¹⁵⁾

<표 4-1>는 1993년 이후 노사정이 제시한 임금인상률을 보여주고 있다. 공익연구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실제임금인상률은 국민경제 노동생산성 상승 이내의 임금상승이다. 1993년 국민경제 노동생산성 상승률이 8.5%, 실제임금상승률이 12.2%였으므로 임금상승이 생산성증가율보다 3.7% 높았다. 1995년에는 노동생산성 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의 차이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생산성보다 임금상승률이 2.2% 더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공익연구단의 주장은 임금인상률이 국민경제 생산성의 성장을 앞지르고 있으므로, 국민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임금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 4-1> 노사정의 임금가이드라인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노경총 사회적 합의	4.7-8.9	5.0-8.7	-	-
공익연구단의 임금안 ¹⁾	-	-	7.1	6.6
국민경제노동생산성 ²⁾	8.5	9.4	9.5	9.0
한국노총	12.5	6.6-10.8	12.4	12.2
한국경총	4.5	3.2-6.1	5.4	4.8
실제임금상승률	12.2	12.7	11.7 ³⁾	-

주 : 1) 공익연구단의 실제 적정임금인상률에서 호봉승급분 등 임금부상률을 공제한 적정협약임금인상률임.

2) 국민경제 노동생산성은 공익연구단에서 산정한 적정 실제임금인상률임.

3) 1995년 실제임금상승률은 1995년 3/4분기까지의 평균임.

나. 경총의 자본기여도를 고려한 생산성 임금논리

경총이 제시한 생산성임금논리는 공익연구단의 임금가이드라인에서 사용된 지표와 산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단 공익연구단의 임금가이드라인에서 그해에 예상되는 ‘자본기여도’를 한번 더 공제하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15) 노사관계발전 대토론회 추진위원회(1996.1.8),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매일노동뉴스, 1996년 1월 9일자에서 재인용함.

즉 1996년도 경총의 적적임금인상률은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9.0%)에서 자본 기여도(4.2%)를 공제한 4.8%이다. 이는 연말의 실제임금상승률이므로 임금교섭에서 경총이 제시하는 임금가이드라인은 4.8%에서 임금부상률(2.4%)을 제외한 2.4%로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공익연구단과 경총의 임금가이드라인의 다른 점인 자본기여도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begin{aligned} \text{자본기여도} &= \frac{\text{자본코스트}}{\text{임금코스트}} \times (\text{1인당 자본코스트 증가율} \\ &\quad - \text{국민경제 생산성 증가율}) \\ &= 0.76 \times (14.5 - 9.0) = 4.2\% \end{aligned}$$

<표 4-2>는 자본기여도 산정과 관련된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자본코스트와 임금코스트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나타난 값을 사용하였으나, 1995년과 1996년의 경우는 1991년에서 1994년간의 4개년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추정한 전망치이다. 즉 경총은 1996년에 자본코스트와 임금코스트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예상하고 그에 따라 앞으로 1년간 자본이 국민경제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크기를 예측하여 임금인상률을 정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경총도 공익연구단의 생산성 임금논리와 마찬가지로 개별 기업에서의 생산성 상승에 의거한 임금결정원리가 아니라, 국민전체의 생산성-자본기여도를 고려한 임금결정원리로서 제시되고 있다.

<표 4-2> 자본기여도 관련지표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¹⁾	1996 ¹⁾
자본코스트/임금코스트	0.74	0.77	0.81	0.72	0.76	0.76
1인당 자본코스트 증가율	16.4	16.3	18.1	14.5	14.5	14.5

주 : 1) 1995년, 1996년은 추정치로 1인당 자본코스트 증가율은 최소추정치를 사용하였으며 (자본코스트/임금코스트)는 1991년 이후 평균치를 이용하여 추정함.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호.

경총, 「1996년 경총의 임금조정 기본방향」에서 재인용.

또 기업규모별 업종별 임금격차의 축소를 위해서 경총은 고임금기업의 임금 인상 자제를 통한 임금격차의 완화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수익성 및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순계 임금인상은 자제하고, 경영성과에 따른 변동적 성과급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시하고, '성과 배분도 철저히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임금부상률을 줄이도록 해야 함'(경총, 1996)을 주장한다.

3. 정부 및 사용자의 생산성 임금논리의 주요 논거 비판

가. 생산성 임금논리의 배경과 의미

공익연구단의 국민경제생산성에 따른 적정임금상승률은 명목임금상승률을 국민경제생산성의 증가율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상승률을 국민경제 노동생산성의 증가율 이내로 억제하게 되면, 임금이 상승해도 물가상승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즉 공익연구단의 국민경제 노동생산성에 따른 임금논리는

·명목임금 인상률 = 국민경제 실질 노동생산성 증가율 + 물가상승률

이므로,

·물가상승률 = 명목임금 인상률 - 국민경제 실질 노동생산성 증가율 ≤ 0 이 되도록 하여, 임금억제를 통해 물가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의 배경은 임금코스트 인플레이션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가 상승하는 상태에서 명목임금 상승이 노동생산성 증가보다 클 경우, 명목임금의 상승은 그대로 물가상승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임금을 인상해도 실질임금의 악화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대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국제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경총과 정부측에서는 1970년대 초반부터 생산성 임금논리를 주장해 왔으나, 최근의 국민경제노동생산성 임금논리는 일군의 노동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중립적인' 임금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아왔다. 그러나 국민경제성장을 고려한 생산성 임금논리의 주장은 공익연구단이 처음이었던 것은 아니다. 공익연구단의 '중립적인 임금안'은 1989년에 경총의 임금인상률 제시안과 동일

하다. 1989년 경총의 임금인상률은 실질 GNP 상승률+물가상승률-취업자 증가율로써, 현재 공익연구단의 제시안은 GNP상승률을 GDP상승률로 바꾸었을 뿐이다. 이는 또한 1974년 오일쇼크 이후 일경련이 제시했던 생산성기준원리와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생산성 기준원리가 제시된 것은 일경련은 노동문제연구위원회의 보고(1959년)에 따른 것이었다. 그 내용은 전국의 평균적인 임금상승률을 실질 경제성장률에서 취업자증가율을 공제한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자는 것으로 공익연구단의 제안과 동일하다.

일본의 생산성기준원리는 1974년 2차 석유위기로 물가가 폭등하자, 임금억제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정책이었다. 제1차 석유위기 직후 1974년의 물가는 ‘광란물가’라 불릴 만큼 폭등하였다(<표 4-3> 참조). 이때 노동조합은 실질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폭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는 1974년의 춘투에서 39.9%에 달했고, 실제 임금인상 취득액도 32.9%에 달해 전년의 20%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높은 임금인상률의 정착을 우려한 일경련은 1974년 춘투 이후에 ‘大幅賃上の行方研究委員會’를 설립하고, 생산성 기준원리에 따른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다. 일경련은 1975년 춘투에서 일경련은 15% 이하의 가이드라인을, 1976년에는 한자리수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이 제시했다. 일본정부도 이를 수용하여 16%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강력한 소득정책을 도입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부응하여 민간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직된 IMF-JC(국제금융노련 일본협의회)에서도 대폭적인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을 수반한다는 이유로 ‘賃上自肅論’을 주장하였다. 민간대기업을 자발적인 임금억제를 계기로 하여 1975년의 임금인상률은 일경련의 가이드라인이었던 15%를 하회하는 13.1%의 수준으로 저하되었다.

<표 4-3> 오일쇼크를 전후한 일본의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

(단위 : %)

	1972	1973	1974	1975	1976
IMF-JC임금상승률	15.6	20.1	32.9	14.0	9.3
실질 GNP상승률	9.2	4.5	-0.4	3.6	3.6
소비자물가상승률	5.7	15.6	20.9	10.4	9.5

자료 : 일본 IMF-JC

일본의 경우에서처럼 정부가 물가억제 및 임금통제 등의 강력한 소득정책을 실시하게 되는 배경은 물가가 상승하고 성장이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이었다. 정부의 임금정책은 전시체제나 국제경제환경의 악화로 인해 대외경쟁력이 약화된 경우, 혹은 노조의 교섭력이 강화되어 임금상승 압박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만 단기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왜냐하면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현상의 불확실성, 행정비용 증대 등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그에 따라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 및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楠田丘(1989)는 이러한 우려를 생계비 상승률(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생산성 상승률을 상회하는 상황에서의 임금결정의 어려움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상적인 경제환경 하에서는 [그림 4-1]과 같이 임금결정에서 생계비가 하한을 결정하고 생산성이 상한을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임금수준은 생계비를 상회하면서 생산성을 하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이를 결정짓는 요인은 노동력의 수급과 노사교섭력의 성격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나 석유위기 직후의 일본에서처럼 임금의 하한을 결정하는 생계비가 위로 오고 임금의 상한을 결정하는 생산성이 밑으로 가게 되면, 실질임금의 저하와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그림 4-2> 참조). 이때 임금을 억제하면 실질임금이 저하됨으로써 노동자의 소비성향이 낮아지고, 결국은 경제성장이 저해된다. 그렇다고 해서 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기업수익의 압박 때문에 임금코스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어, 기업의 도산, 고용불안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는 임금억제나 임금인상 중 어떤 정책도 경제성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으므로 극히 신중해야 하며, 이를 채택한 경우에도 단기간의 정책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4-1] 임금의 결정기준(정상적 경제환경일 경우)

[그림 4-2] 스태그플레이션 하의 임금정책

이와 같이 일본의 생산성기준원리는 석유위기라는 해외요인에 기인하는 광란물가의 억제 필요성에서 수용되었던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국민경제 생산성에 따른 임금억제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생계비 상승률이 생산성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필요하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임금 및 물가의 상호관계는 노사간의 주된 논란이었으나, 이와 관계된 연구들은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물가상승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물가상승 요인은 통화량 증대 및 수입물가의 상승, 독과점기업의 가격전가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나. 임금과 노동생산성의 비교

<표 4-4>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임금과 노동생산성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명목임금상승률을 보면 비농전산업의 경우 1986년을 제외하고는 물적 노동생산성증가율 및 부가가치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모두 상회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명목임금상승률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모두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측은 명목임금의 상승이 노동생산성의 상승을 능가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능력을 압박하고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 측에서는 임금은 곧 생활비이기 때문에, 임금이 어느 만큼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가, 즉 임금의 구매력 정도가 주된 관심사이다. 이를 표현하는 것이 실질임금인데, 이는 명목임금상승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나눈 것이다. <표 4-4>를 보면 지난 10여 년 간 실질임금의 변화가 노동생산성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농전산업의 경우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실질임금 상승률이 14.5%로 가장 높았던 1989년을 제외한다면, 실질임금은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증가율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실질임금상승률이 1987년, 1988년, 1989년의 3개년 동안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했으나, 1990년 이후로는 노동생산성 상승률을 하회하고 있다. 이는 1990년 이후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4> 임금과 노동생산성의 연도별 추이

(단위 : 원, %)

연도	명목임금	실질임금	소비자물가	노동생산성	
				물 적	부가가치
<비농전산업>					
1986	8.2	5.3	2.7	8.3	7.2
1987	10.1	6.9	3.0	7.6	7.5
1988	15.5	7.8	7.1	10.4	9.5
1989	21.1	14.5	5.7	7.5	8.0
1990	18.8	9.4	8.6	12.7	11.9
1991	17.5	7.5	9.3	13.9	12.6
1992	15.2	8.4	6.2	10.8	9.9
1993	12.2	7.3	4.8	8.0	9.1
<제조업>					
1986	9.2	8.3	2.7	9.2	6.8
1987	11.6	11.6	3.0	8.1	7.8
1988	19.6	18.3	7.1	10.5	10.1
1989	25.1	10.7	5.7	7.2	7.2
1990	20.2	6.9	8.6	12.5	11.4
1991	16.9	8.9	9.3	14.0	12.8
1992	15.7	6.1	6.2	10.9	10.0
1993	10.9		4.8	7.8	8.7

주 : 1) 90년 평균=100.0

2)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소비자물가*100으로 재계산.

3) 노동생산성은 한국생산성본부의 전체종사원 불변가격기준임.

자료 : 『한국노동통계연감』, 1994.

이와 같이 명목임금은 노동생산성을 상회하는데 실질임금은 노동생산성을 하회하는 상태에서, 임금과 노동생산성의 추이를 비교할 때 어떤 임금과 어떤 노동생산성지수를 사용하여 비교할 것인가는 노사간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사용자 측에서는 명목임금 상승률을 노동생산성 상승률과 비교하고자 한다. 사용자에게 있어 인건비 상승은 제조원가의 상승을 의미하며, 국제 경쟁력의 비교에 있어서도 명목임금 수준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 측에서는 생계비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의 상승이 중요하기 때문에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계산한 실질임금 상승률을 노동생산성 상승률과 비교할 것을 주장한다. 노동 측의 주장을 생산성 임금논리의 원리로 설명해보면, 명목임금 상승률=물가상승률+노동생산성 상승률이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물가지수로 나누어 산출되므로, 실질임금 상승률=노동생산성 상승률이 된다. 따라

서 임금을 노동생산성과 비교할 때에는 실질임금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국가경쟁력과 명목임금 상승률

정부는 지나친 임금상승으로 인하여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국민 경제 노동생산성 상승 이내로 임금을 억제할 것을 강변한다. 그러나 국제경쟁력의 약화는 임금상승 요인으로 설명되기에는 부적절하며, 기업의 설비투자, 기술개발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산업구조조정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지난 1987년 이후 급격한 임금상승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한 국제경쟁력의 약화 논리는 7,80년대의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의 국제경쟁력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비용을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와 비교할 때,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경우 선진국 기업들이 우리 나라에서 임금이 더 싼 중국이나 동남아국가로 이전할 만한 이유를 갖는 것도 당연하며, 이는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가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이행하는 한 그다지 걱정스러운 것도 아니다. 노동집약적 산업과의 노동비용을 비교하는 단순논리는 우리 나라 노동자와 태국이나 중국노동자의 생산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 나라 노동자들이 타국의 노동자들에 비해 생산성이 높다면 임금수준이 높아져도 경쟁력의 약화로 연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비용의 국제비교는 중국이나 태국 등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의 국가가 아니라, 경쟁적 관계에 있는 국가나 보다 선진화된 국가와 비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경쟁력의 비교는 그 경쟁부문이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우리 나라가 별다른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노동집약적인 부문에서 다른 나라와 경쟁한다면, 우리 나라의 상품은 값싼 인건비에 의거한 다른 나라 상품과의 경쟁력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기술 집약적, 고부가가치 부문에서의 경쟁이라면 인건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더라도 경쟁력의 우위를 가질 것이다. 결국 인건비 상승을 어떻게 노동생산성의 강화로 연결할 것인가가 경쟁력 우위의 주된 고리이다.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중진적 기술 및 고부가가치화를 겨냥한 자본설비투자의 제고가 요구될 것이다.

<표 4-5>는 시간당 노동비용을 국가별로 비교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시간당 노동비용은 1990년 3.71달러에서 1993년 5.37달러로 높아져, 대만 및 싱가포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일본이나 다른 경쟁국가와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6> 참조). 즉 우리 나라의 시간당 노동비용은 대만 및 싱가포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두 나라와 비교할 때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표 4-6> 아시아 각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비교

	1992	1993	1994	1995
일본	-5.4	-1.4	2.9	8.0
한국	10.7	7.0	7.6	12.6
대만	4.0	3.7	4.0	9.1
싱가포르	2.6	6.7	5.3	2.8

주: 1) 1995년 1/4분기 자료임.

자료: IMF, 국제금융통계(IFS), 각국통계월보

통계청, 계간 국제통계 1995년 9월호에서 재인용

더욱이 우리 나라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은 1990년대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다. <표 4-7>은 사업체 노동비용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데, 노동비용 총액의 전년대비 상승률은 1991년 23.9%에서 1993년 13.3%로 급속하게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비용의 축소는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나라의 인건비 상승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논리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7> 사업체 노동비용의 추이

(단위: %, 천원)

	1991	1992	1993
노동비용총액	1,012 (23.9)	1,180 (16.6)	1,337 (13.3)
현금급여	781 (17.1)	891 (14.0)	989 (11.0)
현금급여외 비용	230 (54.5)	289 (25.3)	348 (20.4)

주: 조사대상은 비농림 전 산업의 상용근로자 30인 이상임. ()안은 전년대비 상승률
자료: 노동부,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1994년호.

라. 독과점적 생산물시장

생산성 임금논리는 생산물시장이 경쟁적일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 생산물시장이 경쟁적이지 않다면 독과점기업은 가격전가를 통해 물가상승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초과이윤의 일부를 독과점기업 노동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임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생산물시장이 독점적인 경우 공익연구단의 제안대로 국민경제 노동생산성을 기준으로 대기업의 임금을 억제한다고 해서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대기업의 초과이윤은 모두 독과점기업으로 흡수될 것이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생산물시장이 독점-비독점부문으로 이중구조화되어 있는 상황하에서는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의 축소는 대기업의 임금인상 억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경제력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통해서 도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 4-8>는 시장집중의 현황과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시장집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산업세분류 상위 3사 출하집중률(CR₃)은 시장구조분석에 가장 보편적인 지표로서 상위 3사 기업이 시장의 총규모에서 점유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산업 5자리 상위 3사 출하집중률 60%이상의 고집중산업은 1966년 49.3%, 1970년 49.3%, 1977년 55.9%, 1981년 53.2%, 1985년 49.8%, 1989년 40.5%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가 독과점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 <표 4-9>의 출하액 기준 시장집중도를 보면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인 독과점형 품목의 출하액이 전체 출하액의 80% 이상을 넘어 대부분의 시장이 독점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강명현, 1991).

<표 4-8> 시장집중의 현황과 추이

(단위 : 개, %)

CR ₃ (%)	1966		1970		1977		1981		1985		1989	
	산업 수 (비중)	출하 액 비중	산업 수 (비중)	출하 액 비중	산업 수 (비중)	출하 액비 중	산업 수 (비중)	출하 액 비중	산업 수 (비중)	출하 액 비중	산업 수 (비중)	출하 액 비중
80-100	50 24.4	22.0	58 27.2	24.3	108 32.6	33.0	100 30.2	28.1	124 29.0	33.4	101 23.5	26.8
60-80	51 24.9	20.0	47 22.1	28.5	77 23.3	18.7	76 23.0	26.2	89 20.8	26.4	73 17.0	17.0
40-60	48 23.4	27.3	56 26.3	22.4	87 26.3	22.5	80 24.2	21.8	87 20.3	13.5	100 23.3	22.1
20-40	40 19.5	15.3	39 18.3	16.0	50 15.1	21.1	58 17.5	19.3	93 21.7	19.2	104 24.2	17.6
0-20	16 7.8	15.2	13 6.1	8.8	9 2.7	4.7	17 5.1	4.6	35 8.2	7.5	52 12.1	16.5
합 계	205 100.0	100.0	213 100.0	100.0	331 100.0	100.0	331 100.0	100.0	428 100.0	100.0	430 100.0	100.0
가중 평균	54.6		58.5		-		62.0		61.5		53.4	

주 : 가중평균은 제조업 전체의 출하액에서 해당산업의 출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중치로 한 것임.

자료 : 1) 1966년은 이규억(1977), pp.280-87

1970년은 이규억·서진교(1981), p.114

1977년 및 1981년은 이규억·이재형·김주훈(1984), p.106

1985년은 윤창호·이규억(1988), p.201

1989년은 윤창호·이규억(1992), p.179

2) 조우현의 『경제력집중이 임금 및 임금구조에서 미치는 영향』, 1992에서 재인용.

<표 4-9> 출하액 기준 시장집중도

(단위 : %)

	독과점형			경쟁형	품목총수
	상위3사 70% 이상	상위 3사 50-70%	소계	상위 3사 50% 미만	
1977	76.6	13.2	89.8	10.2	2,186
1982	72.9	15.1	88.0	12.0	2,310
1987	66.7	16.8	83.5	16.5	2,684

자료 : 강명현, 『경제력집중과 한국경제』, 매경, 1991.

최근의 연구들은 고집중 산업과 저집중산업간에 경제력 집중에 따른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과점기업이 임금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쉽게 전가할 수 있지만, 비독과점기업에서는 지불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인력부족과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기 어렵다. 그러나 독과점기업의 가격전가 행위는 정부나 사용자 측에서 주장하듯 대기업 노동조합의 교섭력 때문만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최근의 연구들은 노동조합운동이 유명무실했던 1987년 이전에 이미 고집중산업과 경쟁산업간에 현격한 임금격차가 나타났으며(조우현, 1992),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임금프리미엄도 1987년 이전에 이미 생산적으로 확대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권혜자, 1993).

이와 같이 경제력 집중이 높은 경우 생산성 임금논리의 기본전제는 성립할 수 없다. 생산성 임금논리의 기본전제는 임금=노동의 한계수입(추가로 노동자를 고용했을 때 발생하는 수입)과 같다는 것이다. 노동의 한계수입은 $\text{가격} \times \text{노동의 한계생산물}$ (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했을 때 늘어나는 생산물)이므로, 임금 변화율은 $\text{가격(물가)변화율} + \text{노동생산성 변화율}$ 이 된다. 이 산식에서는 가격변화율이 0일 때에만 임금변화율은 노동생산성 변화율과 일치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물시장이 경쟁적이지 않고 집중되어 있다면 독과점기업은 가격조작을 통하여 초과이윤을 확보하고, 그 일부를 독과점 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과 임금상승률을 연동시키기 위해서는 임금정책 만이 아니라, 독과점기업의 가격전가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비독과점업체 및 저임금업체에 대한 산업구조 조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와 국제 비교

생산성 임금논리는 노동소득분배율을 고정시킨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총부가가치액에 대한 임금총액의 비중이므로, 노동자 일인당 $\text{임금} = (\text{부가가치} / \text{노동자수}) \times \text{노동분배율}$ 로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임금상승률은

$$\begin{aligned} \text{임금상승률} &= (\text{부가가치증가율} - \text{근로자수증가율}) + \text{노동분배율증가율} \\ &= \text{부가가치노동생산성 상승률} + \text{노동분배율 증가율이 된다.} \end{aligned}$$

따라서 만약 임금 상승률이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상승률과 같다면 노동소득 분배율 변화율은 0이 된다. 즉 공익연구단의 적정임금인상률은 현재 우리 나라 노동분배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충분히 높다고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표 4-10>은 선진국의 1992년의 피용자 노동소득분배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61.0%로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또 일본과 비교할 경우 우리 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75년 수준으로 약 20년의 격차를 가지고 있다(<그림 4-3> 참조). 물론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은 나라가 꼭 노동자 생활수준이 높은 국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노동장비율이 높은 자본집약적 산업일수록 근로자당 부가가치가 커서 노동분배율이 낮아도 임금수준은 높을 수 있다(이선·강순희, 1992). 그러나 우리 나라가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 자본집약적 산업구조로 이행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소득분배율이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노동소득분배율의 제고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표 4-11>는 노동소득 분배율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국민소득을 노동에 배분되는 몫과 자본에 배분되는 몫으로 나눈 것이다. <표 4-11>에서 GDP 중 피용자보수의 비율은 전체 GDP 중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그러나 GDP에는 노동자의 분배 몫인 피용자보수와 자본의 몫인 영업잉여 이외에도 고정자본소모분과 간접세가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 요소소득(피용자보수+영업잉여) 중에서 피용자보수의 비중을 노동소득분배율로 본다.

<표 4-10> 각국의 노동소득분배율(1992년) (단위 : %)

국 가	노동소득 분배율	국 가	노동소득 분배율
한 국	61.0	프랑스	59.7
일 본	74.1	이탈리아 ¹⁾	57.0
미 국	74.2	네덜란드	67.8
영 국	66.3	캐나다	75.7
독 일	71.1	호주	57.3

주 : 노동소득분배율
=피용자소득/국내요소소득
자료 : OECD, Quarterly National
Accounts, No.3, 1993 및 Quarterly
Labor Force Statistics, No4, 1993.
한국은행, 『국민계정』, 1993.
한국노총, 『임금인상 활동지침』,
236쪽에서 재인용.

[그림 4-3] 일본의 피용자소득분배율의 추이

<표 4-11>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

연도	GDP 중 피용자보수	노동소득 분배율	임금근로자 중 취업자 비중	임금패리티
1986	39.4	50.0	54.0	92.6
1987	40.5	51.6	56.2	91.8
1988	41.9	53.4	57.0	93.7
1989	44.5	56.6	59.2	95.6
1990	45.5	58.2	62.4	93.3
1991	47.0	59.4	61.0	97.4
1992	47.4	60.2	61.0	98.7
1993	46.9	59.7	61.0	97.8
1994	46.5	59.6	62.0	96.1

주 : 노동소득분배율 = 피용자소득/국내요소소득

임금패리티 = 노동소득분배율/(임금근로자/취업자)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199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4

상기한 바와 같이 피용자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소득분배율을 변화로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임금패리티를 보아야 한다. 즉 총취업자수에서 피용자의 비중이 커지면 전체 피용자소득도 증대되므로, 실제 소득분배가 개선되지 않고도 노동소득 분배율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패리티는 피용자 노동소득 분배율을 피용자 비율(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로 나눈 것으로,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피용자를 포함하는 취업자 1인당 국민소득에 대한 피용자 1인당 소득의 비중을 표시한다.

<표 4-11>를 보면 피용자 노동소득분배율과 임금패리티가 1992년을 정점으로 모두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용자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를 보면 1986년에서 1994년까지 10년간 약 10%정도 증대되어 왔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1987년 이후 증대되어 1992년에 60.2%로 정점에 달했으나, 그 이후로는 다시 떨어지고 있다. 임금패리티(취업자 1인당 소득에 대한 피용자 1인당 소득의 비중)는 1987년 이후 1992년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이후 다시 하락하고 있어 임금근로자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이러한 상태에서 생산성 임금논리를 수용한다면 반드시 해마다 임금결정에서 노동분배율의 상향조정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국민경제노동생산성 임금논리 산정의 문제점

가. 생산성 임금논리 산정 지표의 문제점

1) GDP개념과 취업자 증가율의 지표

공익연구단은 국민경제 노동생산성 임금논리의 산식에서 노동생산성의 산출량으로 GDP성장률을 사용하고, 투입량으로는 취업자 증가율을 사용하고 있다. 노동생산성은 단위 노동투입량에 대한 산출량을 의미하는데, 어떤 투입량과 산출량지표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임금과 노동생산성 지표를 비교할 때에도 어떤 산정기준과 방법을 사용한 노동생산성 지표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생산성리뷰』,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노동부의 『노동생산성 통계조사보고서』등에서 노동생산성이 산정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나 노동부의 경우 제한된 표본을 사용하고 있어 시계열 비교가 어렵거나 대상품목이 한정되어 국민경제의 임금수준 변화와 비교자료로 적당하지 않다고 지적이 있다.

우리 나라 국민경제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을 측정할 때 산출량의 지표로 국내총생산(GDP)을 사용하는 것은 공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임금가이드라인의 산정방식에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GDP는 국내에서 생산된 총부가가치로서, 요소소득의 발생에 따라 피용자보수+영업잉여+자본소비+순간접세(간접세-보조금)로 구성된다. 따라서 GDP에는 임금노동자가 생산해 낸 부가가치뿐만이 아니라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등이 생산해 낸 부가가치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들의 생산성이 낮은 경우 GDP개념을 임금결정의 지표에 사용하게 되면 그렇게 결정된 임금수준은 실제 임금노동자의 노동생산성 상승을 하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동투입량의 경우에도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만약 노동생산성의 산출량으로 GDP개념을 사용한다면, 여기에는 임금근로자에 대한 피용자보수 만이 아니라 영업잉여 등도 포함되므로 이와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노동투입량으로 취업자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의 취업자개념에는 임금근로자 뿐만 아니라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취업자 증가율도 GDP증가율과 마찬가지로 임금인상률의 산정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정인수(1992)도 노동생산성 추계시에 경제활동인구상의 취업자개념을 노동투입량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용목적이 임금과의 관계가 아니고, 국제간의 노동생산성 비교나 한 국가의 노동생산성 변화의 추이를 실업이나 노동이동 등과 연결시켜 시계열상으로 또한 대분류로 볼 때'로 한정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노동 측에서는 노동투입량의 지표로 임금노동자 개념을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산출량 지표인 GDP개념도 임금노동자의 노동생산성 지표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윤진호(1995년)는 공익연구단의 생산성 임

금논리를 비판하면서 같은 이유에서 한국생산성본부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지수를 사용하여 임금인상률을 산정한 바 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광업, 제조업, 전기산업에 한정하여 물적 노동생산성 지수와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지수의 산출지표로 역시 불변가격 GDP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¹⁶⁾에서 생산성 본부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지수를 사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공익연구단이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을 기준으로 임금가이드라인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노동투입량은 취업자가 아니라 임금근로자로 바뀌어야 하며, 산출량 지표인 GDP개념도 노동투입량 지표에 적합한 산출량 지표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2)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상승률

공익연구단은 국민경제 노동생산성을 계산할 때 실질 노동생산성의 산출량 지표로 GDP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를 명목GDP로 바꾸어 주기 위하여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환산하기 위한 지수이다. 따라서 실질 GDP를 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를 각각 고려하여 실질GDP를 구하고, 이로써 명목 GDP를 나누어 종합물가지수인 GDP 디플레이터를 얻게 된다.

<표 4-12>는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과 소비자물가의 증가율을 차이를 보여준다. GDP 디플레이터는 생산자물가보다는 소비자물가에 근접하는 경향이 있으나, 1991년을 제외하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익연구단은 노동생산성의 산출량 지표로 GDP개념을 사용했으므로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명목 개념으로 바꾸어주는 것은 당연하다. GDP개념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국가간의 생산성 비교에 사용가능하며, 임금결정에서의 생산성 개념으로는 합당하지 않다. 따라서 생산성 임금논리에서 GDP개념을 사용할 수 없다면 GDP 디플레이터도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16) 한국노동연구원, 『1995년 KLI노동통계』, 134쪽

<표 4-12>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추이

(단위 : %)

	1990	1991	1992	1993	1994 ¹⁾
GDP디플레이터상승률	6.4	10.2	5.6	3.7	5.0
소비자물가상승률	8.6	9.3	6.2	4.8	6.2
생산자물가상승률	4.2	4.7	2.2	1.5	2.7

주 : 1) 1994년은 상반기 자료임.

자료 : 김재원, 「95년도 임금결정방법과 인상수준」, 1995.

노동자의 생계비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는 소비자물가이므로 임금결정에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공익연구단은 국민경제 노동생산성의 산출량 지표로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고 있고, 이것이 소비자물가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노동자의 실질임금 확보가 가능하다고 표현하고 있다(이선, 1995년). 그러나 GDP 디플레이터는 소비자물가만큼 생계비의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노동자의 실질임금의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변가격으로 산정한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의 추이를 대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방식도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실질임금은 소비물가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도출한 것이며, 불변가격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도출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일관성이 없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는 생계비와 관련하여 임금을 파악할 때 적절하며, GDP 디플레이터는 국민경제의 생산성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때 타당’(이선, 1992)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GDP와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한 국민경제 노동생산성 임금논리는 현재 노동자의 생계비수준과 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즉 어떠한 물가지수를 사용해야 하는가에 있어서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지표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3) 자본기여도를 공제한 경총의 생산성 임금논리

1996년에 경총은 공익연구단의 임금가이드라인 6.6%에서 자본기여분 4.2%

를 공제한 4.8%를 임금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총의 주장에 의하면 1996년의 임금인상률=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 상승률-자본기여도이다. 자본기여분을 공제해야 하는 이유는 기업의 '설비투자의 증대에 의하여 부가가치 생산성이 상승하더라도 이것이 모두 종업원의 능률상승이라든가 합리적 개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상승된 부가가치의 일부분은 증대된 설비투자에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다(경총, 1995).

물론 노동생산성은 단위노동투입량에 대한 산출량이므로, 동일한 노동투입하에서 산출을 늘리는 것은 무엇이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즉 노동생산성 증대는 노동만의 기여가 아니며, 다른 한편으로 노동생산성의 부진도 노동측의 귀책사유가 아니다. 노동생산성은 생산의 효율성을 재는 척도일 뿐이다. 따라서 노동, 자본, 경영, 기술 등의 생산요소의 투입량이나 질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상품시장 여건, 정부의 정책, 사회간접자본, 자본시설 등 외부여건에 따라서도 변화하는 것이 사실이다(최동규 1990).

그러나 이를 근거로 자본기여도를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증가율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자본기여도에 대한 보상을 이중적으로 받겠다는 논리 이외에 다른 아니다. 임금상승률은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상승률+노동분배율 증가율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이 고정되어 있다면, 즉 노동소득 분배율의 증가율이 0이라면 임금상승률은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상승률과 같게 된다.

이때 새로운 설비투자의 증대없이 노동강도의 강화나 노동력의 질적 제고를 통해 부가가치 생산성이 15% 증가한다고 가정해 보자. 임금상승률은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상승률과 같으므로 자본의 기여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분배몫은 15% 상승하게 된다(조우현, 1992). 만약 차기년도에 노동강도의 강화나 노동력의 질적 제고를 통해 부가가치 생산성이 15% 상승하고, 자본의 설비투자 증대로 인해 부가가치 생산성이 5% 상승하였다고 해 보자. 경총의 임금인상률에 따르면 그해의 임금인상률은 부가가치 생산성 증가율 20%에서 자본의 기여도 5%를 공제한 15%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증대로 인한 자본의 분배몫은 자본기여도 5%와 '순수한' 노동의 기여도 15%를 더한 20%가 될 것이다.

즉 공익연구단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임금논리는 노동분배율의 고정을 전

제한 상태에서 이미 자본분배몫을 자본기여도의 유무, 혹은 규모와 무관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총이 자본기여도를 고려한 임금인상률 책정을 주장하는 것은 자본분배몫을 이중으로 가산하여 받겠다는 것 외에 다른 아니다.

나. 임금인상률 산정시 임금부상률 공제에 대하여

공익연구단은 국민경제 노동생산성에 따라 적정 '실제임금'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으나,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임금부상분'을 고려하여 이를 제외한 수치를 적정 '협약임금' 인상률로 제시하고 있다. 매년 봄철의 '협약임금'은 '학력, 호봉 및 직급, 직종 등 근로자의 인적속성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임금부상으로 인하여' 연말의 실제임금 상승률과 차이가 나게 되는데, 공익연구단은 이러한 차이를 좁히기 위해 임금부상분을 임금 가이드라인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래 임금부상(wage drift)이란 산별 노동조합체제 하에서 교섭을 통해 결정된 협약임금과 노동자가 실제로 받는 임금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산업별 노동조합체제 하에서 협약임금 인상률은 노사간의 전국적, 지역적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전국적, 지역적 의미에서의 임금인상률이므로, 개별기업에서는 이를 기초로 작업의 난이도에 따른 임금, 특수작업수당, 보너스제도 등을 결정한다. 따라서 협약임금인상률은 원칙적으로 최저 임금인상률이며,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실제 임금인상률은 이를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공익연구단은 임금부상의 의미를 봄철 임금교섭시 타결된 임금인상률과 연말에 실제로 인상된 임금인상률간의 차이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동조합체제이므로 전국적 단위의 단체교섭에 의해 협약임금 인상률이 결정되지 않는다. 해마다 노총과 민주노총, 경총, 정부가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개별기업의 임금교섭에 있어 주요 참고자료일뿐 협약임금 인상률은 아니다. 공익연구단의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봄철 임금교섭을 통해 타결된 임금인상률을 의미한다.

<표 4-13> 임금타결인상률과 실제임금상승률

(단위 : %)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타결률	17.5	9.0	10.5	6.5	5.2	7.2
상승률	21.1	18.8	17.5	15.2	12.2	12.7
격 차	3.6	9.8	7.0	8.7	7.0	5.5

주 : 1992년 타결률은 총액임금기준이며, 기타 타결률은 통상임금기준임.

자료 : 노동연구원, 『KLI 노동통계』, 1995년.

<표 4-13>은 임금타결률과 실제상승률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6년간 임금타결률과 실제임금 상승률의 격차는 일관적 추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1994년의 경우 약 5.5%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공익연구단은 1995년의 경우 적정 실제임금 상승률에서 임금부상률을 2.4%을 뺀 적정 협약임금상승률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표 4-13>에 나타난 타결률과 상승률의 격차를 모두 임금부상률로 주장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에서 다루게 될 타결률과 상승률을 집계하는 통계 방법의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타결률과 상승률의 격차인 5.5%(1994년)가 1995년에 2.4%로 축소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익연구단 집계 임금부상률 2.4%를 제외한 3.1%를 통계상의 집계차이로 고려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임금부상의 원인에 대하여 공익연구단은 ‘노동력 수급요인(생산직의 인력난 등)에도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정부의 눈치를 살피가며, 기본급은 낮게 타결하고, 각종 수당, 상여금을 크게 인상한 것이 더 큰 요인(김재원, 1995)’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부상의 원인은 정부의 비현실적인 임금가이드라인과 임금억제정책에 1차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노동자가 이를 책임지고 임금인상 타결률을 낮춰야 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임금부상을 고려하여 임금인상 타결률을 낮추는 것은 오히려 기업으로 하여금 봄철 교섭에서 타결된 임금인상률을 허위보고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임금타결률과 실제상승률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살펴보고, 임금가이드라인에서 임금부상률의 공제가 정당성을 갖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협약임금인상률과 실제임금인상률의 차이는 두 가지 통계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이를 임금부상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타결임금 인상률과 실제임금 인상률 통계의 차이

타결임금 인상률과 실제임금 인상률은 각기 통계 집계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수치의 차이가 존재한다. 실제임금상승률은 노동부의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서 작성되는데, 10인 이상 상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중 약 3700개의 표본을 선정하고 있으며, 표본사업장은 산업 및 규모를 고려하여 층화추출하고 있다. 반면에 타결률 집계는 100인 이상의 상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전체를 집계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10~99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상승률이 1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실제임금상승률은 타결임금인상률보다 높게 나타나게 된다.

이외에도 타결임금인상률과 실제임금인상률의 통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인상률 차이는 어수봉의 「고용조정과 임금구조변화(1993)」에 잘 나타나 있으므로, 이를 요약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① 두 가지 통계의 작성시점이 다르다. 타결임금 인상률은 타결시점에서 집계되는 반면, 실제임금 인상률은 매월 조사된다. 따라서 임금이 타결되는 시점이 늦을수록 통계에 반영되는 정도가 작기 때문에 타결임금인상률이 실제임금상승률에 반영되는 정도가 작아져서, 두 임금통계의 괴리가 발행한다. 타결임금 인상률은 앞으로 지급될 인상률이고, 실제임금 상승률은 이미 지급된 상승률이기 때문에 두 통계의 시차(1993년 현재 두 통계의 시차는 약 4.5개월로 추정됨)로 인해 괴리가 발생한다.

② 실제임금 상승률을 산정하는 『매월노동통계』는 사업체의 고용과 임금을 동시에 조사하는 정부의 지정통계이나, 타결임금 인상률 조사는 행정통계이므로 사업장의 평균임금 인상률을 계산할 때 가중치로 사용되는 고용통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타결임금 인상률 계산에서 사업장의 규모별 고용가중치가 『매월노동통계』의 고용가중치와 다르게 평가되어 있다면 두 통계의 괴리가 있을 수 있다.

③ 두가지 통계에서 조사대상이 되는 임금구성이 다르다. 『매월노동통계』에서는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를 포함하는 임금총액이 조사대상인데, 타결임금 인상률 조사에서는 1992년을 제외하고(1992년에는 총액임금이 대상이었

음) 통상임금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타결임금 인상률 조사에서 통상임금의 인상률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부분(성과배분, 생산장려수당 등 변동적 수당)등의 인상률이 다르면 실제임금 상승률과 타결임금 인상률의 괴리가 증폭된다.

2) 임금부상률의 공제 논리에 대하여

공익연구단은 1995년에 이어 1996년에도 ① 근속년수 증대에 따른 임금부상 0.4%, ② 특별급여 증가에 따른 임금부상 1.2%, ③ 사무직 비중 증가에 따른 임금부상 0.8%를 합하여 임금부상률을 2.4%로 추정하고 있다. 임금부상의 원인은 앞에서 말한대로 '학력, 호봉 및 직급, 직종 등 근로자의 인적속성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이선, 1995)' 발생하는 것이다.

① 근속년수 증대에 따른 임금부상

기존 노동자의 근속년수의 증대는 국민경제 노동생산성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공제해야 할 이유가 없다. 엄밀히 말하자면 노동자구성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존 노동자의 근속년수 증대에 따른 임금상승이 존재하지 않는다. 매년 모든 기업에서 자연승급이 있더라도 입직자와 퇴직자가 같다면 전체적으로 근속년수의 증대로 인한 임금상승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퇴직자와 입직자의 구성이 다르다면, 즉 입직자가 퇴직자보다 많거나(혹은 적거나) 입직자의 학력, 기술 등 인적자본이 기존노동자보다 높다면(혹은 낮다면), 이는 임금인상(혹은 인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기존노동자의 생산성 변화와 무관하며, 고용조정에 따른 국민경제 생산성의 변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특별급여 증가에 따른 임금부상

임금부상은 정부의 한자리수 임금억제 정책의 결과로서, 개별기업에서 임금

인상의 결과를 실제보다 낮추어 허위보고하거나, 변동적 수당의 설치 및 사후 성과배분을 통하여 발생한 현상이다. 따라서 개별기업의 자율적 임금교섭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임금억제 정책이 없다면 이로 인한 임금부상도 축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급여 증가에 따른 임금부상을 임금인상률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업의 허위보고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 즉 기업은 형식적으로는 그 해의 임금타결률을 공익연구단의 임금가이드라인에 맞추지만, 실제로는 사후 성과배분을 통하여 임금인상률을 높이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과배분제도의 권장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임금부상을 높이고, 생산성과 무관하게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임금연구회는 기업단위의 적정한 임금조정과 생산적 임금교섭을 위한 요건으로서, 연초의 임금인상 수준 결정은 노동시장의 요건 등 거시적 준거에 따르고, 성과배분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사회적 배분 몫의 결정에 반영하도록 제시하고 있다(이선, 1995). 이러한 언급과 일관성을 가지려면 공익연구단의 특별급여 증가분 1.2%는 변동적 성과배분이 아니라 고정적 특별급여의 상승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정적 특별급여의 상승률만 1.2%만큼 실제 임금인상률에 포함시키고, 그외 성과배분은 실제 임금인상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고정상여를 포함한 임금인상률만을 그해의 임금인상률에 산정하여 차기년도의 임금교섭에서 인상 기준액으로 사용하고, 성과배분은 차기년도의 임금교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노력은 차기년도의 임금인상으로 연결되지 않게 된다. 결국 사후 성과배분은 공정한 임금배분으로 연결되지 못함으로써, 노동자에게 생산성 향상노력의 誘因으로 작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③ 사무직 비중 증가에 따른 임금부상

마지막으로 사무직 비중 증가에 따른 임금부상은 고용구조 변화에 따른 임금부상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생산성 임금논리에서 공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왜냐하면 기존노동자의 생산성 향상노력이 없어도, 노동력 구성의 변화로 인해 국민경제의 노동생산성은 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조정분에 의한 임금부상을 국민경제 노동생산성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경험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고용조정분에 의한 임금부상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무직 비중 증가에 따른 임금부상 뿐만이 아니라, 중화학 공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고용비중 증대,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 증대, 중소기업규모사업장의 고용비중 증대, 비정규직 고용의 증대에 따른 임금부상률 등도 복합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현재 공익연구단의 생산성상승률-임금부상률 논리를 받아들인다 해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1996년에 고용조정에 의한 임금부상분이 (+)일지 (-)일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임금부문에서 고임금부문으로의 노동력 구성이 변화할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임금부상이 (+)이므로 노동생산성에서 공제해야 하지만, 노동력구성이 고임금부문에서 저임금부문으로 변화할 경우에는 임금부상이 (-)이므로 노동생산성에 가산해 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임금부상률 공제논리는 1996년도 국민경제 노동생산성 전망치인 9%가 이러한 고용조정분을 포함하여 계산된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 만약 국민경제 노동생산성 전망치 9%가 1996년의 고용조정 전망을 포함하여 산정된 것이 아니라면, 여기에서 고용조정에 의한 임금부상분을 공제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다. 범위 인상률 적용의 문제점

공익연구단은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하여 국민경제 생산성에 따른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하한 5.1%-상한 8.1%까지의 범위율로 제시하고 있다.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의 완화는 정부나 사용자측 뿐만이 아니라 노동운동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공익연구단의 범위율 적용방법은 국민경제노동생산성에 따른 임금인상률 결정이라는 기본원리를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공익연구단은 노동생산성과 무관하게 전국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범위율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민경제 노동생산

성을 기준으로 노동생산성이 상회하는 기업은 고임금률을, 하회하는 기업은 저임금률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전국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임금기업과 고생산성기업, 그리고 하위 임금기업과 저생산성기업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또 그것이 일치하는 경우라도 상위임금 기업에서는 생산성 향상이 있어도 임금인상을 억제해야 하며, 하위 임금기업-저생산성 기업에서는 생산성 향상 노력과 무관하게 더 높은 임금인상율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는 공익연구단이 주장하는 노동생산성 향상만큼의 임금상승이라는 기본원리를 저버리는 것이다.

공익연구단이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범위인상률 설정에서 논리적 일관성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국민경제 노동생산성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는 기업과 이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한 임금격차 축소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민경제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기업은 생산성 초과분에 대한 임금분배를 받고, 국민경제 노동생산성을 미달하는 기업은 노동생산성의 향상 노력을 통해 임금인상을 도모하게 될 때, 생산성임금논리의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공익연구단의 범위인상률의 준거인 전국 평균임금은 고임금기업과 저임금기업을 구분하는 준거가 될 수 없다. 공익연구단은 전국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30%이상을 임금억제 대상인 고임금기업으로, 80% 이하를 임금인상 대상인 저임금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전국 평균임금을 국민경제 노동생산성을 반영한 적절한 임금수준으로 보는 것이다. 이를 1995년 월평균 임금(정액급여+상여금 월할) 1,119천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996년 5.1%의 협약인상률을 적용 받는 기업은 월평균임금 수준이 1,455천원 이상의 기업이며, 8.1%의 협약인상률을 적용받는 기업은 월평균임금 895천원 이하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고임금 수준은 1,455천원으로 1995년 도시근로자 4인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1,453천원¹⁷⁾을 간신히 충족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구분이다.¹⁸⁾

17) 통계청의 가계조사에 의하면 1995년도 4인 가구 기준 소비지출은 1,453천원이며, 비소비지출을 포함한 생계비는 1,624천원이다.

18) 고임금기업과 저임금기업을 구분할 때에는 그 준거가 명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에서는 공익연구단의 국민경제 노동생산성 임금논리와 동일한 내용을 갖는 일본의 생산성기준 원리가 개별기업의 임금인상률 결정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살펴보자.

생산성기준 원리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명목임금 상승률을 국민경제 전체의 평균적 물적생산성 상승률에 일치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국민경제생산성을 상회하는 기업은 제품가격의 저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생산성과의 일부를 균점하게 하고, 동시에 설비투자와 노동장비율을 높여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국민경제 생산성보다 생산성이 낮은 산업이나 기업의 경우에는 당해 업종 또는 기업의 임금인상률을 평균적 생산성 상승률까지 인상함으로써, 국민경제 전체에서 보면 임금코스트와 임금격차 구조를 안정시키고자 의도하였다. 그리하여 저생산성 부문에서는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증액에 따른 경영부담 증액을 노사 공동의 생산성향상노력에 의해 흡수하고자 하는 것이었다(川野廣, 1990).

그러나 현재 일본의 경우에도 사실상의 생산성 임금논리는 그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그 기업의 업종이나 기업의 생산성 신장률만큼의 임금인상에 머물고 있다. 일경련의 지도지침도 국민경제 생산성보다 생산성이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산업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그 산업이나 기업의 생산성 상승률 이하로 명목임금상승률을 묶어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국민경제 노동생산성에 따른 생산성 임금논리를 현실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공익연구단의 임금가이드라인은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임금결정을 국민경제 노동생산성이라는 거시적 지표로 대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물가안정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력과 소득정책이 필수적이다. 국민 경제 노동생산성 보다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임금상승의 억제분을 가격인하로 돌릴 수

영국의 TUC(Trade Union Congress)에서 제안되고 Low Pay Unit에서 수정되어 채택된 '저임금수준'은 모든 남성의 근로소득의 중위값(median)의 2/3 수준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저임금수준의 정의를 사용하여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를 구분한 연구로는 조우현의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난 노동수요측 특성과 임금 및 임금구조의 결정'(1991)이 있다.

있는가?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자의 노력이 합당한 임금보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가? 또 이를 대가로 정부에서 지불할 수 있는 반대급부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이를 지지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강력한 노동조합세력이 존재하는가? 이러한 선결문제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공익연구단의 범위 인상률은 임금교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대기업의 임금억제를 위한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불과한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에서는 정부와 사용자측이 주장하는 국민경제 노동생산성 임금논리, 혹은 자본기여도를 고려한 국민 경제 노동생산성 임금논리를 검토하였다. 공익연구단의 제시한 국민경제 노동생산성 임금논리는 1996년에 정부의 임금정책으로 공식적으로 수용되었으나, 현재 정부가 임금억제를 겨냥한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의심스럽다. 임금결정은 기본적으로 시장과 노사간의 자율적 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부가 임금억제를 위한 임금가이드라인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근거가 필요하다.

국민경제 생산성 이하로 임금을 억제해야 한다는 공익연구단의 근거는 임금의 상승이 노동생산성을 상회하여 국제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왔다는 데 그 핵심이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노동생산성을 여전히 하회하고 있으며, 1991년 이후 그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 동시에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도 줄어들고 있으므로 국제 경쟁에 있어서도 임금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우리 나라의 명목임금 수준은 빠른 상승률을 보여 현재 싱가포르나 대만 등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노동생산성 상승률은 이들에 비해 훨씬 앞서고 있어, 임금상승이 국제경쟁력 약화의 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생산성 임금논리는 생산물시장이 경쟁적일 것을 전제로 하며, 다른 한편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을 고정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생산물시장은 고도로 집중되어 있으며 독과점 기업의 가격전가 행위에 따라 물가

도 고정되기 어렵다. 물가가 오르는데 명목임금상승을 노동생산성 상승에 일치시키게 되면 이는 실질임금의 하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독과점적 시장구조 하에서 생산성 임금논리는 설득력을 잃는다. 한편, 물가가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생산성 임금논리에 따른 매년의 임금인상은 기존의 노동소득분배율을 고정시키게 된다. 만약 생산성 임금논리를 수용해야 한다면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상향을 별도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공익연구단의 국민경제 노동생산성 임금논리는 그 산식에서도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국민경제 노동생산성의 산출량 지표로 GDP 성장률을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지만, 이는 국가간 생산성의 비교에 합당하며 임금결정의 준거로 사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GDP 성장률에는 임금노동자와 무관한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들의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GDP 디플레이터와 취업자 증가율도 같은 이유에서 임금결정의 산식에 사용되는 데 무리가 있다. 물가지수는 노동자의 생계비 상승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소비자 물가를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고, 노동생산성의 투입량은 취업자 증가율이 아니라 임금노동자 증가율로 대치되는 것이 올바르나, 이 경우에도 합당한 산출량 지표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익연구단은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범위인상률을 제시하고 있는데, 범위인상률의 적용기준이 자의적어서 현실적 적합성을 갖지 못한다. 즉 공익연구단은 월평균임금을 사용하여 130%이상의 고임금업체와 80% 미만의 저임금업체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논리적 일관성과 현실적 적합성이 모두 결여되어 있다.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려면 국민경제 노동생산성을 기준으로 생산성이 초과하는 기업이나 미달하는 기업에 대한 범위인상률로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범위인상률의 제시는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산업정책과 연동되어야 그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익연구단의 생산성 임금논리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유도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갖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사용자측이 국민경제 노동생산성 임금논리를 수용하면서 ‘자본기여도’만을 더 공제할 것을 주장한 것

을 보면, 공익연구단의 생산성 임금논리는 사용자 측에 대해서는 일정한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익연구단이 제시한 6.6%의 임금가이드라인은 노동조합이 생계비 논리에 의거하여 제시한 임금인상률과는 상당한 거리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이를 수용하여 임금을 스스로 자제함으로써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아무런 경제적·사회적 반대급부도 없다는 점에서, 공익연구단의 국민경제 노동생산성 임금논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임금억제를 위한 정부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다름 아니다.

제 5 장

일본 노동조합의 최근 임금정책과 그 시사점

윤진호*

1. 머리말

최근 일본경제는 버블 붕괴후의 장기에 걸친 불황의 후유증을 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엔고의 타격으로 인해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산업간의 파행성, 고용불안 등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日經連을 비롯한 경영측은 불황극복을 위해 「임금동결론」을 부르짖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잇다른 춘투의 패배에서 보듯이 그 교섭력이 극히 떨어진 가운데 낮은 임금인상률, 노동분배율의 저하, 연공임금논리의 붕괴 등 임금정책을 둘러싼 수다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일본노동조합들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새로운 임금정책을 입안, 추진중인데 이는 상황은 다소 다르지만 한국의 노동조합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이러한 일본의 임금을 둘러싼 정세변화 실태와 이에 대한 일본노동조합의 대응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95년 6월 10-18일에 걸쳐 일본노동조합들을 방문, 임금정책 담당자들과의 인터뷰 및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도시근로자 생계비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아래에서는 이 일본방문조사의 결과를 소개하고 몇 가지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조사개요 >

- 조사기간 : 1995. 6. 10-18.

- 방문기관 : 日本勞動組合總連合會(連合)

全日本金屬産業勞動組合協議會(IMF-JC)

日本鐵鋼産業勞動組合連合會(鐵鋼勞連)

全日本自動車産業勞動組合總連合會(自動車總連)

全日本電機.電子.情報關連産業勞動組合連合會(電機連合)

全日産.一般業種勞動組合連合會(日産勞連)

法政大學 大原社會問題研究所(자료수집)

東京大學 經濟學部(자료수집)

- 조사내용 :

1. 조직의 개황
2. 임금인상요구의 기초
3. 임금인상액의 구성내용
4. 생계비조사에 관한 사항
5. 생계비와 임금정책과의 관련
6. 임금 외의 요구사항
7. 임협, 단협시 기업별노조, 산별노조, 중앙조직의 역할과 기능
8. 요구관철을 위한 투쟁방법, 수단
9. 임금격차의 실태와 그 대응책
10. 연공임금제의 변화실태 및 이에 대한 대응
11. Life-cycle 변화에 따른 생애임금곡선의 실태와 대응
12. 기타 임금정책과 관련된 현안
13. 한국노동조합의 임금정책에 대한 제언

2. 연합의 임금정책

가. 조직개황

連合은 1989년 11월 21일에 발족한 일본최대의 노동조합 중앙조직이다. 종래의 舊 連合(민간부문조직, 1987.12.)과 總評(공공부문조직)이 합쳐진 것으로서 79개 구성조직, 약 782만명의 조직원을 가진 사실상의 일본노조운동 통일조직이다. 기타 全勞連(86만), 全勞協(30만) 등 소수와 조직이 있지만 連合이 전체 조직노동자의 61.6%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노조인 금속노협을 위시한 주요 산별노조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노동조합운동을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표 1 참조).¹⁹⁾

<표 5-1> 주요단체별 노동조합원수의 추이

(단위 : 천명, %)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계	12,227	12,227	12,265	12,397	12,541	12,663	12,669
連 合	5,323 (43.5)	5,445 (44.5)	7,614 (62.1)	7,615 (61.4)	7,642 (60.9)	7,819 (61.7)	7,823 (61.6)
全勞連	--	--	835 (6.8)	840 (6.8)	859 (6.8)	856 (6.8)	857 (6.7)
全勞協	--	--	290 (2.4)	299 (2.4)	296 (2.4)	300 (2.4)	298 (2.3)
기 타	6,239 (51.0)	6,246 (51.3)	3,897 (31.8)	3,872 (31.2)	3,993 (31.8)	3,944 (31.1)	

주 : 1) 두개 이상의 주요단체에 가맹하고 있는 노동조합원수는 각각의 주요단체에서 중복하여 집계하고 있으므로 주요단체별 노동조합원수의 계는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2) 기타란 연합, 전노련, 전노협에 가맹하지 않고 있는 單産 등과 무가맹(모든 상부조합에 가맹하지 않고 있는 노동조합)을 말함.

자료 : 日本勞動機構 編, 『平成7年版 勞動運動白書』, 日本勞動機構, 1995.

19) 일본노동조합운동의 조직변천과정과 조직현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法政大學 大原社會問題研究所 編, 『<<連合時代>>の勞動運動』, 總合勞動研究所, 1992.

나. 임금인상투쟁과 연합의 역할

연합은 역할분담론을 내세우고 있다. 즉 임금투쟁은 「가맹조직의 책임과 연합의 조정사항」으로, 정책제도개선투쟁은 「연합의 책임과 가맹조직의 참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²⁰⁾ 또한 노동시간단축은 예컨대 근로기준법 개정문제로서는 후자로 구분되나 개별구체적인 시간단축 문제는 임금투쟁과 마찬가지로 전자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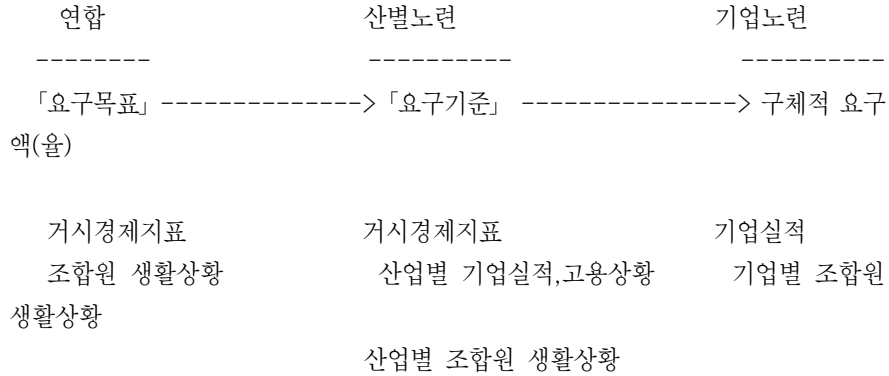
따라서 임금, 근로시간 등 구체적 노동조건은 企業別勞連(기업별노조의 상급단체로서 기업과 산업의 중간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닛산노련에는 닛산의 각 사업장별 노조 뿐만 아니라 닛산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의 노조들도 가입되어 있다)과 단위기업 간의 협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산별노조나 중앙조직의 기능은 미약한 편이다.

전후 일본의 노동운동은 가능하면 산별조직을 결집하여 산별수준에서 임협, 단협을 맺는 것을 추구하였으나 실제로는 산별조직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곳은 별로 없다. 단 私鐵總連과 ぜんせん同盟은 기업별노련과 산별노련이 공동조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별협약이 부진한 이유는 기업측의 거부 때문이다.

현재 산별노련의 역할은 산별 경영자조직과의 협의, 기업별노조활동의 지시, 조정 등 기업별 임금협상의 환경조성에 주력하는 데 머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春闘시 「요구기준」의 통일, 기업측으로부터의 회답일의 통일, 대기업 순회 설명회의 개최 등이다.

연합은 춘투시 산별 요구기준의 설정에 앞서 「요구목표」를 결정한다. 이는 거시경제지표의 동향과 조합원 생활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각 산별노련은 이를 참고(guide-line)로 해서 각 산별 요구기준을 정한다. 이를 도해하면 [그림 1]과 같다.

20) 역할분담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로서는 早川征一郎, 「春闘の展開と變貌-春闘史の中での連合春闘」, 法政大學 大原社會問題研究所 編, 『<<連合時代>>の労働運動』, 総合労働研究所, 1992 참조.



[그림 5-1] 임금협상에서 각 조직의 역할

다. 생계비조사와 임금 간의 관련

일본의 노동조합들은 패전직후에는 생활보장급 확보에 주력하였다. 그후 50년대 후반~70년대초에는 「이론생계비」 개념에 입각한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이는 각 산별 단위로 30-40 세대씩 20개 산별 총 600-800개 표본에 대해 가계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market basket을 구성하여 이론생계비를 산출하는 방식이었다. 이때 물가는 독자적인 시중물가조사를 통해 결정되었다.

이렇게 작성된 이론생계비를 바탕으로 하여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필요한 생계비」의 내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경영측을 설득하는데 곤란을 겪었다. 따라서 이론생계비를 충족하는 임금달성은 목표 내지 슬로건이기는 하지만 그 효과는 별로 없었다.

이에 따라 차츰 이론생계비로부터 실태생계비로 조사내용이 바뀌는데 이는 곧 market basket 구성의 포기를 의미한다.

현재는 m.b.방식의 이론생계비는 조사하지 않고 있다. 단 후술하는 바와 같이 電機連合에서 5년 마다 m.b.방식으로 표준생계비를 조사하지만 이것도 생애임금곡선의 타당성을 체크하기 위한 것일 뿐 임금인상요구의 기준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일본 노동조합들은 그 대신 생계비 파악에 있어 정부의 가계조사결과를 이

용하고 있다. 정부의 가계조사는

- 1) 총리부의 가계조사 약 8,000세대(실태생계비)
- 2) 인사원의 표준생계비 조사(이론생계비) 등 두 가지가 있다. 이중 생계비 파악의 주된 수단은 인사원의 표준생계비 조사이다.

<인사원의 표준생계비 조사>

인사원은 매년 국가공무원의 급여권고를 행하고 있는데 이때 참고자료로서 표준생계비를 산정하고 있다. 종래는 2-5인 세대에 대해 식품비는 m.b.방식(소정의 칼로리 및 영양량을 섭취하는 데 필요한 식료품의 품질, 종류, 수량 등을 정하고 이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 산정하고 나머지 비목은 총리부 가계조사의 당년 4월분 비목별 평균지출액에 환산승수를 곱하여 세대인원별로 산정하는 방식을 취해왔으나, 1991년부터는 산정 방법을 바꾸어 M.B.방식을 폐지하고 모든 비목에 대해 총리부 가계조사의 비목별 평균지출액과 생계비환산승수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실태생계비 방식)으로 바꾸었다. 그 이유는 1) 1인 세대의 산출방법 및 추계식의 문제점 2) m.b. 방식 자체의 문제점 때문이다.²¹⁾

인사원 표준생계비에서 산정대상이 되는 표준가구의 구성은 1-5인 가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1인 가구는 18세 정도, 2인 가구는 부부(남편만 취업, 남편 28세 정도), 3인 가구는 부부와 자녀 1명(남편 32세 정도), 4인 가구는 부부와 자녀 2명(남편 36세 정도), 5인 가구는 부부와 자녀 3명(남편 40세 정도)으로 구성되어 있다. 95년 4월 현재 인사원의 가구인원별 표준생계비는 <표 2>와 같다.

그러나 인사원의 표준생계비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소비실태와 차이가 많이 난다는 비판도 존재하고 있다.²²⁾

따라서 현재 일본의 임금결정에 있어 생계비의 영향력은 극히 약하게 되어

21) 인사원 표준생계비의 변화내용에 대해서는 横山英和, 「世帯人員別標準生計費の算定方法はどのように改められたか」, 『労政時報』, 第3043號, 1991. 11.8. 참조.

22) 國公勞連調査部, 「標準生計費 體驗活動の結果をみて」, 『國公勞調査時報』, 第342號, 1991.6.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다만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요구액에 「소비자물가지수」가 반영되는 점에서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 뿐이다.

<표 5-2> 가구인원수별 표준생계비(1995년 4월 현재)

(단위 : 엔)

가구인원	전국평균	동 경
1인	108,140	124,780
2	175,620	194,650
3	214,610	227,910
4	253,670	261,170
5	292,710	294,420

자료 : 人事院, 「標準生計費調査」, 『勞政時報』.

라. 임금인상요구의 근거²³⁾

70년대 중반의 석유파동 이후 일본노동조합의 임금인상요구기준은 이른바 「經濟整合性論」이다. 즉 지나친 임금상승이 물가상승과 경제성장률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제하에 임금상승률을 거시경제의 성과(=작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당년도 취업자1인당 실질성장률)에 맞추어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75년의 同盟의 사회계약적 운동론으로부터 시작되어 79년에 「경제정합성론」으로 정식화되었으며, 80년대에 들어와서는 명시적, 암묵적으로 일본노동운동 가운데 상당한 합의를 보게 되었다.

23) 일본노동조합의 임금정책의 사적 전개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그 동안 많이 소개 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이 주제에 대해 관심있는 독자는 다음의 자료 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황덕순, 「일본노조의 임금정책과 한국노조운동에 대한 합의」, 『월간 흐름』, 1995. 9; 강신준, 「일본적 노자관계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실천적 합의」, 『동향과 전망』, 1995. 가을; 이민영, 「일본노동조합의 임금정책」, 『노동사회연구』, 창간호, 1995. 9; 안희탁, 「일본의 임금제도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인사관리학회, 『인사관리연구』, 제17집, 1993; 오학수, 「일본의 임금제도와 임금교섭」, 박영범 외, 『주요국의 임금제도』, 한국노동연구원, 1995; 氏原正治郎 外編, 『現代日本の賃金』, 社會思想社, 1977; 同, 『賃金問題の課題』, 社會思想社, 1977; 高橋洸, 『現代日本の賃金管理』, 日本評論社, 1989; 中林賢二郎 外編, 『日本の労働組合運動 3: 要求・闘争論』, 大月書店, 1985; 總評四十年史編纂委員會, 『總評四十年史』, 第一書林, 1993.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경제성장, 고용, 물가 등과 밀접한 상호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기본인식에 서서, 임금인상요구를 국민경제, 국민생활의 바람직한 정합성을 확립하여 가기 위한 중요한 결절점으로 파악」하고, 일본경제 전체의 balance 가운데서, 구체적으로는 경제성장, 물가, 고용 등과의 관계를 고려에 넣어 임금인상을 요구한다는 것이 바로 경제정합성론이다.

이에 따라 춘투방식 역시 「관리춘투」로 바뀌었다. 즉 노동조합은 파업권을 포기하고 경영자단체가 내놓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일방적 회답(一發回答)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경제정합성론에 대해서는 「이것이 실제로는 경영자측 기준인 생산성기준원리와 동일한 것으로 기존의 소득분배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임금요구에 지나지 않으며」(高橋洸 教授)²⁴⁾, 「임금을 인상시키기보다는 억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호경기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춘투실적이 저조하여 조합의 교섭력을 저하시키고 있다」(早川征一郎 教授)²⁵⁾는 비판이 주어지고 있다.

실제로 80년대 후반 이후 임금인상률이 저하하여 생산성향상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표 3 참조)

이러한 비판에 대해 成川秀明 連合 労働政策局長은 「지금도 거시경제요인을 중시하는 자세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이는 단기적 경기변동이 아니라 바람직한 경제성장을 고려하는 것이다. 즉 임금 및 노동시간을 개선해서 개인소비의 증가, 가계의 풍요를 가져옴으로써 거시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자는 것이다. 너무 과도한 임금을 요구하면 물가에 악영향을 준다. 어디까지나 생활개선에 의해 거시경제가 좋아진다는 생각에 바탕을 둔 것이며 조합원 대다수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4) 高橋洸, 「現代日本の賃金管理の構造」, 高橋洸, 앞의 책, 11쪽.

25) 早川征一郎, 앞의 글, 257쪽.

<표 5-3> 임금상승률과 생산성향상률의 비교

(단위 : %)

	명목임금 상승률	실질임금 상승률	노동생산성 향상률	실질소비지출증 가율
1975	14.8	2.7	-3.9	4.5
1976	12.5	2.9	12.3	-0.8
1977	8.5	0.5	5.0	1.4
1978	6.4	2.5	8.8	1.3
1979	6.0	2.3	10.7	3.1
1980	6.3	-1.6	6.3	-0.8
1981	5.3	0.4	2.4	0.6
1982	4.1	1.5	0.9	3.1
1983	2.7	0.8	3.9	0.4
1984	3.6	1.4	8.5	1.7
1985	2.8	0.7	4.4	0.3
1986	2.7	2.3	1.9	1.0
1987	1.9	2.2	5.8	1.0
1988	3.5	3.0	10.9	3.3
1989	4.2	2.9	5.9	0.7
1990	4.7	1.5	4.0	1.6
1991	3.5	0.2	2.5	0.9
1992	1.7	0.1	-5.3	0.5
1993	0.7	-0.5	-1.6	-0.4
1994	2.1	1.6	0.5	-1.1

주 : 94년은 1-9월 평균임.

자료 : 勞務行政研究所, 『賃金決定のための物價と生計費資料』, 1995.

마. 연합의 임금정책

중전에는 매년 산별노조위원장회의에서 임금제도, 임금인상요구수준을 논의, 결정하였으나, 1993년 10월 제3회 연합대회에서 처음으로 「連合賃金政策」을 채택하였다. 이는 連合 總合生活開發研究所의 임금문제연구위원회에서 제안한 「90年代の賃金--賃金決定の課題と政策」(1992.12.)이라는 보고서에 바탕을 둔 것이다.

「연합임금정책」은 모두 5개장 30개 포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²⁶⁾

1) 중기적 임금목표 설정

중전에는 그때그때의 경제상황을 중시하여 임금요구를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당년도 경제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중기적 목표에 따라 임금요구율을 결정한다. 즉 물가상승분+연율 2.5% 정도의 생활향상분이 중기적 목표가 된다. 2.5%의 근거는 서기 2000년까지 7년간 실질임금을 1.2배로 높여 여유있고 풍부한 생활목표를 달성한다는 전제 아래 시산된 결과이다. 이는 또 향후의 실질경제성장률 예측치 3.5%로부터 취업자증가율 0.6%를 뺀 2.9%와도 유사하여 매크로경제와도 부합된다는 것이다.

2) 평균임금인상요구방식으로부터 개별임금에 의한 임금인상요구방식으로 변경.

중전에는 1인당평균기준임금(베이스임금) 인상률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즉 a. 조합간의 정확한 임금수준 비교가 불가능하여 산업별 임금수준의 통일이 곤란하다. b. base-up과 정기승급분이 합산, 혼합되어 있어 혼란을 준다. c. 인상액 타결후 다시 조합원간의 배분교섭이 필요하므로 조합원간에 이해가 대립된다. d. 개별임금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임금격차의 시정이 곤란하다는 것 등이다.

따라서 연합은 앞으로 조합원 속성(연령, 근속, 대표적 직종, 직무)에 따른 개별임금에 의한 요구, 타결방식을 지향한다. 구체적으로는 각 산별조직별로 35세 표준노동자(많은 산별에서 고졸 근속 17년의 학교졸업후 곧바로 입사한 노동자를 표준노동자로 설정하나 구성조직별로 반드시 그 정의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합차원에서는 표준노동자의 구체적 정의는 각 구성조직에 맡긴다)의 요구기준을 설정하고 그밖의 연령포인트의 임금수준목표를 명시한다. 95년 춘투에서는 연합은 고졸 35세 표준노동자에 대해 9,300엔, 고졸 18세 신규노동자에 대해 4,600엔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등 두 개의 연령포인트를 설정하고, 30세 고졸자에 대해 7,900엔의 정액 임금인상을 참고포인트로 제시하였다.

26) 자세한 것은 日本労働組合總連合, 『連合賃金政策』, 1993. 10; 連合總合生活開發研究所, 『90年代の賃金-賃金決定の課題と政策』, 1992. 12; 連合總研, 『90年代の賃金』, 『賃金事情』, 1993. 2. 5. 등 참조.

3) 연합은 그밖에 개별임금 명시의 원칙, 임금제도의 산업별 통일(직능급, 직무급, 연공급), 임금격차의 시정, 생애임금의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연합이 당면하고 있는 앞으로의 임금정책의 과제에 대해 成川 局長은 ① 2.5% 생활향상분 목표는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3.5%의 잠재력을 가진다는 전제 아래 제시된 것이나 실제로는 1% 정도의 저성장이기 때문에 조합원들 사이에 요구가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춘투결과도 1% 정도이다. 따라서 이 목표를 앞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평균임금기준 요구방식은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바꾸기 어렵다. 5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점차 바꿀 계획이다. 그러나 경영측은 개별임금방식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바. 임금제도문제

임금제도는 개별기업수준에서 정해지므로 상당히 다종다양하다. 그러나 노동조합으로서의 임금수준의 사회화를 지향하므로 가능한 한 임금제도를 통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임금제도는 크게 나누어 屬人型 임금제도(연령급, 근속급)와 직무관련형 임금제도(직무급, 업적급, 직능급)로 나뉘어지는데 1992년 현재 종합급(주로 연공임금제)이 59.7%, 병존형(능력급요소 가미)이 22.2%이다. 그러나 1,0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병존형 비율이 54.2%로 상당히 높다(표 4 참조).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차 연령, 근속급보다는 직무직능급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며 특히 대기업에서 급속하게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경영측은 최근 연봉제, 능력급(업적급, 직무급) 등의 도입을 제창하고 있다.

각사의 임금제도는 노사교섭에서 확립되지만 임금수준의 사회적 시세를 지향하는 연합으로서 이러한 직능급, 업적급(merit system) 등 새로운 형태의 임금제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연구중이다.

임금인상시 연합은 원칙적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춘투에 있어 통일요구-통일행동-통일타결, 산업별(연령별) 최저임금의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5-4> 주된 임금체계의 종류별 기업수 비율

(단위 : %)

기업규모, 년	전체 기업	단일형 체계							병존형 체계					무언가의 형태로 직무직능급 가진 회사
		계	직무직능급형				屬人給型	종합급형	계	직무급-속인급형	직무급-종합급형	속인급-종합급형	직무급-속인급-종합급형	
			소계	직무급	직능급	직무직능급								
기업규모 계														
1984	100.0	86.8	15.2	2.8	1.8	10.6	5.5	66.0	13.2	5.0	4.2	3.1	1.0	25.4
1989	100.0	85.0	14.4	1.6	2.3	10.5	6.1	64.6	15.0	4.5	4.2	4.9	1.3	24.5
1992	100.0	77.8	10.5	2.6	1.7	6.3	7.6	59.7	22.2	8.3	7.2	5.2	1.4	27.5
(적용노동자 비율)	100.0	57.2	6.5	1.3	2.1	3.1	6.1	44.6	42.8	20.0	9.9	7.7	5.1	41.5
1000명 이상														
1989	100.0	52.0	4.8	0.4	1.9	2.4	5.0	42.2	48.0	21.3	12.3	8.7	5.6	44.1
1992	100.0	45.8	4.5	0.7	1.9	2.0	3.8	37.4	54.2	28.4	10.6	8.9	6.3	49.9
(적용노동자 비율)	100.0	39.9	6.4	0.8	3.0	2.5	3.0	30.5	60.1	29.4	13.7	8.4	8.7	58.1
100-999명														
1989	100.0	80.0	9.2	0.9	2.3	6.0	7.7	63.1	20.0	6.8	5.1	6.6	1.6	22.6
1992	100.0	68.8	5.8	1.6	1.4	2.8	8.2	54.8	31.2	13.9	7.6	7.6	2.1	29.4
(적용노동자 비율)	100.0	65.1	4.1	1.1	1.2	1.8	8.8	52.2	34.9	16.4	7.2	8.6	2.8	30.4
30-99명														
1989	100.0	88.0	16.7	1.8	2.3	12.6	5.5	65.8	12.0	3.1	3.7	4.1	1.1	24.6
1992	100.0	82.6	12.7	3.1	1.8	7.8	7.5	62.4	17.4	5.4	6.9	4.1	1.0	25.9
(적용노동자 비율)	100.0	81.9	11.3	2.7	1.8	6.8	8.0	62.6	18.1	5.7	6.5	4.7	1.3	24.7

주 : 1) 정액제가 적용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 본 것임.

2) 주된 임금체계란 가장 많은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임금체계를 말함.

3) 「무언가의 형태로 직무직능급을 가진 회사」란 직무직능급, 직무직능급-속인급형, 직무직능급-종합급형 및 직무직능급-속인급-종합급형을 말함.

자료 : 勞働省, 『賃金-勤勞時間制度調査』, 1994.

향후 임금제도 개선의 과제로서는

- 1) 직장의 조합원의 임금수준을 파악하여 연령별로 분포도를 만들므로써 임금격차의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점을 볼 수 있도록 한다.
- 2) 기본급, 수당 등 임금항목 마다 개별임금수준을 명시한 임금표를 만든다.
- 3) 개별임금의 수준은 생계비를 확보하고 노동의 질과 양에 합치되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되 이를 위해 생계비에 의한 임금수준의 체크, 중도채

용차 격차의 시정, 여성차별 철폐, 고령자임금의 감액 시정, 학력격차의 시정 등을 추진한다.

4) 임금결정의 기준은 노사공동으로 결정하고 그 기준은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이를 위해

- ① 직능, 능력, 직무 등의 결정기준은 노사공동으로 결정하며 조합원이 납득할 수 있고 또한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도록 문장확인한다.
- ② 승진승격요건, 인사고과의 기준은 노사공동으로 결정하고 그 적용의 공정성과 공개성을 확보한다.
- ③ 개인별 임금의 결정결과에 대해서는 조합은 사전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충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처리한다.
- ③ 중소기업에서는 직무의 팀워크를 유지하고 촉진할 수 있는 임금제도가 큰 과제이다.

5) 소정내 임금을 구성하는 임금항목은 기본급을 중심으로 하고, 수당은 단순화시킨다. 가족(부양)수당은 남녀차별이 없도록 노력한다.

6) 연간임금을 확보한다. 보너스의 확보, 잔업수당의 지급.

7) 기타 퇴직금규정의 개선 등을 들고 있다.²⁷⁾

사. 정책, 제도참가

임금, 근로시간단축, 정책-제도의 개선 등 3위1체의 틀은 연합의 발족 이래 기본방침이다. 연합이 목표로 하는 「여유있고, 풍부하며, 사회적 공정이 실현되는 사회」의 실현에는 이 세 가지 기둥이 필요하다.

연합은 정책, 제도개선의 요구사항으로서

- 1) 복리후생, 퇴직금제도 개선
- 2) 산업재해, 직업병문제 개선
- 3) 老人介護休暇制
- 4) 모집, 채용시 남녀평등 확립
- 5) 육아휴가제

27) 成川, 「賃金制度の現状と今後の賃金政策について」, 1995. 5. 23.

6) 기타 경제정책에의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은 이러한 요구의 실현을 위하여 수상을 비롯하여 외무성, 대장성, 노동성, 관방장관 등 정부 각부처의 장관과의 회견, 日經連, 東商, 經團連 등 경제단체와의 토크담 등을 실시하였으나 요구달성도는 높지 못하다. 연합의 요구사항중 실현된 것은 육아휴가제, 개호휴가제, 조세제도의 시정 등 정도이다.²⁸⁾

3. 철강노련의 임금정책

가. 조직개황

철강노련은 현재 직가맹 19만명과 준가맹(권리, 의무 제한) 2만명 등 합계 21만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다.

엔고 등으로 일본의 철강업계는 생존하기 위한 구조개선을 진행중이며 따라서 큰 폭의 인원감소가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철강노련도 76년의 조합원 24만 2천이라는 피크로부터 조합원이 점차 감소하는 과정에 있다. 5대 제철회사의 조합원수는 1985년의 15만 7천명으로부터 95년 현재 12만 3천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그중 제철소간의 임시파견(일본에서는 出向이라고 부름)자는 3만 7천명으로서 조합원의 3분의 1이 출향자라는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철강노련의 기본목표는 고용유지에 있다. 대폭적인 인원합리화에 대해 노동조합으로서 구조개선의 단행은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고용의 확보는 양보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해고, 희망퇴직 등이 생기지 않도록 운동하고 있다.

나. 임금요구근거

철강노련의 임금인상요구의 근거는 물가상승률+정기승급분+생활향상분으로 구성된다. 물가상승률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며, 정기승급분은 단협으로 정하고 임금요구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생활향상분은 내부적 요인(기업업적)과 외부적 요인(고용상황, 경제성장률, 엔고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28) 연합의 정책참가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할 것. 條田徹, 「連合時代における政策参加の現状と展望」, 法政大學 大原社會問題研究所 編, 앞의 책; 日本労働機構, 『労働運動白書』, 1995.

95년 춘투에서는 철강업계의 적자결산(1993년도의 종합제철회사 5개사의 실질경상적자 3,000억엔), 고베지진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고용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물가상승분(2,000엔)만 요구하였다. 그러나 경영측의 회답은 0%로 나왔다. 베이스업 제로는 38년만의 일이다.

철강산업에서는 표준적인 노동자(포인트는 35세, 근속 17년)의 순 베이스업 액수를 산업내에서 횡단적으로 결정하여 각사(5대 종합제철사)에 동일적용한다. 표준노동자 포인트에 있어서의 베이스업률을 축으로 전체에 자동적으로 베이스업 배분이 이루어지며 정기승급은 각사의 제도에 따라 실시된다.

이러한 「산업내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는 노사의 합의정신이 필요하며 또한 각 기업이 거의 동일한 임금체계를 가지고 임금수준도 거의 동등하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기업간, 규모간 임금격차가 축소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각사의 경영상황에 관계없이 임금수준이 결정되며 노무정책인 임금배분 등을 제약하는 점이 단점이다.

다. 생계비와 임금

철강노련은 매년 조합원 가계조사를 해왔으며 95년은 23회째이다. 9월분 생계비를 대상으로 678가구를 조사하였는데 주로 4인 가구를 중시한다.

그러나 춘투 임금요구에서 생계비는 참고만 한다. 임금요구의 중심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다(94년의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 0%, 가계지출상승률 0.8%).

라. 임금 이외의 요구사항

임금 외에도 시간단축, 보너스, 퇴직금 등을 요구한다. 예년에는 그밖에 각종 수당(교대근무수당, 산재부가금, 연장근무할증)을 요구했으나 이번에는 업적부진 때문에 세 항목에 집중하였다. 이밖에 각 기업별노조는 기타 권리요구를 덧붙인다.

마. 임금 및 단체교섭의 주체

기업별 노조가 구체적 교섭을 맡으며, 철강노련은 임투의 환경조성, 투쟁방법, 전략, 전술 검토, 요구액 결정, 각 기업별노조에 통일적으로 운동하도록 조

정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바. 임금격차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철강노련 차원에서 통일적 요구를 한다. 그러나 교섭은 기업별로 이루어지므로 기업측의 회답은 각각이다. 중소기업은 물가+생활향상분+격차시정분으로 임금인상요구액이 구성된다. 격차시정분은 업종별부회(보통강, 특수강) 별로 다른데 대개 2,000엔 정도이다.

사. 요구관철방식

주로 단체교섭, 협의를 중시한다. 파업은 1965년을 마지막으로 중단하였다. 그러나 완전히 파업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철강노련측은 주장한다. 철강노련의 전략, 전술은 주로 협의를 어떻게 순조롭게 진행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 순회접촉, 통일회답 요구, 중소기업 경영자에 대한 설명회 등을 실시한다.

경영측으로부터의 회답이 0%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원들 사이에 파업 주장은 없다고 한다. 이것은 고베지진으로 고베제강 등이 큰 피해를 입었으므로 그 복구가 급선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아. 연공임금제 변화실태

철강업은 그 직무의 특성상 일찍부터 임금제도 개정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이미 1962년에 야하다제철, 후지제철, 니혼강관 등에 미국형의 본격적인 분석 직무급이 도입되는 등 철강산업에서는 상당히 일찍부터 직무급이 도입, 정착되어 왔다. 연공급과 직무직능급의 비율은 70년대까지 연공급 60 : 직무직능급 40으로 되어 왔으나 1981년 정년연장에 따른 제도개편으로 50 : 50이 되었으며, 그후 대폭적인 엔고를 계기로 한 구조개선을 배경으로 1988년 다시 개정되어 현재는 연공급 : 직무직능급=40 : 60 정도이다. 최근 철강산업에서는 구조개선과 더불어 인사-임금제도 역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번의 임금제도 개정에서는 그 구성비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주로 직무직능급의 내용 개편에 힘을 쏟고 있다. 즉 연공급으로서의 기본급은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생계비

곡선과의 대응관계를 종전보다 더 밀접하게 만드는 형태로 개정되고, 직무직능급은 종래의 직무급과 직능급에 더하여 개인의 성과와 업적을 평가하는 업적급이 중시되도록 되었다.

철강노련으로서도 이는 당연한 추세로 보고 있다. 연공만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불공평하며 능력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①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급의 확보는 여전히 중요하다. ② 능력평가기준을 어떻게 공평하게 설정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다만 연공임금제와 더불어 일본노사관계의 또하나의 축을 이루어 온 종신고용제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번의 철강산업의 인사-임금제도 개편과정에서는 기업별의 노사협약과 단체교섭을 통하여 노사 각각의 문제의식이 합치되어 교섭의 결과로서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졌다. 인사-임금제도는 일단 기업내적 과제이기는 하지만 산업별을 場으로 한 공통된 접근방법으로 대처한다는 것이 철강노련의 기본적인 자세이나 이번 제도개편에서는 각사의 구조개선의 추진이라는 배경도 있어 그러한 틀을 짜지 못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현재 철강노련에서는 실무자 수준의 「노동조건위원회」 가운데서 「연구회」를 구성하여 「임금체계 2000년 비전의 확립을 향하여」라는 과제를 설정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의 정리를 진행하고 있다. 각 사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데 예컨대 신일본제철에서는 새로운 인사제도 확립을 위한 「노사검토위원회」를 구성, 96년 봄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²⁹⁾

자. Life-cycle 에 따른 임금정책

과거에는 퇴직시까지 임금이 계속 상승하였다. 그러나 정년연장(55-->60세)에 따라 노동자 평균연령이 증가하면서 연공적인 임금곡선 하에서는 노무비용의 자연증가가 초래된다. 따라서 이번 제도개편시 철강 3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고연령층으로부터 생계비가 급증하는 50대 전반층으로 임금재배분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함으로써 임금곡선이 비교적 빠른 단계로부터 상

29) 철강산업의 인사-임금제도 개편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石塚拓郎, 「鐵鋼總合各社の人事-賃金制度改訂」, 『日本勞動研究雜誌』, 430號, 1996.1.

승하는 방향으로 일정한 수정을 가했다. 예컨대 신일본제철의 경우 생계비의 peak시기는 50세이며 따라서 임금곡선도 50세가 넘으면 둔화되어 50-55세에는 평탄화되었다가(기본급 -, 정기승급 +로 서로 상쇄됨), 55-60세는 떨어진다(기본급 -가 더 크다). 문제는 주택비, 교육비 등으로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40대이다. 이들은 기업노동력의 중핵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곡선기울기를 보다 급하게 배분할 필요(50대 이상-->40대)가 있다고 철강노련은 생각하고 있다. 생계비 상승에 맞추어 생애임금곡선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하는 것은 철강노련으로서도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4. 電機連合의 임금정책

가. 노조의 개황

電機連合은 300개 조직, 85만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다. 주요 전기기기 메이커(마쓰시다, 후지쓰, 히타치, 도시바)를 망라하고 있으며, 연합 및 IMF-JC에 가맹하고 있고, 한국의 금속노련과도 친밀하게 교류하고 있다.

나. 임금정책

전기연합은 현재 1993년에 제정된 제4차 임금정책에 기초하여 임금요구를 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 전기기기산업에는 커다란 환경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90년대의 고도정보화사회의 진행에 따라 그 기간산업으로서의 전기기기산업의 임금수준 확보, 고학력화와 화이트칼라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른 사무, 기술노동자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 증대, 생산양식의 변화와 노동내용의 변화에 대응한 임금제도의 설계와 적절한 처우의 필요성, 고령화의 진행과 고령자고용의 촉진을 위한 인사처우의 정책결정 등이 그것이다.

제4차 임금정책의 기본은 제3차정책(1984)의 접근방법을 더욱 발전시켜 산업별 횡단성을 가진 「職群別 職種,職能賃金制度」이다. 이 제도하에서 임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生計給(연령급) 부분」은 라이프사이클에 대응한 임금곡선을 상정하고, 「職種,職能給 부분」은 직종에 고유한 평가요소, 직무수행 능력 등의 요소를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무, 기술노동자도 시야에 넣은 임금으로서 정책이 책정되었다.

전기기기산업에서는 직종, 직능급을 오래전부터 포함하여 종합급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 능력급으로 이행되는 추세이다. 전기연합으로서도 이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기연합은 능력급으로의 이행 자체보다는 능력평가, 능력향상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다.

전기연합은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의 양면을 상호 관련시키기 위해 표준생계비를 작성하여 최저보장임금곡선과 표준자임금곡선을 작성하고 연령별로 임금을 설정하였다. 생계급부분과 직종, 직능급부분의 비율은 35세 표준노동자의 경우 대략 4:6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³⁰⁾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임금변화는 40세 이후 임금곡선의 기울기가 둔화되어 55세 정년때까지 서서히 임금이 상승하며 임금곡선의 기울기가 수평이나 마이너스는 되지 않는다.

전기연합은 이 임금정책이 구체화된 상세한 「임금제도설계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견, 중소조합을 대상으로 「임금스탯양성강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임금요구액은 기본적으로 연합이 제시하는 요구기준을 기초로 산별 조직의 단결력, 투쟁력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요구율의 구성은 정기승급분+물가상승분+생활향상분으로 되어 있다. 1995년에는 5%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기업측의 회답은 2.95%(평균)로 나왔다.

전기연합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임금정책의 과제는 임금상승에 있어 개별 임금요구방식의 확립이다. 제4차 임금정책은 임금요구를 명확하게 개별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했다. 따라서 1995년의 춘투에서 종래의 평균과 개별의 병존형 요구로부터 「35세 고졸 기능직 4인 가구 표준노동자」를 전기연합의 대표적 표준노동자로 하여 개별요구를 하도록 추진하였다. 결과는 준비부족 등으로 인해 평균에 의한 회답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었으나 96년의 춘투에서

30) 전기연합의 임금정책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崎岡利克, 「電機連合における賃金政策の取り組み経過と課題」, 『日本労働研究雑誌』, 430號, 1996.1. 참조.

다시 개별요구방식을 실현시킬 계획이다.

다. 생계비와 임금

전기연합은 1967년부터 조합원 생계비 조사를 시작하여 95년은 29회째이다. 조합원 350명을 대상으로 9월분 가계부를 기입토록 하여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전물량방식으로 생계비를 산출한다(실태생계비). 이와는 별도로 5년 마다 표준생계비 조사(이론생계비)를 하는데 이는 일본노동조합 가운데서는 유일한 예이다. 이 조사에서는 전물량방식으로 마켓바스켓을 구성하고 독자적인 물가조사를 병행하여 25세부터 5세 간격으로 55세까지 모두 8개 포인트(25-27세의 2인 가구 추가)에 걸친 표준생계비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태생계비와 이론생계비를 임금인상요구에 직접 반영하지는 않는다. 주로 연령별 표준생계비의 검증, 노후생활 설계비 계산 등으로 퇴직금 등 생애임금 계산에 사용할 뿐이다. 따라서 전기연합 스스로도 생계비조사가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라. 임금외의 요구사항

전기연합의 대부분 노조에서는 完全週休2日制가 이미 실현되고 있는데 현재는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연간노동시간은 1940-50시간 정도(표 5-5 참조). 그밖에 산재보상액 증액, 개호휴가제 실시, 특별휴가제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표 5-5> 전기연합소속 노조의 연간노동시간과 연간 휴일일수(1994)

연간노동시간수		연간휴일수	
1800시간대	29(13.9)	109일 이하	19(9.1)
1900-1936시간	49(23.6)	110-114일	144(69.2)
1936-1968시간	105(50.5)	115-119일	29(13.9)
1968-1999시간	15(7.2)	120-124일	11(5.3)
2000시간 이상	9(4.3)	125일 이상	5(2.4)
계	208(100.0)	계	208(100.0)

자료 : 電機連合, 『労働ハンドブック』, 1995.

마. 임금, 단체교섭시 주체

다른 산별과 마찬가지로 임금, 단체교섭은 기업별노조 위주로 진행된다. 산별노련은 이를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즉 각 사용자단체(전기공업회, 통신공업회)의 노무담당자와 만나 산하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촉구한다. 이는 영향력은 있지만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1995년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즉 과거에 사용자단체는 가능하면 전기노련과 관계를 안가지려고 했으나 1995년에는 거시경제정세(고용 등)에 대한 의견조정을 하자고 사용자단체에서 제안하였다. 엔고 등 노사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사용자측이 전기연합과의 교섭 테이블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뜻이지 양보는 안하고 있다.

바. 요구관철을 위한 투쟁방식

전기연합은 전통적으로 사전에 파업권을 확립한 후 교섭에 임하고 있다. 노조원 전원투표에 의해 파업권을 확보토록 산하노조에 지시하고 있다. 동시에 단위노조가 전기연합에 파업지령권을 이양토록 하는 투표도 행하는데 대개 90%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전기연합에서 임협, 단협의 중심은 17개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된 「중앙투쟁연합」(中鬪)이다. 이들은 지도적 조합이므로 전기연합의 지시는 구속력을 갖는다.

전기연합 외에는 이러한 파업권을 확립한 연맹은 별로 없다. 그러나 전기연합에서도 실제 파업권의 행사는 1980년이 마지막이었다. 95년에도 기업측의 회답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회답이 나온 다음날 24시간 시한부파업을 단행하였다. 그후에도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거절 등으로 위협하였다. 그러나 전기연합의 中央執行委員 崎岡利克는 이러한 단체행동 위협이 「실제로는 박력이 없었다」고 자인하였다.

5. 자동차총련의 임금정책

가. 노조의 개황

자동차총련은 1972년 결성되어 현재 조합원 75만명을 가진 민간부문 최대의 조직이다. 일본 자동차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노조원수와 노조의 역할이 급속히 증대되었으며, 국제화, 다국적화에 따라 국제연대활동도 추진중이다.

소속상급단체는 연합 및 IMF-JC이다.

나. 임금정책

자동차총련은 1994년 1월 「自動車總連賃金비전」을 내어놓았는데 이것이 현재의 임금정책의 골간이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자동차총련은 1) 자동차산업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저하하고 있으며 2) 산업내 임금격차(연령별 격차, 업종간 격차, 기업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문제점의 극복 방안을 다음과 같이 내어놓고 있다.

1) 임금수준

제조업에서 최상위 수준, 전산업에서 상위수준의 임금수준을 목표로 한다. 일본의 기간산업에 걸맞는 임금수준의 실현, 여유와 풍부함을 실감할 수 있도록 잔업수입등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임금수준을 실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자동차산업의 저수익체질로부터의 탈피와 격차의 축소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동차총련은 이를 위해 35세 표준노동자의 프리미어임금(중장기적으로 제조업내에서 최상위수준이 되도록 목표로 하는 대표지표가 되는 임금수준)과 미니멈임금(전체 가맹단위노조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임금수준으로서 현재는 하위 25% 정도의 조합의 임금수준이나 중장기적으로는 프리미어임금에 대해 20% 이내로 격차를 좁히는 것을 목표로 함), 그리고 연령별 최저보장임금(자동차산업내의 연령별 최저임금수준으로서 인사원 표준생계비, 후생성 생활보호기준, 타산업 최저보장임금 등을 고려하여 설정) 등의 지표를 설정하였다.

2) 임금결정방식

자동차총련은 지금까지 「평균임금인상방식」을 채택해왔으나 이는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총련으로서는 거시적으로는 평균임금인상방식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으나 타산업과의 격차를 시정하고 제조업에서의 최상위수준에 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더라도 개별임금에 의한 인상방식으로 차츰 중심을 옮겨가야 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총련은 현재 과거의 임금정책의 역사와 타산별조합의 제도 등을 충분히 감안한 임금결정방식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3) 임금체계, 제도

자동차총련은 보다 고도화, 복잡화, 개별화하고 있는 작업의 내용과 청년노동력의 부족, 고령화의 급진진, 남녀평등의 일층의 요청 등 급변하는 노동, 직장환경에 응하여 종래와 같이 근속, 학력을 중심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연공형 임금으로는 대응이 곤란하다고 보고, 직무직능급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종래의 연공형 종합결정급으로부터, 생활보장부분에서는 연령급을 감안하고, 직무의 평가부분에서는 직무직능급의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각 임금항목의 투명성, 납득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직무직능급의 비중을 높이면 개인별 임금격차가 확대되므로, 개인의 생활의 유지,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연령급을 충실하게 하고 정기승급을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개인별 임금격차의 납득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직무평가기준이 필요하며, 이것이 공정하게 운용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사제도의 도입, 개정시 조합이 이를 체크하는 기능을 하여야 한다.

현재 자동차산업에서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별로 매우 다양한 임금제도를 가지고 있다. 닛산의 경우 약 8년전부터 직무, 직능급제를 도입하였다. 과거처럼 고도성장을 바랄 수는 없으므로 닛산노련에서도 일, 성과, 능력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모든 임금에

능력급으로 하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 연령, 지역별 물가수준, 주택사정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라는 전제가 확보된 위에 능력에 따른 임금이 지불되어야 한다고 닛산노련측은 주장하였다.

현재 자동차사업에서는 새로운 임금체계가 완전히 성숙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제도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동차총련에서도 이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한다.

<표 5- 6> 자동차각사의 임금항목

조합명	근속기준항목			직무직능기준항목
	本給(本人給)	年齢給	勤績給	職能給,職務給,資格給 등
도요다	기본급	연령급	--	직능급, 생산성급(기능직만)
日産	본급(成績加算表 있음)	연령급	--	仕事給 成績給
本田	본급,業績加給	--	--	
三菱	기본급(연령가산표 있음)	--	--	직무-업적급 자격급
마츠다	--	연령급	--	제1직능급 제2직능급 성적급
이즈즈	본급	연령급	--	職能加給

자료:自動車總連,『自動車總連賃金ビジョン』, 1994.1.

매년 춘투시 자동차총련의 임금인상요구기준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정기승급분+실질생활향상분으로 구성된다. 95년의 경우 각각 0.6%+2%+1.4% = 4% 인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기업측의 회답은 2.8% ± 0.5%로 나왔다.

다. 생계비와 임금

자동차총련은 매년 설문조사(연간수입, 임금, 지출형태)를 통해 조합원의 실태생계비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임금인상요구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본의 평균수준에 비해 자동차산업의 임금이 높아

생계비가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대답이다.

라. 임금 이외의 요구사항

자동차총련은 임금인상 외에 보너스(여름, 겨울)와 노동시간단축(금년에는 요구하지 않음)을 요구하였다. 그밖에도 각 기업별 요구가 이에 더해진다.

보너스의 경우 연간임금의 중요한 일부이므로 기업성적에 가능한 한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 향상, 보너스의 기초항목의 통일, 보너스의 최저보장제도의 확립 등을 요구하였다.

마. 임금 및 단체교섭의 주체

임금, 단체교섭은 기업별 노조가 중심이 되어 진행된다. 산별노련은 환경조성에 주력한다. 교섭에 들어가기 직전에 위원장, 산하노조 간부 등이 각 완성차업체를 방문하여, 경영진에게 임투에 임하는 기대, 자세를 전달한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격차가 있다고 자동차총련 관계자는 토로하고 있다.

바. 투쟁방식

자동차총련의 투쟁방식은 주로 통일요구 제출, 통일행동이다. 교섭시(5회)마다 전조합원에게 경과보고를 하고, 토론결과를 집약하여 교섭에 임한다. 교섭후반에 노조위원장과 사장 간의 top 교섭(3회)이 있으며 대개 여기에서 결정된다. 95년의 경우 기업측의 회답액이 낮게 나왔으나 자동차업계의 곤란, 구조조정 등을 감안할 때 납득할 수 있는 임금수준이기 때문에 조합원들 간에 큰 불만은 없다고 자동차총련은 밝히고 있다.

사.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의 실태

미-일자동차교섭, 엔고 등에 따라 일본의 자동차산업은 사업구조를 개혁중

이다. 이는 기업수익을 제고하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자동차총련은 보고 있다. 단 고용확보라는 대전제 아래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 급격한 고용불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품기업에서는 업종변경, 조합원 이동 등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설비의 도입, 공장신축, 이전 등 조합원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사항은 사전에 회사에서 노조에 설명하고 노사협의를 한다. 특히 조합원 이동을 수반하는 사항은 노조측에서 경영측에 여러 가지 주문을 한다.

예컨대 닛산은 10년전 노사간에 극소전자설비(ME) 도입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이는 사문화된 실정이다. 노조로서는 생산구조, 생산시설, 로봇 등 도입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신경을 쓸 수가 없다. 따라서 도입 그 자체보다는 그 결과, 즉 조합원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새로운 설비도입이 조합원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조합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아. 요구관철방식

자동차산업에서는 42년간 이상 무파업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파업권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자동차총련은 주장하고 있다. 다만 조합원이 납득할 수 없는 마지막 상황에서만 파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행히 지난 수십년간 그런 상황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① 특히 닛산의 경우 과거 급진적 노조단체가 있었지만 파업의 영향이 매우 부정적이고 노사 양측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교섭에 치중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② 자동차산업의 성장이 눈부셨고 그 동안 임금교섭으로 납득할만한 노동조건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자. 임금격차

자동차총련에서는 기업별로 각사 회답이 이루어지므로 임금격차가 잘 해소

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총련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중이라고 한다.

6. 시사점

1) 일본노조들은 경제정합성론에 입각, 사실상 생산성임금제를 수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고도성장, 고생산성향상기에는 유효한 정책이지만 저성장, 저생산성향상기에는 임금인상률이 낮아져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일본 임금문제의 권위자인 日本賃金研究센터 대표이사 楠田丘는 임금인상요구가 「經濟整合性」이 아니라 「生活整合性」에 두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³¹⁾ 이는 다시 말해 임금인상요구의 근거를 거시경제지표가 아니라 생활모형(이론생계비)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일본 노동조합들이 이론생계비 모형을 버린 것을 비판하면서, 이론생계비가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의존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구매력이 저하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2) 실태생계비는 조사는 되고 있지만 임금인상요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이론생계비는 거의 조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생산성향상률이 생계비상승률을 하회하는 경우 임금인상률이 생계비상승분을 카버하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생긴다. 이와 관련하여 楠田丘는 일본경제의 풍부함을 반영할 수 있는 노동자의 질적 생활수준의 향상에 기초한 신생계비의 작성과 이를 기초로 한 임금인상요구를 주장하고 있다(이른바 「신생계비론」). 이는 단순한 FLOW로서의 양적 상품 만이 아니라 주택, 오락, 교육, 교류, 종업원 만족 등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풍부함으로서의 지표이다.

3) 임협, 단협시 기업별노조가 주된 역할을 하며 산별노련은 환경조성역할에 그치고 있다. 그 결과 교섭력의 저하, 산업내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산업별 통일교섭권을 어떻게 하면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韓, 日 모두의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산업별 연령별 표준노동자 임금모델을 확립하고(임금시세의 형성) 이를 토대로 통일된 요

31) 楠田丘, 「新生計費論」, 『賃金事情』, 1992. 7. 15.

구, 통일된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4) 일본노조가 파업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은 커다란 오류이다. 노조의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적으로 쟁의권을 포기(이른바 「무쟁의선언」)해서는 안된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교섭력이 크게 떨어지고 결국 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이 온다.

5) 일본의 연공임금제는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는데 그 주요인은 저성장과 정년연장이다. 이에 대해 일본노조들은 대체로 직무, 직능급으로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다만 생활급의 확보와 평가기준의 투명성, 공정성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들도 이러한 임금제도, 인사제도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충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6) 고령화와 4-50대 노동자들의 생활비 급상승에 대응한 생애임금곡선의 변화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7) 한국의 노동조합 중앙조직, 산별조직들도 일본의 연합과 같이 5년 정도의 중기임금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명헌, 『경제력 집중과 한국경제』, 매일경제신문사, 1991.
- 권혜자, 『경제력 집중과 직종별 임금격차』, 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 노동경제학과 석사논문, 1994.
- 김대모, 「생산성 임금제」, 한국노동연구원, 1995.3
- 김수진,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현황과 전망」, 『경제와 사회』, 1995년 봄호.
- 김재원, 「95년도 임금결정방법과 인상수준」, 1994년도 한국노사관계학회 동계 정책토론회, 한국노사관계학회, 1995.
- 楠田丘, 『임금텍스트』, 일본 산업노동조사소 편, 한국공업표준협회 역, 1989.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각년호
- 어수봉, 「고용조정과 임금구조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1992년 4/4분기~1993년 3/4분기.
- 윤진호, 「1995년도 임금인상과 국민적 합의」, 1995. 4.18,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주최 제 8차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 이선, 「1995년도 임금인상과 국민적 합의」, 1995. 4.18,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주최 제 8차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 _____, 「1995년 임금교섭의 여건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5.4.
- 이선·강순희, 『임금결정과 임금관리』, 한국능률협회, 1992.3.
- 정인수, 『임금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2.
- 조우현, 「경제력집중이 임금 및 임금구조에서 미치는 영향」, 1992
- _____, 『노사관계 개혁론』, 창작과 비평사, 1992.
- 통계청, 『계간 국제통계』, 1995년 9월호.
- _____, 『경제활동인구연보』, 1994.
- _____, 『통계로 본 한국의 발자취』, 1995
- 한국경영자총협회, 『생산성과 임금』, 1991
- _____, 『우리나라 임금현황과 국제경쟁력』, 1995.2
- _____, 『자본기여도를 고려한 생산성 임금제』, 1995.4.

- 한국노동연구원, 『1995년 KLI노동통계』, 1995.
- 한국노총, 『사업보고』, 각년호
- _____, 「1996년 노총의 임금정책 방향」, 1996. 1.
- _____,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 각년호
- _____, 『임금인상 활동지침』, 각년호
- 한국사회경제학회편, 『한국경제론 강의』, 한울 아카데미, 1994.
- 황덕순, 「전환기에 선 한국 노동조합의 임금정책」, 『노동사회연구』, 창간호, 1995, pp. 9-27.
-
- 川野廣, 『日本の賃金構造と賃金決定機構』, 關西大學出版部, 1990.
- 楠田丘, 『임금텍스트』, 日本産業勞動調査所 編, 한국공업표준협회 譯, 1989.
- 勞動大臣官房國際勞動課, 『海外勞動白書』, 日本勞動研究機構, 1995.
- 日本勞動省, 『勞動白書』, 日本勞動研究機構, 1995.
- 久米益雄, 『賃金數學全書』, 産業勞動調査所, 1989.

<부록 1> 1995년 도시근로자 생계비조사 표본의 주요특성

(단위 : %)

	전 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연맹별>	2,922명 (100.0)	82명 (100.0)	161명 (100.0)	444명 (100.0)	1,294명 (100.0)	498명 (100.0)
철 도	2.9	2.4	3.1	1.4	3.6	2.4
섬 유	10.5	12.2	16.1	10.6	9.4	12.0
광 산	2.0	4.9	0.6	2.3	2.1	2.0
전 력	2.5	-	0.6	2.7	2.8	3.6
외 기	1.6	3.7	1.9	3.8	1.4	0.2
통 신	0.7	-	0.6	1.1	0.7	0.6
항 운	4.7	1.2	2.5	3.4	4.8	6.6
선 원	4.3	2.4	5.0	2.7	4.4	6.4
금 융	9.9	7.3	18.6	17.1	8.6	7.0
담배인삼	1.7	1.2	1.2	1.6	2.3	1.0
화 학	13.0	13.4	7.5	9.0	14.4	15.3
금 속	19.1	23.2	17.4	20.0	19.6	12.7
출 판	0.7	1.2	0.6	0.5	0.7	0.4
자동차	3.4	-	2.5	2.7	3.8	3.8
연 합	13.4	23.2	10.6	11.5	12.9	15.7
관 광	1.7	1.2	6.2	2.3	1.5	1.0
체 신	3.0	1.2	0.6	2.3	2.0	5.8
택 시	3.5	1.2	2.5	3.2	3.8	2.8
고 무	1.4	-	1.9	2.0	1.4	0.6
<거주지>	2,922명 (100.0)	82명 (100.0)	161명 (100.0)	444명 (100.0)	1,294명 (100.0)	498명 (100.0)
서울시	20.7	20.7	31.7	20.0	23.0	21.9
부산시	16.9	17.1	14.3	15.5	17.5	19.1
대구시	4.1	2.4	4.3	6.3	3.5	4.0
인천시	10.6	13.4	10.6	9.2	10.6	9.6
광주시	2.7	2.4	3.1	2.3	2.7	2.6
대전시	3.1	3.7	4.3	2.0	3.8	3.2
경기도	17.2	11.0	13.7	20.3	17.6	15.7
기 타	22.7	29.3	18.0	24.3	21.3	23.9
<가구주 성별>	2,716명 (100.0)	74명 (100.0)	155명 (100.0)	434명 (100.0)	1,250명 (100.0)	482명 (100.0)
남 성	95.7	75.7	93.5	95.6	97.7	95.9
여 성	4.3	24.3	6.5	4.4	2.3	4.1

<부록 1>의 계속

	전 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가구주 연령>	2,699명 (100.0)	75명 (100.0)	149명 (100.0)	425명 (100.0)	1,230명 (100.0)	475명 (100.0)
20~29세	6.8	54.7	28.9	9.6	1.5	2.1
30~39세	45.3	38.7	53.0	61.9	49.7	29.5
40~49세	32.7	4.0	10.1	15.5	38.0	44.2
50~59세	12.6	2.7	6.7	6.8	9.3	19.8
60세 이상	2.5	-	1.3	3.3	1.5	2.9
평균(세)	40.4	30.4	34.0	37.0	40.4	44.1
<가구주 교육 정도>	2,342명 (100.0)	58명 (100.0)	130명 (100.0)	360명 (100.0)	1,105명 (100.0)	422명 (100.0)
국졸 이하	5.3	-	4.6	2.5	4.2	6.4
중졸 이하	13.8	3.4	7.7	6.9	15.7	18.2
고졸 이하	59.7	67.2	39.2	56.9	60.8	62.1
대졸 이상	21.9	29.3	48.5	33.6	19.3	13.3
<가구주 결혼 상태>	2,702명 (100.0)	73명 (100.0)	155명 (100.0)	432명 (100.0)	1,248명 (100.0)	481명 (100.0)
기 혼	96.3	27.4	94.8	97.4	99.2	98.5
미 혼	4.7	72.6	5.2	2.6	0.8	1.5
<주소득자 월수입>	2,656명 (100.0)	72명 (100.0)	143명 (100.0)	414명 (100.0)	1,202명 (100.0)	459명 (100.0)
50만원 미만	1.9	6.9	1.4	0.2	1.6	1.3
50~ 59만원	4.1	15.3	5.6	4.1	2.7	4.6
60~ 69만원	5.5	13.9	9.8	6.8	4.3	3.3
70~ 79만원	7.4	16.7	7.7	9.4	6.3	5.4
80~ 89만원	12.3	12.5	18.9	12.3	12.0	12.4
90~ 99만원	10.1	5.6	8.4	12.6	9.8	11.3
100~109만원	16.5	9.7	16.1	14.3	17.1	17.9
110~119만원	6.8	6.9	6.3	7.5	7.3	7.2
120~129만원	10.9	5.6	7.7	9.7	13.4	9.8
130~139만원	5.2	1.4	4.9	4.3	5.6	6.1
140~149만원	3.3	1.4	2.8	4.3	3.3	4.1
150~199만원	11.0	2.8	8.4	9.9	11.7	10.3
200만원 이상	4.9	1.4	2.1	4.6	4.9	6.3
평균(만원)	108.3	83.0	98.7	106.9	110.9	111.4

<부록 1>의 계속

<가구주 직종>	2,800명 (100.0)	79명 (100.0)	155명 (100.0)	434명 (100.0)	1,248명 (100.0)	480명 (100.0)
생산직	41.9	59.5	28.4	38.0	45.0	38.5
사무직	15.0	13.9	22.6	19.8	13.6	15.2
관리직	3.5	2.5	5.2	4.1	2.7	4.2
전문기술직	13.3	7.6	15.5	14.3	13.4	13.5
판매직	0.9	1.3	1.3	0.2	0.5	1.3
서비스직	6.6	6.3	7.7	8.1	5.9	5.0
운수직	8.5	2.5	7.1	7.4	9.7	7.9
단순노무자	5.3	3.8	3.2	4.1	4.7	8.5
기 타	5.0	2.5	9.0	3.9	4.5	5.8
<가구주 직위>	2,760명 (100.0)	79명 (100.0)	150명 (100.0)	427명 (100.0)	1,236명 (100.0)	469명 (100.0)
일 반 근로 자, 사무원	65.0	77.2	69.3	61.8	64.0	64.2
조장, 반장	18.6	19.0	10.0	17.6	19.8	18.6
계장, 대리	12.2	3.8	16.1	15.9	11.7	12.8
과장급	3.0	2.7	2.7	3.0	3.4	3.4
차장급이상	1.2	-	1.3	1.6	1.1	1.1
<가구주 경력 년수>	2,410명 (100.0)	72명 (100.0)	132명 (100.0)	378명 (100.0)	1,090명 (100.0)	417명 (100.0)
3년 미만	4.1	23.6	13.7	3.2	2.0	3.1
3~5년 미만	8.6	22.2	26.5	15.1	4.2	3.6
5~10년 미만	24.1	23.6	37.1	38.9	22.2	12.9
10~15년 미만	23.1	19.4	10.6	23.5	25.9	23.5
15~20년 미만	22.2	8.3	7.6	11.9	26.7	26.1
20~25년 미만	11.2	1.4	3.0	4.5	13.0	5.8
25~30년 미만	5.5	1.4	0.8	2.4	4.7	12.5
30년 이상	1.2	-	0.8	0.5	1.3	1.7
평균(년)	14.4	8.4	8.6	11.3	15.5	17.5
<가구주 근속 년수>	2,271명 (100.0)	72명 (100.0)	137명 (100.0)	399명 (100.0)	1,152명 (100.0)	447명 (100.0)
3년 미만	16.4	27.8	31.4	19.3	12.2	14.8
3~5년 미만	17.1	25.0	28.5	28.1	13.5	10.3
5~10년 미만	27.3	33.3	27.0	32.1	29.5	21.7
10~15년 미만	17.9	12.5	8.0	12.0	20.5	21.9
15~20년 미만	13.4	-	2.9	5.8	15.9	17.9
20~25년 미만	5.0	1.4	1.5	1.8	6.2	7.2
25~30년 미만	2.6	-	0.7	0.8	1.8	5.6
30년 이상	0.4	-	-	0.3	0.5	0.7
평균(년)	10.4	6.5	6.3	7.8	11.2	12.4

<부록 2> 노총 생계비 구연구와 신연구의 항목별 비교

(단위 : 원)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소 비 지 출	식품비	구연구	154,266	248,717	366,606	508,935	616,761
		신연구	143,886	236,448	367,581	483,770	663,133
		차 이	(-)10,380	(-)12,269	975	(-)25,165	46,372
	주거비	구연구	112,209	224,345	268,861	291,143	380,176
		신연구	119,753	205,681	267,024	341,173	412,886
		차 이	7,544	(-)18,664	(-)1,837	50,030	32,710
	광 열 수도비	구연구	21,469	28,080	34,187	42,042	48,776
		신연구	36,665	46,962	55,975	57,175	65,026
		차 이	15,195	18,882	21,788	15,133	16,250
	가 구 집기비	구연구	28,481	50,903	56,520	59,116	63,261
		신연구	28,016	63,426	67,948	80,635	85,807
		차 이	(-)465	12,523	11,428	21,519	22,546
	피 복 신발비	구연구	36,527	73,135	85,206	105,178	132,774
		신연구	42,518	98,822	118,453	144,485	176,565
		차 이	5,991	25,687	33,247	39,307	43,791
	보 건 위생비	구연구	22,903	59,688	74,698	92,458	108,368
		신연구	30,162	73,734	89,658	109,245	129,076
		차 이	7,259	14,146	14,960	16,787	20,708
출 교육비	구연구	28,529	20,964	45,056	160,205	301,686	
	신연구	10,000	10,000	113,895	170,346	414,723	
	차 이	(-)18,529	(-)10,964	68,839	10,141	113,037	
교 통 통신비	구연구	33,940	47,200	47,200	47,200	74,300	
	신연구	42,520	54,646	54,646	58,906	98,956	
	차 이	8,580	7,446	7,446	11,706	24,656	
교 양 오락비	구연구	56,533	63,847	74,547	86,580	97,947	
	신연구	107,440	136,581	138,888	158,888	183,888	
	차 이	50,907	72,734	64,341	72,308	85,941	
계	구연구	494,857	816,879	1,052,881	1,392,857	1,824,049	
	신연구	560,960	926,300	1,274,068	1,604,623	2,230,060	
	차 이	66,103	109,421	221,187	211,766	406,011	

<부록 2>의 계속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비 소 비	저 축	구연구	53,703	48,333	48,333	48,333	48,333
		신연구	85,718	85,718	85,718	71,170	106,755
		차 이	32,015	37,385	37,385	22,837	57,422
지 출	조 세 공과금	구연구	37,817	56,297	76,667	115,917	205,237
		신연구	44,976	75,735	117,830	181,824	362,173
		차 이	7,159	19,438	41,163	65,907	156,936
도시근로자 생계비							
구연구			586,377	921,509	1,177,881	1,557,107	2,077,619
신연구			691,654	1,087,753	1,477,616	1,857,617	2,698,988
차 이			105,277	166,244	299,735	300,510	621,369

주 : 노총구연구 : 1994년 12월 10일 기준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
 노총신연구 : 1995년 10월 1일 기준 「도시근로자 생계비」

<부록 3> 신모형에 의한 도시근로자 생계비 가구모형별 항목별 명세표

(단위 : 원)

1. 식품비

품 목	규격	단가	내구년수	소요량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식품비					143,886	236,448	367,581	483,770	663,133
합 계					143,886	236,448	367,581	483,770	663,133

2. 주거비

품 목	규격	단가	내구 년수	소요량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전세유지비 (귀속임대료)					115,920	199,200	258,960	310,200	372,240
아파트관리비					-	-	-	10,706	16,250
이사비					2,500	4,250	5,000	292	292
취득세, 등록세					-	-	-	7,781	9,338
재산세					-	-	-	4,788	5,745
주택수리, 도배, 장판비					1,333	2,231	3,064	7,406	9,021
주거비 합계					119,753	205,681	267,024	341,173	412,886

3. 광열수도비

	규격	단가	내구년수	소요량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난방비					14,028	20,580	25,088	22,204	27,108
취사비					3,876	3,876	4,947	5,331	6,216
전기료					12,060	14,911	17,451	18,469	20,084
상수도요금					5,250	5,890	6,530	8,450	8,770
하수도요금					1,451	1,705	1,959	2,721	2,848
광열수도비					36,665	46,962	55,975	57,175	65,026
합계									

4. 가구집기비

1) 가 구

품 목	규 격	단 가	내구년수	소요량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장농	목제 8자	923,000	10년	1	-	7,692	7,692	7,692	7,692
소형장농	목제 3자	288,000	10년	1	2,400	-	-	2,400	2,400
화장대	목제 3자	200,000	10년	1	-	1,667	1,667	1,667	1,667
서랍장	목제 3단	154,000	10년	1	-	1,283	1,283	1,283	1,283
찬장	목제 2자	180,000	10년	1	-	1,500	1,500	1,500	1,500
소형찬장		57,000	6년	1	792	-	-	-	-
TV받침	목제	55,000	6년	1	764	764	764	-	-
책장	목제 3자	105,000	10년	1	-	875	875	875	875
책상	목제 3자	180,000	10년	1~2	-	1,500	1,500	3,000	3,000
책꽂이	소형	27,000	10년	1	-	225	225	450	450
식탁	목제4인용	190,000	10년	1	-	-	-	1,583	1,583
밥상		29,000	10년	1	403	403	403	-	-
의자	목제등받침	38,000	10년	1~7	-	317	317	1,902	2,219
소 계					4,359	16,226	16,226	22,352	22,669

2) 가전제품

품 목	규 격	단 가	내구 년수	소요량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컬러TV	20인치	263,000	10년	1	-	2,192	2,192	2,192	2,192
	14인치	175,000	10년	1	1,458	-	-	-	-
냉장고	350리터	516,000	10년	1	-	4,300	4,300	4,300	4,300
	120리터	206,000	10년	1	1,717	-	-	-	-
VTR	보급형	415,000	10년	1	3,458	3,458	3,458	3,458	3,458
카세트라디오	중형	73,000	7년	1	869	869	869	869	869
	CD플레이어 포함	543,000	10년	1	-	4,525	4,525	4,525	4,525
세탁기	5.5kg	461,000	10년	1	-	3,842	3,842	3,842	3,842
선풍기	가정용	47,000	7년	1	560	560	560	560	560
전기밥솥	5인용	44,000	7년	1	-	-	524	524	524
	3인용	40,000	7년	1	476	476	-	-	-
전자레인지	2구	183,000	10년	1	-	1,525	1,525	1,525	1,525
개스레인지		76,000	10년	1	633	633	633	633	633
믹서/쥬서		99,000	7년	1	-	1,179	1,179	1,179	1,179
진공청소기		133,000	10년	1	-	1,108	1,108	1,108	1,108
커피포트		22,000	7년	1	-	-	262	262	262
전기다리미		450W	28,000	7년	1	333	333	333	333
헤어드라이어		500W	16,000	7년	1	190	190	190	190
전기스탠드	바이오형광등	56,000	7년	1~2	-	667	667	1,334	1,334
소 계					9,694	25,857	26,167	26,834	26,834

3) 기타 내구소비재

품 목	규 격	단 가	내구년수	소요량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카메라	자동노출	206,000	10년	1	1,717	1,717	1,717	1,717	1,717
전화기	무선	123,000	5년	1	2,050	2,050	2,050	2,050	2,050
전화가설 신청금		250,000	30년	1	694	694	694	694	694
소 계					4,461	4,461	4,461	4,461	4,461

4) 주방용품

품 목	규 격	단 가	내구 년수	소요량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밥그릇	사기	2,600	3년	1~9	72	288	432	576	648
국그릇	사기	2,700	년	1~9	75	300	450	600	675
수저	스테인레스	1,700	5년	1~9	28	112	168	224	252
컵	유리	1,000	3년	2~10	56	112	168	224	280
접 시	대, 사기	3,700	3년	1~5	103	206	309	412	515
	중	2,400	3년	1~5	67	134	201	268	335
	소	1,800	3년	1~5	50	100	150	200	250
냄 비	대, 스테인레스	29,000	5년	1	-	483	483	483	483
	중	22,000	5년	1	-	367	367	367	367
	소	16,000	5년	1~2	267	267	267	534	534
주전자	중, 스테인레스	16,000	5년	1	267	267	267	267	267
프라이팬	코팅 30Cm	12,000	5년	1	200	200	200	200	200
보온도시락통		21,000	3년	1~3	-	-	-	583	1,749
보온물통		15,000	3년	1~3	-	-	-	417	1,251
커피잔세트	6인용	26,000	3년	1	361	722	722	722	722
쌀통	다용도	60,000	10년	1	-	500	500	500	500
쟁반	플라스틱	2,700	5년	1	45	45	45	45	45
과일칼		1,400	5년	1	23	23	23	23	23
부엌칼		5,700	5년	1	95	95	95	95	95
조미료통		1,100	5년	1	18	18	18	18	18
김치통	대,플라스틱	3,500	5년	1	29	29	29	29	29
도마		4,000	5년	1	67	67	67	67	67
바가지		700	5년	1	12	12	12	12	12
양동이		3,900	5년	1	65	65	65	65	65
국자		2,900	5년	1	48	48	48	48	48
티스푼	6인용1세트	8,500	5년	1	71	142	142	142	142
수저통	플라스틱	1,900	5년	1	32	32	32	32	32
식기건조대	플라스틱	9,000	5년	1	-	150	150	150	150
소쿠리	플라스틱	1,700	5년	1	-	28	28	28	28
뒤집개	플라스틱	2,900	5년	1	-	48	48	48	48
반찬통	플라스틱	1,400	5년	3~7	69	92	115	138	161
설거지통	플라스틱	1,900	5년	1	-	32	32	32	32
식기용세제	500g	1,000	3개월	1	167	333	333	333	333
수세미		400	1개월	1	200	400	400	400	400
행주		600	2개월	1~2	300	300	600	600	600
고무장갑		900	3개월	1	-	300	300	300	300
소 계					2,787	6,317	7,266	9,182	11,656

5) 기타 가사용품

품 목	규 격	단 가	내구 년수	소요량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벽시계		30,000	10년	1	-	250	250	250	250
탁상시계		18,000	5년	1~2	300	300	300	600	600
손목시계	남자용	56,000	10년	1	467	467	467	467	467
	여자용	53,000	10년	1	-	442	442	442	442
	학생용	31,000	5년	3	-	-	-	-	1,550
전자계산기	휴대용	12,000	5년	1	200	200	200	200	200
배터리	1.5V	700	1개월	1	350	700	700	700	700
형광등	40W, 중	1,000	2개월	2~7	1,000	2,000	2,500	3,000	3,500
백열등	60W	400	2개월	1	200	200	200	200	200
우산		6,000	3년	1~5	167	334	501	668	835
양산		15,000	3년	1	-	417	417	417	417
가방	대형	27,000	5년	1	450	450	450	450	450
	소형	25,000	5년	1	417	417	417	417	417
대야	플라스틱	1,300	5년	1~2	22	22	22	44	44
방빗자루		2,700	5년	1~2	45	45	45	90	90
쓰레받기		1,100	5년	1~2	18	18	18	36	36
휴지통	플라스틱	3,800	5년	1~3	63	126	126	189	189
빨래판		3,300	5년	1	-	55	55	55	55
빨래건조대	플라스틱	13,000	5년	1	-	217	217	217	217
빨래담는통	플라스틱	4,100	5년	1	-	67	67	67	67
빨래집게	1봉(10개)	600	1년	1	-	50	50	50	50
다림질판		6,500	5년	1	-	108	108	108	108
바늘	1세트	600	5년	1	-	10	10	10	10
실	1세트	700	1년	1	-	58	58	58	58
바느질통		16,000	10년	1	-	133	133	133	133
가위		1,700	5년	1	28	28	28	28	28
옷걸이	플라스틱	400	5년	2~10	14	28	42	56	70
이불	겨울용	67,000	10년	1~3	558	558	1,116	1,674	1,674
	봄가을용	61,000	10년	1~3	508	508	1,016	1,524	1,524
담요		41,000	10년	1~3	342	342	684	1,026	1,026
베개		9,000	5년	1~5	150	300	450	600	750
요		43,000	10년	1~3	358	358	716	1,074	1,074
방석		5,000	5년	2~8	166	332	498	664	664
성냥	대	700	1년	1	58	58	58	58	58
비누통		1,000	5년	1	17	17	17	17	17
벽거울	중	16,000	5년	1~2	267	267	267	534	534
도장	빨도장	6,000	10년	1~2	50	100	100	100	100
앨범		18,000	3년	1~3	500	500	1,000	1,500	1,500
공구세트		10,000	10년	1	-	83	83	83	83
소 계					6,715	10,565	13,828	17,806	20,187
가구 가사용 품비 합계					28,016	63,426	67,948	80,635	85,807

5. 피복·신발비

1) 성인남성

품 목	규 격	단 가	내구년수	소요량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신사복	봄가을용	145,000	4년	1	3,021	3,021	3,021	3,021	3,021
	겨울용	170,000	4년	1	3,542	3,542	3,542	3,542	3,542
코트	겨울용	125,000	5년	1	2,083	2,083	2,083	2,083	2,083
잠마	봄가을용	41,000	3년	1	1,139	1,139	1,139	1,139	1,139
	겨울용	58,000	3년	1	1,611	1,611	1,611	1,611	1,611
스웨타		27,000	3년	1	750	750	750	750	750
와이셔츠	긴팔	21,000	6개월	1	3,500	3,500	3,500	3,500	3,500
남방셔츠	긴팔	25,000	1년	1	2,083	2,083	2,083	2,083	2,083
티셔츠	긴팔	30,000	1년	1	2,500	2,500	2,500	2,500	2,500
바지	봄가을용	30,000	1년	1	2,500	2,500	2,500	2,500	2,500
	겨울용	33,000	1년	1	2,750	2,750	2,750	2,750	2,750
겨울내의		18,000	1년	1	1,500	1,500	1,500	1,500	1,500
팬티	백색	4,000	3개월	1	1,333	1,333	1,333	1,333	1,333
런닝	백색	3,000	3개월	1	1,000	1,000	1,000	1,000	1,000
양말	봄가을용	2,500	3개월	1	833	833	833	833	833
손수건		4,000	6개월	1	667	667	667	667	667
넥타이		14,000	1년	1	1,167	1,167	1,167	1,167	1,167
잠옷		44,000	3년	1	1,222	1,222	1,222	1,222	1,222
운동복		40,000	3년	1	1,111	1,111	1,111	1,111	1,111
구두		32,000	1년	1	2,667	2,667	2,667	2,667	2,667
운동화		20,000	1년	1	1,667	1,667	1,667	1,667	1,667
슬리퍼		5,400	1년	1	450	450	450	450	450
현대		14,000	3년	1	389	389	389	389	389
지갑		16,000	3년	1	444	444	444	444	444
장갑	가죽	20,000	3년	1	556	556	556	556	556
소 계					40,485	40,485	40,485	40,485	40,485

2) 성인여성

품 목	규 격	단 가	내구년수	소요량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숙녀복	봄가을용	120,000	4년	1	-	2,500	2,500	2,500	2,500
	겨울용	140,000	4년	1	-	2,917	2,917	2,917	2,917
코트 한복	겨울용	160,000	5년	1	-	2,667	2,667	2,667	2,667
		230,000	6년	1	-	3,194	3,194	3,194	3,194
잠바	봄가을용	36,000	3년	1	-	1,000	1,000	1,000	1,000
	겨울용	73,000	3년	1	-	2,028	2,028	2,028	2,028
스웨타		32,000	3년	1	-	889	889	889	889
티셔츠		20,000	1년	1	-	1,667	1,667	1,667	1,667
블라우스		37,000	1년	1	-	3,083	3,083	3,083	3,083
바지	봄가을용	25,000	1년	1	-	2,083	2,083	2,083	2,083
	겨울용	28,000	1년	1	-	2,333	2,333	2,333	2,333
스커트	봄가을용	40,000	1년	1	-	3,333	3,333	3,333	3,333
	겨울용	40,000	1년	1	-	3,333	3,333	3,333	3,333
겨울내의		18,000	1년	1	-	1,500	1,500	1,500	1,500
팬티		3,000	3개월	1	-	1,000	1,000	1,000	1,000
런닝		3,900	3개월	1	-	1,300	1,300	1,300	1,300
브래지어		18,000	6개월	1	-	3,000	3,000	3,000	3,000
속치마		22,000	6개월	1	-	3,667	3,667	3,667	3,667
스타킹	밴드	900	15일	1	-	1,800	1,800	1,800	1,800
양말		2,300	3개월	1	-	767	767	767	767
손수건		3,000	6개월	1	-	500	500	500	500
잠옷		46,000	3년	1	-	1,278	1,278	1,278	1,278
구두		33,000	1년	1	-	2,750	2,750	2,750	2,750
운동화		14,000	1년	1	-	1,167	1,167	1,167	1,167
슬리퍼		5,300	1년	1	-	442	442	442	442
샌들		21,000	1년	1	-	1,750	1,750	1,750	1,750
지갑		23,000	3년	1	-	639	639	639	639
장갑	가죽	20,000	3년	1	-	556	556	556	556
핸드백		19,000	3년	1	-	528	528	528	528
소 계					-	53,671	53,671	53,671	53,671

3) 자녀(남학생)

품 목	규 격	단 가	내구년수	소요량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잠바	봄가을용	34,000	2년	1~2	-	-	1,417	1,417	2,833
	겨울용	39,000	2년	1~2	-	-	1,625	1,625	3,250
스웨타		22,000	3년	1~2	-	-	611	611	1,222
남방셔츠		17,000	1년	1~2	-	-	1,417	1,417	2,833
티셔츠		19,000	1년	1~2	-	-	1,583	1,583	3,166
바지	봄가을용	18,000	1년	1~2	-	-	1,500	1,500	3,000
	겨울용	19,000	1년	1~2	-	-	1,583	1,583	3,166
반바지		10,000	1년	1	-	-	833	833	-
겨울내의		14,000	1년	1~2	-	-	1,167	1,167	2,333
팬티		2,500	3개월	1~2	-	-	833	833	1,667
런닝		2,800	3개월	1~2	-	-	933	933	1,867
양말		2,500	3개월	1~2	-	-	833	833	1,666
손수건		2,900	6개월	1~2	-	-	483	483	967
교복	하복	46,000	3년	2	-	-	-	-	2,556
	동복	90,000	3년	2	-	-	-	-	5,000
체육복		20,000	3년	1~2	-	-	-	556	1,112
유치원복		30,000	2년	1	-	-	1,250	-	-
잠옷		20,000	2년	1~2	-	-	833	833	1,667
운동화		26,000	6개월	0.5~2	-	-	2,167	4,333	8,667
현대		8,800	3년	1~2	-	-	244	244	488
장갑		4,500	3년	1~2	-	-	125	125	250
모자	운동모	7,000	3년	1~2	-	-	194	194	389
책가방		23,000	3년	1~2	-	-	-	639	1,278
소 계					-	-	19,631	21,742	49,377

4) 자녀(여학생)

품 목	규 격	단 가	내구 년수	소요량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잠바	봄가을용	30,000	2년	1	-	-	-	1,250	1,250
	겨울용	36,000	2년	1	-	-	-	1,500	1,500
스웨타		26,000	3년	1	-	-	-	722	722
원피스	여름용	15,000	1년	1	-	-	-	1,250	1,250
	봄가을용	15,000	1년	1	-	-	-	1,250	1,250
티셔츠		14,000	6개월	1	-	-	-	2,333	2,333
블라우스		18,000	1년	1	-	-	-	1,500	1,500
바지	봄가을용	15,000	1년	1	-	-	-	1,250	1,250
	겨울용	16,000	1년	1	-	-	-	1,333	1,333
반바지	여름용	10,000	1년	1	-	-	-	833	-
스커트		17,000	1년	1	-	-	-	1,417	1,417
겨울내의		13,000	1년	1	-	-	-	1,083	1,083
팬티		2,300	3개월	1	-	-	-	767	767
런닝		2,600	3개월	1	-	-	-	867	867
양말		1,500	3개월	1	-	-	-	500	500
타이츠		4,000	3개월	1	-	-	-	1,333	1,333
손수건		2,900	6개월	1	-	-	-	483	483
브래지어		9,000	6개월	1	-	-	-	-	1,500
교복	하복	46,000	3년	1	-	-	-	-	1,278
	동복	90,000	3년	1	-	-	-	-	2,500
체육복		18,000	3년	1	-	-	-	500	500
잠옷		19,000	3년	1	-	-	-	528	528
운동화		15,000	6개월	1	-	-	-	2,500	2,500
장갑		4,000	3년	1	-	-	-	111	111
책가방		22,000	3년	1	-	-	-	611	611
소 계					-	-	-	23,921	28,366
세탁비					2,333	4,666	4,666	4,666	4,666
피복신발비 합계					42,218	98,822	114,485	144,485	176,565

6. 보건·위생비

1) 위생비

품 목	규 격	단 가	내구 년수	소요량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목욕	대인	2,000	1주일(여 름 3개월 제외)	1~5	6,000	12,000	12,000	24,000	30,000
	소인	1,000	같 음	1	-	-	3,000	--	--
이발	대인	8,000	1개월	1	8,000	8,000	8,000	8,000	8,000
	학생	5,000	1개월	1~2	-	-	5,000	5,000	10,000
미용	피머	28,000	4개월	1	-	7,000	7,000	7,000	7,000
	커트	6,000	2개월	1	-	3,000	3,000	3,000	3,000
	커트(학생)	4,500	2개월	1	-	-	-	2,250	2,250
세수비누	140g	650	1개월	1~2	650	650	975	1,300	1,300
세탁비누	300g	340	1개월	1~2	340	340	680	680	680
가루비누	1kg	2,000	2개월	1~2	1,000	1,000	2,000	2,000	2,000
치약	180g	1,100	2개월	1~5	550	1,100	1,650	2,200	2,750
치솔		1,000	2개월	1~5	500	1,000	1,500	2,000	2,500
샴푸	500ml	2,200	2개월	1	550	1,100	1,100	1,100	1,100
수건		1,500	6개월	1~5	250	500	750	1,000	1,250
화장지	두 루 말 이 70m	400	1개월	2~7	800	1,600	2,000	2,400	2,800
티슈	사각,300매	1,400	1개월	1~2	1,400	1,400	1,400	2,800	2,800
생리대	10개들이	1,100	1개월	1~2	-	1,100	1,100	1,100	2,200
면도기	날삼입식	1,800	3년	1	50	50	50	50	50
면도날	5매들이	2,200	4개월	1	550	550	550	550	550
손톱깎이		1,100	5년	1	18	18	18	18	18
빗		1,200	5년	1~2	20	20	20	40	40
방충제		2,000	6개월	1~2	-	333	333	666	666
화장실세제	500ml	2,000	6개월	1	-	333	333	333	333
소 계					20,678	41,094	52,459	67,487	81,287

2) 의료비

품 목	규 격	단 가	내구년수	소요량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진료비					3,834	7,668	11,502	15,336	19,170
감기약	1일분조제	2,200	1년	1인3일	550	1,100	1,650	2,200	2,750
소화제	드링크제	300	1년	1인3병	75	150	225	300	375
	정제	200	1년	1인3정	50	100	150	200	250
진통제	정제	200	1년	1인3정	50	100	150	200	250
머큐롬		700	1년	1	58	58	58	58	58
외상연고	10g	2,300	1년	1	192	192	192	192	192
반창고	중	700	1년	1	58	58	58	58	58
붕대	중	600	1년	1	50	50	50	50	50
탈지면	20g	300	1년	1	25	25	25	25	25
물파스	45ml	1,000	6개월	1	167	167	167	167	167
모기약	에어졸	2,000	1년	1	167	167	167	167	167
안약		2,500	1년	1	208	208	208	208	208
안경		53,000	3년	1~2	-	1,472	1,472	1,472	2,944
소 계					5,484	11,515	16,074	20,633	26,664

3) 화장품

품 목	규 격	단 가	내구년수	소요량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스킨로션	남자용 150ml	12,000	6개월	1	2,000	2,000	2,000	2,000	2,000
	여자용 150ml	15,000	6개월	1	-	2,500	2,500	2,500	2,500
밀크로션	남자용 150ml	12,000	6개월	1	2,000	2,000	2,000	2,000	2,000
	여자용 150ml	15,000	6개월	1	-	2,500	2,500	2,500	2,500
영양크림	70g	17,000	6개월	1	-	2,833	2,833	2,833	2,833
콜드크림	70g	19,000	6개월	1	-	3,167	3,167	3,167	3,167
파운데이션	35ml	13,000	1년	1	-	2,167	2,167	2,167	2,167
립스틱	50mg	11,000	6개월	1	-	1,833	1,833	1,833	1,833
볼연지		17,000	2년	1	-	708	708	708	708
컴팩트	15g	17,000	1년	1	-	1,417	1,417	1,417	1,417
소 계					4,000	21,125	21,125	21,125	21,125
보건위생비 합계					30,162	73,734	89,658	109,245	129,076

7. 교육비

품 목	규 격	단 가	내구 년수	소요량	단신가 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공교육비 (중학교)	입학금	9,200	3년	2	-	-	-	-	511
	수업료	379,200	1년	2	-	-	-	-	63,200
	육성회비	114,000	1년	2	-	-	-	-	19,000
공교육비 (고등학교)	입학금	11,300	3년	1	-	-	-	-	314
	수업료	722,400	1년	1	-	-	-	-	60,200
	육성회비	154,800	1년	1	-	-	-	-	12,900
사교육비	유치원	103,895	1개월	1	-	-	103,895	-	-
	국민학교	80,173	1개월	2	-	-	-	160,346	-
	중학교	81,002	1개월	2	-	-	-	-	162,004
	고등학교	86,594	1개월	1	-	-	-	-	86,594
성인교육비		10,000	1개월	1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교육비 합 계					10,000	10,000	113,895	170,346	414,723

8. 교통·통신비

1) 교통비

품 목	규 격	단 가	내구 년수	소요량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버 스	가주주	340	1개월	2×25회	17,000	17,000	17,000	17,000	17,000
	배우자	340	1개월	2×10회	-	6,800	6,800	6,800	6,800
	중고생	240	1개월	2×26회×3명	-	-	-	-	37,440
택 시	8km	3,700	1개월	5회	18,500	18,500	18,500	18,500	18,500
소 계					35,500	42,300	42,300	42,300	79,740

2) 통신비

품 목	규 격	단 가	내구 년수	소요량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전 화	기본요금	2,500	1개월		2,500	2,500	2,500	2,500	2,500
	시내통화료	40	180초당	통화×30일	3,600	7,200	7,200	10,800	12,600
	시외통화료	40	23초당	8도수×3회	-	960	960	960	960
	전화세			전화요금의 10%	610	1,066	1,066	1,426	1,606
공중전화 편 지	1통화	40	1개월	1인 4회	160	320	320	320	800
	보통우표	150	1개월	1인 1통	150	300	300	600	750
소 계					7,020	12,346	12,346	16,606	19,216
교통통신 비 합계					45,520	24,646	54,646	58,906	98,956

9. 교양/오락/잡비

품 목	규 격	단 가	내구 년수	소요량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신문구독료		7,000	1개월	1	7,000	7,000	7,000	7,000	7,000
자녀용돈	국민학생	10,000	1개월	2	-	-	-	20,000	-
	중고생	15,000	1개월	3	-	-	-	-	45,000
담배	글로리	900	1개월	15	13,500	13,500	13,500	13,500	13,500
술		10,000	1개월	3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커피숍/다방		2,000	1개월	2	4,000	4,000	-	-	-
자판기커피		200	1개월	15	3,000	3,000	3,000	3,000	3,000
손님접대/친지 방문		20,000	1개월	1	-	20,000	20,000	20,000	20,000
경조사 부조금		20,000	1개월	1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비디오 테이프 대여		1,400	1개월	2	2,800	2,800	2,800	2,800	2,800
노래방		1시간	10,000	1개월	1	10,000	10,000	10,000	10,000
도서/잡지구입		5,500	1개월	1~2	5,500	5,500	11,000	11,000	11,000
귀향비/여행비		100,000	1년	2	8,333	16,667	16,667	16,667	16,667
사진촬영	필름36장	2,500	1년	1~3	417	834	1,251	1,251	1,251
	현상/인화비	4,680	1년	1~3	390	780	1,170	1,170	1,170
TV시청료		2,500	1개월	1	2,500	2,500	2,500	2,500	2,500
교양오락비					107,440	136,581	138,888	158,888	183,888
합 계									

10. 저축

품 목	규 격	단 가	내구 년수	소요량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월부금					85,718	85,718	85,718	71,170	71,170
저축합계					85,718	85,718	85,718	71,170	71,170

11. 조세공과금

품 목	규 격	단 가	내구 년수	소요량	단신 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득세					9,710	20,150	41,410	86,410	238,180
주민세	소득할	연4,000원			720	1,510	3,100	6,480	17,860
	균등할				417	417	417	417	417
의료보험료					10,350	16,350	22,500	27,000	30,000
국민연금					13,800	21,800	30,000	36,000	40,000
고용보험료					2,070	3,230	4,360	5,420	7,780
쓰레기봉투	20리터	250		4~8	1,000	1,500	1,500	2,000	2,000
노동조합비					6,909	10,778	14,543	18,097	25,936
공과금 합계					44,976	75,735	117,830	181,824	362,173
도시근로자 생계비 총계					691,654	1,087,753	1,477,617	1,857,617	2,598,988

<부록 4> 식품비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부록 4-1> 실태조사에 의한 식품비(6대도시)

1. 곡류 및 전분류

품 목	무게·부피	단 가 (단위 : 원)	100g당 가격 (단위 : 원)
밀가루	3Kg	1,221.6	40.7
국수	1,000g	1,321.5	132.1
식빵	400g	1,383.3	345.8
팔빵	85g	383.3	450.9
보리	1Kg	1,152.4	115.2
쌀	8Kg	13,833.3	172.9
옥수수(생것)	100g	333.3	333.3
옥수수(깻통)	300g	963.0	321.0
조	4Kg	13,273.3	331.8
라면(용기면)	120g	486.7	405.6
라면(봉지면)	120g	291.7	243.1
참쌀	1Kg	2,500.3	250.0
현미	1Kg	2,012.9	201.3
가래떡	500g	2,222.5	444.5
카스테라	90g	416.7	463.0
비스킷	200g	757.3	378.7
크레커	200g	615.9	308.1
도우넛	37g	370.0	1,000.0
케익	940g	11,200.0	1,191.5
할매	1Kg	1,537.5	153.8
시루떡	500g	2,300.0	460.0
감자	3.75Kg	3,713.6	99.0
고구마	3.75Kg	4,052.1	108.1
토란	375g	2,062.5	550.0
당면	500g	2,570.4	514.1
녹말가루	500g	1,600.8	320.2
냉동만두	635g	1,625.3	256.0

2. 채소 및 과일

품 목	무게·부피	단 가 (단위 : 원)	100g당 가격 (단위 : 원)
가지	120g	253.3	211.1
갓	375g	1,700.0	453.3
고구마줄기	375g	1,875.0	500.0
고비(마른것)	375g	1,436.0	382.9
고사리(마른것)	375g	4,772.5	1,272.7
풋고추	375g	1,264.9	337.3
붉은 고추(생것)	375g	2,416.7	644.5
취	375g	2,494.8	786.6
고추잎	375g	2,015.3	537.4
근대	375g	1,500.0	400.0
당근	140g	408.3	291.6
더덕	375g	7,037.0	1,876.5
도라지(마른것)	375g	3,876.2	1,033.7
들깻잎	16g	286.7	1,791.9
마늘	375g	1,816.7	484.4
무	510g	1,033.3	202.6
무청	375g	1,800.0	480.0
배추	1,265g	1,900.0	150.2
부추	244g	1,079.2	442.3
상치	375g	1,726.7	460.5
생강	375g	1,968.8	525.0
숙주나물	375g	599.0	159.7
시금치	375g	808.3	215.5
쑥갓	375g	933.3	248.9
씀바귀	375g	1,583.3	422.2
아욱	375g	722.3	192.6
양배추	1,000g	1,240.0	124.0
양파	4Kg	2,183.3	54.6
연근	1Kg	2,890.0	289.0
오이	143g	358.3	242.1
우영	3.75Kg	15,636.0	417.0
콩나물	375Kg	766.7	204.5
토란대(마른것)	1Kg	3,000.0	300.0
토마토	1Kg	2,693.5	269.4
파	2Kg	1,366.7	68.3
호박	382g	650.0	150.5
호박잎	375g	1,050.0	280.0

품 목	무게·부피	단 가 (단위 : 원)	100g당 가격 (단위 : 원)
김치,배추김치	500g	2,833.3	566.7
김치,깍두기	500g	2,900.0	580.0
느타리	1Kg	5,313.3	531.3
양송이	1Kg	7,283.3	728.3
표고(마른것)	400g	3,983.3	995.8
미역,물미역	400g	1,775.0	443.8
미역,마른것	80g	1,216.7	1,520.9
파래(젓은것)	400g	1,250.0	312.5
김	200g	4,583.3	2,291.7
다시마(마른것)	500g	1,700.0	340.0
감	100g	400.0	400.0
귤	100g	308.3	308.3
대추	400g	4,333.3	1,083.3
바나나	1Kg	2,183.3	218.3
배	550g	1,133.3	206.1
복숭아	300g	950.0	316.7
사과	240g	491.7	204.9
수박	4Kg	7,333.3	183.3
참외	500g	787.5	157.5
키위	500g	2,400.0	480.0
포도	4Kg	11,000.0	275.0
딸기	4Kg	-	-
오렌지쥬스	1.5L	2,583.7	172.2
포도넥타	200g	458.3	229.2
자두넥타	200g	533.3	266.7
사과넥타	200g	491.7	245.8

3. 고기, 생선, 계란 및 콩류

품 목	무게·부피	단 가	100g당 가격
닭고기	1,100g	3,100.0	281.8
돼지고기	600g	3,615.0	602.5
소시지	300g	1,292.6	430.9
햄	300g	3,123.3	1,041.1
쇠고기	600g	9,050.0	1,508.3
베이컨	180g	1,716.7	953.7
순대	600g	2,000.0	333.3
가자미	337g	1,500.0	445.1
갈치	323g	4,433.3	1,372.5
고등어	393g	1,416.7	360.5
꽁치	74g	439.3	593.6
넙치	400g	13,666.7	3,416.7
농어	300g	19,500.0	6,500.0
명태 (동태)	540g	758.3	140.4
명태 (북어)	137g	1,733.3	1,265.2
숭어	350g	4,666.7	1,333.3
뱅어	200g	3,625.0	1,812.5
멸치 (마른것)	375g	10,508.8	2,802.3
정어리	107g	450.0	420.6
조기	167g	2,808.3	1,681.6
청어	100g	1,240.0	1,240.0
밴댕이	100g	2,000.0	2,000.0
삼치	334g	1,666.7	499.0
방어	400g	14,416.7	3,604.2
임연수어	350g	1,460.0	417.1
다랑어	800g	7,733.3	966.7
가오리	400g	10,000.0	2,500.0
참치, 깡통	165g	812.4	492.3
어묵	500g	2,869.8	574.0
새우젓	375g	5,920.0	1,578.7
창란젓	375g	7,260.0	1,936.0
명란젓	375g	7,688.1	2,050.2
퀴치	375g	2,550.0	680.0
아귀	1Kg	6,500.0	650.0
붕어	375	2,000.0	533.3
뱀장어	1g	2,275.0	227.5
대하, 중하	10g	2,000.0	200.0
새우	375g	4,375.0	1,300.0

품 목	무게·부피	단 가	100g당 가격
꽃게	250g	2,125.0	850.0
굴	1Kg	7,200.0	720.0
바지락	400g	2,016.7	504.0
백합	1Kg	2,800.0	280.0
동죽	1Kg	6,500.0	650.0
피조개	1Kg	6,166.5	616.7
골뱅이	1Kg	4,780.0	478.0
꼬막	375g	1,168.8	311.7
맛	375g	1,875.0	500.0
오징어, 물오징어	352g	1,583.3	449.8
오징어 (마른것)	61g	1,800.0	2,950.8
문어	100g	9,000.0	9,000.0
주꾸미	1Kg	5,000.0	500.0
계란	500g	1,016.7	203.3
메추리알	140g	3,680.0	262.9
강낭콩	600g	4,000.0	666.7
녹두	500g	3,311.7	662.3
대두	500g	2,258.3	451.7
두부	500	600.0	120.0
두유	200ml	290.0	145.0
팔	500g	3,541.7	708.3
비지	500g	800.0	160.0
아몬드	200g	2,063.2	1,031.6
참깨	500g	6,020.8	1,204.2
잣	500g	11,426.0	2,285.2
은행	200g	2,500.0	1,250.0

4. 우유 및 유제품

품 목	무게·부피	단 가	100g당 가격
우유	200ml	293.3	146.7
요구르트 (호상)	110g	426.0	387.3
요구르트 드링크	65ml	91.7	141.1
분유	400g	4927.5	1231.9
치즈	100g	1682.0	1682.0
아이스크림	150g	350.0	233.3
연유	375g	1426.7	380.4

5. 유지 및 당류

품 목	무게·부피	단 가	100g당 가격
콩기름(식용유)	1.8L	2,608.3	144.9
참기름	300g	5,862.0	1,954.0
들기름	0.9L	5,200.0	577.8
미강유	1.8L	-	-
면실유	1.8L	2,750.0	152.8
버터	180g	1,794.0	996.7
마가린	225g	891.7	396.3
분말크림	500g	1,196.7	239.3
꿀	1.2L	14,583.3	1,215.3
설탕	1Kg	790.0	79.0
엿	700g	1,275.0	182.1
사탕	500g	1,180.0	236.0
초코렛	100g	840.0	840.0
양갱	60g	206.0	343.3
젤리	500g	1,955.0	391.0

6. 종실유, 견과류

품 목	무게·부피	단 가	100g당 가격
들깨	500g	3,244.3	648.9
땅콩	400g	3,333.3	833.3
밤	500g	3,250.0	650.0
해바라기씨	145g	1,446.0	997.2
호박씨	400g	3,120.0	780.0
도토리묵	450g	1,240.0	275.6

7. 음료수, 조미료

품 목	무게·부피	단 가	100g당 가격
커피	200g	5,473.3	3,736.7
인삼차	300g	9,476.7	3,158.9
콜라	250ml	381.7	152.7
사이다	250ml	363.3	145.3
식혜	239ml	525.0	219.7
간장	1,000ml	1,045.0	104.5
고추장	500g	2,108.3	421.7
된장	500g	1,258.3	251.7
마요네즈	500g	1,550.0	310.0

품 목	무게·부피	단 가	100g당 가격
소금	1Kg	1,491.0	149.2
식초	500g	730.0	146.0
카레가루	100g	671.7	671.7
화학조미료	100g	458.3	458.3
고추가루	100g	1,127.3	1,127.3

<부록표 4-2> 국민영양 조사에 따른 식품섭취량(대도시 1991~93)

식품군별 식품명		년 도				평 균
		1991	1992	1993		
식 물 성 식 품	곡 류 및 그 제 품	메밀	0.1	0.1	0.0	0.1
		밀	0.0	0.0	0.2	0.1
		밀가루	3.5	2.4	3.6	3.2
		국수	18.6	15.4	15.4	16.5
		빵	9.9	11.4	16.2	12.5
		보리	7.3	6.2	6.1	6.5
		수수	0.2	0.3	0.4	0.9
		쌀	281.4	279.3	248.7	269.8
		옥수수	0.1	0.2	0.3	0.2
		율무	0.2	0.1	0.1	0.1
	조	0.1	0.1	0.2	0.1	
	기타	0.0	0.1	1.0	0.4	
		소 계	321.4	315.6	292.2	315.9
		감 전 자 분 및 류	감자	14.2	16.2	14.6
고구마	7.2		3.1	6.9	5.7	
토란	0.0		0.6	0.2	0.3	
녹말	1.1		0.7	0.0	0.6	
기타	0.0		0.0	0.1	0.0	
	소 계	22.5	20.6	21.8	21.9	

식품군별식품명			년 도			
			1991	1992	1993	평 균
식 물 성 식 품	당그 류제 및품	꿀	0.2	0.1	0.2	0.2
		설탕	1.9	1.7	2.3	2.0
		엿	0.6	0.5	0.5	0.5
		사탕류	0.0	0.2	0.3	0.2
		기타	0.0	0.1	0.2	0.1
		소 계	2.7	2.6	3.5	2.9
	두그 류제 및품	강낭콩	0.5	0.7	0.4	0.5
		녹두	1.2	8.2	0.2	3.2
		대두	3.1	3.2	3.8	3.4
		동부	0.0	0.0	0.0	0.0
		두부	26.6	28.4	25.2	26.7
		두유	2.2	1.4	0.2	1.3
		완두콩	0.1	0.1	0.1	0.1
		팥	0.8	0.5	0.6	0.6
		기타	0.0	0.0	0.0	0.0
		소 계	34.5	42.5	30.5	35.8
	중건실 과유류 및 중건실 과유류 및	깨	1.0	1.0	0.3	0.8
		도토리	1.1	2.1	1.1	1.4
		땅콩	0.2	0.4	0.4	0.3
		밤	1.9	1.4	0.1	1.1
		잣	0.0	0.4	0.0	0.1
		호두	0.0	0.0	0.0	0.0
		기타	0.0	0.0	0.0	0.0
	소 계	4.1	5.3	1.9	3.8	
	채 소 류	가지	0.2	0.4	0.4	0.3
		갓	0.3	0.6	0.0	0.3
		고구마줄기	0.2	0.3	0.3	0.3
고비		0.1	0.7	0.0	0.3	
고사리		1.4	1.1	1.3	1.3	
풋고추		3.3	4.0	3.6	3.6	
붉은고추		0.1	0.1	0.0	0.0	
취		0.2	0.4	0.3	0.3	
고추잎		0.0	0.1	0.1	0.0	
근대		0.4	0.3	0.3	0.3	
당근		5.3	3.0	3.7	4.0	
더덕		0.4	0.2	0.2	0.3	
도라지		1.7	1.6	1.8	1.7	
들깻잎		1.6	1.5	1.4	1.5	

식품군별 식품명		연 도				
		1991	1992	1993	평 균	
식 물 성 식 품	채 소 류	마늘	6.0	6.3	6.4	6.2
		머위	0.2	0.0	0.1	0.1
		무	37.4	30.8	22.7	30.3
		무청	8.8	7.6	8.4	8.3
		배추	9.9	10.7	6.5	9.0
		부추	0.4	0.6	0.3	0.4
		상치	4.7	4.6	3.2	4.2
		생강	0.1	0.1	0.2	0.1
		숙주나물	0.9	1.2	0.9	1.0
		시금치	13.6	11.8	11.7	12.4
		쑥	0.0	0.0	0.1	0.0
		쑥갓	1.1	0.9	0.8	0.9
		씀바귀	0.1	0.7	0.1	0.3
		아욱	1.2	1.0	0.9	1.0
		배추	2.1	2.3	1.6	2.0
		양파	13.5	13.1	11.6	12.7
		연근	0.5	0.6	0.4	0.5
		오이	5.6	5.7	3.6	5.0
		우영	0.9	1.0	0.5	0.8
		유채	0.0	0.1	0.0	0.0
		죽순	0.0	0.0	0.0	0.0
		케일	0.1	0.1	1.0	0.4
		콩나물	24.8	22.8	22.7	23.4
		토란대	0.5	0.3	0.0	0.3
		토마토	0.7	0.5	0.1	0.4
		파	12.0	14.6	11.3	12.6
		피망	0.1	0.2	0.3	0.2
	호박	8.7	8.2	8.0	8.3	
	호박잎	0.0	0.1	0.0	0.0	
	김치류	103.5	118.3	107.6	109.8	
	기타	1.3	2.7	2.4	2.1	
		소계	273.9	281.2	253.0	269.4
		버 섯 류	느타리	1.6	2.3	2.6
	목이		0.0	0.0	0.0	0.0
	송이		0.0	0.1	0.1	0.1
	싸리		0.0	0.0	0.0	0.0
	양송이		0.1	0.1	0.2	0.1
	팽이	0.0	0.0	0.0	0.0	

식품군별식품명		년 도				평 균
		1991	1992	1993		
식 물 성 식품	버 섯 류	표고	0.3	0.5	0.5	0.4
		기타	0.0	0.0	0.0	0.0
		소 계	2.0	3.0	3.4	2.8
	과 실	감	17.2	31.7	18.3	22.4
		금귤	0.1	1.6	0.0	0.6
		귤	27.8	37.7	41.5	35.7
		대추	0.1	0.1	0.1	0.1
		레몬	0.0	0.0	0.0	0.0
		바나나	3.6	1.5	1.8	2.3
		배	10.4	8.3	10.0	9.6
		복숭아	0.4	0.0	0.1	0.2
		사과	49.2	52.5	55.1	52.3
		수박	0.4	0.2	0.5	0.4
		키위	0.0	0.1	0.2	0.1
		파인애플	0.3	0.0	0.0	0.1
		포도	0.3	2.3	2.0	1.5
		과즙	9.7	6.7	9.0	8.5
	잼	0.2	0.4	0.4	0.3	
	기타	1.3	0.0	0.0	0.4	
	소 계	120.9	143.1	140.0	134.7	
	해 조 류	김	3.0	2.7	3.0	2.9
		다시마	0.1	0.2	0.2	0.2
		모자반	0.0	0.0	0.0	0.0
		미역	3.7	3.1	4.6	3.8
		우뭇가사리	0.0	0.1	0.0	0.0
		톳	0.0	0.0	0.0	0.0
		파래	1.1	1.2	0.9	1.1
기타		0.0	0.2	0.2	0.1	
소 계		8.0	7.5	8.9	8.1	
음주료 및 류	차류	5.2	3.8	5.0	4.7	
	주류	2.1	1.5	5.2	2.9	
	탄산음료	4.4	30.0	5.9	4.4	
	소계	11.5	8.3	16.0	11.9	
조 미 료 류	간장	6.5	7.3	7.9	7.2	
	고추장	4.3	4.8	3.1	4.1	
	된장	6.6	6.9	5.6	6.4	
	마요네즈	0.5	0.5	0.5	0.5	
	소금	3.6	2.7	4.3	3.5	
	식초	0.5	0.4	0.4	0.4	

식품군별 식품명			년 도			
			1991	1992	1993	평 균
식 물 성	조 미 료 류	레토르트식품	1.2	1.8	0.6	1.2
		향신료	0.3	0.4	0.6	0.4
		조미료	1.7	1.2	1.2	1.4
		소 계	25.2	26.0	24.2	25.1
	유지류	식물성유지	6.3	6.7	8.1	7.0
식 품	기 타	인삼	0.0	0.2	0.2	0.1
		효모	2.2	0.1	-	*1.2
		기타	0.4	1.0	0.4	0.7
		소 계	2.6	1.3	0.6	1.5

* : 2년간 평균임

식품군별 식품명		년 도					
		1991	1992	1993	평균		
동 물 성 식 품	육 류 및 그 제 품	닭고기	8.2	8.2	10.3	8.9	
		돼지고기	29.3	22.4	20.5	24.1	
		소시지	2.0	1.9	2.0	2.0	
		햄	3.4	5.2	4.8	4.5	
		쇠고기	18.7	31.6	27.4	25.9	
		양고기	0.1	0.0	-	*0.1	
		오리고기	0.0	0.5	0.4	0.3	
		기타	0.0	1.2	0.9	0.7	
		소 계	61.6	71.0	66.3	66.3	
		난 류	계란	22.9	20.9	25.4	23.1
			메추리알	0.1	0.3	0.5	0.3
			기타	0.0	0.0	0.3	0.1
			소 계	23.0	21.2	26.2	23.4
		어 패 류	가다랭이	0.1	0.1	0.0	0.1
			가오리	0.1	0.0	0.1	0.1
			가자미	0.8	1.6	1.3	1.2
			갈치	9.4	8.5	3.9	7.3
			고등어	9.4	8.2	10.5	9.4
			꽁치	2.2	1.5	2.6	2.1
			넙치	0.0	0.4	0.0	0.1
			농어	0.0	0.0	0.0	0.0
			대구	0.3	1.0	0.8	0.7
			도다리	0.0	0.0	0.0	0.0
			도미	0.4	0.3	0.8	0.5
			멸치	5.6	6.0	5.3	5.6
			명태	9.5	14.0	9.6	11.0
			미꾸라지	1.2	0.1	0.3	0.5
	민어		0.1	0.1	0.0	0.1	
	뱅어		0.1	0.2	0.5	0.3	
	병어		0.5	0.1	0.6	0.4	
	붕어		0.1	0.3	0.0	0.1	
	삼치		1.7	0.7	0.8	1.1	
	상어		0.1	0.0	0.0	0.0	
	서대	0.0	0.0	0.1	0.0		
	숭어	0.0	0.1	0.0	0.0		
	아귀	0.0	0.3	0.0	0.1		
	양미리	0.0	0.2	0.1	0.1		
	연어	0.0	0.1	0.0	0.0		

식품군별 식품명		년 도				
		1991	1992	1993	평균	
동 물 성 식 품	어 패 류	연어	0.0	0.1	0.0	0.0
		임연수어	0.2	1.1	1.0	2.3
		잉어	0.0	0.0	0.0	0.0
		장어	0.2	0.5	0.2	0.3
		전갱이	0.1	0.0	0.1	0.1
		전어	0.3	0.3	0.5	0.4
		정어리	0.1	0.3	0.0	0.1
		조기	9.4	7.4	7.3	8.0
		쥐치	0.5	0.6	0.4	0.5
		다랑어	5.7	3.7	5.1	4.8
		청어	0.0	0.1	0.0	0.0
		굴	0.3	0.4	0.3	0.3
		꼬막	0.2	0.1	0.1	0.1
		대합	0.1	0.1	0.2	0.1
		바지락	0.1	0.2	0.3	0.2
		소라	0.1	0.0	0.2	0.1
		홍합	0.1	0.4	0.2	0.2
		갑오징어	1.2	0.0	0.0	0.4
		게	4.1	4.6	1.9	3.5
		꽃두기	0.1	0.0	0.0	0.0
		낙지	0.6	0.2	1.0	0.6
		새우	0.8	0.5	0.5	0.6
		오징어	8.2	11.1	8.9	9.4
		어묵	3.5	5.5	5.9	5.0
		어육	2.4	0.2	0.0	0.9
		젓갈류	1.3	1.4	1.9	1.5
기타	2.8	4.1	2.8	3.2		
소 계		84.0	86.6	76.1	82.2	

식품군별 식품명		년 도				
		1991	1992	1993	평균	
동 물 성 식 품	어 패 류	청어	0.0	0.1	0.0	0.0
		굴	0.3	0.4	0.3	0.3
		꼬막	0.2	0.1	0.1	0.1
		대합	0.1	0.1	0.2	0.1
		바지락	0.1	0.2	0.3	0.2
		소라	0.1	0.0	0.2	0.1
		홍합	0.1	0.4	0.2	0.2
		갑오징어	1.2	0.0	0.0	0.4
		게	4.1	4.6	1.9	3.5
		꽃두기	0.1	0.0	0.0	0.0
		낙지	0.6	0.2	1.0	0.6
		새우	0.8	0.5	0.5	0.6
		오징어	8.2	11.1	8.9	9.4
		어묵	3.5	5.5	5.9	5.0
		어육	2.4	0.2	0.0	0.9
		젓갈류	1.3	1.4	1.9	1.5
		기타	2.8	4.1	2.8	3.2
	소 계		84.0	86.6	76.1	82.2
	유 류 및 그 체 품	분유	0.3	0.3	0.4	0.3
		연유	0.0	0.0	-	0.0
		우유	62.4	57.8	63.6	61.3
		아이스크림	10.5	6.2	3.0	6.6
		치즈	0.2	0.21	0.3	0.2
		크림	0.3	1.6	-	1.0
		기타	0.4	0.0	-	0.2
	소 계		74.0	66.1	67.3	69.1
	유지류	동물성유지	0.0	0.6	0.6	0.4
식물성 식품계		836.4	863.7	831.0	843.7	
동물성 식품계		242.8	245.5	245.0	244.4	
총 계		1079.3	1109.2	1076.0	1088.2	

* : 2년간 평균임

<부록 4-3> 식품수급표에 의한 1인 1일 식품별 섭취량 평균

식품명	1991년	1992년	1993년	평균
곡류류				
밀가루	85.73	89.18	81.97	85.63
쌀	321.97	313.81	311.42	315.73
보리쌀	5.56	5.15	7.53	6.08
옥수수	65.15	67.45	62.27	64.96
호밀	0.00	0.00	0.00	0.00
수수	0.14	0.14	0.05	0.11
조	0.19	0.14	0.14	0.16
메밀	0.33	0.38	0.68	0.46
기타	3.53	2.96	3.92	2.90
소 계	482.60	479.21	468.00	476.60
서류				
감자	17.53	27.34	29.75	24.87
고구마	9.89	7.59	10.58	9.35
소 계	27.42	34.93	40.33	34.23
설탕류				
설탕	43.75	45.34	42.85	43.98
꿀	0.49	0.52	0.52	0.51
소 계	44.25	45.86	44.37	44.49
두류				
콩	22.79	22.41	21.40	22.20
팥	2.41	2.33	2.36	2.37
녹두	0.49	0.58	0.55	0.54
땅콩	1.34	0.99	0.93	1.09
기타	1.59	1.51	1.56	1.55
소 계	28.63	27.82	26.79	27.75
견과류				
밤	2.11	2.49	2.05	2.22
호도	0.03	0.03	0.08	0.05
잣	0.03	0.03	0.05	0.04
도토리	0.05	0.05	0.27	0.12
은행	0.05	0.05	0.05	0.05
소 계	2.27	2.66	2.52	2.48

식품명	1991년	1992년	1993년	평 균
종실류				
참깨	2.30	2.58	2.71	2.53
기타	0.82	1.12	0.38	0.77
소 계	3.12	3.70	3.10	3.31
채소류				
무	67.70	61.42	64.33	64.48
배추	102.71	89.70	137.95	110.12
양배추	9.26	8.49	6.60	8.12
파	24.05	26.79	25.48	25.44
생강	1.56	2.00	1.56	1.71
양파	25.81	36.77	27.29	29.96
마늘	18.08	18.71	16.08	17.62
오이	14.19	14.36	18.22	15.59
호박	6.16	7.51	8.96	7.54
시금치	3.34	3.26	4.38	3.66
토마토	5.42	9.75	10.93	8.70
고추	4.41	4.77	5.56	4.91
당근	5.95	5.59	7.12	6.22
상추	5.75	5.73	7.45	6.31
수박	22.60	26.03	26.52	25.05
참외	8.03	8.22	8.99	8.41
송이버섯	0.00	0.00	0.00	0.00
표고버섯	0.08	0.16	0.14	0.13
양송이	0.58	0.52	0.60	0.57
느타리	3.29	3.73	3.45	3.49
산나물	0.99	1.15	1.26	1.13
딸기	4.66	5.10	6.38	5.38
기타채소	24.33	26.99	27.95	26.42
소 계	358.41	369.10	420.25	382.59
과실류				
사과	25.81	33.12	29.04	29.32
배	6.85	7.15	6.58	6.86
감	4.63	6.63	4.63	5.30
포도	5.73	5.70	6.19	5.87
복숭아	6.03	5.67	6.00	5.90
귤	23.73	30.41	25.92	26.69
기타	25.51	17.48	17.78	20.26
소 계	98.27	16.16	96.14	100.19

식품명	1991년	1992년	1993년	평 균
육류				
쇠고기	13.84	13.95	13.59	13.79
돼지고기	31.70	35.97	37.37	35.01
닭고기	12.82	14.25	14.66	13.91
양고기	-	-	-	-
오리고기	-	-	-	-
토끼고기	-	-	-	-
고래고기	-	-	-	-
부산물	9.70	11.10	12.00	10.93
소 계	68.05	75.26	77.62	94.10
계란류				
달걀	20.47	20.38	23.34	21.40
오리알	-	-	-	-
소 계	20.47	20.38	23.34	21.40
우유류				
우유	81.73	84.27	91.97	85.99
연유	0.25	0.19	0.16	0.20
전지분유	0.52	0.36	0.27	0.38
탈지분유	1.21	1.18	1.34	1.24
조제분유	1.64	1.70	1.64	1.66
양유	-	-	-	-
소 계	85.34	84.27	95.40	88.34
어류				
어류	55.18	51.15	50.08	52.14
가자미	0.19	0.41	0.05	0.22
넙치	0.49	0.58	1.21	0.76
서대류	0.11	0.11	0.11	0.11
대구	0.58	0.66	0.71	0.65
은대구	0.00	0.00	0.00	0.00
노가리	0.63	0.30	0.44	0.46
명태	7.84	9.34	8.03	8.40
도미	0.58	0.47	0.58	0.54
병어	0.22	0.19	0.16	0.19
민어	0.41	0.08	0.55	0.35
조기	1.75	2.05	1.53	1.78
강달어	4.27	3.73	4.25	4.08

식품명	1991년	1992년	1993년	평 균
성대류	0.00	0.00	0.00	0.00
갈치	4.25	3.78	2.55	3.53
도루묵	0.14	0.11	0.11	0.12
농어	0.05	0.03	0.08	0.05
눈볼대	0.03	0.00	0.03	0.02
장어	0.33	0.49	0.11	0.31
망둥어	0.08	0.08	0.11	0.09
매통이	0.00	0.00	0.00	0.00
양태	0.11	0.11	0.11	0.11
볼락	0.99	0.33	1.01	0.78
양미리	0.44	0.41	0.49	0.45
숭어	0.14	0.14	0.14	0.14
뱅어	0.99	0.99	0.30	0.76
복어	0.14	0.14	0.14	0.14
멸치	10.41	10.08	10.05	10.18
정어리	1.48	1.48	0.88	1.28
전어	0.25	0.22	0.22	0.23
청어	0.33	0.36	0.19	0.29
밴댕이	0.14	0.11	0.77	0.34
고등어	3.56	3.62	6.52	4.57
전갱이	0.55	1.01	1.37	0.98
삼치	0.74	0.47	0.66	0.62
꽁치	0.63	1.07	1.26	0.99
학꽁치	0.03	0.05	0.05	0.04
방어	0.16	0.05	0.08	0.10
임연수어	0.36	0.58	0.66	0.53
다랑어	2.71	1.48	1.42	1.87
새치류	0.19	0.22	0.30	0.24
송어류	0.05	0.05	0.05	0.05
상어	0.14	0.08	0.22	0.15
가오리	0.49	0.41	0.55	0.48
보리멸	0.00	0.00	0.00	0.00
쥐치	1.32	0.60	0.22	0.71
준치	0.03	0.00	0.00	0.01
아귀	0.22	0.19	0.19	0.20
기타해산어	5.32	2.77	0.14	2.74

식품명	1991년	1992년	1993년	평 균
잉어	0.08	0.08	0.05	0.07
붕어	0.14	0.11	0.08	0.11
미꾸라지	0.05	0.11	0.08	0.08
뱀장어	0.14	0.16	0.14	0.15
연어	0.03	0.08	0.03	0.05
쏘가리	0.00	0.00	0.00	0.00
가물치	0.00	0.03	0.03	0.02
메기	0.00	0.03	0.03	0.02
기타담수어	0.88	1.10	1.04	1.01
소 계	79.26	81.48	81.44	81.16
패류				
대하. 중	0.30	0.27	0.14	0.24
새우	1.53	2.27	2.55	2.12
꽃게	0.14	0.11	0.25	0.17
왕게	0.00	0.00	0.14	0.05
기타게	0.49	0.36	0.19	0.35
전복	0.00	0.00	0.03	0.01
소라고동	0.03	0.05	0.08	0.05
굴	1.01	1.32	1.53	1.29
반지락	0.49	0.77	0.41	0.56
백합	0.05	0.03	0.03	0.04
가무락	0.00	0.00	0.03	0.01
동죽	0.27	0.22	0.19	0.23
피조개	0.03	0.30	0.16	0.16
새조개	0.00	0.00	0.08	0.03
굴뱅이	0.08	0.05	0.08	0.07
개량조개	0.03	0.05	0.11	0.06
홍합	0.03	0.05	0.68	0.25
꼬막	0.30	0.30	0.11	0.24
키조개	0.00	0.16	0.11	0.09
맛	0.19	0.16	0.77	0.37
채첩	0.00	0.00	0.00	0.00
기타패류	0.00	0.25	0.27	0.17
오징어	16.74	22.27	22.88	20.63
문어	0.19	0.11	0.11	0.14
주꾸미	0.22	0.52	0.25	0.33

식품명	1991년	1992년	1993년	평 균
기타연체동물	1.64	0.52	0.77	0.98
해삼	0.11	0.08	0.11	0.10
성게	0.05	0.11	0.19	0.12
우렁쉥이	0.11	0.08	0.25	0.15
기타수산동물	0.03	0.16	0.16	0.12
소 계	24.08	30.33	32.66	29.02
해조류				
다시마	0.27	0.25	0.86	0.46
미역	8.41	16.39	16.30	13.70
김	8.44	9.35	13.71	10.50
톳	0.03	0.01	0.01	0.02
파래	0.82	1.02	0.70	0.85
우뚝가사리	0.19	0.36	0.27	0.27
기타해조류	0.88	2.06	0.98	1.31
소 계	19.12	29.52	32.97	27.20
식물성	33.62	33.10	32.71	33.14
콩기름	12.71	12.25	11.56	12.17
참기름	0.82	1.07	1.29	1.06
들기름	0.38	0.41	0.49	0.43
유채유	0.33	0.77	1.07	0.72
미강유	0.60	0.66	1.48	0.91
면실유	1.84	1.53	1.07	1.48
고추씨유	0.00	0.00	0.00	0.00
팜유	10.77	10.25	9.56	10.19
야자유	2.41	2.88	2.49	2.59
옥배유	2.60	2.99	3.42	3.00
기타	1.15	0.30	0.27	0.57
동물성	4.14	4.93	3.67	4.25
우지	3.29	4.14	3.34	3.29
돈지	0.00	0.00	0.00	0.00
어유	0.85	0.79	0.33	0.66
기타	-	-	-	-
버터	-	-	-	-
소 계	37.78	38.03	36.38	37.40

식품명	1991년	1992년	1993년	평균
주 류				
탁 주	27.86	23.64	19.75	23.75
소 주	43.06	45.56	46.90	45.17
맥 주	101.37	100.27	96.68	99.44
기 타	20.33	21.40	21.21	20.98
소 계	192.62	190.87	184.54	189.34

<부록 4-4> 1994년 식품 생산실적(보건복지부)

품 목 명	생 산 량 (톤)	1인 1일 생산량(g)	비 고
붕지라면	619,954	3.79	
용기면	355,742	2.17	
기타면	68,885	0.42	
인스탄트커피	2,6701,673	163.11	
홍차	4,9846,389	304.49	
녹차	22,821	0.14	
아이스크림	194,351	1.19	
아이스밀크	622,023	3.80	
샤베트	49,085	0.30	
비유지방 아이스밀크	36,334	0.22	
빙과류	469,220	2.87	
아이스크림 분말	3,066	0.02	
우유	2397,374	14.64	
치즈	1784,218	10.90	
가공유류	338,338	2.07	
전지분유	32,184	0.20	
조제분유	28,020	0.17	
탈지분유	3,4519,971	210.87	
연유	11,2706,271	688.47	
발효유류	1,5776,346	96.37	
햄	5500,905	33.60	
프레스햄	70,374	0.43	
소시지류	683,176	4.17	
베이컨	662,617	4.05	
건조저장육	642	0.00	
알가공품	14,533	0.09	
식육 통,병조림류	14,036	0.09	
분쇄육	203,369	1.24	
쇠고기 포장육	1,855,113	11.33	
돼지고기 포장육	8,799,838	53.75	
찜	3,600	0.02	
쥬스넥타	90,602	0.55	
두부	3,189,828	19.49	
묵류	183,737	1.12	
캔디류	81,053	0.50	
잼 및 젤리류	84,008	0.51	
생과자류	16,544	0.10	
병과류	4830	0.03	

품 목 명	생 산 량 (톤)	1인 1일 생산량(g)
팥앙금류	6,588	0.04
설탕	921,140	5.63
포도당	87,610	0.54
과당	634,523	3.88
엿류	759,140	4.64
어묵류	6,468,088	39.51
어육햄류	17,944	0.11
어육소시지	12,000	0.07
젓갈류	993,458	6.07
단무지	805,610	4.92
콩조림	3,224	0.02
김치	2,640,555	16.13
어육포	53,859	0.33
패육포	10	0.00
콩기름	248,148	1.52
채종유	176,611	1.08
미강유	78,021	0.48
참기름	163,020	1.00
면실유	13,300	0.08
낙화생유	519,979	3.18
쇼트닝	103,500	0.63
마아가린	51,260	0.31
사라다유	132,300	0.81
고추씨기름	181	0.00
건면	294,663	1.80
숙면	227,424	1.39
양조간장	24,425	0.15
혼합간장	126,499	0.77
산분해간장	68,970	0.42
된장	212,184	1.30
고추장	99,413	0.61
춘장	27,140	0.17
양조식초	39,235	0.24
식용빙초산	2,419	0.01
건과류	77,727,356	474.80
유과류	97,948	0.60
카라멜	14,128	0.09
껌류	60,286	0.37
초코류	116,826	0.71
도너츠	95,347	0.58

품 목 명	생 산 량 (톤)	1인 1일 생산량(g)
빵류	844,044	5.16
식빵	66,637	0.41
소스	15,587	0.10
마요네즈	25,220	0.15
케찹	44,612	0.27
카레	5,311	0.03
고추가루 및 실고추	21,497	0.13
후추가루	18,356	0.11
겨자류	2,934	0.02
드레싱류	13,643	0.08
도시락	73,059,546	446.29
이유식	15,254	0.09
농축인삼류	1,005	0.01
인삼분말	1,688	0.01
인삼차	4,679	0.03
인삼엽차	1,579	0.01
인삼정차류	1,363	0.01
인삼음료	185,814	1.14
인삼 통, 병조림	37	0.00
인삼과자류	12,778	0.08
당침인삼	442	0.00
인삼캡슐(정)류	1,302	0.01
효소제품	1,105	0.01
효모제품	3,957	0.02
스쿠알렌제품	1,177	0.01
정제어유 가공식품	109	0.00
배아유제품	189	0.00
화분 가공제품	264	0.00
로얄젤리 가공제품	139	0.00
알로에제품	80,570	0.49
엽록소 가공제품	25	0.00
중자유제품	34	0.00
칼슘함유제품	2,273	0.01
대두레시틴 가공제품	721	0.00
식물엑기스 발효제품	783	0.00
단백 가공제품	80	0.00
버섯 가공제품	145	0.00
매실 가공제품	115	0.00
조류 가공제품	72	0.00
차라 가공제품	77	0.00
유산균 함유제품	48	0.00
식물 발효식품	520	0.00

식품명	중량 g	에너지 kcal	단백질 g	지방 g	칼슘 mg	인 mg	철분 mg	Vit.A RE	Vit.B1 mg	Vit.B2 mg	니아신 mg	Vit.c mg
간장	5.0	2	0.3	0.0	3.4	2.9	0.2	0	0.00	0.00	0.1	0.0
배추	80.0	10	1.0	0.2	40.8	23.2	0.2	6	0.04	0.05	0.2	36.8
무	35.0	11	0.7	0.0	21.7	10.2	0.3	0	0.00	0.01	1.4	6.7
양배추	15.0	3	0.2	0.0	2.9	6.5	0.0	0	0.02	0.04	0.0	3.6
대과	15.0	4	0.2	0.1	16.7	7.4	0.1	13	0.01	0.02	0.0	4.1
양과	15.0	5	0.2	0.0	1.8	17.6	0.0	0	0.02	0.01	0.0	3.6
꽃마늘	15.0	5	0.2	0.2	0.8	0.0	0.1	1	0.02	0.02	0.0	3.8
오이	15.0	1	0.1	0.0	3.9	5.3	0.0	2	0.00	0.00	0.1	1.4
호박	10.0	2	0.2	0.1	1.5	2.3	0.1	8	0.01	0.02	0.0	0.8
토마토	10.0	2	0.2	0.0	0.4	7.0	0.1	5	0.01	0.00	0.0	2.1
시금치	15.0	5	0.5	0.1	6.2	4.4	0.4	119	0.02	0.05	0.1	9.8
풋고추	15.0	2	0.4	0.1	2.3	8.6	0.2	177	0.03	0.05	0.2	13.8
당근	10.0	4	0.1	0.0	4.2	3.7	0.1	09	0.01	0.01	0.1	1.0
상치	5.0	1	0.1	0.0	5.3	1.3	0.2	20	0.00	0.01	0.0	0.3
콩나물	25.0	10	1.1	0.3	8.0	12.3	0.2	3	0.04	0.03	0.2	2.5
느타리버섯	5.0	2	0.2	0.0	0.2	4.9	0.2	0	0.00	0.02	0.0	0.5
미역	25.0	0	0.8	0.1	37.3	20.0	0.3	59	0.02	0.04	0.3	0.5
김	1.0	0	0.4	0.0	1.1	0.4	0.1	0	0.00	0.04	0.0	0.1
사과	100.0	50	1.4	0.3	4.0	9.0	1.2	0	0.02	0.01	2.8	4.0
배	15.0	7	0.1	0.0	0.6	5.3	0.0	0	0.01	0.00	0.0	0.6
감	20.0	11	0.1	0.0	2.6	7.2	0.0	8	0.01	0.01	0.1	3.2
포도	15.0	8	0.2	0.1	1.8	3.0	0.1	0	0.06	0.04	0.0	0.0
귤	75.0	35	0.6	0.2	13.5	7.5	0.2	6	0.08	0.05	0.4	29.3
복숭아	10.0	4	0.1	0.1	1.2	1.9	0.1	10	0.00	0.00	0.1	0.5
수박	10.0	2	0.0	0.0	1.4	1.2	0.0	0	0.00	0.00	0.0	0.5
참외	5.0	2	0.0	0.0	0.7	0.6	0.0	0	0.00	0.00	0.0	1.1
딸기	0.0	0	0.0	0.0	0.0	0.0	0.0	0	0.00	0.00	0.0	0.0
감자	20.0	16	0.3	0.0	0.6	12.4	0.3	0	0.03	0.01	0.2	3.6
고구마	15.0	15	0.2	0.1	3.3	6.3	0.1	6	0.02	0.01	0.0	2.6
우유	200.0	118	5.8	6.4	200.0	180.0	0.2	46	0.06	0.30	0.2	0.0
식용유	18.0	159	0.0	18.0	0.0	0.0	0.0	0	0.00	0.00	0.0	0.0
참기름	2.5	22	0.0	2.5	0.0	0.0	0.0	0	0.00	0.00	0.0	0.0
마아가린	3.0	23	0.0	2.5	0.3	0.3	0.0	0	0.00	0.00	0.0	0.0
설탕	6.0	23	0.0	0.0	0.2	0.1	0.0	0	0.00	0.00	0.0	0.0
총 계	1513.5	2597	92.1	65.6	737.3	1402.5	23.9	700	1.72	1.65	18.40	138.60

식품명	중량 g	에너지 kcal	단백질 g	지방 g	칼슘 mg	인 mg	철분 mg	Vit.A RE	Vit.B1 mg	Vit.B2 mg	니아신 mg	Vit.c mg
간장	10.0	4	0.7	0.1	6.8	5.8	0.3	0	0.00	0.01	0.1	0.0
배추	100.0	13	1.3	0.2	51.0	29.0	0.3	7	0.05	0.06	0.3	46.0
무우	70.0	21	1.4	0.1	43.4	20.3	0.6	0	0.01	0.02	2.7	13.3
양배추	30.0	7	0.5	0.1	5.7	12.9	0.1	1	0.04	0.09	0.0	7.2
대과	30.0	8	0.4	0.2	33.3	14.7	0.2	26	0.02	0.03	0.0	8.1
양과	30.0	10	0.3	0.1	3.6	35.1	0.0	0	0.03	0.01	0.0	7.2
풋마늘	30.0	9	0.4	0.3	1.5	0.0	0.1	3	0.05	0.04	0.1	7.5
오이	30.0	2	0.2	0.0	7.8	10.5	0.0	3	0.00	0.01	0.1	2.7
호박	15.0	2	0.3	0.1	2.3	3.5	0.1	12	0.01	0.02	0.0	1.2
토마토	10.0	2	0.2	0.0	0.4	7.0	0.1	5	0.01	0.00	0.0	2.1
시금치	15.0	5	0.5	0.1	6.2	4.4	0.4	119	0.02	0.05	0.1	9.8
풋고추	15.0	2	0.4	0.1	2.3	8.6	0.2	177	0.03	0.05	0.2	13.8
당근	15.0	5	0.2	0.0	6.3	5.6	0.2	163	0.01	0.01	0.1	1.5
상치	10.0	2	0.2	0.0	10.6	2.6	0.5	39	0.01	0.02	0.1	0.6
콩나물	30.0	12	1.3	0.3	9.6	14.7	0.2	4	0.05	0.04	0.2	3.0
느타리버섯	10.0	3	0.3	0.0	0.4	9.8	0.5	0	0.01	0.03	0.1	1.0
미역	70.0	0	2.1	0.21	04.3	56.0	0.8	165	0.04	0.10	0.9	1.4
김	1.0	0	0.4	0.0	1.1	0.4	0.1	0	0.00	0.04	0.0	0.1
사과	150.0	75	2.1	0.5	6.0	13.5	1.8	0	0.03	0.02	4.2	6.0
배	15.0	7	0.1	0.0	0.6	5.3	0.0	0	0.01	0.00	0.0	0.6
감	35.0	19	0.2	0.0	4.6	12.6	0.0	15	0.01	0.01	0.1	5.6
포도	15.0	8	0.2	0.1	1.8	3.0	0.1	0	0.06	0.04	0.0	0.0
귤	80.0	38	0.6	0.2	14.4	8.0	0.2	6	0.09	0.05	0.4	31.2
복숭아	15.0	6	0.1	0.1	1.8	2.9	0.1	16	0.00	0.00	0.1	0.8
수박	15.0	3	0.1	0.0	2.1	1.8	0.0	1	0.00	0.00	0.0	0.8
참외	10.0	3	0.1	0.0	1.4	1.2	0.0	1	0.01	0.01	0.1	2.2
딸기	0.0	0	0.0	0.0	0.0	0.0	0.0	0	0.00	0.00	0.0	0.0
감자	75.0	60	1.1	0.2	2.3	46.5	1.2	0	0.13	0.03	0.9	13.5
고구마	30.0	30	0.3	0.2	6.6	12.6	0.2	11	0.03	0.02	0.1	5.1
우유	400.0	236	11.6	12.84	00.0	360.0	0.4	92	0.12	0.60	0.4	0.0
식용유	30.0	265	0.0	30.0	0.0	0.0	0.0	0	0.00	0.00	0.0	0.0
참기름	2.5	22	0.0	2.5	0.0	0.0	0.0	0	0.00	0.00	0.0	0.0
마아가린	6.0	46	0.0	4.9	0.7	0.6	0.0	0	0.00	0.00	0.0	0.0
설탕	18.0	70	0.0	0.0	0.5	0.4	0.0	0	0.00	0.00	0.0	0.0
총 계	2655.5	4635	163.9	109.5	1460.5	2605.2	45.5	1066.0	2.81	2.83	32.4	195.8

식품명	중량 g	에너지 kcal	단백질 g	지방 g	칼슘 mg	인 mg	철분 mg	Vit.A RE	Vit.B1 mg	Vit.B2 mg	니아신 mg	Vit.c mg
간장	10.0	4	0.7	0.1	6.8	5.8	0.3	0	0.00	0.01	0.1	0.0
배추	150.0	20	2.0	0.3	76.5	43.5	0.5	11	0.08	0.09	0.5	69.0
무우	80.0	24	1.6	0.1	49.6	23.2	0.7	0	0.01	0.02	3.1	15.2
양배추	35.0	8	0.5	0.1	6.7	15.1	0.1	1	0.04	0.10	0.0	8.4
대파	30.0	8	0.4	0.2	33.3	14.7	0.2	26	0.02	0.03	0.0	8.1
양파	35.0	12	0.4	0.1	4.2	41.0	0.0	0	0.04	0.01	0.0	8.4
풋마늘	30.0	9	0.4	0.3	1.5	0.0	0.1	3	0.05	0.01	0.1	7.5
오이	30.0	2	0.2	0.0	7.8	10.5	0.0	3	0.00	0.01	0.1	2.7
호박	25.0	4	0.5	0.2	3.8	5.8	0.2	20	0.02	0.01	0.0	2.0
토마토	20.0	4	0.4	0.1	0.8	14.0	0.1	9	0.02	0.01	0.0	4.2
시금치	30.0	9	0.9	0.2	12.3	8.7	0.8	239	0.04	0.11	0.2	19.5
풋고추	30.0	4	0.7	0.2	4.5	17.1	0.3	354	0.06	0.10	0.4	27.6
당근	20.0	7	0.2	0.1	8.4	7.4	0.3	217	0.01	0.01	0.2	2.0
상치	10.0	2	0.2	0.0	10.6	2.6	0.5	39	0.01	0.02	0.1	0.6
콩나물	50.0	20	2.1	0.5	16.0	24.5	0.4	7	0.08	0.07	0.4	5.0
느타리버섯	10.0	3	0.3	0.0	0.4	9.8	0.5	0	0.01	0.03	0.1	1.0
미역	70.0	0	2.1	0.2	104.3	56.0	0.8	165	0.04	0.10	0.9	1.4
김	2.0	0	0.8	0.0	2.2	0.8	0.3	0	0.01	0.07	0.0	0.1
사과	300.0	150	4.2	0.9	12.0	27.0	3.6	0	0.06	0.03	8.4	12.0
배	30.0	14	0.2	0.1	1.2	10.5	0.1	0	0.01	0.01	0.1	1.2
감	70.0	38	0.4	0.1	9.1	25.2	0.1	29	0.02	0.02	0.3	11.2
포도	30.0	15	0.3	0.2	3.6	6.0	0.2	0	0.12	0.08	0.1	0.0
귤	160.0	75	1.3	0.3	28.8	16.0	0.3	13	0.18	0.10	0.8	62.4
복숭아	30.0	12	0.2	0.2	3.6	5.7	0.2	31	0.01	0.00	0.2	1.5
수박	30.0	6	0.1	0.0	4.2	3.6	0.1	1	0.01	0.01	0.0	1.5
참외	20.0	6	0.2	0.1	2.8	2.4	0.1	2	0.01	0.01	0.1	4.4
딸기	0.0	0	0.0	0.0	0.0	0.0	0.0	0	0.00	0.00	0.0	0.0
감자	75.0	60	1.1	0.2	2.3	46.5	1.2	0	0.13	0.03	0.9	13.5
고구마	75.0	75	0.8	0.4	16.5	31.5	0.5	29	0.08	0.05	0.2	12.8
우유	600.0	354	17.4	19.2	600.0	540.0	0.6	138	0.18	0.90	0.6	0.0
식용유	35.0	309	0.0	35.0	0.0	0.0	0.0	0	0.00	0.00	0.0	0.0
참기름	5.0	44	0.0	5.0	0.0	0.0	0.0	0	0.00	0.00	0.0	0.0
마아가린	12.0	91	0.0	9.9	1.3	1.2	0.0	0	0.00	0.00	0.0	0.0
설탕	24.0	93	0.0	0.0	0.7	0.5	0.0	0	0.00	0.00	0.0	0.0
총 계	3,838	64.4	226.7	154.7	1924.7	3617.0	61.7	1,629	4.01	4.19	4.75	307.0

식품명	중량 g	에너지 kcal	단백질 g	지방 g	칼슘 mg	인 mg	철분 mg	Vit.A RE	Vit.B1 mg	Vit.B2 mg	니아신 mg	Vit.c mg
간장	20.0	8	1.4	0.1	13.6	11.6	0.6	0	0.01	0.02	0.2	0.0
배추	200.0	26	2.6	0.4	102.0	58.0	0.6	14	0.10	0.12	0.6	92.0
무우	100.0	30	2.0	0.1	62.0	29.0	0.9	0	0.01	0.03	3.9	19.0
양배추	45.0	10	0.7	0.1	8.6	19.4	0.1	1	0.05	0.13	0.0	10.8
대과	45.0	13	0.6	0.2	50.0	22.1	0.4	39	0.03	0.05	0.0	12.2
양과	45.0	15	0.5	0.1	5.4	52.7	0.0	0	0.05	0.02	0.0	10.8
풋마늘	45.0	14	0.6	0.5	2.3	0.0	0.2	4	0.07	0.05	0.1	11.3
오이	45.0	4	0.3	0.0	11.7	15.8	0.0	5	0.00	0.01	0.2	4.1
호박	30.0	5	0.6	0.2	4.5	6.9	0.2	24	0.02	0.05	0.0	2.4
토마토	15.0	3	0.3	0.0	0.6	10.5	0.1	7	0.02	0.00	0.0	3.2
시금치	30.0	9	0.9	0.2	12.3	8.7	0.8	239	0.04	0.11	0.2	19.5
풋고추	30.0	4	0.7	0.2	4.5	17.1	0.3	354	0.06	0.10	0.4	27.6
당근	30.0	11	0.3	0.1	12.6	11.1	0.4	326	0.02	0.02	0.3	3.0
상치	15.0	3	0.3	0.1	15.9	3.9	0.7	59	0.01	0.03	0.1	0.9
콩나물	70.0	27	2.9	0.7	22.4	34.3	0.6	9	0.11	0.09	0.6	7.0
느타리버섯	20.0	6	0.6	0.1	0.8	19.6	0.9	0	0.02	0.06	0.2	2.0
미역	140.0	0	4.2	0.4	208.6	12.0	1.5	330	0.08	0.20	1.8	2.8
김	2.0	0	0.8	0.0	2.2	0.8	0.3	0	0.01	0.07	0.0	0.1
사과	350.0	175	4.9	1.1	14.0	31.5	4.2	0	0.07	0.04	9.8	14.0
배	40.0	19	0.2	0.1	1.6	14.0	0.1	0	0.02	0.01	0.1	1.6
감	80.0	43	0.5	0.1	10.4	28.8	0.1	34	0.02	0.02	0.3	12.8
포도	40.0	20	0.4	0.3	4.8	8.0	0.2	0	0.16	0.10	0.1	0.0
귤	250.0	118	2.0	0.5	45.0	25.0	0.5	20	0.28	0.15	1.3	97.5
복숭아	40.0	16	0.3	0.2	4.8	7.6	0.2	42	0.01	0.00	0.3	2.0
수박	40.0	8	0.2	0.0	5.6	4.8	0.1	2	0.01	0.01	0.0	2.0
참외	20.0	6	0.2	0.1	2.8	2.4	0.1	2	0.01	0.01	0.1	4.4
딸기	0.0	0	0.0	0.0	0.0	0.0	0.0	0	0.00	0.00	0.0	0.0
감자	150.0	120	2.3	0.3	4.5	93.0	2.4	0	0.26	0.06	1.8	27.0
고구마	75.0	75	0.8	0.4	16.5	31.5	0.5	29	0.08	0.05	0.2	12.8
우유	800.0	472	23.2	25.6	800.0	20.0	0.8	184	0.24	1.20	0.8	0.0
식용유	50.0	442	0.0	50.0	0.0	0.0	0.0	0	0.00	0.00	0.0	0.0
참기름	75.5	667	0.0	75.4	0.0	0.0	0.0	0	0.00	0.00	0.0	0.0
마아가린	12.0	91	0.0	9.9	1.3	1.2	0.0	0	0.00	0.00	0.0	0.0
설탕	36.0	139	0.0	0.0	1.1	0.7	0.1	0	0.00	0.00	0.0	0.0
총 계	5168.0	8,954	303.2	279.7	2555.6	4803.4	80.6	2197	5.36	5.72	62.7	407.6

식품명	중량 g	에너지 kcal	단백질 g	지방 g	칼슘 mg	인 mg	철분 mg	Vit.A RE	Vit.B1 mg	Vit.B2 mg	니아신 mg	Vit.c mg
간장	30.0	13	2.1	0.2	20.4	17.4	0.9	0	0.01	0.02	0.3	0.0
배추	250.0	33	3.3	0.5	127.5	72.5	0.8	18	0.13	0.15	0.8	115
무우	150.0	45	3.0	0.2	93.0	43.5	1.4	0	0.02	0.05	5.9	28.5
양배추	60.0	13	0.9	0.1	11.4	25.8	0.2	2	0.07	0.17	0.1	14.4
대파	60.0	17	0.8	0.3	66.6	29.4	0.5	52	0.04	0.06	0.0	16.2
양파	60.0	20	0.7	0.2	7.2	70.2	0.1	0	0.06	0.02	0.1	14.4
풋마늘	60.0	18	0.8	0.7	3.0	0.0	0.2	5	0.10	0.07	0.2	15.0
오이	60.0	5	0.4	0.1	15.6	21.0	0.0	7	0.01	0.01	0.2	5.4
호박	40.0	6	0.8	0.2	6.0	9.2	0.3	32	0.02	0.06	0.0	3.2
토마토	30.0	6	0.6	0.1	1.2	21.0	0.2	14	0.03	0.01	0.1	6.3
시금치	40.0	12	1.2	0.2	16.4	11.6	1.0	318	0.05	0.14	0.2	26.0
풋고추	40.0	5	1.0	0.2	6.0	22.8	0.4	472	0.08	0.14	0.5	36.8
당근	40.0	14	0.4	0.1	16.8	14.8	0.5	435	0.02	0.02	0.4	4.0
상치	30.0	5	0.7	0.1	31.8	7.8	1.4	118	0.02	0.05	0.2	1.8
콩나물	80.0	31	3.4	0.8	25.6	39.2	0.6	10	0.12	0.10	0.6	8.0
느타리버섯	20.0	6	0.6	0.1	0.8	19.6	0.9	0	0.02	0.06	0.2	2.0
미역	210.0	0	6.3	0.6	312.9	168.0	2.3	496	0.13	0.29	2.7	4.2
김	2.0	0	0.8	0.0	2.2	0.8	0.3	0	0.01	0.07	0.0	0.1
사과	400.0	200	5.6	1.2	16.0	36.0	4.8	0	0.08	0.04	1.2	16.0
배	50.0	24	0.3	0.1	2.0	17.5	0.1	0	0.02	0.02	0.2	2.0
감	80.0	43	0.5	0.1	10.4	28.8	0.1	34	0.02	0.02	0.3	12.8
포도	50.0	25	0.5	0.4	6.0	10.0	0.3	0	0.20	0.13	0.2	0.0
귤	300.0	141	2.4	0.6	54.0	30.0	0.6	24	0.33	0.18	1.5	117
복숭아	50.0	21	0.4	0.3	6.0	9.5	0.3	52	0.02	0.01	0.4	2.5
수박	50.0	11	0.2	0.1	7.0	6.0	0.1	2	0.01	0.01	0.0	2.5
참외	20.0	6	0.2	0.1	2.8	2.4	0.1	2	0.01	0.01	0.1	4.4
딸기	0.0	0	0.0	0.0	0.0	0.0	0.0	0	0.00	0.00	0.0	0.0
감자	225.0	180	3.4	0.5	6.8	139.5	3.6	0	0.38	0.09	2.7	40.5
고구마	75.0	75	0.8	0.4	16.5	31.5	0.5	29	0.08	0.05	0.2	12.8
우유	1000	590	29.0	32.0	1000	900.0	1.0	230	0.30	1.50	1.0	0.0
식용유	75.0	662	0.0	74.9	0.0	0.0	0.0	0	0.00	0.00	0.0	0.0
참기름	7.5	66	0.0	7.5	0.0	0.0	0.0	0	0.00	0.00	0.0	0.0
마아가린	19.0	144	0.1	15.6	2.1	1.9	0.0	0	0.00	0.00	0.0	0.0
설탕	36.0	139	0.0	0.0	1.1	0.7	0.1	0	0.00	0.00	0.0	0.0
총 계	6978.50	123000.0	446.20	305.60	3340.10	6843.70	118.40	3021.0	7.93	7.8	91.70	517.90

● 응답시 유의사항 ●

- 가능한 **귀택의 주부(또는 직접 살림살이를 하는 분)가 작성**하여 주십시오.
- 이 조사는 8월(8.1 ~ 8.31)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시사항이 없으면 8월을 기준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 다른 설명이 없을 때는 **모든 응답은 각 질문의 오른쪽에 있는 네모칸 안에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액을 기입할 때에는 **단위(만원, 천원 등)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수입과 지출을 기입할 때에는 **은행을 통해 자동결제되는 부분** (예: 온라인 입금, 신용카드대금결제, 각종 공과금 결제 등) **까지 빠짐없이** 써 주십시오.
- 귀택에 해당되는 문항에는 한 문항도 빠짐없이 기재해 주십시오.

귀하 및 가족의 일반적인 사항

1.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 1) 서울시
- 2) 부산시
- 3) 대구시
- 4) 대전시
- 5) 인천시
- 6) 광주시
- 7) 경기도
- 8) 기타

2. 이 설문에 답하고 있는 귀하는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 1) 가구주 본인(가족 있음)
- 2) 가구주의 부인

268

- 3) 가구주의 자녀
- 5) 가구주의 부모
- 7) 기타

- 4) 가구주의 형제, 자매
- 6)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단신자

3. 현재 살고 있는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귀하의 가족 모두(본인 포함)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적어주십시오(단 학업을 위해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가족이 있으면 함께 적어 주십시오).

❶ 가구주와의 관계와 교육정도는 보기를 참고하여 번호를 기입하세요 ❶

보 기 1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형제자매	5) 조부모
	6) 손자손녀	7) 사위며느리	8) 기타(구체적으로)		
	1) 취학전 또는 무학	2) 국민학교 재학중	3) 국졸		
	4) 중학교 재학중	5) 중졸	6) 고등학교 재학중		
	7) 고졸	8)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중	9) 대졸이상		

총가구원수					설문지 작성자	
-------	--	--	--	--	---------	--

(* 설문지 작성자의 가구원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번호	가구주와의관계 (보기1 참조)	성별	연령(만)	교육정도 (보기2참조)	결혼여부	취업여부
1	가구주		세		①기혼 ②미혼	①취업 ②비취업
2			세		①기혼 ②미혼	①취업 ②비취업
3			세		①기혼 ②미혼	①취업 ②비취업
4			세		①기혼 ②미혼	①취업 ②비취업
5			세		①기혼 ②미혼	①취업 ②비취업
6			세		①기혼 ②미혼	①취업 ②비취업
7			세		①기혼 ②미혼	①취업 ②비취업
8			세		①기혼 ②미혼	①취업 ②비취업

4. 귀댁의 수입에 대해 대답해 주십시오. (세금을 빼기 전의 총액으로 답하시고 만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남편 또는 주소득자의 수입 (독신자는 자신의 수입)	월평균급여액(기본급+각종수당)	()만원
	(그중 잔업수당은)	()만원
	연간 전체 상여금(보너스) 총액	연간()만원
부인의 수입	월평균총액(보너스포함)	()만원
그밖의 가족의 근로소득	월평균총액(보너스포함)	()만원
재산소득(임대료,이자,배당금 등)과 기타소득(부모님이 보내주는 돈 등)	월평균총액	()만원

5. 남편(독신자의 경우 귀하 자신)의 직종은 무엇입니까?

- 1) 생산직 2) 사무직 3) 관리직 4) 전문기술직
5) 판매직 6) 서어비스직 7) 운수직

10. 귀댁이 다음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얼마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각각 기입해 주십시오.

10-1. **최저한의 생활** 월

--	--	--	--

 만원

10-2. **보통 정도의 생활** 월

--	--	--	--

 만원

10-3. **여유있는 생활** 월

--	--	--	--

 만원

식비에 관한 사항

11. 귀하 가족의 한달 생활비 중 식품비는 얼마나 됩니까?

월

--	--	--	--

 만원

(단 외식비와 술값은 제외하시고 아이들 간식비를 포함한 일체의 식품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1-1. 간식비(군것질 등)는 얼마나 됩니까?

월

		만원
--	--	----

12. 지난 3개월간 몇번이나 가족과 함께 외식을 했습니까?

3개월간

		번
--	--	---

12-1. 가족단위 외식을 하는 경우 1인당 식사비는 보통 얼마나 됩니까?

1인당

	만		천원
--	---	--	----

13. 매일 규칙적으로 집밖에서 식사(도시락은 제외)를 하는 가구원이 있습니까?

--

- 1) 1명 2) 2명 3) 3명 이상
4) 없다

13-1. (규칙적으로 밖에서 식사하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사먹는 식사비는 1끼 평균 얼마 짜리입니까?

1끼당

	원
--	---

(회사등에서 무료로 식사하는 경우 0원으로 써 주십시오)

20. (이 질문에는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 응답해 주십시오).

20-1. 집을 소유한 지는 몇 년 되었습니까?

		년
--	--	---

20-2. 집의 현 시가는 얼마나 됩니까?

		억					만원
--	--	---	--	--	--	--	----

20-3. 집을 마련할 때 부채를 지셨습니까?

1) 예 2) 아니오 -----▶ 문 20-4로 가시오

20-3-1. (부채가 있을 경우) 빌린 돈의 액수는?

		억					만원
--	--	---	--	--	--	--	----

20-3-2. (부채가 있을 경우) 이 부채의 금리는 연리 몇 %나 됩니까?

연리

		%
--	--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해 주십시오)

20-4. 집의 일부를 전세로 주었을 경우 현재 전세금 총액은?

	억					만원
--	---	--	--	--	--	----

20-5. 집의 일부를 월세로 주었을 경우 전체 보증금은?

	억					만원
--	---	--	--	--	--	----

20-6. 매월 총월세액은?

			만원
--	--	--	----

가장 최근의 이사 때 이사비용(운송비, 중개수수료, 인건비, 기타)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만원
--	--	--	----

23. 최근 5년간 주택수리 또는 내부장식공사(도배, 장판, 커튼, 베란다샤시 등 포함)를 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문 24로 가시오

23-1. (수리한 경험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의 주택수리시 든 비용은?

			만원
--	--	--	----

24. (아파트의 경우만 대답해 주십시오)

주택부금을 제외한 아파트관리비는 1년을 평균하면 한달에 얼마나 됩니까?

월

			만원
--	--	--	----

광열/수도비에 관한 사항

25. 귀댁의 주된 난방방식은 무엇입니까?

- 1) (아파트 등)중앙난방식 2) (단독)기름보일러 3) 가스보일러
- 4) 연탄보일러 5) 연탄온돌 6) 난로 및 전기장판
- 7) 지역난방 8) 기타

26. 귀댁의 취사용 연료는 주로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 1) 연탄
- 2) 석유
- 3) 프로판가스
- 4) 도시가스
- 5) 전기
- 6) 기타

27. 귀댁에서는 다음 요금이 계절별로 각각 매월 얼마씩이나 됩니까?

	겨울철	여름철	봄가을
수도요금	월()만()천원	월()만()천원	월()만()천원
전기요금	월()만()천원	월()만()천원	월()만()천원
도시가스요금	월()만()천원	월()만()천원	월()만()천원
LPG 가스값	월()만()천원	월()만()천원	월()만()천원
연탄값	월()만()천원	월()만()천원	월()만()천원
석유값	월()만()천원	월()만()천원	월()만()천원

보건/위생비에 관한 사항

28. 귀댁은 현재 어떤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1) 직장의료보험 -----┘
- 2) 지역의료보험 |-----▶ 문 28-1로 가시오
- 3) 공무원/교원의료보험 -----┘
- 4) 의료보호 -----┘-----▶ 문 29로 가시오
- 5) 의료보장 혜택을 못받고 있음 -----┘

28-1. 8월 중 의료보험료는?

원

29. 다음은 지난 1년간 귀하 또는 귀하 가족의 의료바로 지출된 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지출된 비용을 써 주십시오

(의료보험에서 지급된 돈을 제외한 본인 부담분만 대답해 주십시오)

29-1. 병원비

					만원
--	--	--	--	--	----

29-2. 치과진료

					만원
--	--	--	--	--	----

29-3. 약값

					만원
--	--	--	--	--	----

30. 귀하는 얼마나 자주 대중목욕탕에 갑니까?

- | | |
|------------|------------|
| 1) 월 1회 정도 | 2) 월 2회 정도 |
| 3) 월 3회 정도 | 4) 주 1회 정도 |
| 5) 주 2회 이상 | 6) 거의 안감 |

31. 귀택에서 성인남자는 얼마나 자주 이발소에 갑니까?

- | | |
|------------------|---------------|
| 1) 3개월 이상에 1회 정도 | 2) 2개월에 1회 정도 |
| 3) 1개월에 1회 정도 | 4) 1개월에 2회 정도 |
| 5) 1주일에 1회 정 | 6) 거의 안감 |

31-1. 이발소 이용시 1회 요금은 평균 얼마입니까?

	만		천원
--	---	--	----

32. 귀댁에서 성인여자는 얼마나 자주 미용실에 갑니까?

- 1) 3개월이상에 1회 정도 2) 2개월에 1회 정도
- 3) 1개월에 1회 정도 4) 1개월에 2회 정도
- 5) 1주일에 1회 정도 6) 1주일에 2회 이상 7) 거의 안감

32-1. 미용실 이용시 1회 요금은 평균 얼마입니까?

퍼머		만		천 원	커트			만		천 원
드라이			만							천 원

33. 귀하 또는 귀하 가족중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명
--	---

교통/통신비에 관한 사항

34. 남편이 출근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1) 버스 2) 지하철
- 3) 자전거/오토바이 4) 자가용
- 5) 택시 6) 통근버스 7) 도보 8) 기타

35. 귀댁 가족 전체의 지난 8월중 택시이용회수는 몇 번입니까?

	회
--	---

36. 귀하 가족 전체가 매월 평균 교통요금으로 지불하는 돈은 모두 얼마입니까?

월			만원
---	--	--	----

37. 귀댁의 전화비는 한달 평균 얼마 정도입니까?

월			만		천원
---	--	--	---	--	----

♥♥♥ 여기까지 오시는 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십시오. ♥♥♥

피복/신발에 관한 사항

38. 귀댁에서는 아래 품목을 얼마나 자주 새로 사입는지를 써 주십시오.
단 남자용은 남편(또는 성인남자 1인용)의 경우, 여자용은 주부(또는 성인여자 1인용)의 경우를 써 주십시오

(자녀용은 쓰지 마시고 독신자는 자신의 경우로 응답하십시오)

* 쓰는 요령: 런닝 등 1년에 여러벌 사입는 경우= (1)년에 (10)벌
정장 등 몇년만에 한벌씩 사입는 경우= (3)년에 (1)벌

남편(또는 성인남성 1인용)		부부(또는 성인여성 1인용)	
품 목	구 매 량	품 목	구 매 량
1)신사복 정장	()년에 ()벌	1)숙녀복 정장	()년에 ()벌
2)코트(바바리 포함)	()년에 ()벌	2)한 복	()년에 ()벌
3)겨울잠바, 파카	()년에 ()벌	3)코트(바바리 포함)	()년에 ()벌
4)봄가을 잠바	()년에 ()벌	4)겨울잠바, 파카	()년에 ()벌
5)세 타	()년에 ()벌	5)봄가을 잠바	()년에 ()벌
6)바 지	()년에 ()벌	6)세 타	()년에 ()벌
7)구 두	()년에 ()컬레	7)바 지	()년에 ()벌
8)잠 옷	()년에 ()벌	8)치 마	()년에 ()벌
9)혁 대	()년에 ()개	9)블 라 우 스	()년에 ()벌
10)슬리퍼	()년에 ()컬레	10)구 두	()년에 ()컬레
11)지갑	()년에 ()개	11)잠 옷	()년에 ()벌
12)장갑	()년에 ()개	12)샌 달	()년에 ()컬레
13)티셔츠	()년에 ()벌	13)슬 리 퍼	()년에 ()컬레
14)겨울내의	()년에 ()벌	14)지 갑	()년에 ()개
15)팬 티	()년에 ()벌	15)장 갑	()년에 ()개
16)런 닝	()년에 ()벌	16)핸 드 백	()년에 ()개
17)넥타이	()년에 ()벌	17)목 도 리	()년에 ()개
18)남방셔츠	()년에 ()벌	18)잠 옷	()년에 ()벌
19)양 말	()년에 ()컬레	19)티 셔 츠	()년에 ()벌
20)운 동 화	()년에 ()컬레	20)겨 울 내 의	()년에 ()벌
21)와 이 셔 츠	()년에 ()벌	21)팬 티	()년에 ()벌
22)손 수 건	()년에 ()개	22)런 닝	()년에 ()벌
		23)속 치 마	()년에 ()벌
		24)브 래 지 어	()년에 ()개
		25)양 말	()년에 ()컬레
		26)스 타 킹	()년에 ()컬레
		27)운 동 화	()년에 ()컬레
		28)남 방 셔 츠	()년에 ()벌
		29)손 수 건	()년에 ()개
		30)스 카 프	()년에 ()개

39.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정장수는?

39-1. 남편(독신자는 자기 자신)

		벌
--	--	---

39-2. 주부(독신자는 자기 자신)

		벌
--	--	---

40. 귀댁에서 세탁소에 지출하는 세탁료는 한달 평균 얼마입니까?

월

		만원
--	--	----

41. 귀댁에서 한달 평균 의류(겉옷, 속옷 포함)와 신발(구두, 운동화 포함)을 사는데 드는 돈은 얼마쯤입니까?

월

		만원
--	--	----

교육비에 관한 사항(자녀가 있는 경우만 응답)

42. 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지난 1학기에 학교에 납입한 납입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자세한 내역이 기억나지 않을 때는 1학기중 납입금 총액만 써 주십시오)

	납입금 총액	수업료	기성회비	입학금
첫째 자녀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둘째 자녀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셋째 자녀	()만원	()만원	()만원	()만원

43. 귀하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다음 각 항목의 돈은 1년간 얼마 정도입니까?

(단체활동비=소풍, 수학여행,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등
 학습준비물비=미술, 음악, 체육, 자연, 실과 등)

	교과서값	참고서값	문방구값	단체활동비	학습준비물비
첫째 자녀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둘째 자녀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셋째 자녀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44. 귀하 자녀들중 유치원, 학원 등 학교외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월평균 얼마나 됩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써 주십시오.

(예능학원=피아노, 미술, 글짓기, 웅변, 바둑;

체육학원=태권도, 유도, 검도;

학습학원=수학, 영어, 속셈, 주산, 컴퓨터)

	유치원	예능학원	체육학원	학습학원
첫째 자녀	월()만원	월()만원	월()만원	월()만원
둘째 자녀	월()만원	월()만원	월()만원	월()만원
셋째 자녀	월()만원	월()만원	월()만원	월()만원

	독서실	학습지	개인/그룹과외	기 타
첫째 자녀	월()만원	월()만원	월()만원	월()만원
둘째 자녀	월()만원	월()만원	월()만원	월()만원
셋째 자녀	월()만원	월()만원	월()만원	월()만원

55. 귀댁(독신자는 귀하 자신)에서 저축을 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1) 주택구입 또는 전세금 마련
- 2) 본인 결혼비용 마련
- 3) 자녀 결혼비용 마련
- 4) 가구, 가전제품, 승용차 구입
- 5) 본인 또는 자녀 등 가족의 교육비
- 6) 의료비
- 7) 노후 생활비
- 8) 빚을 갚기 위해
- 9) 기타

56. 귀댁(독신자는 귀하)은 금융기관, 직장, 개인 등 어느 곳에서든 빌린 빚이

있으십니까?

- 1) 있다
- 2) 없다----->문 57로 가시오

56-1. **(빚이 있는 경우)** 현재 총부채액은 얼마입니까?

총		억						만원
---	--	---	--	--	--	--	--	----

56-2. **(빚이 있는 경우)** 이 부채에 대해 무는 이자는 연리 몇 %입니까?

연리

		%
--	--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해 주십시오)

56-3. 부채를 지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주택구입 또는 전세금 마련
- 2) 본인 결혼비용 마련
- 3) 자녀 결혼비용
- 4) 가구, 가전제품, 승용차 구입
- 5) 교육비
- 6) 의료비
- 7) 노후 생활비
- 8) 주식, 채권투자 등 재산형성 위한 자금
- 9) 기타

생활비계산에 꼭 필요하오니 빠짐없이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보유여부	항 목	보유여부	항 목	보유여부
1)옷장		18)피아노		35)석유곤로	
2)이불장		19)자전거		36)석유난로	
3)화장대		20)전화		37)전기난로	
4)서랍장		21)베베		38)가스난로	
5)그룻장		22)휴대폰		39)전자레인지	
6)장식장		23)컴퓨터		40)가스레인지	
7)싱크대		24)벽시계		41)믹서/쥬서	
8)TV받침		25)탁상시계		42)라디오/카셀	
9)식탁		26)헤어드라이어		43)전축(오디오)	
10)의자		27)비디오		44)선풍기	
11)침대		28)전기밥솥		45)에어컨	
12)소파		29)냉장고		46)카메라	
13)응접세트		30)세탁기		47)비디오카메라	
14)책장		31)칼러 TV		48)진공청소기	
15)책상		32)전기다리미		49)커피포트	
16)오토바이		33)전기스탠드		50)토스터	
17)승용차		34)정수기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6> 도시근로자가구 1일 식품섭취조사 설문지

도시근로자 가구 1일 식품섭취조사

이 조사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식품섭취를 조사함으로써 95년 노총 생계비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앞으로 5년간 임금인상 및 생활개선을 위한 자료로서 사용됩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소 힘드시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적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995. 9.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02-706-6037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032-860-7780
단국대학교 02-709-2445

※ 다음은 설문지 배포자가 일관하여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 명	----- 연맹 ----- 노동조합 ----- 지부(분회)						
	연	맹	단	위	조	합	ID
일련 번호							

● 응답시 유의사항 ●

- **가능하면 귀댁의 주부(가족의 식사를 책임지시는 분)가 작성**하여 주십시오.
- 이 조사는 만 하루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문지를 작성하는 날 하루 전날의 전 가족의 기상부터 취침까지 섭취된 모든 식품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식품에 대해 가능한 한 자세히 적어 주시고, 특기할 만한 사항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식이나 의식등 주부가 준비하지 않은것도 가족에게 물어보아서 다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록하는 날에 대한 사항입니다.

1. 기록하는 날의 날짜와 요일을 기록해 주십시오

날짜	1995년 ___ 월 ___ 일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	---	---	---	---	---

2. 가족 중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몇 시입니까?

최초기상자		기상시간	시	분
-------	--	------	---	---

3. 기록하는 날은 식구들이 먹는 것이 다른날이나 비슷합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4. 기록하는 날 누가 제일 늦게 취침을 했습니까?

마지막 취침자	
---------	--

6. 기록하는 날 가족들의 식사상황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보기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보기1>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2> 식사상황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형제, 자매 5) 조부모 6) 손자, 손녀 7) 사위,며느리 8) 기타 (구체적으로)	1) 가정식 (집에서 만든 것, 집에서 준비한 도시락 포함) 2) 외식 3) 직장급식 4) 학교급식 5) 이웃집 6) 결식(식사 안함) 7) 기타

	가구주와의 관계	아 침	점 심	저 녁
1	가구주			
2				
3				
4				
5				
6				
7				
8				

7. 1일간 식품섭취상황을 다음의 <예>를 참조하여 **다음 페이지 표**에 기록해 주십시오

● 기입시 주의사항 ●	● 기입요령 ●
<p>-가족단위조사이므로 가족전체에 대한 사항을 주부가 기입해 주십시오.</p> <p>- 지난 24시간 동안 섭취한 모든 식품을 기입해 주십시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간: 식품을 섭취한 시간 - 식사명: 아침, 점심, 저녁이외의 식품섭취는 간식으로 함. - 장 소: 식사한 장소 - 먹은사람: 기록한 음식을 먹은 사람 기록 - 가정식: 외식, 가정식, 도시락(가정에서 준비한것)인지 기록 - 음식명: 음식 이름 기입 - 식품명: 음식에 들어간 재료 기입 - 상 태: 마른 것, 가공된 것 등 구입시의 상태 기록 상표를 알면 상표 기입 - 목측량: 사용된 양만큼 가정에서 사용하는 단위나 구입단위로 표시 - 무 계: 무게를 기입 - 비 고: 먹은 사람 기입

<기록의 예>

시 간	식사명	장소	먹은사람	음식명	목적량	식품명	상 태	목적량	무 계
7:00	간식	집	아버지	녹즙	1컵	녹즙쥬스	비닐팩	1봉지	200g
8:00	아침	집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밥 감자국	1공기씩 1대접씩	쌀 감자 양파 마늘 파 다시멸치	비닐팩	1봉지	400g
							백미	3개	150g
							생것	1개	50g
							가루	1차술	5g
							생것	2뿌리	15g
말린것	4개	15g							
김치	1접시	포기김치	1봉지	150g					
콩치구이	1접시	자반콩치	2마리	250g					
김	1봉지	김구이	1봉지	35g					
10:00	간식	집	어머니 딸	커피	2잔	커피가루 프림 설탕	맥심	3차술	15g
							프리마	3차술	15g
							흰설탕	3차술	15g
12:00	점심	식당	아버지	갈비탕 깍두기	1그릇 1접시	갈비탕 밥	4000원	1그릇	
							1잔	1접시	
	식당	아들	짜장면 단무지	1그릇 1접시			2000원		
							1캔		
	가정	어머니	밥 김치	1공기 1접시	아침에 남은 것		코카콜라		
							1개	1개	50g
	매점	딸	계란부침 곰보빵	1개 1개			계란		
							1캔		
	매점	아들	오뎅	1개			삼립 초정리		
							1개	1개	500g
16:30	간식	매점	아들	오뎅	1개	어묵	즉석어묵 (동원)	1개	500g

[저자약력]

• 윤진호

- 서울대 상과대학 경제학과
-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 현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주요저서 :
 - 경제학개론(공저)('91)
 - 근로자파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공저)('93)
 - 한국의 불안정노동자('94)
 - 한국의 화이트칼라노동조합연구(공저)('94)

생계비와 임금정책

1996년 3월 22일 인쇄

1996년 3월 28일 발행

발행인 朴仁相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代) 02-782 -3884

등록 81. 8. 21 (13-31호)

인쇄 (주)우정미디어
(代) 02-324 -9762

값 : 10,000원